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총4권중 제2권

2004. 12. .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5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김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fax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1. 배경	1
2. 주요골자	2
3. 주요변경사항	5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0
제3장 전문가위원회	11
제4장 농림사업	12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19
제6장 보칙	22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23

1. 배경	25
2. 주요골자	26
3. 주요변경사항	30
4. 해설	34

III. 농림사업실시규정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98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26

VI. 기타주요사항 212

참고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22
2. 토양개량사업(자율)	276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86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6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97
② 저수지 준설사업	309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27
5. 대·중규모 용수개발(공공)	33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① 지하수 자원관리	359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365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385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389
7. 농지조성(공공)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394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412

II.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33
9. 농기계임대사업(자율)	483
10. 농기계생산지원(공공)	498
11.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514
②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526

III. 생산 및 유통개선

1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지원(자율)	543
------------------------------	-----

『농업(원예)구조개선』	558
I. 생산기반확충	560
13.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561
II.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615
14.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617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629
1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①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682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694
③ 인삼계열화사업	718
16.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725
17. 농산물유통시설운영활성화사업(공공)	
①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737
18.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746
1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751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761
20.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771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778
2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785
22.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789
23.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808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815
24.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846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871
25.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873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2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931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960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72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002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12
2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027
27.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047
28.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1056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29. 사료사업지원(자율)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70
② 사료사업지원	1100
3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1108
31. 축산계열화사업(공공)	
① 가축계열화	1136
② 경주마육성	1149
32. 한우사업지원(공공)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156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1167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1180
33. 가축개량사업(공공)	1194

II.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249

②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262
③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	1281
④ 축산물등급판정	1289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1296
⑥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329
⑦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1335
35.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350
② 축산물검사	1356
③ 가축방역	1367
④ 가축공제	1389
36.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393
37.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403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1411
I. 생산 및 유통개선	1413
38. 친환경농업육성(자율)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415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434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453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74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476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1482
③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1493
④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1504
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	1513
⑥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527
41. 농림기술개발(공공)	1540

42. 지역특화시범(공공)	1549
43. 기술보급(공공)	
① 새기술보급시범	1556
② 품목별 전문교육	1563
III. 인력육성	1569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① 창업농지원사업(자율)	1571
45. 농업인자녀지원(공공)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08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620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23
IV. 소득보전	1661
47. 농업직접지불제(공공)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166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700
③ 논농업직접지불	1715
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1752
⑤ 친환경축산직불	1786
⑥ 쌀생산조정제	1827
48. 농업인재해공제(공공)	1852
49.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1859
V. 소득원개발	1877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① 농촌관광휴양사업	1879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1910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1923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1930
VI. 생활환경개선	1944

53. 페미널 수거지원(자율)	194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951
I. 경영기반 확충	1953
54.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1955
55. 영림계획(자율)	1959
56. 사방사업(공공)	1964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70
57. 임산소득증대(자율)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972
② 조경수·분재생산	1986
③ 산림복합경영	1992
④ 산림소득종합자금	1998
58. 목재이용·가공 지원(자율)	2017
59. 산림조합육성(공공)	2028
6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033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070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77
III. 인 력 육 성	2085
6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087
62.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2092
② 임업기술지도	2098
③ 사유림협업경영	2102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107
63.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109
V. 산림자원조성	2115
64. 해외산림투자지원(자율)	2117
65.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124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 생산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산경영과(과장 이기식, 농업서기관 조일호)입니다.

1. 목 적

- 농지매매·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의 규모화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쌀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 사업)
 - 제21조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 제22조 (농지의 교환·분합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5~'03	2004	2005	2006	2007이후
사 업 량		77,515	7,688	11,505	14,403	79,193
사업비	계	2,712,801	309,212	476,941	557,905	2,688,724
	용자	2,712,801	309,212	476,941	557,905	2,688,724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 농지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장기임대차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 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 지원 ○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나. 지원대상자

구 분	지 원 대 상
○ 농지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0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재배 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논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만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 경영규모 5.0ha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 장기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2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재배 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논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만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 경영규모 5.0ha 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 농지교환·분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다. 지원대상농지

- (1)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답(실제 이용현황 기준)
- (2)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실제 이용현황 기준)

라. 매매사업 지원상한 및 자부담

- (1) 지원상한 : 평당 답 30,000원, 전 35,000원
- (2)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 (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농지매매	20ha(우수경영체 25ha)	연리 3.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 상환·체증식상환
○ 농지임대차	30ha	무 이 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	연리 3.0%	10년이내 원금 균분상환

※ 매매, 임대차 지원규모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임 (경영체별 지원한도 참고)

바.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1,505	476,941	476,941		476,941	-	-
○ 농 지 매 매	4,010	311,961	290,325		290,325	-	-
○ 농지임대차	7,445	203,264	183,891		183,891	-	-
○ 농지교환·분합	50	2,725	2,725		2,725	-	-

※ 농지매매, 임대차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 500-1769, 1777

나. 사업 담당부서

(1) 지방자치단체(쌀전업농 총괄 관리)

(가) 시·도 : 농산과 등

(나) 시·군 : 산업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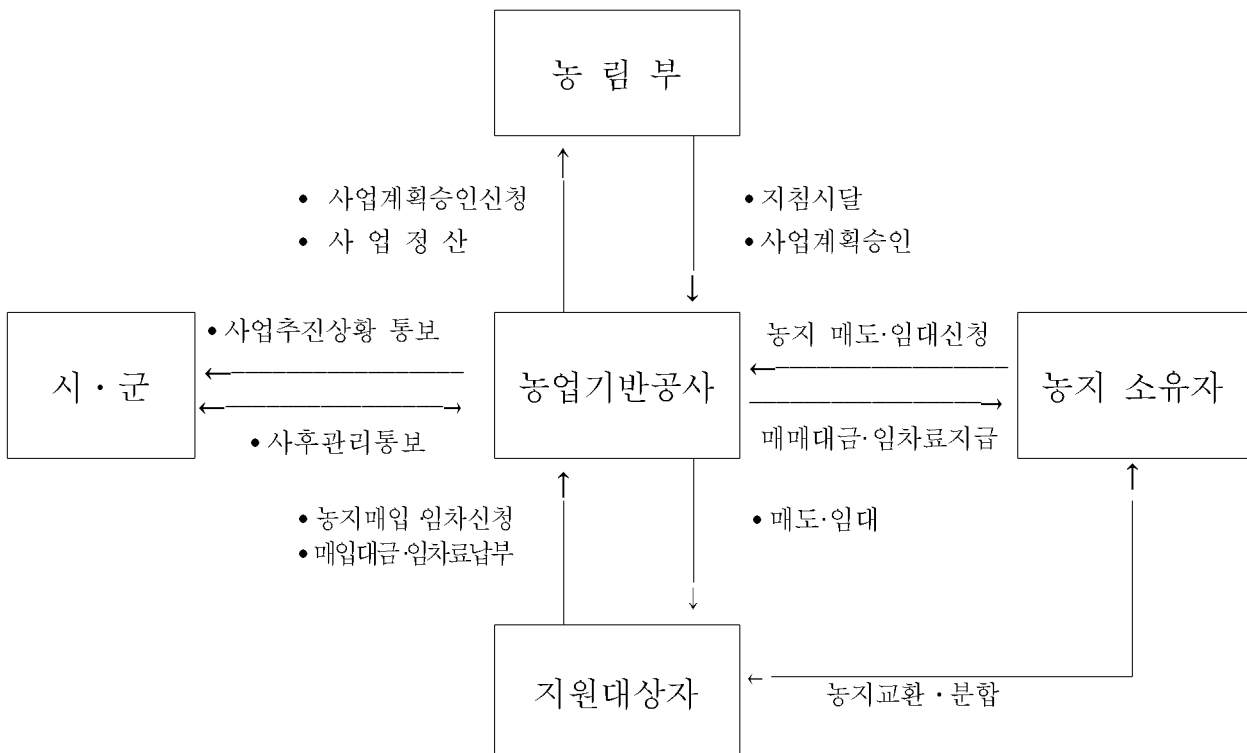
(2) 농업기반공사(영농규모화사업 시행)

(가) 본 사 : 농지사업처(031) 420-3357, 3356

(나) 각 도본부 : 농지사업부(제주도의 경우 총무부)

(다) 시·군 관할지사 : 총무부, 농지사업부 또는 사업부

다.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요령 >

가. 농지 매매사업

(1) 대상농지 확보

(가) 매입 대상농지

- ①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다음 답도 매입 가능
 - ㉠ 경지정리된 답
 - ㉡ 경지정리되지 않은 답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결된 답
- ②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제주도에 한함)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전도 매입 가능
 - ㉠ 받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전
 - ㉡ 받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
 -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일 것
 - 7ha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것

(나) 매입 우선순위

- ① 공사는 상기 매입대상 농지를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답(제주도의 경우 전, 이하 같음)
 -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 사업 지역내의 답
 -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 농지중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답
 -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답
 - ㉦ 공사 보유농지 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답
 - ㉧ 국·공유의 답,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답
 -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답
- ②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결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 매입하되, 지원대상자의 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1회지원으로 6ha이상 농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 농지를 선정

(다) 매입 제외농지

- ①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농지(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 공사의 동의를 받아 매도하는 농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전업하는 경우, 파산 등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
 - ㉢ '96년 이전에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농지
- ②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세부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 공사는 시·군의 도시·건설·도로 부서 등 개발사업 관련부서에서 대상 농지가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농지는 관할 군부대에서 영농 가능여부 확인
-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 ④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 ⑤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라) 매입가격의 결정

- ① 매매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지 매도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
- ② 농지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반드시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 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조사표에 확인자, 거래시기 및 가격을 반드시 기재)

(마)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① 공사는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와 매매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②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 지급방법에 의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농지(이하 “일반농지”라 함)에 대하여는 매입대금을 일시불 지급, 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이하 “경영이양농지”)는 선금 지급 후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

㉠ 대금지급 방법

구 분		일반농지	경영이양농지
계약금	지 급 액	매입대금의 10%	매입대금의 10%
	지급시기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계약 체결시
선 금	지 급 액	-	매입대금에서 계약금 및 잔금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잔 금	지 급 액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실 지원금액의 30%
	지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지급약정 체결 후
	지급방법	일시불	매월 분할지급

㉡ 경영이양농지 중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희망시 일시불 지급

- ㉠ 경영이양 대상면적이 0.5ha 미만인 경우
- ㉡ 농가가 부채상환을 위해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 ㉢ 농가의 연령이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68세와 만 69세인 경우
- ㉣ 농업기반공사 지사내 경영이양직불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시불 지급이 타당하다고 심의한 경우

③ 분할지급 방법

- 농지대금은 선금 지급후 잔금을 지급기간 동안 농가가 아래 지급유형 중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매월 균등분할지급.
- 지급기간 : 약정 체결후 2~8년기간동안 지급
- 지급이자 : 잔금에 대한 이자는 5%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원금분할 지급시 가산 지급

- 지급일자 : 농지대금 분할지급시에는 농지대금 잔금을 지급약정체후부터 매월 일정일에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지급.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토요일인 경우 지급전일에 지급
- 분할지급 중 수령자 사망시 지급방법
 - 농지대금 잔금은 상속인에게 일시불로 지급
- 지급유형(총괄)

구 분	지급율		농지대금 잔금 분할 지급기간
	선금(계약금 포함)	잔 금	
경영이양 농지매매	매입대금에서 계약금 및 잔금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실 지원금액의 30%	2년이상~8년이하

(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잔금지급보증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매매 대금 지급완료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농업기반공사의 사장)가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매매대금(원리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

(사) 농지 매도 신청(농지소유자 → 공사)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가) 지원대상자(아래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별표1)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함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의 품목별 (밭작물·채소·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의미함
- ⑤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소유답(제주도의 경우 전)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⑥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⑦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나) 지원 제외자

-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보유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 등에 의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②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③ 기존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지역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작지를 다른 시·군·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④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 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 ⑤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지원조건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다만, 지원농지에 타작물재배 및 타직업 겸업 금지위반자는 제외)

- ⑥ 노동력·농기계보유현황 및 금융부담 능력 등 경영진단·지도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다) 농지매입 신청(지원대상자→공사)

- ①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지매입신청서를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 지사에 제출
- ②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경영진단분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라)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공사는 접수된 매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 논 경영규모 2ha이상 6ha미만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6ha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
 - ㉢ 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
 - '95년이전 일반전업농 지원 농지를 승계(매입)하여 규모를 확대한 자 포함
 - ㉣ 2001년이후 농림부장관, 지자체장, 농업인단체 주최 우수쌀품평회 입상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쌀부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 및 공사에서 선정한 쌀전업농 우수경영체(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 포함)
 - ㉤ 공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쌀전업농교육을 이수한 자
 - ㉥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농업후계인력(승계조치후 지원)
 - ㉦ 지원대상 농지와 동일영농권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 ㉨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한 자

- ②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지원 신청한 자
 -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과계 졸업자 등
- ③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심의 선정하여야 함(쌀전업농육성대상자외의 일반 농가도 포함하여 순위 부여)

(마) 적정 지원한도 결정

- ①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한도내에서 지원
 -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 , 다음의 경우에는 25ha
 - ㉡ 공사로부터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로서 신청면적 이상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 ㉢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 ※ 조기상환이라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을 지원 신청일전까지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함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30ha
 - ㉤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 ㉥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② 공사는 지대별 특성(평야·중간·산간),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지원전 경영규모 및 소득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지원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가)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농지는 시가 기준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 확보

-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②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③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다) 매매대금의 납부

-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② 분할납부
 -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40세이하 : 30년, 41~55세이하 : 20년, 56~60세이하 : 15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 균등분할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분할납부 기간이 30년인 경우는 제외)
 - ㉢ 농지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 후계농업인, 분할납부 기간이 10년인 경우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① 공사는 농지매매자금(농지구입자금, 교환·분합사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 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 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②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수렴
- ③ 연기기준 : 지원 받은 농지가 필지별 3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1년간 납부 연기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 (1) 매입대상농지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2) 매입가격 결정
 -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를 기준으로 매수. 다만,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 (나) 처분명령을 받은 매수청구자와 매매가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조정·중재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
- (3) 매입제한 농지
 - (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 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 (나)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다)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중재가격에 응하지 않은 경우
- (4)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결정 : 매매사업과 같음
- (5) 기타 지원조건 및 세부절차 등 : 별도지침에 의함

다. 농지 임대차사업

(1) 대상농지 확보

(가)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나) 대상농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의 답(제주도의 경우 전을 말함)을 우선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 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②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 ③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④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비농업인의 답(동일 영농권 또는 연접한 영농권내의 답은 1km 이내로 봄)

(다) 제외농지

- ①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②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③ 농지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농지

(라) 농지 임대신청(농지소유자 → 공사)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2)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

(가) 지원대상자

-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2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 이외의 지원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나) 지원 제외자

- ①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3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63세 이상인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 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
- ②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중 화훼·특용작물을 주 품목으로 하여 선정된 자
※ 특용작물 중 약용식물 및 인삼은 지원 가능
- ③ 농지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인

(다) 지원한도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신청자의 농기계 및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등 경영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30ha
-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40ha
- ③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농지매매사업과 같음
- ④ 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라) 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매매사업과 같음

(마) 농지임차신청(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에서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농지임차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첨부서류는 매매사업과 같음)

(3) 계약체결 및 임대차료 납부

(가) 임대차 기간 : 5년이상

(나) 임대차료의 결정

- ① 공사 도본부장은 지사장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별 임대차료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1월 31까지 임대차료 상한을 정하여야 함

- ② 임대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①의 임대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 ①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종토세)를 납부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라) 임대차료 지급 및 납부

- ①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②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쌀전업농 등은 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마) 임차료의 감면

- ①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 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 ※ 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②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③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④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바) 공과금 등의 부담

- ①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농지교환·분합사업

(1)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신청자격(아래 각항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②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③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담으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④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대상자
 - ⑤ 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타전업농육성 품목을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은 위 ③의 기준을 준용
-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

(나) 대상농지

- ① 답과 답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의 경우는 전의 교환·분합도 포함
- ②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를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답도 포함

(다) 지원내용

- ①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차액을 지원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라)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보증인선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자금을 지원

(마) 신청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의 시행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가 동 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교환·분합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농지 : 환지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답

(나) 지원대상자

- ①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 ② 원지에 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다) 지원내용

- ① 지원규모 : 청산금 징수 해당액(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10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라) 지원절차 및 방법

- ① 경지정리사업실시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
 -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 ②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마) 채권 확보

- ① 지원액 1,000만원 이하
 - 재산세(종토세)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 있는 농업인 등 1인의 연대 보증이나 근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 ② 지원액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농업인 등 2인의 연대보증과,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 다만,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제출시 연대보증 해지 가능
- ③ 지원액 3,000만원초과
 - 환지등기 완료시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대체(연대보증인 입보불가)
 - ※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보증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연대보증 입보 가능 (채권확보에 상응하는 보증인 입보)

(3)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상호간의 교환·분합

(가) 지원대상농지

; 농지매매사업 지원농지로서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농지(제주도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전)

(나) 교환·분합계획의 원칙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상실한 농지의 면적의 차 :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이내
- ② 취득한 농지의 가격과 상실한 농지의 가격의 차 : 평당 10,000원(m²당 3,025원)이내
- ③ 집단화거리 기준 : 500m이내

(다) 지원대상자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500m이내로 집단화 하고자 하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라)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 ① 필지별 교환이 아니며 취득농지와 상실농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
- ② 농지의 자연조건과 이용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③ 교환·분합의 시기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

(마) 교환분합 제외농지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② 저당권, 지상권등이 설정된 농지
- ③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④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바) 지원내용

- ①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 ③ 상환기간 : 10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사) 신청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아) 채권확보 : 교환·분합후 추가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조치

<행정사항>

가. 2005년도 추진목표 설정 및 관리

(1) 기본방침

- 2ha이상 6ha미만 규모농가에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지역별, 개인별 목표 규모 확대달성

- 2005년도 지원사업비의 70%이상을 2~6ha규모 농가에 집중지원
- 농업기반공사는 월별·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도본부, 지사 및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해외연수 등 특전 부여

나.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가) 농림부장관은 다음 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나)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30일이내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다)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다음 연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12월 15일까지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기반공사 각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3) 사업비 배정

- (가) 사업비 신청 및 배정시 시·군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를 고려하고 우량 영농권에 사업비 우선배정
- (나) 추진실적 점검 결과 6ha이상 농가출현 목표달성이 곤란한 지역의 자금은 달성가능 지역으로 전배
- (다)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매매·임대차 자금을 포함하여 배정

(4) 사업정산

- (가) 농업기반공사는 당해 연도 농가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별지 제8호 서식)
- (나)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

다. 사후관리

(1) 관리체계

(가)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전업농) 시장·군수, (규모화사업)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읍·면장, 융자취급기관장(구입자금)

(나) 기관별 업무분장

- 시·군, 읍·면 : 전업농 현황조사 및 사업장 이동 관리, 사업취소 사유발생시 조치, 사업승계 승인, 전업농선정확인서 발급
- 농업기술센터 :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 농업기반공사(융자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2) 전업농 관리(시·군, 농업기술센터, 공사)

(가) 관리기간

- 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 ②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① 시장·군수는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 ② 공사 사장(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 전체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시장·군수)에게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통보) : 별지 제9호 서식

(다)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사업취소 사유>

① 공통사항

- ㉠ 전업농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 파산·금치산선고 등 중대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농업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로서 공사 지사장 또는 시장·군수가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지원 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규모화된 법인체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사업계획 미이행자로서 시장·군수가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농지 및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제주도의 경우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 기타 시장·군수가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쌀전업농육성대상자는 농업기반공사 시·군 관할지사장, 기타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서 필요)

②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당해 조치가 해당 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조치여부를 결정
-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공사 지원농지 포함)을 증여·매도,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 ㉡ 공사 지원농지를 전매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취소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읍·면장, 농협지역조합장, 농업기반공사 관할 지사장은 사업취소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업취소 요청
- ② 시장·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공사)에 지원자금(농지)을 회수할 것을 통보
- ③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신병, 사망 등의 경우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토록 통보
- ④ 시장·군수등으로 부터 사업취소와 지원자금(농지) 회수를 통보 받은 융자취급기관(공사)은 지원자금을 회수
- ⑤ 농기계구입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당시의 쌀전업농농기계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름(경영규모 미확대로 사업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농기계 구입자금은 당초 지원조건에 따라 상환)
- ⑥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분기말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익년 1월 20일까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라) 자격 승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56세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②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 요청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농지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이하에 한함)
- ③ 시장·군수는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즉시 유관기관에 승인여부 통보

(마) 사업계획의 변경 등

- ① 사업계획의 변경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사업계획변경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 ②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
 -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㉞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㉟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㊱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 전·후 관할 시장·군수와 공사 지사장(읍·면·동·구·자치구·시·군·구청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토록 조치
 - ㉠ 이관조치 : 통보일 부터 7일 이내
 - ㉡ 보증인교체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라. 지원농지 관리(농업기반공사)

(1) 사후관리상황조사

(가) 공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분합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①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② 지원농지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휴경여부
- ③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후계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 ④ 지원 받은 농지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 여부. 다만, 쌀을 주작목으로 하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⑤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FIMS 사후관리 P/G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 ① 매도농지 : 지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②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농지 회수

(다) 회수농지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범위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

- ①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③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라)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①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 2001. 1. 1이후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하여 적용. 다만, 지원 당시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보다 현규정 적용으로 위약금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부과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가)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당해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 ㉠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㉔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㉕ 공사에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 ㉖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쌀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㉗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전매·증여·임대·위탁경영하는 경우
- ㉘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 ㉙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㉚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③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④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경우
- ⑤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⑥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나) 공사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농지 전매·임대 등에 동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공공사업 등에 의한 농지전용시 조치
- (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함
- (나)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 (4)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가)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나) 공사 및 농협은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다) 농협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
 - 농림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포함)를 30일이내에 공사에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간 협조

- (가) 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단체 임원과 공사직원 등으로 구성
- (나)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다)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2) 사업홍보

- (가) 농업기반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함으로써 쌀전업농, 일반농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연 2회이상 홍보)
- (나) 농업기반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 농지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3)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경영지도

-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나) 공사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의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및 과수농가 등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다) 공사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4) 업무지침 운영·기타

(가) 농업기반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

(나) 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 추진

(다) 시·도지사 및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전업농육성대상자중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자와 전업농육성에 공헌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방안을 수립·시행

라. 보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가) 공사는 영농규모화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3호서식)

(나)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익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 별지 제9호서식)

(2) 사후관리상황보고

(가)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현황을 익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서식)

(나) 공사는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를 10월 31까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3호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 (1)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2) 농지매입·임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복귀자,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제주도에 한함), 논경영규모 2ha이상인 일반농업인 등
- (3) 농지임대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 (4)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다. 신청절차

- 2006년에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 (1) 농지매도 : 별지 제2호서식
- (2) 농지매입 : 별지 제3호서식
- (3) 농지임대 : 별지 제4호서식
- (4) 농지임차 : 별지 제5호서식
- (5) 농지교환·분합 : 별지 제6호서식
- (6)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사업시행자에 신청)

< 별표 1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영농경력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은 160점(최저)으로 하되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 5년이상 : 200점 - 4년이상 5년미만 : 180점 - 3년이상 4년미만 : 16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 농업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학 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한국농업전문학교·여주농업전문교육원, 농업계 전문대졸·자영농과(자영농고·농고 중 자영농과) : 70점 ○ 농업계고등학교 : 60점 ○ 일반대학, 전문대학 : 5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교육훈련 실적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독농가 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쌀 선도농업경영체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기계화 수준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종이상 : 150점 - 2종보유 : 100점 - 1종보유 : 50점 ※ 배점대상 기종 : 내구년수 2년이상인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고성능방제기
경영규모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3ha)×300점 ※ 벼재배 경영규모에 한하며, 소유 및 임차농지 포함 ※ 본인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의 소유농지는 소유농지로 인정, 임차농지는 서면계약으로 5년이상 장기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기술 : 35점(상 35, 중 30, 하 20) ○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 :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기록 : 35점 - 1~2년기록 : 30점 - 1년미만 : 20점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합성 : 30점(상 30, 중 20, 하 10)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 40점 (상 40, 중 30, 하 20)
가 산 점 (총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여성인 자 : 60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채/자산비율이 농가 평균 이하인 자 ②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기록자,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분야·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③ 농림수산정보센터 또는 특성화대학의 정보화교육 이수자 ④ 수도작후계자, 농전출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수자
계	1,000	

<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매 잔금(원리금) 지급보증서

본 지급보증서는 200 년 월 일 아래 표시농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잔금 및 이자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간까지 지급을 지체함이 없이 정히 지급 할 것을 보증합니다.

○ 지급대상자 주소
성명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 지급보증 내용

(단위 : 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선지급금	약정일 현재 지급보증액			지급보증기간
					잔금	이자	계	

200 년 월 일

지급보증인 기금수탁관리자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

농지교환·분합신청서										
농지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교환·분합 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리동				읍면	리동			
농지가격	금 원정				금 원정					
지원요청액	금 원정				지원대상자					
첨부서류	1. 교환·분합계획서 1부 2. 교환·분합 합의서 1부 3. 소요자금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1부 4. 교환·분합농지의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각 1부 5. 농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위와 같이 농지를 교환·분합하고자 신청하니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신청인					(자필서명 및 날인)					
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쌀전업농사업계획서

□ 경영주 현황

주 소				전 화 번 호	-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	
후계농업인출신여부	수도자()	복합()	일반농가()	겸업시 업종명 :		
자 산	동산 계	천만원	부동산 계	천만원	부채 계	천만원
세 부 내 역	현 금		토 지		농자입·임차	
	현 물		건 물		시설자금	
					가계성부채	
					기 타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 분	농 지(평)			시 설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 소유 또는 임차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임차의 경우에는 5년이상 임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기 종	마력(형식)	대수	연식	상태
경운기				상중하	콤바인				상중하
이앙기					건조기				
트랙터					방제기				

3) 농업노동력 현황

성 명	연 령	관 계	성 명	연 령	관 계	비 고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경우로서 18세이상 65세미만인 경우만 기재

4) 최근 3년간 농업경영장부등 기록여부

연 도 별	2002	2001	2000	비 고
기록여부				

□ 사업계획서 및 영농규모확대계획

1) 당해연도 자금투자계획

사업명	시기	규모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지매입		평				
농지임차		평				
농지교환 분합		평				

2) 최근 3년간 정부지원자금 등 수혜내용(후계자·전업농자금)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연도	사업명	지원액	상환잔액
				계			

3) 향후 3년간 경영계획(쌀전업농 규모로의 발전 및 경영개선계획)

○ 요약

연도별	경영규모(평)	벼재배면적(평)	목표농업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 소유: ○ 임차: 계			
	농기계보유계획			

○ 경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작성요령)

정부는 경영규모확대와 쌀생산비 절감 등 우리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생산 전문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해 영농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규모확대와 생산비절감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먼저, 자신이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건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논 주위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 향후 3년내에 논농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쯤 논농사를 그만두면서 얼마나 많은 논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 2) 다음으로 그 논을 활용해서 어떻게 경영규모를 늘려 나갈 것인지(살 것인지, 빌릴 것인지: 살 경우에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빌린 돈은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등)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 3) 아울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감에 따라 새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예를 들면, 어떤 농기계를 언제쯤 어떤 자금으로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쌀은 정부수매를 통해 팔 것인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팔 것인지, 다른 경로로 팔 것인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력 투입을 계속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등)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업계획대로 경영규모확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농가가 농지 매입·임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사본, 기타<별표1>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각 항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농지원부 제외)

영농규모화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						

나. 지출

(단위:원)

과 목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 사업비						
-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 농지교환·분합						
○ 손실금						

2. 사업별

가. 농지매매

(단위:농가,㎡,원)

시도별	예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D)	미매도 (B-C)		
		농지매입(B)			농지매도(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

나. 농지장기임대차

(단위:m²,원)

시도별	예산 (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D)	미임대 (B-C)		
		농지임차(B)			농지임대(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D)	건수	면적	금액				
계											

다. 농지교환·분합

(단위:농가,m²,원)

시도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건수	필지수	지원농가수	면적	금액(B)	
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9호 서식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 보고

(월별누계보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농지구입·임차지원(ha, 천원)					사업부진 사유	중점관 리필요
			선정 당시 규모	전년 도말 규모	당년 확대 계획	당년 확대 실적	당년 지원 금액		

○○ (시·군)의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농림부장관(시장·군수) 귀하

(*) 사업부진사유 : 확대대상농지부족, 지가·임차료 상승,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포기, 사업추진 불능 등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비고란에 표시

(*) 중점관리필요 : 필요, 불필요로 표시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전문품목	취소일자 (취소사유)	지 원 자 금 회 수 현 황			
				자금종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계	당분기(년도)						
	누 계						

-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때에는 현주소를 ()내에 명기
- 2) 전문품목은 전업농 선정당시의 품목을 기재
- 3) 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전출, 사업포기, 직권취소 등 지침서상 사유를 ()내에 기재

<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승계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당초대상자				승계예정자의 ()
승계예정자				당초대상자의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획 변경여부				

영농기반을 승계하거나 승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기에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신청자(피승계자) (자필서명 및 날인)

○○○ 시장·군수 귀하

덧붙임 : 영농승계확인서 1부.

※ 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면 검토후 시장·군수에게 송부

영 농 승 계 확 인 서



□ 영농기반확보실적(계획포함)

○ 농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답	3,967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전	2,000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 농기계

기종	마력(형식)	구입년도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정	확보형태
트랙터	50	1998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콤바인	3조식	1999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건조기	38석				

○ 주택 및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보전소유자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하우스	100평	김○○(부)	2002.3.31	상속·증여
○○리 123번지	창고	300평	김○○(형)	기확보(1999.1.)	임차·사용차
○○리 123번지	주택	100평	김○○(부)	2002.3.31	상속·증여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김○○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2002년 월 일

확인자 : (주소) (관계)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관계) 제 성명 : 김○○(인)

※ 입증서류 첨부

<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변경사유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자금 내역	지원금액합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농협융자) (농지기금) 자부담 계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 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분기)

1. 총괄

(단위:ha,호,백만원)

사업별	계획				신청접수					보조금지급				
	년간		금분기		농가	면적	%	금액	%	농가	면적	%	금액	%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도별 신청실적(금분기/누계)

(단위:호,ha,백만원)

시도별	계획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금분기 년간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과장 정황근, 사무관 장영국)입니다.

1. 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읍·면·동 단위 4년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 대상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공급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 토양개량제 구매·공급업무는 농협에서 담당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		천톤 5,388	738	618	694	5,892
사업비	계	백만원 343,830	52,127	44,947	49,648	427,205
	보조	225,223	41,701	35,957	39,718	341,764
	융자	-	-	-	-	-
	지방비	72,113	10,426	8,990	9,930	85,441
	자부담	46,494	-	-	-	-

주) 지원비율 : '96까지(국비 25% 지방비 25% 보조) → '97~2005(국비 80% 지방비 20% 보조)

5. 2005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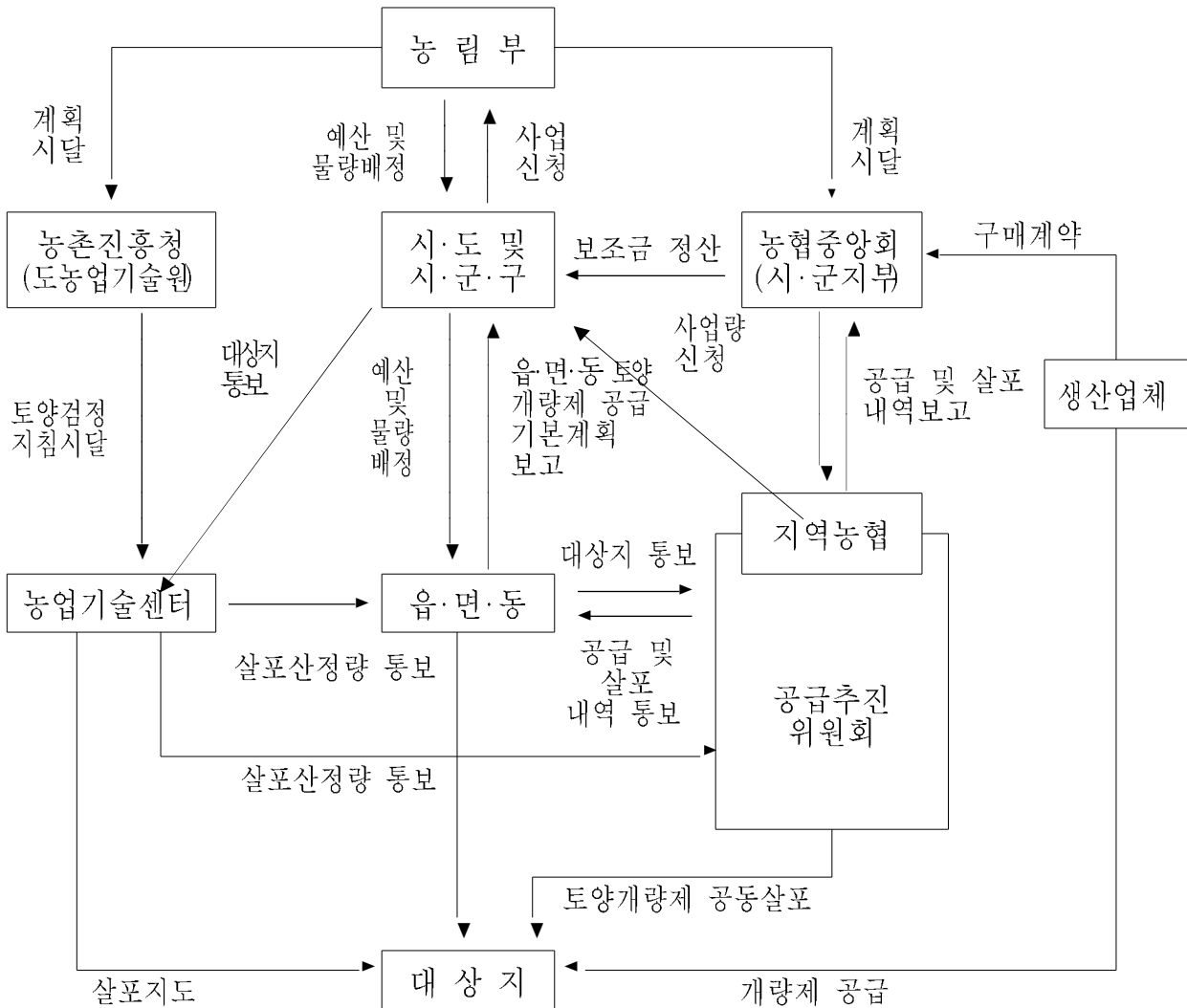
- 유효규산함량 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사용하여 토양개량

(2)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체계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농특)	지방비
계	천톤 694	백만원 49,648	39,178	9,930
규 산	388	28,960	23,168	5,792
석 회	306	20,688	16,550	4,138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5~6)
- 시·도 : 농정국 농산(유통)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읍·면·동) : 산업·농정과(산업계)

라.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거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읍·면·동의 비 재배면적과 비 이외의 농경지면적을 각각 4등분하여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 면적, 공급예상(계획) 물량 명시
 - 석회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와 규산공급 대상지역 연차별 순서를 역순으로 하여 해당년도에 규산과 석회가 같은 해에 동일한 지역에 공급되지 않도록 작성
 - 2005년 석회, 규산 공급대상지역에는 2000~2004년까지 공급이 누락된 지역을 우선 포함시켜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중금속 오염농경지(농촌진흥청 등 토양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인 농경지)는 매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우선선정 지원가능

마. 토양개량제 공급 대상지역 확정

(1)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농협장이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위 구성 : 지역농협장,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담당자, 영농회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 등
 - 추진위 임무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 연도 공급대상지역(리, 마을, 경작자, 경작자별 대상면적 등) 확정, 비종별 공급량, 살포방법, 살포시기등 세부계획 수립

바.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1)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농림부의 “2005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경지면적을 토대로 『시·군·구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경지면적을 토대로 『읍·면·동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 배정, 지역농협장과 읍·면·동장에 통보하고 읍·면·동 공급 대상지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배정된 읍·면·동별 사업량에 대하여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가 확정된 당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의 공급계획량 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①~⑤항까지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의 공급계획량 확인(⑤항)란에 서명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 방법, 토양성분별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살포량 기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 시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른 토양검정(기존자료 활용 가능)을 실시하고 살포량을 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⑥~⑦항까지 작성 지역농협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규산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 산정 가능
 - 석회는 필지별 살포량을 산정하되 집단화된 들녘은 들녘별 평균 살포량으로 산정 가능

(3)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

- 지역농협장은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구매·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는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 함.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 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 받은 물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경작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
- 농협중앙회장은 토양개량제를 필요지역에 집단 공급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자비로 시용코자 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4)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 살포하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함.
 - 특히,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수혜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로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지역 농협장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내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통보한 [별지 제1호서식]에 ⑧~⑪항까지 기록 및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

사.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 및 살포(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전산자료(계통비료 수급 현황표)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완료후 50%, 살포완료 확인후 나머지 50% 지급 가능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토양개량제 주기공급에 의한 연차별 공급기본계획 수립(읍·면·동장)
 -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 경작자 주소, 성명, 공급대상면적, 공급계획량 등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보조금 배정, 집행 및 정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 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관한 행정지원
- 지도기관(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제 살포 등에 관한 지침 수립 시달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산정량 확정 통보
 -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 농 협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지역농협)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관 :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구매가격 결정내역, 계약물량, 계약조건 등
- 보고기한 : 2004. 10월말

○ 시·군별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한
 - 공급계획 : 매년 1월말 [별지 제2호 서식]
 - 공급 및 살포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별지 제3호 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지(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절차 : 지역농협장이 읍·면·동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4년1주기 공급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량 신청

다. 대상지(자)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 5. <추진체계> 마항에 의함

라. 구비서류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붙임1)

2005년 토양개량제 시·도별 배정(안)

(단위 : 톤, 천원)

시·도 별	합 계				규 산				석 회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계	694,000	49,648,000	39,718,400	9,929,600	388,000	28,960,000	23,168,000	5,792,000	306,000	20,688,000	16,550,400	4,137,600
서울	747	52,046	41,637	10,409	219	16,347	13,078	3,269	528	35,699	28,559	7,140
부산	3,474	248,155	198,524	49,631	1,890	141,066	112,853	28,213	1,584	107,089	85,671	21,418
대구	4,304	305,214	244,171	61,043	2,024	151,069	120,855	30,214	2,280	154,145	123,316	30,829
인천	9,149	663,246	530,597	132,649	6,358	474,555	379,644	94,911	2,791	188,691	150,953	37,738
광주	5,132	368,600	294,880	73,720	3,077	229,665	183,732	45,933	2,055	138,935	111,148	27,787
대전	2,091	147,953	118,362	29,591	986	69,864	55,891	13,973	1,155	78,089	62,471	15,618
울산	5,106	366,940	293,552	73,388	3,091	230,710	184,568	46,142	2,015	136,230	108,984	27,246
경기	76,762	5,500,141	4,400,113	1,100,028	44,149	3,295,245	2,636,196	659,049	32,613	2,204,896	1,763,917	440,979
강원	43,287	3,047,914	2,438,331	609,583	17,262	1,288,421	1,030,737	257,684	26,025	1,759,493	1,407,594	351,899
충북	49,060	3,469,196	2,775,357	693,839	21,668	1,617,282	1,293,826	323,456	27,392	1,851,914	1,481,531	370,383
충남	95,275	6,900,702	5,520,561	1,380,141	65,331	4,876,253	3,901,002	975,251	29,944	2,024,449	1,619,559	404,890
전북	80,902	5,870,108	4,696,087	1,174,021	56,959	4,251,372	3,401,098	850,274	23,943	1,618,736	1,294,989	323,747
전남	122,474	8,807,345	7,045,876	1,761,469	74,970	5,595,700	4,476,560	1,119,140	47,504	3,211,645	2,569,316	642,329
경북	109,380	7,757,271	6,205,817	1,551,454	51,530	3,846,159	3,076,927	769,232	57,850	3,911,112	3,128,890	782,222
경남	64,971	4,652,010	3,721,608	930,402	36,901	2,754,258	2,203,406	550,852	28,070	1,897,752	1,518,202	379,550
제주	21,886	1,491,159	1,192,927	298,232	1,635	122,034	97,627	24,407	20,251	1,369,125	1,095,300	273,825

※ 사업량 : '03 경지면적에 10년간 연평균 농경지 감소분을 적용하여 '05예상 면적을 산정하고, '05예상면적 중 벼 재배면적의 80%, 벼 이외면적의 75%를 공급대상 면적으로 하여 산출

- 규산은 벼 재배면적(제주도 화산회 토양의 밭 4천ha 포함), 석회는 벼재배 이외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1/4를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면적으로 산출
- ha당 공급기준량 : 2톤

< 별지 제1호 서식 >

2005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현황

○ 공급·살포 대상지역 : ○○시·군·구, ○○읍·면·동, ○○리, ○○마을

공 급 계 획				공급계획이 다른경우 공급대상 지역 작자 대표	살포산정량		공 급 내 역			공급·살포 확인(이상 동작자 대표)
경작자 성명 ①	경작자 주소 ②	대상 면적 ③	물 량 ④		10a당산정량 ⑥	총산정량 ⑦	공급비 중 ⑧	공급량 ⑨	살포일 ⑩	
		m ² (평)	kg		kg	kg		kg		

* 공급비중 : 규산질비료는 분상, 사상, 입상으로, 석회질비료는 입상석회고토, 분상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 26-35

2005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 구									

< 별지 제3호 서식 >

자체 가 26-36

2005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규산·석회 구분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구							

< 별지 제4호 서식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신청내역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규 산	계			
분 상					
사 상					
입 상					
석 회	계				
	석회고토				
	소석회				
	패화석				

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농협장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과장 강상구, 농업서기관 송명식)입니다.

1. 목 적

- 벼, 보리, 콩 등 주요농작물에 대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지원으로 우량 보급종자의 안정적 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비 지속 지원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
 - 원원종 : 벼, 맥류, 콩, 옥수수, 감자 등 11개 작물
 - 원 종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5개 작물)
- 벼 보급종 갱신율을 '08년까지 50%로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 종자갱신율 70% 수준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면적 확대

<벼 보급종 연차별 생산·공급계획>

구 분	'04	'05	'06	'07	'08이후
재 배 면 적(천ha)	995	975	943	913	883
종자소요량(천톤)	49.7	48.7	47.1	45.6	44.1
공급 계획량(톤)	14,028	16,000	17,000	19,000	22,000
갱 신 율(%)	28	33	36	42	50

-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라 감자 원종은 원종장 자체 생산 추진
 - 이전하는 감자원종장 포장에 망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종을 모두 자체 생산 하고, 위탁농가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은 감자원종장 이전 후 축소

3.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21조(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동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 (예산안)	2006이후	
원원종	사업량	200ha	25	25	25	112	
	사 업 비	계(A)	1,923	623	389	399	2,189
		보 조	1,923	623	389	399	2,189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원 종	사업량	2,002ha	197	207	208	928	
	사 업 비	계(B)	15,343	1,499	1,925	2,020	11,468
		보 조	15,343	1,499	1,925	2,020	11,468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감자원종 농가망실 재 배	사업량	8,053동 (267ha)	900 (30)	900 (30)	900 (30)	3,600 (120)	
	사 업 비	계(C)	3,711	186	224	224	1,013
		보 조	1,082	186	224	224	1,013
		용 자	1,84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789	-	-	-	-
사업비 합계 (A+B+C)		20,977	2,308	2,538	2,643	14,670	

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종자산업법 제1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사업 수행
- 무병건전한 우량 보급종 확대생산을 위한 위탁농가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보조 100%

- 원원종 및 원종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종자 전량을 하위단계 채종을 위하여 무상인도

- 백망사 구입비 : 지원면적에서 생산된 씨감자(생산목표량)는 익년도 보급종 채종시 농가에서 보급종 생산용 종자로 사용

○ 지원종류 : 원원종, 원종 생산비(생산인부임, 재료비 등)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32(ha) (900동)	2,538	2,538	2,538	-	-	-
○ 원원종	25	389	389	389	-	-	-
○ 원 종	207	1,925	1,925	1,925	-	-	-
○ 감자원종 망실재배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지원	900동	224	224	224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단, 감자원종 농가망실 위탁재배 사업 주관기관은 강원도감자원종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031-467-0130~5)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 원원종 및 원종생산 : 각도 주관하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종자협의회를 개최, 도별 생산계획(안)을 수립하고, 농림부에서 종자생산계획이 최종 확정 되면 각 지자체에서 작물별, 품종별 생산목표량을 책임생산
- 감자 농가위탁 백망사 구입비 지원 : 강원도에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사업집행절차

- 원원종 및 원종 생산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 각도 농업기술원
- 위탁농가 백망사 구입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 강원도농업기술원(감자원종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 농림사업평가지침에 의거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체 점검평가
- 점검결과는 반기별로 계통기관을 통해 보고(각도 → 국립종자관리소 → 농림부)

○ 사업비 정산

-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동법 제27조)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회계년도가 종료한때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재료비, 인건비 등)과 기타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

- 사업비 정산
 - 각도 농업기술원장은 사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정산내역 보고
- 사업비 반환(동법 제30조, 제31조)
 - 사업비 정산결과 정산잔액 등은 반환
 - 반환기한 : 익년 6. 30.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채종단계별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벼, 맥류 등은 1회, 감자, 옥수수 2회
 - 합동진단 : 작물별 1회(단, 보리는 지소별 생육관찰)
- 농림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원실적 등을 종합 평가(익년1월)

나. 보고처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주요 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 생산실적 보고(보고기한 : 11. 30)
[별지 제1호 서식]
-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 선정상황 및 지원결과 보고(보고기한 : 7. 30)
[별지 제2호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다.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종자유통과)에 신청

라.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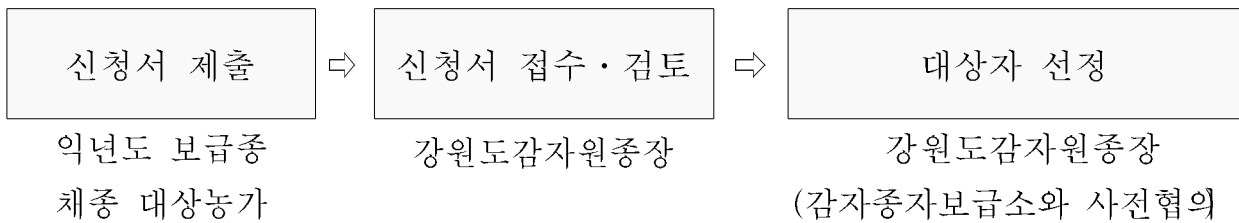
-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별지3호서식]
- 예산신청 세부 산출내역(산출근거 포함) 1부

[감자 농가위탁 백망사 구입비 지원]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강원도감자원총장 (☎ 033-335-5963)

나. 신청자격 :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 채종포장 대상지역(강원도에 한함)
희망농가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감자원종 백망사구입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존 망실설치 농가 중 익년도 보급종 채종대상 농가로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익년도 보급종 채종농가로 망실시설 확보농가
 - 감자원종 위탁생산 희망농가
 - 포장관리 등 채종능력이 있는 농가

< 별지 제1호 서식 >

자체 가48-5

주요농작물(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 산 계 획			생산실적	비 율	비 고
			면 적	종자량	생산 목표			
			a	kg	kg	kg	%	

< 별지 제2호 서식 >

자체 가48-3

백망사 구입지원 농가선정 상황

지역명	농가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a	동	* 100평형 동수로 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주 1) 망실설치 포장약도 별첨
2) 농가별 선정내역 별첨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보고

- 지원방법 : (*현물지원, 자금지원 구분 명시)
○ 지원내역

구 분	백망사 구입지원 결과						백망사 설치결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면 적	동 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호	a	동							
지역별										

- 주 1) 망실설치완료 확인서 별첨(별지3호서식)
2) 농가별 설치내역 별첨

< 별지 제3호 서식 >

2006년도 원원종 ·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 요구내역 (총괄)

(단위 : 천원)

		'02	'03	'04	'05 (예산안)	'06~'08
원원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2. 작물별 예산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합 계		a			
원원종	소 계				
	벼 맥류 콩 ·				
원 종	소 계				
	벼 보리 콩 ·				

※ 사업비 산출내역은 a당 인건비, 재료비(농약, 비료, 기타재료)등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작성 별도 첨부

< 별지 제 4호서식 >

감자 원종망실 백망사 구입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외 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백 망 사 지원신청		평 (동)			
소 재 지					
기 존 망 실 설 치 현 황		평 (동)	소 재 지		
망실재배계획		평 (동)			
익년도 보급종 생 산 계 획		a			

상기 본인은 20 년도 원종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백망사구입
지원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표자)

전화번호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이승찬, 사무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중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흠수로를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현행 설계기준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홍수배제능력 부족으로 집중강우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을 보강하여 홍수 등 재해 대비 능력 강화
-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부족한 저수량 확보
- 수리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등으로 조기에 수리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상태를 파악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 노후화되어 농촌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양·배수장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수지, 양·배수장 등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재해위험이 높은 수원공을 우선하여 개보수
- 양·배수장은 노후되고 작동이 잘 안되는 시설 개보수
-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보강
- 물을 공급하는 수로로서 물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흠수로 구조물화
- 저수지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물이 부족한 저수지 준설(저수지준설사업)
-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단면 보강
- 노후 및 작동이 잘안되는 배수감문 개보수
- 집단화된 주변 밭도 포함하여 개발
- 노후화되고 외관이 불량한 양·배수장 기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보강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02	2003	2004	2005	2006이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량	1,042	97	69	84(403)	3,222
	사업비계	1,648,890	520,040	320,000	320,000	7,327,149
	-보조	1,648,890	520,040	320,000	320,000	7,327,149
저수지 시설	사업량	1,645	113	89	90	929
	사업비계	146,036	12,000	10,000	10,000	285,424
	-보조	146,036	12,000	10,000	10,000	285,424
수리시설 안전진단	사업량	645	137	150	145	2,500
	사업비계	20,026	4,470	4,828	5,373	74,799
	-보조	20,026	4,470	4,828	5,373	74,799

※ () 시행지구수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수리시설개보수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노후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
 - 물 관리시설 현대화
- 재해대비 보강
 -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물넘이 등 시설보강
 -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에 취약한 배수장의 이설 및 기계, 전기시설 교체 등 시설보강
 - 재해발생 사전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자동수위계 설치
- 양·배수장 리모델링
 - 외관이 불량한 양·배수장 건축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보강
 - 침수시 가동이 가능한 펌프형식으로 개선, 자동제진기 설치 등 기계 시설보강
 - 노후화된 옥외변전시설 등 옥내형으로 안전지대 이설 등 전기시설 보강
 - 하천, 해안에 인접한 수문시설 전동화 등 시설보강

-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 (3)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 (4)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사장
- (5) 2005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03	320,000	320,000	320,000	-	-	-
○ 수리시설개보수	381	307,600	307,600	307,600	-	-	-
○ 재해대비 보강	20	12,000	12,000	12,000	-	-	-
○ 양배수장 리모델링	2	400	400	400	-	-	-

<추진 체계>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업기반공사 : 본사(시설정비부), 도본부(유지관리부) 및 지사(유지관리부, 기반조성부)

(2) 사업 추진절차

- 안전점검(시설관리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실시 (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사업 추진>

(1) 사업대상지구 선정

<수리시설개보수>

- 수리시설개보수 정의
 - 농업용 수리시설로서 노후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타 사업으로 설치한 흙수로 구조물화 등을 포함함

○ 선정기준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 등 타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사업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저수지, 양·배수장
- 안전점검결과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 안전점검결과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평야부 시설

<재해대비 보강>

○ 재해대비 보강 정의

- 농업용 저수지 및 배수장으로서 홍수배제 능력이 현행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상강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것을 말함

○ 선정기준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중 현행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강이 필요하거나 재해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시설개량 등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유역면적이 넓어 집중 강우시 일시에 대량 홍수의 우려가 있는 저수지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어 피해재발의 우려가 있는 시설
-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 호우시 침수에 취약한 배수장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으로써 수리시설개보수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설

<양·배수장 리모델링>

○ 양·배수장 리모델링 정의

- 노후화 되고 외관이 불량하여 제기능 발휘가 어려운 양·배수장, 수문 등의 기계, 전기, 건축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개선 및 시설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

○ 선정 기준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수문 등의 수리시설 중에서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시설노후화 및 현행 설계 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려운 기계, 전기, 건축 시설물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양·배수장 건축물
-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전기시설
- 침수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 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노후화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2) 시설관리자 개보수사업 건의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할 경우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사유와 농업진흥지역 면적,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또는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정부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 및 집단화된 밭용수의 개발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예정지 조사시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용·배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에 따라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수해대책을 위하여 유역 또는 당해 시설의 체계나 계통별로 조사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저수지》

- 물 수지계산이 10년 빈도에 적합한지와 단위저수량이 현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사면 안전도 부족, 누수 등), 여수로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지역 수자원의 수급에 대한 전망과 수질의 변화 전망

《양수장》

- 하천의 수량감소와 수질의 악화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하천의 하상변동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배수로》

-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 방안
- 용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계획도와 수로조직표를 작성한 후 개보수 구간을 표시하고, 주요수로의 상류부터 하류의 순서로 시행하는 계획(안) 다만, 배수로는 하류부터 상류의 순으로 계획
- 토공수로를 최소단면의 구조물로 하고, 단면축소에 따라 생기는 부지는 유지관리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안)

- 주변의 발개발 가능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계절 발용수 급수대책
- 용수로개보수사업 시행구간에 오페수가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우회수로 설치 등 오염방지대책을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
- 시·도지사는 시설물개보수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는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해당분야별로 시설현황, 개보수사유, 전문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의 자체기술검토가 어려울 경우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자가 부담함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종시설을 개수하는 경우
- 저수지 제당을 덧쌓기 하면서 물넘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저수지 물넘이 형식을 측구식에서 게이트, 사이폰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홍수배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수장을 확장하거나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 또는 감조구역에 설치된 농림부 소관의 배수갑문을 개수하는 경우
- 수원공이 500ha 이상을 관개하는 지역의 용수로와 200ha 이상을 배수하는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경우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나)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수리시설개보수>

- 기본계획수립 요령
-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원공과 평야부(용수로)로 분리하여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은 들녘별, 수원공별 전체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지구별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단위 시설물로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요액으로 계획 수립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개보수하여야 할 수리시설은 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은 기본계획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 주변의 발개발 가능지를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계절 발용수 급수대책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원공

- 1순위 :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2순위 :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관리 지구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수리시설 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재해위험이 있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 시설의 노후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

- 용수로

- 1순위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산비탈 성토구간이 수시로 붕괴되는 수로
- 2순위 : 물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재해대비 보강>

○ 기본계획수립 요령

- 지구별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요액으로 계획 수립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수리시설은 진단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은 기본계획서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1순위 : • 수해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등이 있어 재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 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 2순위 : • 유역면적이 넓어 집중강우시 일시에 대량홍수의 우려가 있는 시설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피해재발의 우려가 있는 시설

<양·배수장 리모델링>

○ 기본계획 수립요령

- 양·배수장 건축물 및 기계, 전기시설 리모델링의 시급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구상하고, 지구당 총사업비 규모는 30억원 규모로 계획 수립
- 시설당 소요사업비가 적을 경우 2개소이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양·배수장

- 1순위 :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건축물
-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 전기시설
- 2순위 : • 노후화되어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어려운 시설
- 보수·보강이 필요한 기계, 전기, 건축시설

- 각종 수문

- 1순위 : 해안, 하천변에 위치하여 시설노후화로 역류 위험이 높은 수문
- 2순위 : 전동화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문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보고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토록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되 세부설계 추진에 따른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조사측량 과정에서 사업량 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재정부담, 시설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 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원형암거시설은 유지관리를 고려 충분한 크기로 계획
- 세부설계실시자는 저수지, 양·배수장 설계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 시에는 제공하여야 함
 -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는 등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신규착수지구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징구하여야 함
-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발효되기전('02.7월경)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6) 공정계획

- 시·도지사는 시행중인 개보수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준공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 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시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은 조 제3호 규정으로 정하는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시 계획되지 않은 타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추가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준공지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변경을 억제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책정되어 잔사업비 전액을 예산배정받은 지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명년도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보고하는 사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공종에 한하며, 신규공종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하액은 총사업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물량보완등 시행계획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9)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가 직접담당하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과 장기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 (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10)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에 계상된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정밀안전진단으로 개보수하는 저수지는 조기완공토록 집중 지원함
-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11) 사업 평가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12) 사업 준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3) 기타 사항

- 동일권역 내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개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계획과 추진상황의 연계성을 검토함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

② 저수지준설사업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담수호 포함)
- (3) 지원조건 : 국고 100%
- (4)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 (5) 2005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90	10,000	10,000	10,000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2)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 농업기반공사 : 본사(시설정비부), 도본부(유지관리부) 및 지사(유지관리부, 기반조성부)

(2) 사업 추진절차

- 예정지신청(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농림부)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발주 및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준공(사업시행자)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표1과 같음

<사업추진>

(1) 기본방향

- 준설대상저수지는 가뭄상습지역의 주수원공중 토사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를 우선하여 추진
- 저수지준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몰량을 조사하고 규모화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지구선정(다수지구 분산지원 방식은 억제)
- 집중지원하여 조기 완공위주로 추진
 - 계속지구는 우선 마무리
 - 신규사업도 가능한 완공 위주로 추진
- 준설공사 지역과 사토장관리 철저히 부실공사를 방지
- 저수율에 따라 준설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

(2) 대상저수지 선정

(가) 선정기준

- 중장기계획 및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함
- 준설여건양호, 사업비저렴, 사업효과 높은지구
- 준설토를 이용할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용이 및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 준설시 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나) 우선순위

- 근본적으로 단위저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장기간 매몰되고, 다른 용수원이 없어 가뭄피해가 빈번한 저수지를 우선 선정함
 - 단위저수량은 적고, 유역배율은 큰 저수지
 - 매년 만수가 쉽게되는 반면 가뭄시는 쉽게 고갈되는 저수지
 - 저수지 유역내의 토사 유출은 많고 장기간이 경과한 저수지
 - 현재 실경작면적 대비하여 단위저수량이 적은 저수지(400mm수준)
- 단위저수량이 400mm~650mm 범위이면 「농업용수개발필요수량기준」의 10년빈도 단위저수량과 비교하여 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 강우량(측후소별), 유역배율, 삼투량, 수로손실, 임상상태
- ※ 수리시설물 수원공 일람표(1987. 12. 발간) 내한능력 조사 자료 등을 활용.
- 시급성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는 순연
 - 하천을 보충수원으로 평야부를 양수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 수혜면적이 저수지 축조당시 보다 많이 감소된 저수지
 - 2개이상 저수지가 수계의 상하류로 연계되어 저류량이 충분한 저수지
 - 퇴적된 현재의 단위저수량이 충분한 저수지 (650mm수준)
- 중장기계획에 의한 준설대상지중 시급성과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3)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시설물관리자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선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

(4)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 사토장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기본 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소규모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필요저수량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5)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신규착수 예정지로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토록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실시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 등을 고려, 육상·수중준설 등 적절한 공법선정
 -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 (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사토장은 홍수시 준설토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 저수지 및 담수호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함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동의서는 동법 제11조상의 참가자격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사발주 등 : 사업시행자(농업기반공사)

(7) 공정계획

-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육상작업으로 준설이 곤란할 경우 수중 준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
- 가능한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사업관리

- 적정 사업량의 추진과 조기완공
 - 사업은 조기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지구는 저수율 변동,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적정사업량을 계획
 - 시·도별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당해년 총사업량에 의한 우선순위별 적정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
- 준설현장 관리
 - 사업착수전 내용적측량을 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의 좌·우측에 20m 간격 격자망의 기준점을 각각 상하류로 2개소 설치하고, 만수위(물넘이 표고)를 기준한 假BM을 설치함.
 - 내용적측량(준설지역)은 저수지 평면도 또는 지적도에 水準측량 결과를 표시하고, 水準측량은 기준점에서부터 20m간격으로 종횡단의 격자망 위치에 대하여 지반고를 측량함. 다만, 소규모 저수지에서는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작성할수 있음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행후 내용적 측량을 하고 시행전후의 내용적 비교에 의하여 준설토량을 산정함
- 사토장 관리
 - 사토장 위치도(1:1,200) 및 2개 방향 사진 (pole대를 비교) 작성
 - 위치도에 운반거리 및 사토량 기입
 - 위치도 및 사진 별도 첨부
 - 사토장 종횡단도 및 평면도 작성
 - 사토장 가BM 위치 및 지반고 기입
 - 사토량 산출내역서 첨부
 - 저수지에서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위치·용도·차량대수 및 수량을 기재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공사감독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검 사
 - 저수지내 검측은 농업기반공사 기술직원 2인이상이 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시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는 검사자가 저수지 평면도 및 내용적계산서(또는 종횡단도)에 날인후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저수율이 상승하여 수중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하여야 함
 - 사토장 검측을 실시한후 용적을 산정하고 준공도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구 분	준설지역	사 토 장
착공전	○저수지 평면도 위치표시 ○수준측량 또는 종·횡단면도 ○사진	○지적도 면적 산출 ○지반높이 측정(가B.M 설치) ○종·횡단면도 ○사진
공사중	○사진	○사진
공사후	○측량 성과품 - 표고및면적을 기재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작업일지 (기종, 대수, 토량 반출대장) ○사진	○측량 성과품 - 표고가 기재된 평면도 - 토량산출 계산서 ○사진

(9)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설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국고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탁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함

(10) 용지매수 및 보상

- 사토장은 저습지매립, 농경지 객·복토 등에 의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하여 시행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11) 공사감리

-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시공은 관련 시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기함

(12)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사업공정 추진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함
- 준설탁도가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절감된 사업비를 공제하여야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13)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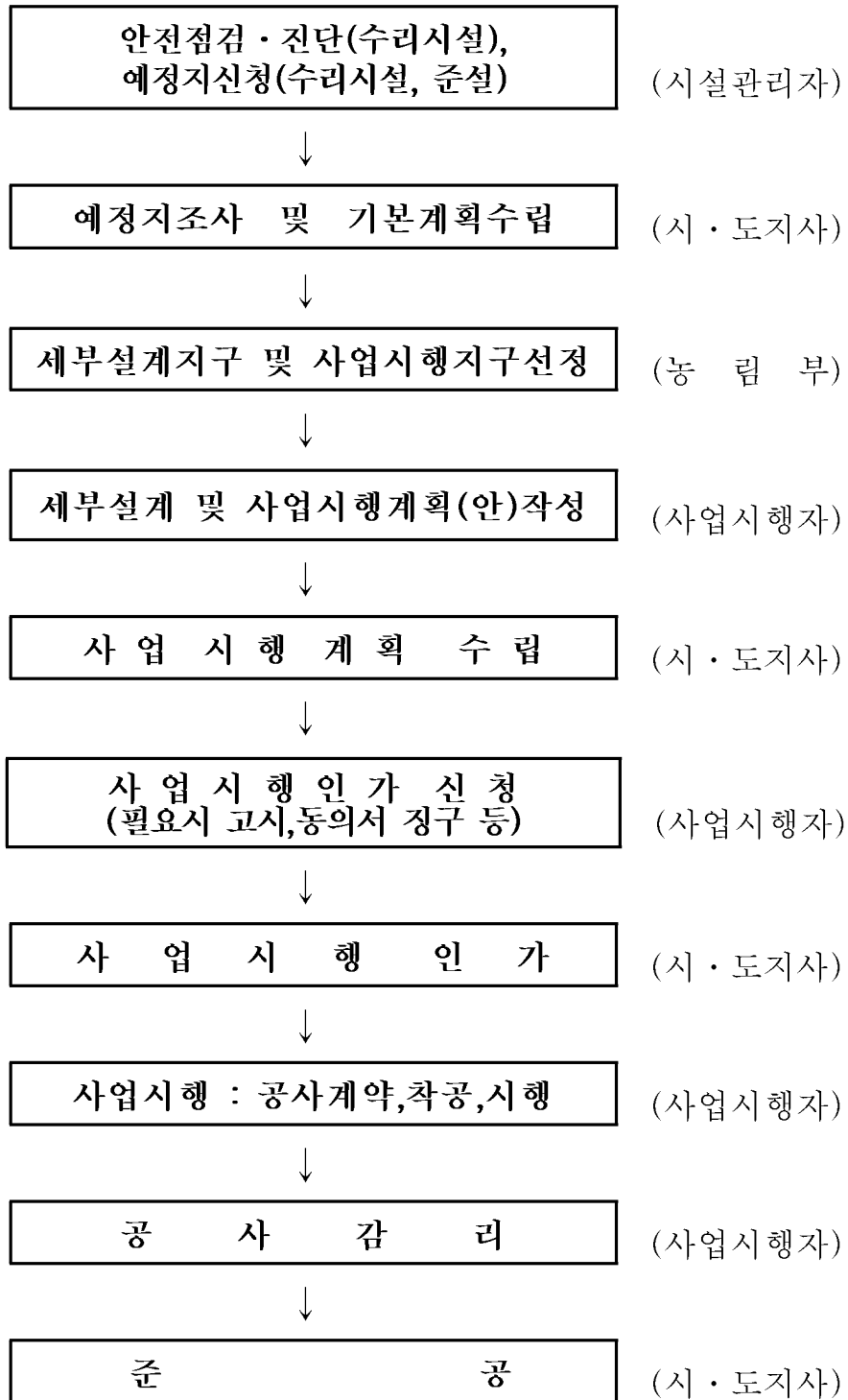
(14) 기타사항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

[표 1]

수리시설개보수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준설)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수리시설개보수, 저수준설)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사업비	기 정 산 액
		시·군	읍·면	리·동			수원 공명	용수로 (km)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 3)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산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저수지건설)**

(사업량 : 천m³, 금액 : 백만원)

지사명	지구명 (저수지명)	위 치		수혜면적 (ha)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추진현황					부진 사유	
		시 군	읍 면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획		실 적		진 도 (%)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중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체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

심 사 서

- 1. 사업명 :
- 2. 위치 :
- 3. 수혜면적 : ha(○○지 ha, ○○지 ha)
- 4. 개보수공종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양수장>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 비를 말 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1) 방조제개보수는 순공사비 구분을 방조제, 배수갑문 등으로 함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³,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 산 액	당 해 년 도	차 년 도 이 후	계	단기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사비증감내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기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

(시설 관리자 : 농기공 ○○지사)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준공인가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 H= m, 길이 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총 저 수 량 : 천^m, 유효저수량 : 천^m, 사수량 : 천^m
 - 단위 저수량 : mm

2. 준설 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 유효저수량 : (현재: 천^m) → (준설후: 천^m)
 -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m, 수익 백만원
 -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m,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 (년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까지	전년실적	당해년계획	차년도이후	비고
사업량 (천 ^m)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m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시행인가일 :
- 계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 . ~ . [백호우 : 연 대(일평균 대)
트럭 : 연 대(일평균 대), 도차 :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대책)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1. 사업개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홍수 또는 지진 등으로 농업용저수지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제방붕괴)발생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자 및 하류지역 주민들을 평상시 훈련시켜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이상강우 및 지진 등으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유실 및 붕괴시 하류지역 인명과 재산보호
- 유사시 시설관리자, 관련기관, 하류지역 주민들이 유기적 협조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만들어 사전에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서 피해 최소화

3. 근거법령

-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립한 수해방지대책과제
- ※ '04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진행중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				12개소	20개소	88개소
사업비 1)	계			600	1,000	6,600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600	1,000	6,6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99년 연천 소수력댐 붕괴, 화천댐 월류위기, '02년 강릉 장현·동막저수지 제방붕괴 등으로 하류지역의 공공시설, 주택·농경지 유실·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경험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수립 필요성 대두
- (2) 계획수립대상 : 저수용량 100만^m이상 저수지
- (3) 예산지원대상 : 저수용량 300만^m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 총저수용량 300만^m미만 저수지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내 주택이 50가구 이상인 경우 등 재해위험성이 높아 예산을 지원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가능
- (4) 계획 수립자
 - 총저수용량 300만^m이상 저수지는 피해잠재성이 크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하되 기술발전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수 있음
 -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수지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
- (5)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20개소	1,000	1,000	1,000			
조 사 비	20개소	1,000	1,000	1,000			

< 추진 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시설관리과 : 02-500-1993-4
- 농업기반공사 용수관리처 : 031-420-3156-8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대상시설신청(시설관리자, 시도) →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통보 → 시행계획수립(농업기반공사) → 시행계획승인
(농림부) → 보고서 작성(농업기반공사) → 시도, 시군,
시설관리자에게 보고서 제출(농업기반공사)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대상 선정>

가. 대상기준

- 총저수용량 100만³m 이상으로 이상강우 또는 지진시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일시적인 홍수량으로 하류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나. 예산지원 대상 저수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피해 잠재성 분류 “A”등급 저수지 중에서
 - 하류 홍수범람예상지역에 주택, 산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D”급이거나 홍수배제능력이 100빈도이하인 저수지

다. 신 청

- 시도지사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저수지중 예산지원 대상 저수지에 상응하는 피해잠재성이 높아 정밀계획수립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건의를 받아 예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사업계획수립>

가. 피해잠재성 분류

- "A"등급 : 피해잠재성 대
 - 총 저수용량 300만 m^3 이상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 m^3 이상~300만 m^3 미만중 하류 홍수범람 예상지역에 주택·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저수지 (주택 50가구 이상)
- "B"등급 : 피해잠재성 중
 - 총 저수용량 200만 m^3 이상~300만 m^3 미만중 피해잠재성이 큰 "A"등급 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 m^3 이상~200만 m^3 미만중 하류 주택·산업시설 과소지역이라도 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평가 및 제체 여유고 부족, 물넘이 방수로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 시설물상태평가가 D급이하 저수지
- "C"등급 : 피해잠재성 소
 - 총 저수용량 100만 m^3 이상~200만 m^3 미만중 피해잠재성이 큰 "A","B" 등급이외 저수지
 - 총 저수용량 100만 m^3 미만중 피해잠재성이 높은 저수지

나. 주요내용

- 비상상황 확인과 평가
- 통보절차
-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 저수지 제방붕괴 해석 및 홍수의 전파양상
- 홍수범람지도 작성
- 비상대처계획 수립
- 정보체계 등
- 보고서 작성

다. 세부계획수립요령

- 이상강우시 저수지에 발생될 상황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단계별 행동계획 등 절차와 정보사항을 기술
 - 유사시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용자 위주로 보기 쉽고 간결하게 수립
- 비상대처계획(EAP)보고서의 구성요소
 - (1) 서론
 -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 서술
 - (2) 저수지개요
 - 저수지 제당,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요와 제원을 시설관리대장과 설계 및 준공도서를 참고하여 서술
 - 저수지 위치와 상하류 유역을 볼 수 있는 위치도(평면도, 단면도)작성
 - (3) 하천개요
 - 하류 하천의 제원, 유역의 수문·기상특성, 상하류에 인접한 수리시설현황을 하천정비계획서와 기상청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 (4) 저수지 주변환경
 - 행정구역, 인구현황, 산업경제현황, 도로 및 교통, 인구밀집 주요시설, 국가주요시설물현황등을 시군 통계자료, 청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 (5) 저수지 관리현황
 - 저수지관리 및 운영기준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개보수사업이력을 시설관리대장과 각종 점검일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과거 저수지의 수해발생, 하류유역 홍수발생상황 작성
 - (6) 피해잠재성평가
 - 저수지 위치 및 규모에 의하여 3개등급으로 분류
 -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유역면적, 홍수배제능력, 하류 하천상태, 안전점검결과, 과거이력 등에 의하여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저수지의 피해잠재성을 판단
 - 예상강우빈도에 따른 피해시점을 예상하여 피해단계 설정
 - (7) 피해규모예측
 - 파괴시 홍수량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고려하여 피해규모 추정
 - 주요지점까지 홍수 도달시간, 침수지역의 면적, 인구, 주택 등 산업 피해현황을 예상

(8) 비상대처활동

- 비상상황의 심각성, 긴박성, 진행과정등을 종합평가하여 비상상황을 분류(결정)하고 단계별(경계, 비상) 비상발령, 경보를 관계기관등에 신속통보하여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토록 명시
 - 비상상황분류(경계, 비상단계)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 관계기관별 업무(임무)
 - 비상상황대처요령(주민대피 및 인명구조대책, 경비 및 교통대책, 의료구 호대책, 긴급수송계획등)
 - 기타 조치사항(사전준비활동)

(9) EAP 유지관리

- 보고서의 수립, 운영, 교육, 갱신등 보고서 활용에 필요한 사항명시

(10) 홍수범람 예측지도(비상대피지도 포함)

- 비상상황시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지형도에 저수지 유역, 피해구역, 홍수과도달시간, 대피기관(거리), 대피경로와 방법, 대피수용인원 표시

(11) 기타사항

-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51317-266('03.6.5)호로 시달한 요령을 참조

라. 사업시행계획수립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행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는 규모, 피해잠재성, 우선순위, 중장기계획등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
 -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할시 원인을 분석하여 시행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수립시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는 11월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여 시도, 시군,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업무협의 및 기술력향상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지사장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함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수립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및 해당행정기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중간평가, 최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피해예측모형개발, 피해잠재성평가기법개발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연구발전시켜야 함

바. 공정계획

-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시 공정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부진하거나 부실한 계획 수립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지원

(2) 자금의 운용관리

- 계획수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농업기반공사는 예산회계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매년 수립한 “A”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을 시도(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수립된 보고서를 보완할시에도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비상대처계획수립내용을 지역방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이상홍수로 긴급상황발생시 활용하여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함
- 피해잠재성 “B”, “C”등급시설의 비상대처계획은 “A”등급시설을 참고하여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설관리 및 재해대비
- 총저수용량 100만³미만 저수지중 비상대처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나. 보고 및 기타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제1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공정계획수립

1. 사업개요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공 종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별지 제2호 서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추진상황

(200 년 월말 현재)

구 분	총계획	실 적	추진율	향후계획	부진사유	대 책

5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주호)입니다.

1. 목 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타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 ¹⁾ (’95~’13)	’95-’00	’01	’02	’03	’04	2005 (예산안)
사업량(천ha)		123.7	25.8	4.4	7.5	4.4	4.0	10.5
사업비	계	5,758,210	2,021,416	309,864	374,730	389,900	334,100	290,548
	보조	5,758,210	2,021,416	309,864	374,730	389,900	334,100	290,548
	용자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 주1 : 농업·농촌종합대책(2003.12),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포함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혜면적 3,000ha 이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혜면적 50 ~ 3,000ha
- 지원조건
 - 대·중규모용수개발 : 국고 100%

나. 2005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2,493	290,548	290,548	290,548	-	-	-
○ 대 규 모	7,380	18,968	18,968	18,968	-	-	-
○ 중 규 모	45,113	271,580	271,580	271,580	-	-	-
-일 반 지 구	32,697	218,390	218,390	218,390	-	-	-
-가뭇특별대책	12,416	41,190	41,190	41,190	-	-	-
-풍수해대비등		12,000	12,000	12,000	-	-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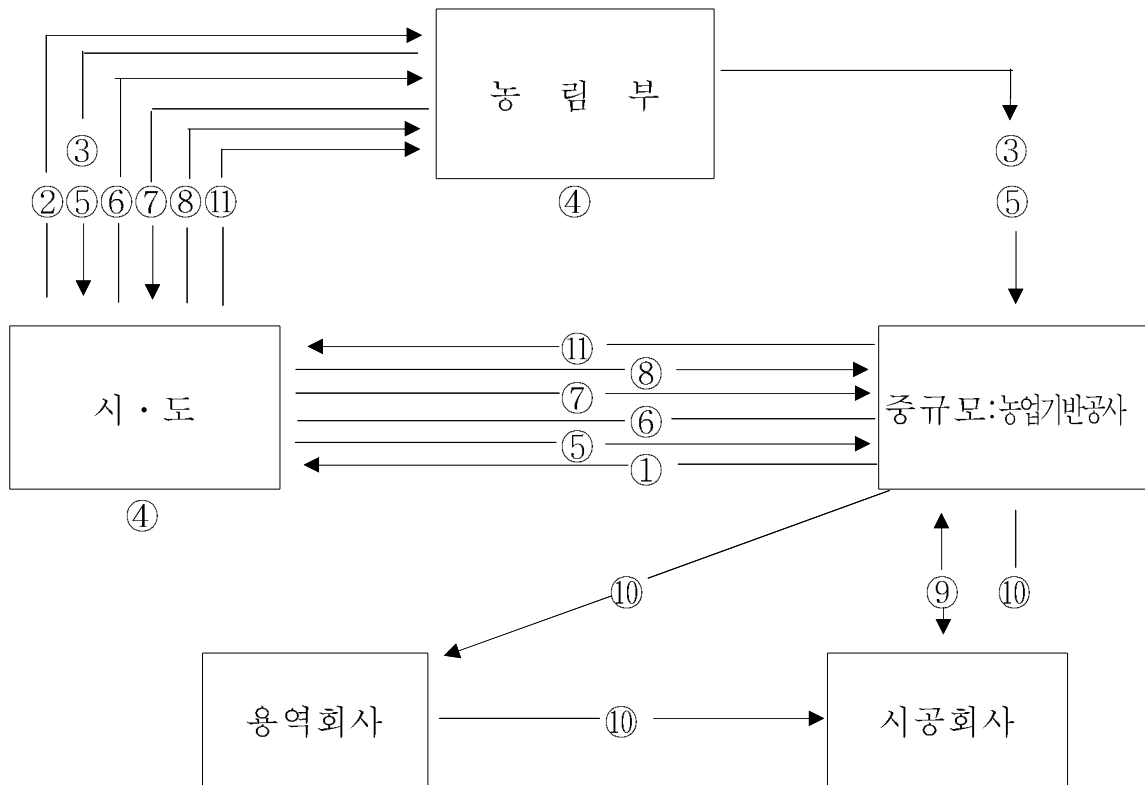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 500 - 1978, 197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도본부 및 지사(사업관리부, 기반조성부, 사업부)

다. 사업시행자

- 대중규모용수개발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체계

(1) 체계도



(2) 체계도 설명

- | | |
|------------------|----------------|
| ① 사업시행신청 | ② 예정지 조사보고 |
| ③ 기본조사 지시 | ④ 기본계획 수립 |
| ⑤ 세부설계 지시 | ⑥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
| ⑦ 신규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 ⑧ 사업시행인가 및 보고 |
| ⑨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 ⑩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
| ⑪ 사업추진상황 및 준공 보고 | |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2)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3)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 (4)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사)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 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개발51350-75 (2003.2.24)호 참조]

(2) 양수장

-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중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도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4)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포함 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매년 3월말까지)
- (2)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 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5) '99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참고하되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7)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예정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8)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설계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농업기반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 (9)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 (10)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 (11)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1) 농림부장관은 50ha 이상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 (2)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 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7)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나)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다) 터널,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라) 수원공의 위치 변경
 - 마) 댐, 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 바) 공사비 증가액이 총공사비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 (4)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 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물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물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농업 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6)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용수 51317-828('96.10.4) 참고)
-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 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차. 사업준공 및 검사

-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규모용수개발 및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나)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라) 농림부장관이 재배정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 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예산배정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변경 배정함
- (마)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시켜서는 안됨.
- (바)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파악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 (아)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자)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다.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4) 타법 관련사항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6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마. 기타사항 :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사업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효과, 위치도, 지역개발여건, 지역주민의견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00년 까지	00년 계 획			00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대·중규모로 구분작성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0/4분기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주) 대·중규모로 구분작성

[별지 제3호서식]

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 2004까지 : ha ○ 2005년도 : " ○ 2006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사업비 (천원)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당초	변경	증감		
○ 단가인상 ○ 낙찰차액 ○ 물량보완 - - ○ 용지매수보상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 행 자	지 구 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 급	성 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	---------------------

① 지하수자원관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주호)입니다.

1. 목 적

- 지하수관리 : 농촌지하수 환경오염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지하수자원의 최적이용·관리 기반 구축과 보전·관리계획 수립
- 해수침투조사 :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 해수침투의 영향을 조사하여 염해 예방
- 수맥조사 :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상태 및 개발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개발성공율을 제고하고, 지하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지하수개발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지하수오염조사 및 지하수정보망 구축으로 지하수 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 도서 및 해안지방의 지하 해수침투 영향을 조사하여 염해 예방
-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로 지하수개발 성공률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제5조, 시행령 제2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82~’13)	‘02까지	2003	2004	2005 (예산안)	2006이후
사업비(국고) 합계	258,500	52,211	4,911	5,124	6,010	190,244
지 하 수 관 리	사업량	464개소	3	6	15	425
	사업비	175,100	1,638	1,924	3,404	163,694
해수침투 조사	사업량	192개소	94	7	10	71
	사업비	2,470	1,089	77	110	1,084
수맥조사	사업량	140 천ha	109.0	4.0	2.2	22.8
	사업비	80,930	49,484	2,910	1,610	25,466

※ 지하수관리 지구수는 완료기준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배경

- 농촌지하수의 환경오염확산과 장애현상 예방을 위한 농촌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최적개발·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실시
- 지하 해수유입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해안 및 도서지역의 지하 해수 침투조사 실시
- 효율적인 지하수개발·이용과 암반관정 개발성공을 제고를 위한 지하수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수맥조사 실시

(2)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

(3) 사업내용

- 수맥조사
 - 기본조사 : 지구답사, 지표지질조사 및 기설관정조사로 지하수 부존성 검토
 - 물리탐사 : 선구조조사, 전기탐사로 대수층의 분포확인
 - 수위관측공조사 : 지하수의 수위 및 유향 확인
 - 시추조사 : 지하지질구조, 대수층의 수리특성, 수질특성,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조사 : 지표수와의 관계, 개발가능면적
 - 보고서(도면) 작성 : 제 조사자료를 포함하는 보고서, 도면 작성
- 해수침투조사 : 지하수관측정설치 등으로 해수침투 및 채수량변화 관측(관측정은 기존의 관정 및 조사 시추공을 최대한 활용)
- 농촌지하수관리 : 기존관정 현황 및 축산·쓰레기장 등 잠재오염원 조사·전산화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예측·분석시스템 구축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5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6,010	6,010	6,010	-	-	-
지 하수 관 리	15개소	4,440	4,440	4,440	-	-	-
해수침투조사	10개소	110	110	110	-	-	-
수 맥 조 사	2,000ha	1,460	1,460	1,46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전화 : 02-500-1978, 1979)
- 농업기반공사 : 환경지질사업처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추진체계도)

예산내시 → 지구선정(시·도협의) → 사업시행계획수립(농기공) → 사업시행
 계획승인(농림부) → 조사시행(농기공) → 성과품 제출(농기공 → 농림부·시도·시군)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지하수관리
 - 농촌용수구역 중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중
 현지답사와 시도 및 시군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계획의 우선순위 따라 추진
-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으로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 계획에
 반영된 지구를 우선으로 함

(2) 우선순위

- 농촌지하수관리
 - 조사성과 활용을 고려하여 기 착수된 지구와 인접한 동일 행정구역(시·군)의 지구
 -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구중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구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 계획에 의함
- 수맥조사
 -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
 - 시·도지사가 가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

나. 2005년 시행계획수립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함.

< 사업시행 >

가. 조사사업시행

농업기반공사사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부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나. 공정계획

- 해수침투조사와 농촌지하수관리조사는 연말까지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 수맥조사는 봄가뭄 및 영농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는 12월말까지 시군에 송부될 수 있도록 함

다. 용지매수보상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라. 시추공 처리

- (1) 수맥조사시 시추성공공(150m³/일 이상, 단 도서지역은 100m³/일 이상)은 시장·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 시·군에서 확공후 개발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인수받은 시추공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이용시설비를 지원하여 영농급수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시추조사 실패공
 - 지역주민이 시추조사 실패공에 대한 이용을 요청할시는 농업기반공사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취한 후,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함
 - 지하수법상 원상복구의 예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음
 -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 시장·군수가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추조사 실패공은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사장은 당해연도 수맥조사·해수침투조사·농촌지하수 관리조사를 위하여 굴착한 시추조사공 및 관측공 현황대장을 지하수법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도 비치·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제출한 시추조사공 현황 및 실패공의 원상복구결과(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3) 시추조사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농업기반공사는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 및 도면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농업기반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품을 시·도, 시·군에 배부 하여야 함

나. 보 고

지하수자원관리 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총민 26-2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추진상황보고(/ 분기)

시·도별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이승찬, 토목사무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물관리비용 절감 및 용수배분을 합리화하는 과학적 물관리 기반 구축
- 과학적인 농업용수공급·관리로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능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리시설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용수로 구조물화 및 용배수시설의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 시행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과 평야부 용·배수간선의 주요시설 위주 물관리자동화시설 우선 설치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물관리자동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371권역중 농업기반공사 93개지사(지사당 1권역씩) 우선 추진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2006이후
사업량	지구수 (완료)	11 (2)	11 (1)	12 (4)	10 (2)	362
	계	10,500	6,157	6,363	6,600	480,180
사업비	보 조	10,500	6,157	6,363	6,600	480,18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 사업량은 착수기준이며, ()는 완료기준임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시스템을 설치

※ TM(Tele-Metering) : 원격측정, TC(Tele-Control) : 원격제어

-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적용대상 시설

- 수 원 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여수토 홍수조절문비), 취입보, 수문, 양수장, 관정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나. 지원대상 : 농업기반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라.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10	6,600	6,600	6,6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 시·도에 따라 국, 과명칭이 다름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도지사) →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세부설계(농업기반공사)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 사업시행(농업기반공사) → 사업준공(시도지사) 순으로 사업추진 체계도는 붙임(표1)과 같음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농업기반시설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이 높고 농업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아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나. 우선순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혜면적 300ha이상 지구중 유지관리지 물손실이 많은 지역
- 물관리아동화(TM/TC)사업 시행시 용수절약 및 물관리 비용 절감등 자동화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다. 예정지조사 및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수렴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중앙관리소

- 중앙관리소는 설치공간 확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기설 공간 이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통신 프로토콜 및 입출력의 표준화로 시스템 기기의 설치후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지역 현지여건에 맞도록 수원공 및 집단화된 평야지역은 중앙감시제어, 독립된 산간지역 소규모 시설은 부분 자동화시설 계획 검토
- 무선통신방법 선정시 통신시험에 의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함

(2) 저수지

- 기설 수원공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계획 및 물수지분석을 통하여 급수능력을 검토하고 기존 관개배수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개배수체계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용수의 균등분배 및 적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용수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동일 수계별 수리시설물의 연계운영이 가능한 광역 물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여야함
- 물리면적 100ha이상 주수원공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 규모를 정함

(3) 양수장

- 기설 양수장의 급수능력과 하천의 유심이 변동되어도 양수능력이 충분한 지역을 계획함
- 양흡입 펌프의 교체 등 부분개보수시와 가동시 흡입가능여부(진공) 등 사업비를 고려하여 자동화가 용이한 수중펌프 설치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함
- 주수원공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수원공은 주수원공과 연계운영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함

(4) 용·배수로

- 평야부 주요 간선의 제어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규모를 정함
- 간선수로의 분수문, 제수문등 용수의 조절·통제기능을 갖는 수로구조물을 개수하여 용수의 분배관리가 가능토록 검토하여야함
- 관리수준의 결정시 독립된 산간지역의 소규모 수리구조물 등은 수동관리 또는 개별 자동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5) 물관리자동화(TM/TC)시설 유지관리

- 사업계획 수립시 낙뢰등으로 인한 기기고장시 부품확보 및 기기보수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서 마련 및 유지 관리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물관리자동화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 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하여야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확정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기본계획확정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함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도록 함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수혜민과 유지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 농림부장관이 신규착공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함

마.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중앙관리소 등의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바.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변경, 신공법의 적용등 기본계획의 변경 및 총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아.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함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입은 당해 사업 특별 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자. 사업의 준공 및 검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정 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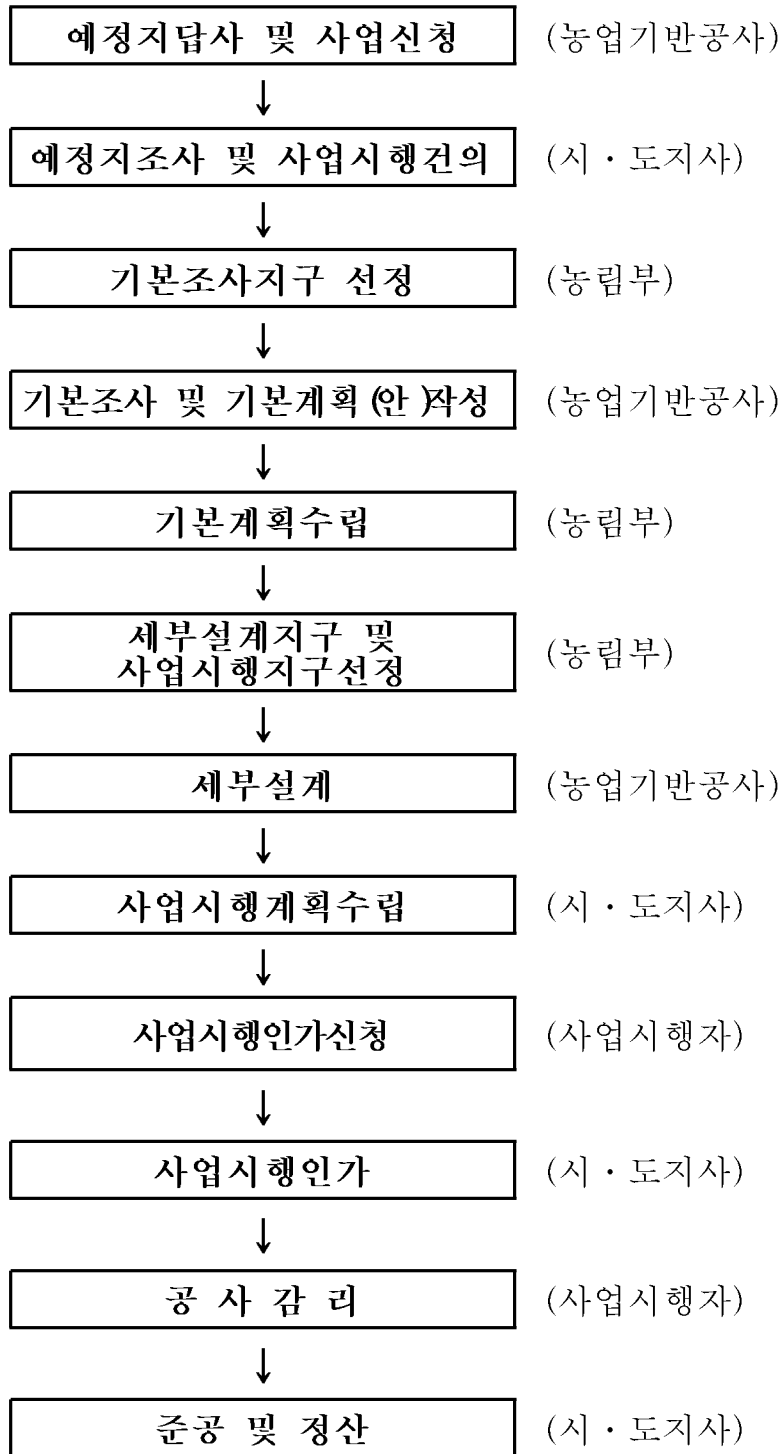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후 효과 및 시스템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 반영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사업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수립시(별지제1호서식)
-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 공정계획수립시(별지제2호서식)
- 공사입찰결과보고 : 입찰완료후(별지제3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상황을 익월 10일까지(별지제4호서식)
-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별지제5호서식)
- 준공결과보고 : 준공처리시(별지제6호서식)
- 예산배정결과보고 : 예산배정 또는 변경시(별지제6호서식)

<표 1>

물관리자동화(TM/TC) 사업추진 체계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지사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 사항 이행내용

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검토의견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지사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최 중 승인액	년까지 정산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산액	공정 (%)
과 목	공종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 자 재 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기 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 A4용지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입찰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지사

2. 입찰결과

- 입찰공고일 및 방법 :
- 현장설명일 :
- 입찰일시 :
- 입찰결과

(금액 : 천원)

발주구분	설계금액	예정가격(A)	낙찰가격(B)	낙찰율(%) (B/A)	입찰방법
계					
토목					
기계					
전기					

3. 입찰참가업체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추진상황보고

(2002년 월말 현재)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 행 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년도예 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 주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5-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³,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5-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 산 액	당 해 년 도	차 년 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5-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사비 증감내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지사)
- 주요시설 및 규모
 - 중앙제어소 : 개소 (B × H)
 - 저수지 : 개소(취수탑, 사통전동화)
 - 양수장 : 개소,
 mm × hp × 대(Q= m³/sec)
 - 배수장 : 개소
 mm × hp × 대(Q= m³/sec)
 - 분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제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방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 사업효과
 - I.R.R : - B/C :

2. 연도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검 공 정 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계							
국 지 방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인가액	준 검 공 정 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제협력과 (과장 김정규, 사무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세계 주요 농업지대의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외국인농업투자제도 등을 조사하고, 국가별·권역별로 비교·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활용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정보 및 기술 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가간 경제협력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본방향
 - 해외농업투자를 정부주도의 개발보다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에서는 기술, 정보 등 간접지원
 - 농업기반공사의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해외농업환경을 조사,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 및 기술지원
- 지원방안
 - 해외농업환경조사
 - 해외농업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을 조사, 민간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 농업기반공사, 농진청, KREI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농, 기후, 토양, 수송, 투자관련 제도 등 투자가능성 조사·분석
 - 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
 - 지원분야 : 기반조성, 농장설계, 저장, 가공 등 관련기술 및 각종 정보
 - ※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의 분야별 기술자문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설치·운영 :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		8	2	2	권역별조사	권역별조사
사업비	계	1,468	200	200	200	2,400
	보 조	1,468	200	200	200	2,400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식생활 안정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FTA 협상 대상국들의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2) 사업 대상

- 정책조사
 - 사업지역 :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남미 국가)

(3)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방식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반공사
- 지원형태 및 수준
 - 정책조사 : 국고보조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권역별 조사	200	200	200	-	-	-
투자환경조사	권역별 조사	200	200	2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02-500-1703)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

○ 투자환경조사

-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환경을 조사하여 개발적지 선정
- 세계 농업자원을 권역별로 체계화하여 해외농업 정책자료로 활용
-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 운영 및 투자상담

○ 사업소요기간 : 2005. 1. 1~2005. 12. 31(1년)

○ 사업규모

- 농업기반공사, 농진청, KREI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구성, 영농, 기후, 토양, 수송, 투자관련 제도 등 투자가능성 조사

(2) 사업 추진일정

-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 2004. 1~4월중
- 권역별 조사대상국가 결정 : 2004.3~4월중
- 조사세부계획보고 : 2004. 5월초
- 조사시행 및 보고서 작성 : 5월말~11월중순
- 종합보고 : 2004. 12월
- 사업비 정산 : 12월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성과평가

(1) 목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 후 종합 보고회 개최를 통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는 차기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평가방법

- 조사내용 종합보고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3) 조치사항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향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조사결과 활용방안

(1) 조사결과 및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권역별, 지역(국가)별, 업체별 분석·정리

(2) 관련정보는 투자 희망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해외농업투자 사업으로 연계토록 지원

- 해외농업투자 상담실 운영
- 관련정보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 농업기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검색 가능토록 D/B화

나. 보고 및 기타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세부조사계획 :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30일전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조사결과보고 : 조사후 90일 이내
- 사업실적보고서 : 최종 조사후 90일 이내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이승찬, 토목사무관 권중희)입니다.

1. 목 적

-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현황과 오염추이를 평가·분석하여 수질오염방지대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2년마다 전국 저수지에 대한 수질 실태조사(육안조사 및 실내분석) 실시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 수질조사 실시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한 시험연구사업 실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9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사 업 량							
○ 수질측정망조사		450지점	500지점	500지점	500지점	500지점	500지점
○ 수질실태일제조사		17,800여개소	-	17,800여개소	-	17,800여개소	-
○ 수질개선시험사업		1과제	1과제	1과제	1과제	1과제	-
사 업 비	계	7,325	1,270	1,250	1,350	1,450	1,400
	보 조	7,325	1,270	1,250	1,350	1,450	1,400
	용 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농업 용수원에 대하여 수질 측정망(500지점)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수질조사 및 평가·분석
 - 200 지점 : 4회/년(계절별조사)
 - 300 지점 : 2회/년(관개기, 비관개기 조사)
 - 조사항목
 - 현장조사(5항목) : 수온, pH, DO, EC, BOD
 - 실내실험(9항목) : COD, SS, T-N, T-P, Cu, Pb, Cd, Chl-a, Cl-
 - 자료조사 및 환경조사 : 유역내 오염원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05년 미시행)
 -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전국 단위의 수질 오염현황 파악 및 선량한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대상 : 전국저수지 17,800여개 시설
 - 조사빈도 : 1회/2년(격년제 조사)
 - 조사방법
 - 1단계조사(육안수질조사) : 주오염원조사 및 수색, 냄새, 부유물질 상태를 관찰 분류
 - 2단계조사(수질실내분석) : 1단계조사결과 수질이 나쁜 500개 저수지의 채취 시료에 대하여 COD 등 7개 항목 분석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사업
 - 농업용수 수질개선공법 개발, 처리효율 분석 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

나. 지원 조건 : 국고 100%(실비지원)

다. 2005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00	1,400	1,400	-	-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500지점	1,400	1,400	1,400	-	-	-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 조사		-	-	-	-	-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사업		-	-	-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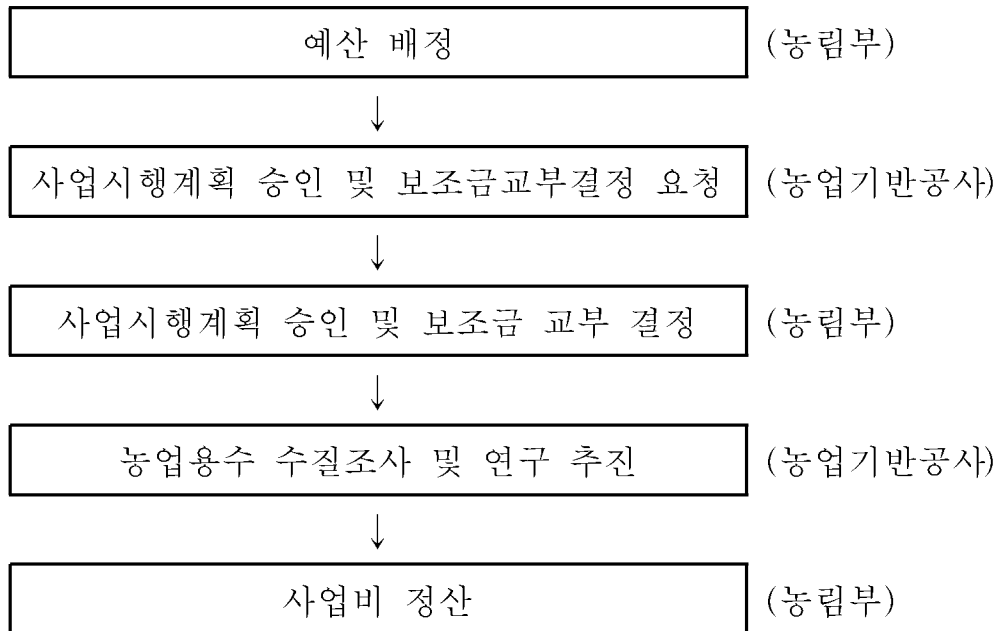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0-1996~7)
- 농업기반공사 : 용수관리처(전화 : 031-420-4054)

다. 자금지원대상자 : 농업기반공사

라.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림부장관이 배정한 예산에 따라 당해 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조사 및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학계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연구 계획 개요
 - 단위 업무별 추진 계획
 - 총괄 조사·연구책임자
 - 수질조사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등을 담당하는 책임조사자
 - 연구참여자
 - ※ 소속, 직급 등을 포함하여 실명으로 작성
 - ※ 학계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 연구시에는 공동참여 예정기관 명시
 - 수질측정망 설치계획
 - 세부항목별 조사·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
 - 소요 비용 등
- (2)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함
- (3)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조사 또는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관이 확정되면 공동연구기관의 세부 조사·연구계획과 조사·연구 총괄 책임자, 연구 참여자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조사 및 연구 추진

-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조사 및 연구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2)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함
 - 농림부장관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실태를 조사토록 시·도지사 및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지시함
 -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장·군수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수질실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수질실태조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수질실태 조사결과와 시·도지사의 수질실태조사보고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연4회(계절별), 연2회(관개기, 비관개기) 실시하며, 매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농업용수 수질오염원 조사 대상지구는 전국 저수지 수질실태 일제조사 및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결과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조사토록 함
- (5)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주요 연구 참여자를 교체하여서는 안됨
 -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당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계속 추진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공동연구기관 주요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으로 연구성과 달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6)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연 2회이상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과제별 평가회 (중간평가, 연말평가 등)를 개최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평가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1)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연구비에 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2)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시행 계획의 이행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용을 포함하는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함
- (4) 기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실행 검정 및 결산 요령”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적용함

7	농지 조성(공공)
---	-----------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토목 사무관 전경구)입니다.

1. 목 적

-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사업시행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준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지구의 준공계획과 연계하여 착수 추진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대형시설물 등 부분 완공된 시설물 관리 철저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비 고
사 업 량	3지구완공 6지구계속 1지구착수	7지구계속	7지구계속	7지구계속	
사 업 비	계	25,606	3,238	3,198	3,200
	국 고	16,491	908	918	910
	기 금	9,115	2,330	2,280	2,290
	기 타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 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70년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 환경열악 및 식량부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한·수해 발생, 인력·축력에 의한 영농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저조
 - 외국원조에 의한 국민식량 조달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2) 주요 사업내용

- 저수지·방조제·하구둑·양수장 등의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3) 지원 대상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지구 보상비는 전북도지사)

(4) 지원 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나. 2005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 업 비			비고
		사업비 합계	예산액 (국고·농지관리기금)		
			보 조	기 금	
계	121,560	320,000	91,000	229,000	
금 강Ⅱ	43,000	40,000	40,000	-	
미호천Ⅱ	4,430	7,000	7,000	-	
홍 보	8,100	22,000	22,000	-	
영산강Ⅲ-1	13,160	43,000	-	43,000	
영산강Ⅲ-2	7,840	40,000	4,000	36,000	
새만금	28,300	150,000	-	150,000	
영산강Ⅳ	16,730	18,000	18,000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02-500-1982~3)

(2) 사업시행자

가) 영산강Ⅲ-1·Ⅲ-2·Ⅳ·금강Ⅱ·미호천Ⅱ·홍보 : 농업기반공사

- 본 사 :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사업처 (031-420-3450)

- 금강Ⅱ지구 :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063-450-9951)

- 미호천Ⅱ지구 : 농업기반공사 충청도본부 (043-290-3391)

- 홍보지구 : 농업기반공사 홍보사업소 (041-634-2808)

- 영산강Ⅲ-1·Ⅲ-2·Ⅳ지구 :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
(063-270-6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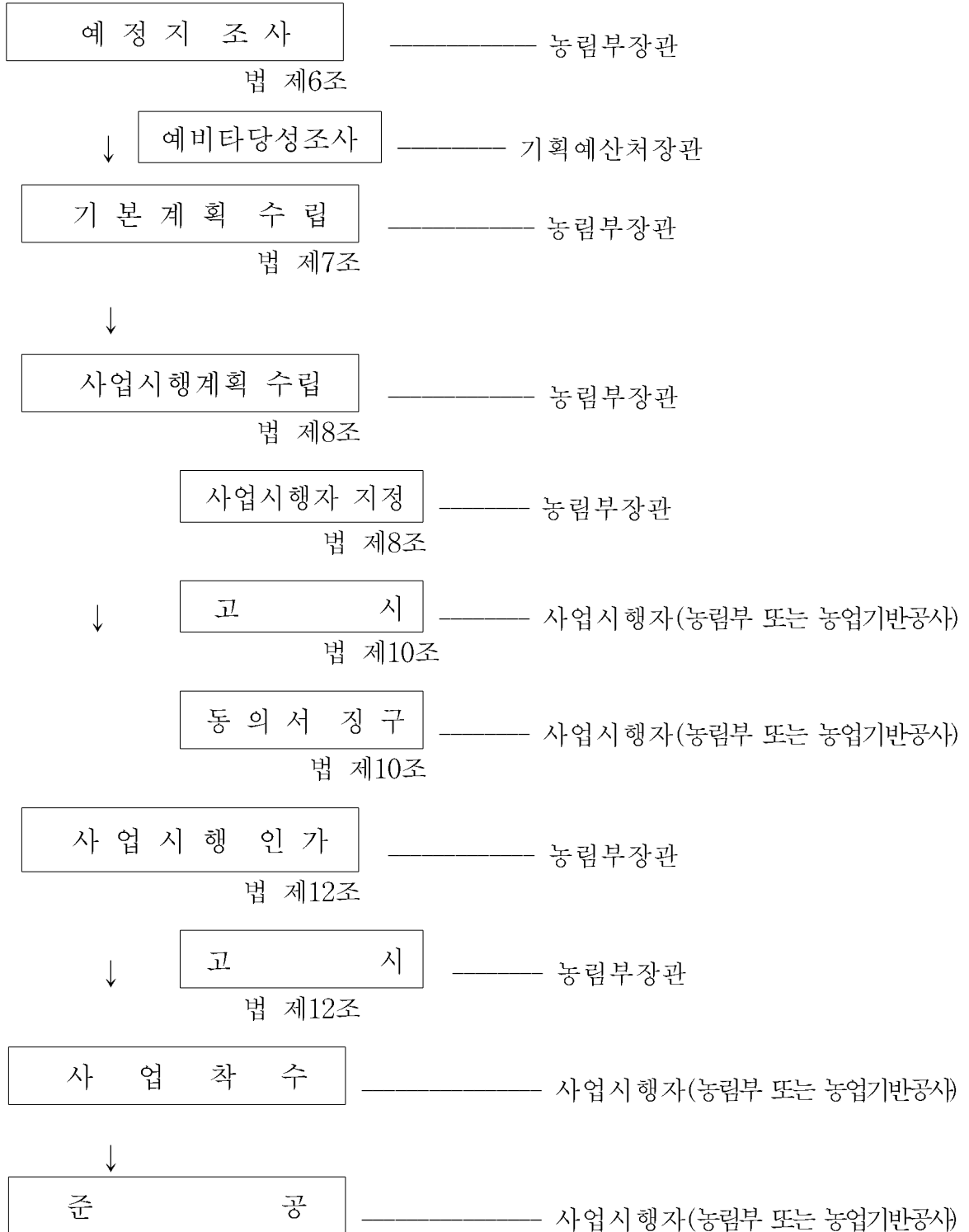
나) 세만금 : 농림부

- 사업대행자

· 공사 분야 : 농업기반공사 세만금사업단 (063-540-5821)

· 보상 분야 : 전라북도 세만금지원사업소 (063-282-8518~9)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 시행

(1) 예정지 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예비타당성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 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 (나)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4)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나) 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설계팀은 설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조사설계 기간 부여
-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 설계에 관한 업무기준('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준수하여 세부설계 추진
 - 지역의 농업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화농업육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수립
 - 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제고 방안 검토
 -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 조사를 철저히 실시
 -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시 영구간(갯골)에 대한 과도한 매립계획 지양
 -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 실시
 - 현지조사시 당해 사업단(사업소)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시행여건을 충분히 반영 조치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비용 산정
- 지역의견수렴
 - 용수로 등 노선 결정시에는 분묘, 타법·타사업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 세부설계 내용 검토

- 세부설계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
토록 조치

(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한 조달청의 선심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라)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 검토,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마)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
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바)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 할 수 있음

(5)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6)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7) 년도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연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
- 2) 사업계획개요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6) 기타사항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마) 연도 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이내에 월별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에 앞서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4) 사업별 추진상황
- 5) 기타사항

(8)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 선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설계보완)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효과를 현저히 향상시키는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는 현지여건상 부득이 하게 시행계획을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의 선심을 받은 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변경의 원인 및 당초 설계자 의견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호 규정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라)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비 회수 및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마) 총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계획 변경 승인함

(9)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장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 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4)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를 하여야 함
-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 또는 농업기반시설 인수 예정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물건조사 실시

-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②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③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및 집행

-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집행

(10)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할 수 있음
-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3급이상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규정('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11) 검 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검정

- 1)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발체·확인한 후 연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 이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은 주요공종을 발체·확인함
-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에 준공검사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④ 공사준공후에는 조사설계자, 공사감리자와 시공회사가 표기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준공

-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함

(12) 유지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된 시설물(부분준공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중인 지구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잡수입 또는 사업비로 실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사준공된 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함

(13) 자금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 등 과실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마) 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4) 기타 사항

-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사행이 요망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 (라)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취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매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 (1)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 고

-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기 타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자체 가264-4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 지	계 획	이 후	
국 외 농 잡 지 기 수 . 계					
고 자 금 수 입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까 지	계 획	이 후	
1. 순공사비					
o					
o					
o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o 측량설계비					
o 공사감독비					
o 일반관리비					
o 잡 지 출					
o					
o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264-4

〇〇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 △감	까지	계획	이후	
국외농지 고자금 수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요구액	증 △감	까지	계획	이후	
1. 순공사비 ○ ○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및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총민 26-3

○○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진도보고

□ 총 관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총 계 획		까 지		계 획					누계 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지구명	사업추진상 문제점, 지역의 특이동향 및 여론	개선방안 또는 대책

□ 지구별 사업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 지		계 획					누계 진도 (%)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합 계											
1.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 공구											

② 서남해안 간척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 조성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음.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농지매각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효과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 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내지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4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02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이후
사업량 (지구)	계	27(12)	15(4)	11(1)	10(4)	6(6)
	서남해안간척	23(10)	13(3)	10(1)	9(3)	6(6)
	유희지개발	4(2)	2(1)	1(-)	1(1)	-
사업비 (백만원)	계	1,392,223	140,382	132,949	161,858	796,718
	국고	-	-	-	-	-
	기금	1,392,223	140,382	132,949	161,858	796,718
	기타	-	-	-	-	-

※ 사업량은 시행지구수 기준이며, ()내서는 준공지구수임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간 척

근해의 간석지에 제방을 막고,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담수호를 조성하고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여 농업용지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키 위한 사업임.

(2) 주요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양·배수장 ○ 용수로
- 배수로 ○ 방수제
- 도 로

(3) 지원조건 :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금액 : 백만원)

지구별	농지조성 (ha)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농지관리기금	용 자		
계	18,822	161,858	161,858	161,858	-	-	-
<서남해안간척>	18,381	156,408	156,408	156,408	-	-	-
진 촌	347	2,097	2,097	2,097	-	-	-
화 용	4,482	27,500	27,500	27,500	-	-	-
시 화	3,636	23,700	23,700	23,700	-	-	-
남 포	836	2,323	2,323	2,323	-	-	-
석 문	2,831	7,488	7,488	7,488	-	-	-
이 원	777	13,700	13,700	13,700	-	-	-
군 내	464	4,000	4,000	4,000	-	-	-
고 흥	2,361	65,900	65,900	65,900	-	-	-
삼 산	280	9,700	9,700	9,700	-	-	-
<유휴지개발>	441	5,450	5,450	5,450	-	-	-
영 압	441	5,450	5,450	5,450	-	-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농촌개발국 기반정비과(☎ 02-500-1984~5)
- 시 · 도 :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 농정국 농업기반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간척사업소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

<사업시행체계도>



- 주) 매립법 : 공유수면매립법
 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환경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 정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라.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가)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마)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바)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마.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 계획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이하 같음)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 2) 사업별 투자소요액
 - 3) 사업시행효과
 -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 5)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6)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

(2) 예비타당성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 (나) 농림부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 (다)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라) 기본조사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 3) 사업비 수지예산서
- 4) 사업비 내역(공사비 포함)
- 5) 사업효율분석결과(B/C, IRR 등)
-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바)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사)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 50ha미만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자)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위탁 시행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5.경지정리편 참고)”을 준용할 것.

(4)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

(가)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7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라)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요청하여야 함.
-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협의내용의 이행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 생태계 등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조사해야 하므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영향평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아) 담수호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9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 담수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5)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 실시함.
- (나)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제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다)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바) 농림부장관은 제(마)항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되도록 함.
- (사) 사업시행자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함.

(6) 사업시행인가

- (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다)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3) 세부설계도서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제3항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7) 공정계획

(가) 공정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및 용수공급, 영농가능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친환경대책 및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나)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계획)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사업 추진상황은 제2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우수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마)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사장)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당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매년1월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농업기반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는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효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공유수면매립면허일, 시행인가일, 착공 등)
- 2) 사업개요(매립면적, 개발면적, 간척농지면적 등)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공종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연도별 수지예산서
- 6) 기타사항

(사)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인가권자(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승인통보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월별 세부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권자(시·도지사)는 향후 단가인상, 투자효과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특히, 공정계획 작성시 인력, 자재확보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아) 이상의 공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이 단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고, 인가권자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하므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원안승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공정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마)~(사)항에 따름.

(자) (사),(아)항의 사업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나 천재지변, 예산변경 또는 투자효과제고,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때에는 (마)~(아)항에 따름.

(차) 시·도지사(농업기반공사 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물량증감)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다) 시·도지사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해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 변경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단, 단가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10% 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라) (다)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시공한 물량변동 결과의 대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함.

(마)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지구에서 총사업비 증감 및 공종별·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이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변경 또는 신규 세부설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바)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10) 어업권 보상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2) 물건조서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다)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된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11) 검사 및 준공

(가) 검정 및 정산

- 1)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행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행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인가권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년도말 검정은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행검정 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나) 사업준공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준공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매립면적이 3,0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0항)

(12) 사후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13) 기타사항

(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 1)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2)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3) 관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구입을 최대 억제하여야 함

- 4) 잡지출인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요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나) 예산 및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2)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배정 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 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 4)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5)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6)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총사업비관리

- (1) 토목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도 포함
- (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3)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시행계획변경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조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행정사항 >

(1) 월별공정계획보고 (제1호 서식)

(2) 월별사업추진현황 (제2호 서식)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제3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4)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가26-45

공 정 계 획 표

- 확인자(사업시행자) : _____, 검토자(공사감독소장) :
- 작성자(현장대리인) :
- 시 행 자 :
- 개발면적 : ha(농지조성 : ha, 배후지 : ha)
- 사 업 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 공인액	년 까지 사업비	년 이후 잔사업비	년 도 예산 액	공 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순공사비																										
지급자재																										
양 회 철 근 기 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환경영향 평가관리비																										
수 입 재 원	농지기금																									
	기타()																									
	계																									

※ 순공사비는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개답, 용수로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순공사에 해당하는 물량, 지급자재, 용지매수물량에 대한 월별계획은 위 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별지 제2호 서식】

총26-71

월 별 사 업 추 진 현 황

< ○○도 >

(금액 : 백만원)

지 구 명	공 종	총계획		년도까지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 계 진 도 % (AC)	년이후		
		사 업 량	사 업 비 (A)	사 업 량	사 업 비 (B)	진 도 (B/A)	년도 계획		월말까지 누계				당 해 연 도 진 도 % (E/C)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C)	계 획		실 적						진 도 % (E/D)
									사 업 량	사 업 비 (D)	사 업 량	사 업 비 (E)					
○○○	계																
	· · ·																
○○○	계																
	· · ·																

※ 공종은 공사비(방조제, 배수갑문, 용수로),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등으로 작성하되, 사업물량을 정확히 기재

※ 계획대 실적이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공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 40513-1461보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비 수지예산서

- 지 구 명 :
- 매 립 면 허 일 : 면 허 자 : 매 립 면 적 :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 개 발 면 적 : ha(간척농지 ha)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농지관리기금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년 도 별 내 역			비 고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Ⅱ.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정병학, 공업서기관 박상민) 입니다.

1.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공동이용 농기계, 쌀전업농 및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전용 농기계 우대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대, 백만원)

		'92~'01	2002	2003	2004	2005(예산안)
사 업 량		1,844	98.4	88.2	49.4	48.0
사 업 비	계	9,242,241	736,000	530,000	275,000	200,000
	보 조	824,724	-	-	-	-
	융 자	1,960,483	147,200	111,300	55,000	40,000
	지 방 비	800,334	-	-	-	-
	농협융자	3,179,056	368,000	259,700	137,500	100,000
자 담	2,477,644	220,800	159,000	82,500	60,000	

* 사업량 48천대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물량 포함
 - '05년부터 1천만원이상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해당 기종에 한함)
-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및 벼품위자동판정기,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로 한다.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이며 농림 축산물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받은 형식(모델)은 형식검사 또는 검정을 생략하고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함.
 -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는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검증된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하며 일반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제외

- ◇ 농업기계화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정한 공인기관의 인증(검사,검정,승인, 인정,보증 등 명칭 불문) : 당해 법령에 설치기준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
- ◇ 농업공학연구소의 형식검사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 기종, 승용 정밀 대형기종(공인기관의 인증대상기종 제외)
- ◇ 농업공학연구소 등의 검정(시험) : 인증 및 형식검사 대상 기종 외의 것으로서 시험설비(장비)에 의하지 않으면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정밀기종 및 안전평가가 필요한 기종
 - 검정기관 : 농업공학연구소
 - 시험기관 : 국가 또는 정부출연 전문시험연구기관
- ◇ 자유진입 : 인증·형식검사·검정 대상 기종 외의 것(다만, 15마력이상의 엔진부착 농기계와 공급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농기계는 검정)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명세표 [별표1]
 - 주행형농기계(트랙터, 콤파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는 기종명,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제조자 등이 인쇄된 형식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트랙터는 인쇄된 번호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중고차동장치가 부착된 부속작업기(예 : 경운기·관리기용트레일러, 퇴비살포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기계[별표7]에 대해서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시험을 받은 농기계에 한하여 지원공급함
 - 신규기종(신규기종의 형식)은 2005. 4.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기종(기존기종의 형식)은 2005. 7. 1일부터 적용함.

(3) 공급자

- 농기계제조업자·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지역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이하 “공급농협”이라 함)로서, 그 사실을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임에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를 공급한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공급농협은 농기계 공급자에서 1년간 제외
 -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임대 및 폐지한 지역농협은 공급자에서 제외
- 공급할 시·군·구 지역(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에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고, 그 사실을 농기계조합에 통보하여 확인된 자 (농기계조합은 확인서 발급)
 - ※ 2005. 1. 1일 이후의 신규 사후봉사업소는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2004. 11. 18, 농림부령 제1,48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기존의 사후봉사업소는 2006. 5. 18일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조업자 등
 - 농기계조합은 제조업자 등이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직접 농기계를 공급할 경우는 사후봉사업자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감안, 보증능력을 벗어나는 사후봉사이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증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대,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농협융자	자부담
		계	보조	융자			
27.7	200,000	40,000	-	40,000	-	100,000	60,000

* 농업종합자금 지원 별도 : 20.3천대, 414,000백만원(농특 82,800, 농협 207,000 자부담 124,200)

(2)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리 3.0%
- 지원기간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3) 지원한도액

○ 산정기준표

구 분	용자지원한도액 산정기준
① ○ 신기술농기계(신규공급일로부터 2년 이내) [별표3] ○ 농협농기계은행, 농업회사법인 등이 공동 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 쌀전업농이 구입하는 농기계 (벼농사용 농기계에 한정) ○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 트 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 중 주요기종, 친환경 농업기계, 에너지절감형농기계 [별표4]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신기술 농기계는 공급가격의 90% 해당액)
② 비직과제배용 농기계	기준금액의 80% 해당액
③ 부속작업기	기준금액의 50% 해당액
④ 선택품	공급가격의 20% 해당액
⑤ 기타 농기계(①②③제외)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 주』 1. 농기계 판매가격과 용자지원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별도 수록함
 2. 용자지원한도액(정액) 산정방식 : 비슷한 성능을 가진 규격·모델을 그룹화하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에 해당비율을 적용 [별표1 참조]
 ○ 기준금액은 판매가격, 그룹단위 표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각 모델별 최고지원액은 해당기종·규격(그룹)별 기준금액 지원비율의 10%P를 각각 초과
 하지 않도록 함.
 ○ ① ② 해당농기계 : 최고 90%, ③ 해당농기계 : 최고 60%, ④ 해당농기계 : 최고 80%
 4.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실제판매가격이 통보가격 미만인 경우의 용자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용자지원한도액 = 실제판매가격 × (당해 기종 지원한도액 ÷ 통보가격)
 5. 지원한도액에 1만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6. 공급가격(실제판매가격) 70만원미만인 농기계는 용자지원대상에서 제외(신기술농기계,
 부속작업기 및 선택품도 해당됨)
 7. 부속작업기를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본체가격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기종·규격·
 모델별로 각각 따로 지원(다만, 부속작업기의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함)
 8. 외국산 수입농기계와 신규진입농기계의 용자금액은 해당 또는 유사규격의 모델 가격에 준하여 정함
 9.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기본성능을 증시킨 저가
 (가격이 10%이상 저렴) 경제형농기계의 용자비율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인하된
 가격기준의 90%로 함.(대상기종 : 농용트랙터·자탈형콤바인·승용이앙기)
 10.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구입 보조지원시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과 용자액을
 합하여 농기계가격(기준금액)의 90% 이내로 함. 단, 농기계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는
 농기계가격의 90% 이내로 함.
 * 곡물건조기를 지자체에서 50% 보조지원하는 경우,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액은 기준금액의 40%까지 가능

<기종별 용자기간>

기종명	용자기간	기종명	용자기간
1. 농용트랙터	1년거치 7년상환	40. 동력이식기	1 " 4 "
(1). 농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¹⁾ 년상환	41. 동력제초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	1 " 5 "	42. 동력중경제초기	1 " 5 "
(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부속작업기	1 " 5 "	43. 동력퇴비살포기	1 " 5 "
3. 승용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1년거치 5, 4 ²⁾ 년상환	44. 동력파종기	1 " 4 "
4. 동력이앙기(보행형, 승용)	1 " 4 "	45. 마늘줄기절단기	1 " 5 "
(4).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1 " 4 "	46. 마늘쪽분리기	1 " 5 "
6. 바인더	1 " 4 "	47. 무인자동방제기(자주형동력분무기)	1 " 4 "
7. 콤바인	1 " 4 "	48. 벼섯배지살균기	1 " 4 "
9. 곡물건조기	1 " 7 "	49. 벼섯배지탈면기	1 " 4 "
10. 보행형관리기	1 " 4 "	50. 벼섯벗짚파쇄기	1 " 4 "
(10). 보행형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년거치 4, 5 ³⁾ 년상환	51. 벼섯자동친공접종기	1 " 5 "
11. 승용관리기	1 " 4 "	52. 벼섯중균분쇄기	1 " 4 "
(11).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1 " 4 "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1 " 5 "
12. 곡물냉각기	1 " 7 "	54. 벼직파기(전용형)	1 " 4 "
13. 곡물수집차	1 " 5 "	55. 벼품위자동판정기	1 " 5 "
14. 곡물이송기	1 " 4 "	56. 볍씨발아기	1 " 5 "
15. 과수인공포배기	1 " 5 "	57. 사료배합기	1 " 5 "
16. 농산물건조기	1 " 7 "	58. 스피드스프레이어	1 " 5 "
17. 농산물결속기	1 " 5 "	(5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부속작업기	1 " 5 "
18. 농산물선별기	1 " 5 "	59. 온습도조절기	1 " 5 "
19. 농산물세척기	1 " 5 "	60.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1 " 7 "
20. 농용고압세척기	1 " 4 "	61. 온실용동력개폐기	1 " 5 "
21. 농용공기교반기	1 " 5 "	62. 온실용살수기	1 " 5 "
22. 농용굴삭기(자체중량1톤미만)	1 " 5 "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1 " 4 "
23. 농용난방기	1 " 5 "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1 " 4 "
24. 농용동력운반차	1 " 5 "	65. 육묘용파종기	1 " 4 "
25. 농용로우더(자체중량2톤미만)	1 " 5 "	66. 자동관수분배기	1 " 4 "
26. 농용음이온발생기	1 " 5 "	67. 정전대전방제기	1 " 4 "
27. 농용잔가지파쇄기	1 " 5 "	68. 종자봉입기	1 " 4 "
28. 농용쿤베이어	1 " 4 "	69. 주행형동력분무기	1 " 4 "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1 " 5 "	70. 채소자동접목기	1 " 5 "
30. 농용톱밥제조기	1 " 5 "	71. 콩정선기	1 " 5 "
31. 농용혼합기	1 " 5 "	72. 콩탈곡기	1 " 5 "
32. 농용환풍기	1 " 5 "	73. 탈망기	1 " 4 "
33. 다목적관리작업차	1 " 5 "	74. 토양소독기(전용형)	1 " 4 "
34. 동력배토기	1 " 5 "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1 " 5 "
35. 동력상토조제기	1 " 4 "	76. 축분고액분리기	1 " 5 "
36. 동력수확기	1 " 4 "	77. 농용냉난방기	1 " 4 "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1 " 5 "	78. 동력살분무기	1 " 4 "
38. 동력연무기	1 " 4 "	79. 승용감자수확기	1 " 6 "
39. 동력예취기	1 " 5 "	80. 곡물적재함	1 " 4 "

주 1) : 주행형분무기, 2) : 분무기, 3) : 전정기, 잔가지파쇄기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8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자재부(02-397-7126)
- 시·도 : 농협 시·도 지역본부 여신(정책)팀 및 자재팀
- 시·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기계사후봉사업소
- 읍·면 : 지역농협

다. 사업시행

(1) 농기계(신품) 구입자금지원

- 농기계(신품)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용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함
- 사업주관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대하여 용자지원의 적정(지원자격, 지원 대상농기계 및 용자금액, 공급자격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가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용자수속필확인서(별지 2호서식)를 교부함.
- 농업회사법인이나 쌀전업농,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이 용자금을 신청할 경우 확인할 사항
 - 농업회사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3의 기준(농업법인지원요건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쌀전업농 :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전업농 선정 대상자 통지공문(사본) 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전업농 확인서
 - 고품질벼 생산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6,600㎡이상 해당)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인서(19,800㎡이상 해당)

- 용자수속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용자수속필확인서를 제출하고 농기계 인수 예정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며,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예정일자 및 인도장소를 사전에 사업주관 기관에 알린 후 농가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농기계를 인도하고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3호서식)를 인수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농가에게 인도할 농기계용 용자수속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다만, 대당 공급가격이 200만원미만인 농기계는 제외함)
-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확인서,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용자금 지급을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4호서식)을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5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농업종합자금지원

- 대당 공급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함

(3) 중고농기계구입자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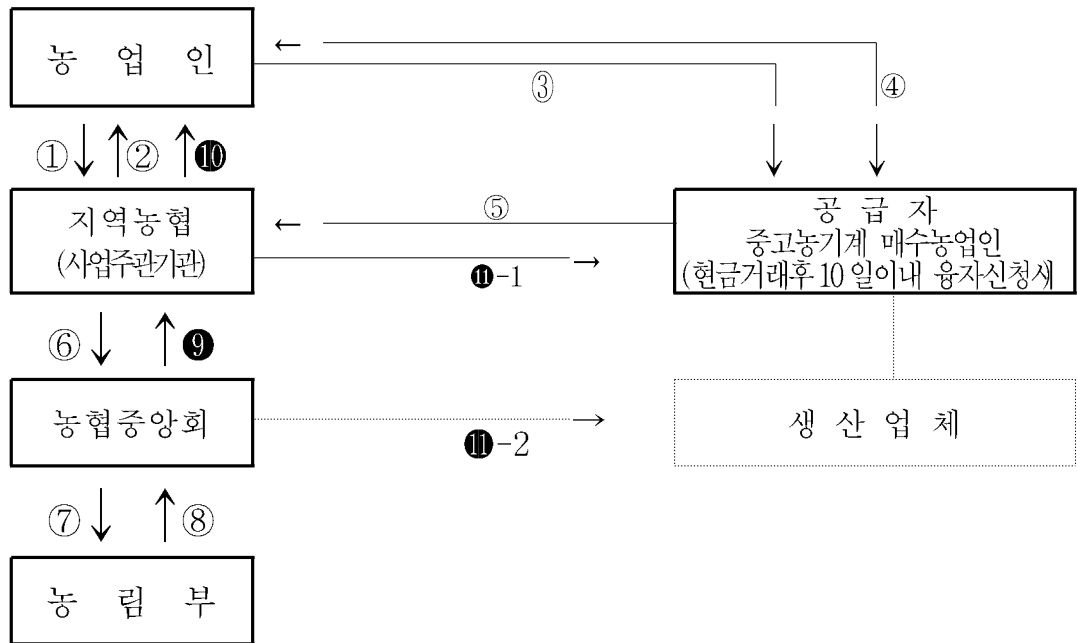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농기계은행 등
- 지원대상 농기계 [별표1 참조]
 - 공급자로부터 구입시 : 별지11호 서식에서 예시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입한 중고농기계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을 받은 중고농기계
 - 공급자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공급농협,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중고농기계 전문거래업자(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자)
 - 농가간 거래시 : 별지11호 서식에서 예시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 중개 또는 확인을 받은 중고농기계 단, 현금거래시는 대금지불 완료후 10일 이내에 용자신청한 경우만 지원

- 용자지원액
 - 미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용자지원기준금액표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
 - 미상환 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용자지원기준금액표에서 정한 가격의 90%이내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용자액의 50%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농가간 거래는 미상환 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종별 지원한도액[별표 2]
- 용자금 상환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용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용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 3년이내
- 사후관리
 - 중고농기계 공급자는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수리(12개월 이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인터넷 「중고농기계 거래마당」 등을 이용하여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용자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

라. 용자금 배정 및 집행 절차

- 농협중앙회는 농기계구입자금의 분기별 배정액 한도내에서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국고용자금에 대하여 분기별 배정한도액 범위내에서 다음달에 필요한 용자금액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농업기술지원과)에 배정 요구함
 - 용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농협중앙회장은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배정액이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용자한도액 추가배정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자한도액을 늘릴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도>



- ① 용자신청
- ② 용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용자대출수속필증 확인서 교부[예산배정액(국고+농협자금) 범위 내]
 - 농협중앙회는 농협조합(사업주관기관)에서 배정액을 초과하여 대출수속필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조치
 - 농협중앙회는 배정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출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계절성 기종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비계절성 기종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③ 용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기계 인수 일자 장소 통보
-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기계 인도 인수 (농업인은 공급자에게 용자금지불위임장 공급자가 수령토록 위임)기대인수확인서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현지 확인)
- ⑤ 용자금 지급 요청(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 인수확인서 첨부)
- ⑥ 공급보고(전산입력)
- ⑦ 용자한도액 요구
- ⑧ 용자한도액 배정
- ⑨ 용자한도액 재배정
- ⑩ 대출실행 및 사업비 정산
- ⑪-1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와 제조업자등간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⑪-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와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마.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 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별표5]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농협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함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으로 감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농기계 판매

- (1) 농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농기계를 경쟁판매 할 수 있음
- (2) 농협중앙회는 당해연도의 모델별 실거래가격과 판매량, 판매액을 집계 분석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에 통지하여야 함(별지 10호서식)

나. 농기계 모델의 합리적인 관리

- (1) 신규로 공급하는 모델은 구조·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식명 변경을 불인정함(농업공학연구소)
 - 2이상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수입농기계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 할 경우, 최초의 형식검사를 받은 형식명으로 공급토록하고 후 공급업체는 동일한 수입농기계가 형식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확인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부터 받아 농림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추가.
- (2)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 3년간 생산중단 및 용자지원실적이 없는 모델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함(2005.1.1일기준). 다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3년이상 계속 공급중인 모델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 판매대수가 20대 미만인 모델에 대해서 제외하되 수출기종 등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는 예외로 함.
- (3) 기술개발·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농기계, 기본성능을 중시한 저가(10%이상 저렴) 경제형 농기계에 대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함

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신규진입 범위 및 절차 [별표6]

- (1)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 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 및 지원한도액을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함.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대농업인 판매가격 및 관련서류를 검토후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2) 품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농기계는 자유진입 기종으로 전환하고, 작물의 생육조절용 기계 및 환경조절용 기계, 지원기종중 신규 수입 모델 및 새로 개발된 기종은 국가·국가공인 시험연구기관의 효과검증이나 시험평가를 거쳐 공급함
- (3) 신규로 진입하는 기종은 형식별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별지 8호서식]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함.
- (4)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진입하는 새로운 기종은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를 거쳐 결정함.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는 반기별(4월, 11월)로 개최하며, 반기별로 3월31일, 10월 15일까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별지 9호서식]와 관련서류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함.

라. 사후관리

(1) 융자금 사후관리 등

- (가) 농협중앙회와 농기계조합은 농기계제조업자 등과 농기계 사후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농기계가 건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중고농기계 거래내용 허위 작성, 기타 시장·군수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한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따라 부당공급자를 일정기간(1~5년간)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다) 사후봉사업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지 않고 농기계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라) 사업주관기관은 농업인 등이 부당하게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한 용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이 부당공급을 하거나 부당공급을 조장하였을 경우는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및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마) 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농기계를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도·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제조업체가 사후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신속한 사후봉사를 실시해야 함
- 사후봉사이행 보증실적과 용자지원실적을 대비분석후 보고
 - 공급가격 200만원(VAT별도) 미만인 농기계 : 매월분석
 - 공급가격 200만원(VAT별도) 이상인 농기계 : 반기별분석
 - ※ 부당사례발견시 당해기종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아 공급한 업체가 사무실이전, 경영난 등을 사유로 A/S를 부실하게 할 경우
 - 민원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현지확인 A/S가능여부 회신(농기계조합)
 - ※ A/S가 불가능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농기계 전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 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격담합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형식(모델)에 대하여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한도액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사) 사업주관기관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일로 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다만, 대당 공급가격 5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제외)를 실시하며, 사후관리 기간중 연 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시 용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용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후봉사업체 공급분의 용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공급자격 박탈)할 수 있음

(2)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가) 농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기계의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가 책임을 짐
- (나) 제조업자 등은 농기계 공급시 농가에게는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및 사용 설명서를, 사후봉사업소에는 한글로 된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함
- (다)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와 공급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된 농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등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라) 농림부장관은 트랙터, 이앙기 및 콤팩트에 대한 수리용부품 공급실태 및 민원처리결과 등을 정기 파악(연 2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함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 및 A/S결과 허위보고시

1회	2회	3회이상
경 고	유사모델 지원대상 추가 금지	유사모델 또는 당해모델 지원중단

※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 기준(1년간)

- 공급기종중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농기계
 - 해당모델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보완지시, 용가지원 중단 또는 출하금지 등 조치
- 품질 및 A/S불량 경중에 따라 생산지원자금 배정기준의 배점 감점
- 품질개선 필요시 검사기준 강화 등 품질개선 촉구

<사후봉사업소(대리점, 공급농협)에 대한 제재조치>

-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 발생시

3회미만	3회이상
경 고	기 지원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제외

※ 자체 공급한 기대에 대하여 발생한 부품공급 불가능 횟수기준(1년간)

- 부품 공급 지연 등 사후봉사 불량시(연 2회 조사)
 - 1차 적발 : 경중에 따라 경고(명단공개), 부품·장비확보자금 회수 또는 신규 지원 중단
 - 2차 적발 : 해당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기계의 용자지원 중단(경중에 따라 공급중단범위 결정)
 - 사제부품 취급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해당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농기계의 용자지원중단, 기지원한 부품·장비 확보 자금 회수 및 신규지원 중단
- (마)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 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 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바)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용(관리기용) 트레일러 및 퇴비살포기 공급자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 시킨 후 공급하여야 함
- (사) 농기계조합은 공급농협 또는 시·군·구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가 제조업자 등과 체결한 사후봉사이행계약(계약 포함)의 내용과 사후 봉사사업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사후봉사지역 등에 관하여 매년 1.1. 및 7. 1. 현재의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통지함
- (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사후봉사사업자 등이 용자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 등으로 용자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와 폐쇄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보,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농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함

마. 보 고

	보 고 기 관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기계 공급상황	농 협 중 앙 회	년보	익년 1월 20일	별지 6호서식
농기계 품질 사후봉사이행 보증발급실적 및 용자지원 실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월보	익월 20일	별지 7호서식
농기계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농 협 중 앙 회	년보	익년1월 20일	별지 10호서식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해당없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 표

- 별표 1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명세표 및 용자지원한도액
- 별표 2 : 중고농기계 용자지원 기준표
- 별표 3 : 신기술농업기계
- 별표 4 : 발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 농기계
- 별표 5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별표 6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절차
- 별표 7 :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용자 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용자수속필 확인서 발행원부
- 별지 3호서식 :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 별지 4호서식 : 용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 별지 5호서식 :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 처리부
- 별지 6호서식(총민26-5) : 농기계 공급상황보고
- 별지 7호서식(총민26-30) : 농기계 품질·사후봉사이행보증발급실적 및 용자 지원실적 보고
- 별지 8호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 별지 9호서식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
- 별지 10호서식 : 농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 별지 11호서식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예시)

[별표 1]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명세표 및 용자지원한도액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비고
1	농용트랙터	형식검사 (안전캡 및안전 프레임 포함) 안전검정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마력 미만 - 20마력 이상 25마력 미만 - 25마력 이상 30마력 미만 - 30마력 이상 35마력 미만 - 35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 40마력 이상 45마력 미만 - 45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 50마력 이상 55마력 미만 - 55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90마력 이상 ○ 무한계도형 ○ 본체와부속작업기(1,0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40 7,090 9,060 11,900 12,520 15,300 17,960 21,500 25,050 29,600 33,300 33,300 33,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90 4,960 6,340 8,330 8,760 10,710 12,570 15,050 17,530 20,720 23,310 23,310 23,310 	13
1-1	농용트랙터용결속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폭 100cm미만 - 드럼폭 100cm이상 130cm미만 - 드럼폭 130cm이상 ○ 사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럼폭 140cm미만 - 드럼폭 140cm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75 19,200 21,500 12,100 14,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98 17,280 19,350 10,890 13,410 	5
1-2	농용트랙터용 결속벗짚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3	농용트랙터용구굴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거형 ○ 사다리체인형, 로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8 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70 2,590 	2
1-4	농용트랙터용굴삭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킷산적용량 0.06m³미만 ○ 버킷산적용량 0.06m³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00 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740 6,650 	2
1-5	농용트랙터용그래플	자유화	○ 전규격	1,200	1,080	1
1-6	농용트랙터용그레이더	자유화	○ 전규격	1,300	910	1
1-7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	안전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 2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00 4,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3,080 	2
1-8	농용트랙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굴취폭 140cm미만 ○ 최대굴취폭 140cm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50 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05 3,510 	2
1-9	농용트랙터용랩피복기	안전검정	○ 전규격	13,400	12,060	1
1-10	농용트랙터용로우더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킷산적용량 0.3m³미만 ○ 버킷산적용량 0.3m³이상 0.4m³미만 ○ 버킷산적용량 0.4m³이상 0.5m³미만 ○ 버킷산적용량 0.5m³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80 2,850 3,500 3,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20 1,990 2,450 2,760 	4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 준 금 액	지 원 한 도 액	비 고
1-11	농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자유화	○ 경폭 130cm미만 ○ 경폭 130cm이상 150cm미만 ○ 경폭 150cm이상 160cm미만 ○ 경폭 160cm이상 170cm미만 ○ 경폭 170cm이상 180cm미만 ○ 경폭 180cm이상 190cm미만 ○ 경폭 190cm이상 200cm미만 ○ 경폭 200cm이상 220cm미만 ○ 경폭 220cm이상 250cm미만 ○ 경폭 250cm이상	1,450 1,520 1,610 1,720 2,000 2,280 2,560 3,270 4,100 5,200	1,010 1,060 1,120 1,200 1,400 1,590 1,790 2,280 2,870 3,640	10
1-12	농용트랙터용모우어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13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자유화	○ 일반형 - 쇄토폭 2.0m미만 - 쇄토폭 2.0m이상 2.4m미만 - 쇄토폭 2.4m이상 2.6m미만 - 쇄토폭 2.6m이상 ○ 유압씨래형 ○ 폴더형 - 쇄토폭 4.0m미만 - 쇄토폭 4.0m이상	1,900 2,190 2,420 3,300 1,100 4,500 5,880	1,330 1,530 1,690 2,310 770 3,150 4,110	7
1-14	농용트랙터용 반전집초기	자유화	○ 원심력식 ○ 캄트랙식 - 1축(집초폭350cm미만) - 1축(집초폭350cm이상) - 2축(400cm미만) - 2축(400cm이상) - 밀폐형	2,630 3,100 5,900 3,600 4,650 3,700	2,360 2,790 5,310 3,240 4,180 3,330	6
1-15	농용트랙터용발근기	자유화	○ 전규격	1,864	1,300	1
1-16	농용트랙터용발근파쇄기	자유화				
1-17	농용트랙터용배토기	자유화				
1-18	농용트랙터용 벼직파기	자유화	○ 6조이하(로타베이터포함) ○ 7조이상(로타베이터포함) ○ 파중장치만 구입	2,790 3,700 1,800	2,230 2,960 1,440	3
1-19	농용트랙터용 블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전규격	2,950	2,060	1
1-20	농용트랙터용 비닐수거기	자유화 (별칭비닐 용은검정)	○ 하우스용 ○ 멀칭비닐용	1,130 2,920	790 2,330	2
1-21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탑재형 ○ 탑재유압형 ○ 견인형	1,260 1,260 1,500	880 880 1,050	3
1-22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오거형 - 배합량 3m ³ 미만 - 배합량 3m ³ 이상 6m ³ 미만 - 배합량 6m ³ 이상	7,000 12,000 16,800	6,300 10,800 15,120	3
1-23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	안전검정	○ 목초용 -100cm미만 -100cm이상 ○ 옥수수용	3,500 4,500 9,700	3,150 4,050 8,730	3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1-24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500 l 미만 ○ 500 l 이상 1000 l 미만 ○ 1000 l 이상	3,485 6,500 9,900	3,140 5,850 8,910	3
1-25	농용트랙터용심경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2,500	1,750	1
1-26	농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자유화	○ 1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산소+석회주입 ○ 2조식 - 진동식 - 산소주입 ○ 3조식 - 진동식	1,550 4,330 6,900 2,500 6,610 3,000	1,080 3,030 4,830 1,750 4,620 2,100	6
1-27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 원거리살포형	6,070 10,800	5,460 9,720	2
1-28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수동 및 기계공급식 - 파쇄량 1.5톤/h미만 - 파쇄량 1.5톤/h이상 2.5톤/h미만 - 파쇄량 2.5톤/h이상 ○ 유압공급식 - 파쇄량 3.0톤/h미만 - 파쇄량 3.0톤/h이상	4,600 2,985 5,360 4,600 9,500	3,220 2,080 3,750 3,220 6,650	5
1-29	농용트랙터용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200cm 미만 ○ 제초폭200cm 이상	2,650 4,500	1,850 3,150	2
1-30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	안전검정	○ 탑재식 ○ 견인식 - 1000 l 이하 - 1200 l 이상	1,970 2,800 4,350	1,370 1,960 3,040	3
1-31	농용트랙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 제초폭200cm 미만 ○ 제초폭200cm 이상	2,890 9,000	2,020 6,300	2
1-32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전규격	6,500	5,850	1
1-33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탑재형 - 1톤미만 - 1톤미만(살포동시로타리작업) - 1톤이상 2톤미만(컨베이어식) - 1톤이상 2톤미만 (적재함바닥판패널슬라이딩방식) - 2톤이상 3톤미만 - 3톤이상 4톤미만 - 4톤이상	1,700 4,000 3,900 5,980 5,150 6,200 7,450	1,530 3,600 3,510 5,380 4,635 5,580 6,700	7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1-34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	안전검정	○ 일반형 - 적재용량 2.0톤미만 - 적재용량 2.0톤이상 3.0톤미만 - 적재용량 3.0톤이상 3.5톤미만 - 적재용량 3.5톤이상 4.0톤미만 - 적재용량 4.0톤이상 5.0톤미만 - 적재정량 5.0톤이상 ○ 곡물운반형	1,410 1,900 2,400 2,520 2,700 3,400 4,380	980 1,330 1,680 1,760 1,890 2,380 3,060	7
1-35	농용트랙터용과중기	자유화	○ 감자과중 - 2조 - 3조 ○ 일반형 - 5조 미만 - 5조 이상 ○ 마늘과중	2,600 3,900 1,590 3,780 7,900	2,340 3,510 1,430 3,400 7,110	5
1-36	농용트랙터용플라우	자유화	○ 자동양용 3련이하 ○ 자동양용 4련 ○ 자동양용 5련이상 ○ 모올드보드 단용2련 ○ 모올드보드 단용3련 ○ 모올드보드 단용4련 ○ 모올드보드 단용5련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3련이하 - 경폭90cm미만 - 경폭90cm이상 ○ 모올드보드 양용·회전4련이상 ○ 원판비구동 3련이하 ○ 원판비구동 4련이상 ○ 원판구동 6련미만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 원판구동 10련이상 ○ 이랑 4련이하 ○ 이랑 5련 ○ 이랑 6련이상 8련미만 ○ 이랑 8련이상 ○ 치즐논용 ○ 치즐발용, 8련미만 ○ 치즐발용, 8련이상	1,050 1,170 1,310 1,350 1,750 2,100 2,500 1,020 3,700 4,500 2,900 4,100 2,980 3,900 5,300 1,030 1,700 1,420 1,980 1,800 2,500 3,100	730 810 910 940 1,220 1,470 1,750 710 2,590 3,150 2,030 2,870 2,080 2,730 3,710 720 1,190 990 1,380 1,260 1,750 2,170	22
1-37	농용트랙터용헤로우	자유화	○ 디스크형 - 20련미만 - 20련이상 ○ 로타리형	5,500 6,800 6,940	3,850 4,760 4,850	3
1-38	농용트랙터용 휴립복토기	자유화	○ 1두독식 ○ 2두독식	2,000 3,200	1,800 2,880	2
1-39	농용트랙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 1두독식 ○ 2두독식	1,520 2,380	1,360 2,140	2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비고
2	보행형동력경운기	검정 안전검정 병행	○ 6마력 ○ 8마력 이상 ○ 본체와부속작업기(1,0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1,400 1,760 구입가격 의 50%	980 1,230	2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탑재형	1,215	600	1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구굴기	자유화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자유화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우더	자유화	○ 전규격	3,186	1,590	1
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질단기	안전검정	○ 전규격	1,000	900	1
2-7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배토기	자유화				
2-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2-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2-1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1,270	630	1
2-1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	안전검정	○ 전규격	7,200	6,480	1
2-1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 전규격	1,062	530	1
2-1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400ℓ 미만	1,680	1,510	1
2-1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2-15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심토파쇄기	자유화	○ 전규격	5,928	2,960	1
2-1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540	770	1
2-17	보행형동력경운기용쟁기	자유화				
2-18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800	1
2-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제초기	자유화	○ 일반형 ○ 전지목파쇄겸용 ○ 비료살포겸용	1,080 1,600 1,700	540 800 850	3
2-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중경제초기	자유화				
2-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철차륜	자유화				
2-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	안전검정	○ 수동공급식 - 200mm미만 - 200mm이상 ○ 자동공급식	1,300 2,670 2,600	1,170 2,400 2,340	3
2-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퇴비살포기(중고차동 장치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 전규격	3,200	2,880	1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비고
2-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 부착된것포함)	안전검정 (중고차동 장치부착 된것제외)	○ 유압딤프형 ○ 차동구동형 ○ 일반형	1,690 1,040	840 520	2
2-25	보행형동력경운기용파종기	자유화	○ 마늘파종	1,950	1,750	1
2-26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휴립기	자유화				
3	승용경운기	형식검사 안전검정 병행	○ 10ps ○ 본체와부속작업기(1,0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4,212 구입가격의 50%	2,940	1
3-1	승용경운기용로타리	자유화				
3-2	승용경운기용배토기	자유화				
3-3	승용경운기용분무기	자유화	○ 전규격	2,520	1,760	1
3-5	승용경운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3-4	승용경운기용제초기	자유화				
3-6	승용경운기용휴립기	자유화				
4	보행형동력이앙기	검정	○ 2조 ○ 4조	1,739 2,140	1,210 1,490	2
5	승용이앙기	형식검사 안전검정 병행	○ 4조~6조(크랭크식) ○ 6조(로타리식) ○ 8조이상(로타리식) ○ 멀칭용	5,760 11,000 11,000 15,490	4,030 7,700 7,700 13,940	4
4-1	동력이앙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보행형 ○ 승용형	1,010 1,100	800 880	2
4-2	동력이앙기용축조시비기	자유화	○ 승용이앙기용	3,500	3,150	1
6	바인더	검정, 안전검정병행	○ 전규격	1,970	1,370	1
7	콤바인(자탈형)	형식검사 안전검정 병행	○ 자탈포대형 - 2조~3조(정격출력 20마력미만) - 3조(정격출력 20마력이상) - 4조이상 ○ 산물형 - 3조 - 4조 - 5조 - 6조	10,830 19,930 26,700 23,440 29,900 37,700 37,700	7,580 13,950 18,690 16,400 20,930 26,390 26,390	7
8	콤바인(보통형)	형식검사 안전검정병행	○ 보통(산물)	65,150	45,600	1
9	곡물건조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 순환식 - 40석 미만 - 40석 이상 50석 미만 - 50석 이상 100석 미만	5,650 6,660 8,120	3,950 4,660 5,68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 도액	비고
9	곡물건조기		- 100석 이상 150석 미만 - 150석 이상 ○ 교반식 - 300석 미만 - 300석 이상 ○ 다공호퍼식 ○ 상온통풍식	9,900 32,380 13,590 17,000 8,750 4,840	6,930 22,660 9,510 11,900 6,120 3,380	9
10	보행형관리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 6마력 미만 ○ 6마력 이상 ○ 본체와부속작업기(1,0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1,470 1,733 구입가격 의50%	1,170 1,380	2
10-1	보행형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0-2	보행형관리기용굴취기	자유화				
10-3	보행형관리기용 논두렁조성기	자유화				
10-4	보행형관리기용로타리	자유화				
10-5	보행형관리기용배토기	자유화				
10-6	보행형관리기용벼직파기	자유화				
10-7	보행형관리기용복토기	자유화				
10-8	보행형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0-9	보행형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10-10	보행형관리기용 사료작물수확기	자유화	○ 전규격	2,486	2,230	1
10-11	보행형관리기용 스크레이퍼	자유화				
10-12	보행형관리기용 심경로타리	자유화				
10-13	보행형관리기용 예취기	자유화				
10-14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600	1,120	1
10-15	보행형관리기용쟁기	자유화				
10-16	보행형관리기용전정기	자유화	○ 전규격	1,415	990	1
10-17	보행형관리기용제초기	자유화				
10-18	보행형관리기용중경제초기	자유화				
10-19	보행형관리기용트레일러	안전검정				
10-20	보행형관리기용파종기	자유화	○ 전규격	1,050	940	1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10-21	보행형관리기용혈굴기	자유화				
10-22	보행형관리기용휴립기	자유화				
10-23	보행형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11	승용관리기	형식검사 안전검정행	○ 일반형 ○ 겸용형(SS장치 및 적재함포함) ○ 본체와부속작업기(1,000천원 미만 포함구입시의 부속작업기	9,600 16,200 구입가격 의50%	7,680 12,960	2
11-1	승용관리기용구굴기	자유화		1,390	970	1
11-2	승용관리기용 동력분무기	자유화	○ 전규격	1,500	1,050	1
11-3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자유화	○ 전규격	1,320	920	1
11-4	승용관리기용 벼직파기	자유화	○ 전규격	1,600	1,280	1
11-5	승용관리기용 복토기	자유화				
11-6	승용관리기용 봄스프레이어	안전검정	○ 발용 ○ 논용	4,050	2,830	1
11-7	승용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자유화				
11-8	승용관리기용 비료살포기	자유화		1,250	870	1
11-9	승용관리기용 이앙장치	검정	○ 6조 - 크랭크식 - 로타리식	3,000 5,250	2,100 3,670	2
11-10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 전규격			
11-11	승용관리기용 쟁기	자유화	○ 모듈드보드	1,120	780	1
11-12	승용관리기용 제초기	자유화	○ 전규격	1,040	720	1
11-13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자유화	○ 전규격	2,600	2,340	1
11-14	승용관리기용 휴립기	자유화	○ 전규격	2,000	1,800	1
11-15	승용관리기용 휴립피복기	자유화	○ 2두둑	2,600	2,340	1
12	곡물냉각기	인증	○ 고압송풍대류냉각식	60,000	42,000	1
13	곡물수집차	형식승인 (자동차관 리법)				
14	곡물이송기	자유화	○ 이송량 10톤/h미만 ○ 이송량 10톤/h이상	1,600 1,850	1,120 1,290	2
15	과수인공교배기	자유화	○ 약채취,정선,화분정선	4,340	3,030	1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 원 한도액	비고
16	농산물건조기	검정 안전검정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형미만 - 3형이상 5형미만 - 5형이상 ○ 겸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형미만 - 9형이상 10형미만 - 10형이상 20형미만 - 20형이상 ○ 선반순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0 3,170 3,900 3,120 3,980 4,890 6,790 4,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60 2,850 3,510 2,800 3,580 4,400 6,110 4,270 	8
17	농산물결속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착결속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공급식 - 자동공급식 ○ 매듭결속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공급식 - 자동,컨베이어식 ○ 꼬임결속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cm미만 - 15cm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0 2,750 3,500 16,000 2,500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70 2,470 3,150 14,400 2,250 3,600 	6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세척),원형 · (스세척),편측 · (스수동,반자동),원형 · (스수동)양측, 10단이하 · (스수동)양측, 11단이상 · (스수동)편측, 10단미만 · (스수동)편측, 10단이상 · (스자동),원형 · (스자동),편측,양측 · (추수동),10단미만 · (추수동),10단이상 · (추반자동,추자동) · (전자수동),10단미만 · (전자수동),10단이상 · (전자자동),10단미만 · (전자자동),10단이상 14단미만 · (전자자동),14단이상 · (전자세척),10단미만 · (전자세척),10단이상 - 광센서 ○ 형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수동 · 드반자 · 드자동 · 로반자 · 전자 ○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0 4,800 1,600 1,900 3,500 3,200 4,800 2,100 2,600 3,500 6,300 4,900 5,100 6,500 5,300 7,400 11,000 5,600 7,400 3,000 1,650 1,950 2,800 3,800 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50 4,320 1,440 1,710 3,150 2,880 4,320 1,890 2,340 3,150 5,670 4,410 4,590 5,850 4,770 6,660 9,900 5,040 6,660 2,700 1,485 1,750 2,520 3,420 3,51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18	농산물선별기	자유화	○ 마늘 ○ 콩	1,900 3,600	1,710 3,240	27
19	농산물세척기	자유화	○ 브러쉬, 세척통 회전식	1,900	1,330	1
20	농용고압세척기	자유화	○ 엔진, 10마력미만 ○ 엔진, 10마력미만~20미만 ○ 엔진, 20마력이상 ○ 모터구동	2,100 3,080 4,950 1,485	1,470 2,150 3,460 1,030	4
21	농용공기교반기	검정사행	○ 전규격	3,700	2,590	1
22	농용굴삭기 (자체중량 1톤미만)	검정 안전검정병행	○ 버킷산적용량 0.019m ³ 미만 ○ 버킷산적용량 0.019m ³ 이상	8,500 13,630	5,950 9,540	2
23	농용난방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보일러는 성능시험)	○ 경유온풍형 - 30천kcal/h미만 - 30천kcal/h이상 60천kcal/h미만 - 60천kcal/h이상 100천kcal/h미만 - 100천kcal/h이상 150천kcal/h미만 - 150천kcal/h이상 200천kcal/h미만 - 200천kcal/h이상 300천kcal/h미만 - 300천kcal/h이상 ○ 중유온풍형 - 200천kcal/h미만 - 200천kcal/h이상 300천kcal/h미만 - 300천kcal/h이상 ○ 연탄온풍형 - 50,000kcal/h미만 - 50,000kcal/h이상 ○ 전기온풍형 - 100천kcal/h미만 ○ 경유보일러형 - 입형 - 횡형, 160천kcal/h미만 - 횡형, 160천kcal/h이상 ○ 석탄,연탄,코크스보일러형 - 60천kcal/h미만 - 60천~100kcal/h미만 - 100천~150kcal/h미만 - 150천kcal/h이상~300천kcal/h미만 - 300천kcal/h이상 ○ 중유보일러형(500천kcal/h) - 500천kcal/h이상 ○ 전기보일러형 - 50천kcal/h미만	1,350 1,900 2,830 3,760 4,630 5,900 8,700 7,000 8,400 10,600 4,000 7,900 8,400 1,280 3,300 3,600 3,000 7,500 6,000 7,500 15,900 9,900 8,600	940 1,330 1,980 2,630 3,240 4,130 6,090 4,900 5,880 7,420 2,800 5,530 6,720 890 2,310 2,520 2,100 5,250 4,200 5,250 11,130 6,930 6,880	24
24	농용동력운반차	형식검사 (승용 자주형), 검정(기타 안전검정 병행)	○ 보행형 - 0.2톤이상 - 전동기 ○ 승용형 - 2륜구동방식 - 4륜구동방식 - 승용겸용형	2,600 1,560 3,800 5,000	1,820 1,090 2,660 3,500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 1톤미만 · 1톤이상 - 전동기	7,245 10,400 3,500	5,070 7,280 2,450	7
25	농용로우더 (자체중량 2톤미만)	검정 (자주형 안전검정 병행)	○ 무한궤도식 - 버킷산적 0.015m ³ 미만 ○ 바퀴식 - 버킷산적 0.015m ³ 미만 - 버킷산적 0.015m ³ 이상 0.025m ³ 미만 - 버킷산적 0.025m ³ 이상	12,500 10,400 11,900 17,000	8,750 7,280 8,330 11,900	4
26	농용음이온발생기	검정시험				
27	농용잔가지파쇄기	안전검정 (15마력 이상원동기 부착형은 검정)	○ 모터부착형 - 30kw미만공급로올러폭300mm미만 - 30kw미만공급로올러폭300mm이상 - 30kw이상 90kw미만 - 90kw이상 ○ 엔진부착형 - 10마력미만 - 10마력이상 70마력 미만 - 70마력이상 ○ 자주형 - 공급로올러폭300mm미만 - 공급로올러폭300mm이상	1,200 2,050 18,000 45,500 1,650 25,000 45,000 3,150 3,900	840 1,430 12,600 31,850 1,150 17,500 31,500 2,200 2,730	9
28	농용콘베이어	자유화	○ 유압모터용 ○ A/C모터용 ○ DC 모터, AC/DC 겸용 ○ 잎폐상용	1,490 2,592 3,100 4,000	1,040 1,810 2,170 2,800	4
29	농용탄산가스발생기	검정				
30	농용톱밥제조기	안전검정 (15마력 이상원동기 부착형은 검정, 안전 검정병행)	○ 모터 수동공급식 ○ 모터 자동공급식 - 10kw미만 · 1.0m ³ /min미만 · 1.0m ³ /min이상 - 10kw이상 30kw미만 · 4.0m ³ /min미만 · 4.0m ³ /min이상 - 30kw이상 ○ 엔진부착형 - 수동공급식 - 자동공급식 · 10kw미만 · 10kw이상 50kw미만 · 50kw이상	1,500 2,300 5,850 9,800 35,700 2,000 3,200 27,000 45,000	1,350 2,070 5,260 8,820 32,130 1,800 2,880 24,300 40,500	9
31	농용혼합기	자유화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 입 요 건	지 원 규 격	기 준 금 액	지 원 한 도 액	비 고
32	농용 환풍기	자유화	○ 열회수 및 열교환식형 - 토출량 20m ³ /min 미만 - 토출량 20m ³ /min 이상	1,500 5,290	1,050 3,700	2
33	다목적관리작업차 (승용형제외)	안전검정				
34	동력배토기	안전검정				
35	동력상토조제기	자유화	○ 일반형 ○ 콘베어부착형 - 20톤/h 미만 - 20톤/h 이상	1,250 3,300 7,800	870 2,310 5,460	3
36	동력수확기	검정 (배부, 견 착형제외)	○ 진동배부, 견착형 ○ 근채류 ○ 엽채류	1,250	1,120	1
37	동력액상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승용자주형 - 1,000 l 이상 ○ 운반결용 - 1,000 l 이상 1,500 l 미만 - 1,500 l 이상 2,000 l 미만 - 2,000 l 이상	19,500 19,500 22,800 29,800	17,550 17,550 20,520 26,820	4
38	동력연무기	자유화	○ 80 l /h 이상(고온식) ○ 90 l /h 이상(고온배부, 수레고정식) ○ 상온고정식 ○ 상온원심이동식 ○ 상온회전식	1,250 1,560 3,200 5,000 4,100	1,120 1,400 2,880 4,500 3,690	5
39	동력예취기	안전검정	○ 사료작물용 ○ 예도형	3,200 1,225	2,880 1,100	2
40	동력이식기	형식검사 (승용형 검정(기타 안전검정병행	○ 채소, 보행형 ○ 양파, 보행형	2,780 21,300	2,500 19,170	2
41	동력제초기	검정 (승용형 안전검정병행	○ 보행자주형 ○ 승용자주형	2,500 3,990	1,750 2,790	2
42	동력중경제초기	안전검정	○ 보행, 중앙구동식 ○ 전기식, 측면구동식	1,100 2,190	770 1,530	2
43	동력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17,400	15,660	1
44	동력파종기	자유화	○ 씨앗용(소종자) - 4조~5조 - 8조 ○ 마늘용 - 4조	1,600 2,000 4,300	1,440 1,800 3,870	3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 종 명	진입 요건	지 원 규 격	기준 금액	지 원 한 도 액	비 고
45	마늘줄기절단기	안전검정	○ 정치형 - 모터, 6조미만 - 모터, 6조이상 - 선별장치포함 ○ 자주형 - 2조	1,000 1,600 1,600 4,300	700 1,120 1,120 3,440	4
46	마늘쪽분리기	자유화	○ 원추원통형 ○ 로울러압착형 ○ 벨트압착형	1,970 3,800 9,500	1,370 2,660 6,650	3
47	무인자동방제기 (자주형동력분무기)	검정	○ 열선유도식 ○ 유도케이블식(과수용) ○ 고정경로주행식	5,280 7,800	4,750 7,020	2
48	버섯배지살균기	자유화	○ 버너부착형증기소독식	2,850	1,990	1
49	버섯배지탈면기	자유화	○ 전규격	1,000	700	1
50	버섯벗짚과쇄기	자유화	○ 모터 5kw 미만 ○ 모터 5kw 이상	1,400 5,500	980 3,850	2
51	버섯동력천공접종기	자유화	○ 자 동 ○ 반자동	16,350 8,000	11,440 7,200	2
52	버섯종균분쇄기	자유화	○ 반자동	1,050	730	1
53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자유화	○ 300g~500g/회	73,000	51,100	1
54	벼직파기(전용형)	검정 (승용형 안전검정병행)	○ 보행6조 ○ 승용6조 ○ 승용8조	1,730 5,828 7,200	1,380 4,660 5,760	3
55	벼품위자동판정기	자유화	○ 200g~500g/회(탈망정선식)	33,000	23,100	1
56	범씨밭아기	자유화	○ 전규격	1,100	770	1
57	사료배합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 사료배합통10m ³ 미만 ○ 사료배합통10m ³ 이상	2,300 28,454	2,070 25,600	2
58	스피드스프레이어	형식검사 (승용자주형 검정(승용 자주형 제외) 안전검정 병행)	○ 자주(보행)형 - 약액탱크용량 200ℓ 미만 ○ 자주(승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 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 이상 ○ 자주(승용, 안전캡)형 - 약액탱크용량 1000ℓ 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 이상 ○ 자주(승용, 겸용)형 - 약액탱크용량 500ℓ 미만 - 약액탱크용량 500ℓ 이상 ~1,000ℓ미만 - 약액탱크용량 1,000ℓ 이상	6,800 8,500 12,800 17,800 38,000 8,800 15,100 25,200	4,760 5,950 8,960 12,460 26,600 6,160 10,570 17,640	8
58-1	스피드스프레이어용액상 비료살포기	안전검정	○ 일반살포형 - 1,000ℓ 이하	6,000	5,400	1
58-2	스피드스프레이어용퇴비살포기	안전검정	○ 전규격	3,100	2,790	1
59	온습도조절기	검정(시험)	○ 전규격	1,050	730	1
60	온실난방용대체 에너지화기기 (폐타이어소각장치)	검정 및 인 증	○ 노즐소각형 ○ 건류소각형 ○ 폐혼합유형	50,000 9,900	35,000 6,930	2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기종명	진입 요건	지원규격	기준 금액	지원 한도액	비고
61	온실용동력개폐기	자유화				
62	온실용살수기	자유화				
63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안전검정	○ 견인,탑재형	15,000	10,500	1
64	원격조종형동력분무기	검정				
65	육묘용파종기	자유화	○ 산파식	1,600	1,120	1
66	자동관수분배기	자유화	○ 전규격	1,800	1,260	1
67	정전대전방제기	검정	○ 레일이동식 ○ 선로변환레일이동식	7,800 8,400	5,460 5,880	2
68	종자봉입기	자유화	○ 4000m/h미만 ○ 4000m/h이상	11,500	8,050	1
69	주행형동력분무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 100ℓ 미만 ○ 100ℓ ~400ℓ 미만 ○ 400ℓ 이상(승용자주형)	1,800 4,500 9,600	1,260 3,150 6,720	3
70	채소자동접목기	자유화				
71	콩정전기	자유화	○ 전규격	9,900	8,910	1
72	콩탈곡기	자유화	○ 전규격	1,100	990	1
73	탈망기	자유화				
74	토양소독기(전용형)	자유화				
75	하우스환경제어장치	자유화				
76	축분고액분리기	검정	○ 원심식 - 3t/h이상 ○ 진동식 - 10t/h미만 - 10t/h이상 ○ 물리압착식 - 10t/h이상	27,500 5,110 10,190 10,190	19,250 3,570 7,130 7,130	4
77	농용냉난방기	검정	○ 지하수용	3,400	2,380	1
78	동력살문무기	검정	○ 전규격	1,130	790	1
79	승용감자수확기	검정 안전검정병행	○ 전규격	36,000	32,400	1
80	곡물적재함	자유화	○ 트레일러용 - 3.0톤미만 - 3.0톤이상	1,600 1,850	1,120 1,290	2

- 주) 1. 온실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는 검정결과와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기종에 한하여 공급하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시설 사용(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2. 동력연무기는 시설원예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
3. 농용보일러는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의 “보일러 성능 시험검사”를 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보일러 성능시험검사는 제조검사, 성능검사, 대기오염검사(유류용), 안전성검사(전기용)를 말함

[별표 2]

중고농기계 용자지원 기준표

1. 농용트랙터

(단위: 만원)

제조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대동	20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1~25	100	125	145	185	210	250	285	320	350	380	415	455	490	540
	26~30	150	190	230	285	320	350	390	425	455	485	515	545	585	620
	31~35	200	240	290	330	370	420	460	510	560	610	660	710	760	810
	36~40	250	290	330	370	415	465	520	560	615	670	725	765	815	870
	41~45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80	990	1,140
	46~50	350	390	440	480	530	570	640	700	760	810	860	910	1,040	1,200
	51~55	400	430	460	490	540	610	670	730	790	900	1,050	1,150	1,300	1,550
	56~60	450	510	580	650	730	800	870	940	1,010	1,150	1,350	1,550	1,750	1,900
	61~70	500	580	660	720	800	880	960	1,040	1,120	1,350	1,600	1,800	2,150	2,400
	71~80	600	680	780	890	990	1,090	1,120	1,220	1,320	1,510	1,700	1,970	2,250	2,500
	81~90				900	1,050	1,190	1,270	1,470	1,650	1,850	2,000	2,150	2,350	2,600
	91~100				950	1,060	1,250	1,440	1,630	1,820	2,010	2,200	2,390	2,580	2,770
101이상				1,000	1,150	1,350	1,550	1,800	2,100	2,400	2,650	3,000	3,300	3,600	
국제	25이하	100	11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26~30	100	125	145	170	195	220	245	275	310	350	390	430	490	56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365	410	465	540	610	680
	36~4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65	525	590	645	710	800	910
	41~45	170	210	270	320	370	430	500	580	660	750	840	910	990	1,080
	46~50	200	245	310	365	410	480	580	670	770	890	1,000	1,110	1,250	1,450
	51~55	250	310	375	425	495	575	680	790	900	1,050	1,200	1,350	1,500	1,650
	56~60	350	440	540	640	740	840	940	1,040	1,140	1,240	1,400	1,650	1,850	2,100
	61~70	380	480	570	670	770	890	980	1,100	1,250	1,400	1,550	1,800	2,050	2,300
	71~80	650	700	750	880	1,000	1,300	1,550	1,750	1,950	2,100	2,300	2,500	2,700	2,900
	81~90				900	1,100	1,350	1,750	2,000	2,200	2,450	2,650	2,900	3,150	3,400
	91~100				950	1,150	1,400	1,800	2,050	2,200	2,500	2,700	2,950	3,200	3,500
	101이상				1,200	1,4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3,500	3,750	4,000

제조 회사	규격 (마력)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동양	21~ 25	100	125	145	165	185	205	225	245	275	300	330	365	400	440
	26~30	100	130	160	190	220	250	285	310	335	360	380	420	450	490
	31~35	100	140	160	200	230	260	300	330	370	410	460	510	570	630
	36~4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5	520	590	680	780	880	990
	41~45	150	180	210	260	315	365	425	535	635	735	840	950	1,050	1,150
	46~50	200	250	315	425	525	630	730	830	930	1,050	1,150	1,250	1,350	1,450
	51~55	250	315	420	530	600	690	780	880	980	1,080	1,180	1,280	1,390	1,550
	56~70	300	400	490	590	690	790	900	1,050	1,180	1,280	1,380	1,500	1,750	1,900
	71~80			450	590	690	790	900	1,050	1,200	1,400	1,600	1,850	2,100	2,300
	81~90			450	500	580	680	800	950	1,120	1,400	1,600	1,900	2,200	2,500
	91~100			500	550	670	770	870	970	1,150	1,450	1,900	2,350	2,700	3,150
	101이상			600	700	850	1,000	1,300	1,650	2,100	2,350	2,700	3,100	3,500	3,900
LG	25이하	100	110	125	140	155	180	195	220	255	285	310	350	385	420
	26~30	100	125	135	150	175	200	220	250	290	330	360	400	440	500
	31~35	100	135	170	195	225	255	285	315	400	450	500	570	650	780
	36~40	100	150	195	235	265	305	355	405	470	570	670	770	880	980
	41~45	100	195	230	265	305	355	450	550	650	750	850	950	1,050	1,200
	46~50	100	130	150				450	550	650	750	850	950	1,100	1,300
	51~55	400	450	500	550	620	700	780	880	900	980	1,080	1,200	1,400	1,600
	56~70	400	450	550	650	780	880	980	1,080	1,200	1,320	1,440	1,550	1,670	1,700
	71~80	400	480	620	720	900	980	1,000	1,200	1,320	1,450	1,550	1,700	1,900	2,100
	81~90							1,000	1,100	1,250	1,450	1,650	1,850	2,000	2,200
	91~100							1,000	1,200	1,350	1,550	1,900	2,200	2,400	2,600
	101이상							1,000	1,200	1,350	1,600	2,000	2,400	2,800	3,200
아 세 아	40-45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20	650	750	900
	46~50				250	290	330	360	400	460	510	610	710	810	910
	51~6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80	800	920	1,050
	61~70				400	470	570	670	770	900	1,050	1,150	1,250	1,350	1,500
	71~90				500	650	800	950	1,100	1,250	1,300	1,450	1,600	1,850	2,000

※ 1. 상기 용자지원 금액표에 없는 경우는 타회사 동일규격의 최저금액을 적용함.

2. 부속작업기(플라우, 로터베이터, 무논정지기, 로우더, 트레일러) 중고품은 본체에 포함된 것으로 함.

2. 콤바인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대동	3조포대			100	100	120	140	160	180	230	300	400	450	550	750
	4조포대			100	120	160	200	240	280	350	5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50	340	500	640	700	900	1,000	1,200	1,400	1,800
국제	3조포대			100	100	110	120	140	160	190	240	340	410	540	750
	4조포대			100	120	130	150	190	260	340	420	620	720	820	900
	4조산물			150	180	230	340	500	650	750	840	1,000	1,200	1,400	1,800
동양	4조포대			100	100	110	130	180	240	320	400	480	560	650	740
	4조산물			150	180	200	240	320	400	440	480	750	1,100	1,400	1,800
LG	4조포대			100	100	100	100	100	150	200	250	300	350	450	550
	4조산물						250	350	400	450	550	650	850	1,050	1,350

※ 4조이상의 규격은 4조를 적용함.

3. 승용이앙기

(단위: 만원)

제조 회사	규 격	90 년식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대동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국제	6조			100	120	150	180	200	240	280	320	360	400	450	550
동양	6조			100	110	120	150	180	200	220	240	280	300	320	350
LG	6조			50	80	100	120	130	150	180	200	220	240	260	280

※ 6조이상의 규격은 6조를 적용함.

4. 기타 기종

(단위: %)

년 식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기준율	8	12	21	25	27	30	33	36	43	50

- 주』 1. 농용트랙터, 콤파인, 승용이앙기의 용자지원 한도액은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 예) 35마력 트랙터(국제, '95년식)을 구입한 경우
 ☞ 342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307만원) 이내 용자
2. 기타기종의 용자지원 한도액은 지원기준율에 최초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90% 이내로 하되, 1만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 연식 구분은 농업인이 구입한 일자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지원 일자)를 기준으로 구분함
- '94. 1. 1일부터 '94. 12. 31일까지 구입한 농기계는 '94년식으로 분류
- 예) 20마력 승용관리기(아세아, '99년식)를 구입한 경우
 ☞ 구입가격 900만원 × 34% = 306만원이므로, 306만원을 기준금액으로 90% (275만원)이내 용자
3. 기대별 중고농기계 거래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농기계와 수입 중고농기계는 용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기준표(율)에 기재된 연식보다 더 오래 사용하였으면서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오래된 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90% 이내 용자
- 예) '88년식 19마력 트랙터(대동)의 거래가격이 11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90%(90만원) 이내 용자
5. 기준표(율)은 중고농기계 실거래 가격 추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별표 3]

신기술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신기술농업기계(신규 공급일로 부터 2년이내)

[별표 4]

밭작물·축산·친환경농업·에너지절감형농기계

○ 주요 농작업단계중 기계화 촉진이 필요한 분야

분 야		지원대상 농작업
밭작물전용 농기계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식량작물(벼 제외)	정식, 육묘·파종, 수확, 건조, 선별 포장, 결속작업용 농기계
축산전용 농기계	조사료 생산, 사료급여, 축사관리	파종, 수확, 집초, 결속, 랩핑, 절단 배합, 급여, 축사방제용 농기계
친환경농기계	액상비료살포기, 톱밥제조기, 퇴비살포기, 전기온풍형·전기 보일러형 농용난방기, 동력이앙기용 축조시비기, 멀칭용승용이앙기	
에너지절감형 농기계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	

※ 밭작물전용 농기계중 기계화가 상당수준에 도달된 경운·정지, 방제전용 농기계와 벼
농사 겸용, 시설 등에 장착·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기계는 대상에서 제외

※ 배기열회수장치부착난방기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정시험성적서에
표기된것에 한함.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 적용여부 (○,×)	비 고
						계	국고용자	농협용자	자부담		
						(100%)	()	()	()		농업기계가격집에 기재된 금액 미만으로 거래한 경우는 그 사유를 가격집의 금액과 함께 기재
						(100%)	()	()	()		
						(1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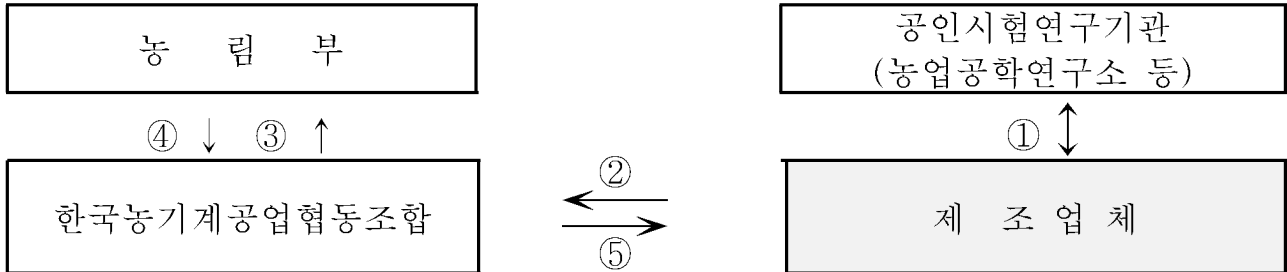
(작성요령)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위·수탁판매시는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은행지로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 (위·수탁판매시는 농민이 생산업체에 지불한 계좌입금증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 * 구입대상농기계(신품) 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농기계 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 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농기계의 기종명, 제조 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중고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은 별도작성)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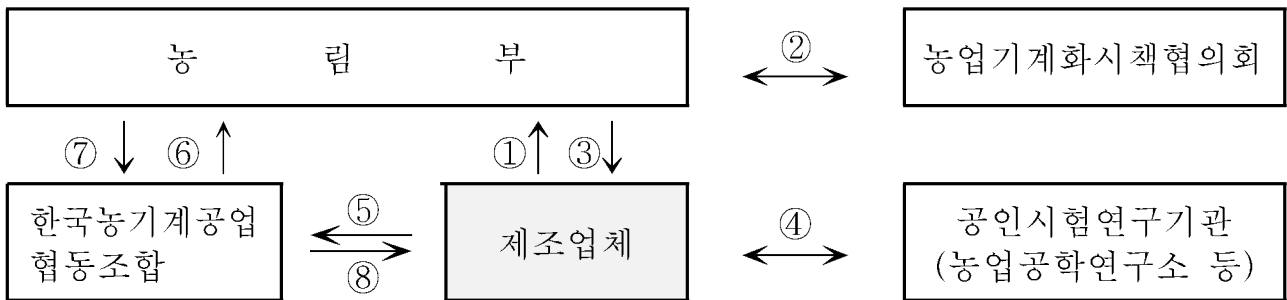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진입절차

<정부지원대상 기종중 신규 형식(모델) 진입>



- ① 형식검사 및 검정신청 및 검사(검정)성적서 발급(자유진입기종은 불필요)
- ② 정부지원대상농기계 형식(모델)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 ③ 신청내용 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기준금액·지원한도액 산정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협의(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첨부)
- ④ 기준금액·용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 ⑤ 정부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새로운 기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



- ①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신청 신청(신청서 및 설명서, 카달로그,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 ② 신청내용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및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 - 지원대상 농기계 해당 여부, 형식검사 및 검정(시험) 평가 요건 등
- ③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해당 여부 및 진입요건 통보
- ④ 형식검사 및 검정신청 및 검사(검정)성적서 발급
- ⑤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신청(검사·검정(시험)성적서 및 가격 등에 관한 자료 첨부)
- ⑥ 신청내용 검토(필요시 확인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기준금액·지원한도액 산정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협의(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첨부)
- ⑦ 기준금액·용자한도액 및 정부지원대상 형식(모델) 진입 결정 통보
- ⑧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결과 통보(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

1. 농용트랙터(기존)
2. 안전캡 및 안전프레임(신규)
3. 농용트랙터용 결속기(기존)
4. 농용트랙터용 결속벧집절단기(신규)
5. 농용트랙터용 논두렁조성기(기존)
6. 농용트랙터용 랩피복기(신규)
7. 농용트랙터용 모우어(기존)
8. 농용트랙터용 볍스프레이어(신규)
9. 농용트랙터용 사료배합기(신규)
10. 농용트랙터용 사료작물수확기(기존)
11. 농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기존)
12. 농용트랙터용 액상비료살포기(기존)
13. 농용트랙터용 잔가지파쇄기(신규)
14. 농용트랙터용 주행형분무기(신규)
15. 농용트랙터용 톱밥제조기(신규)
16. 농용트랙터용 트레일러(기존)
17. 농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신규)
18. 보행형동력경운기(기존)
19. 보행형동력경운기용 마늘줄기절단기(신규)
20.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사료배합기(신규)
21.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신규)
22. 보행형동력경운기용 잔가지파쇄기(신규)
23.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톱밥제조기(신규)
24. 보행형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기존)
25. 승용경운기(신규)
26. 승용경운기용 트레일러(신규)
27. 승용이앙기(기존)
28. 바인더(기존)
29. 자탈형 콤바인(기존)
30. 보통형 콤바인(기존)
31. 곡물건조기(기존)
32. 보행형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신규)
33.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신규)
34. 승용관리기(기존)
35. 승용관리기용 볍스프레이어(신규)
36.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신규)
37. 승용관리기용 트레일러(신규)
38. 농산물건조기(기존)
39. 농용굴삭기(자체중량 1톤미만)(기존)
40. 농용난방기(기존)
41. 농용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 및 기타)(기존)
42. 농용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기존)
43. 농용잔가지파쇄기(기존)
44. 농용톱밥제조기(기존)
45. 다목적관리작업차(기존)
46. 동력배토기(신규)
47. 동력액상비료살포기(신규)
48. 동력예취기(기존)
49. 동력이식기(승용 및 기타)(기존)
50. 동력제초기(기존)
51. 동력중경제초기(신규)
52. 동력퇴비살포기(기존)
53. 마늘줄기절단기(신규)
54. 승용감자수확기(기존)
55. 벼직파기(전용형)(기존)
56. 사료배합기(신규)
57. 스피드스프레이어(기존)
58.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액상비료살포기(신규)
59. 스피드스프레이어용 퇴비살포기(신규)
60.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신규)
61. 주행형동력분무기(신규)

[별지 1호서식]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 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농기계 가격			구입 희망일
	사업자번호				계	용자금	자부담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생산업체가 직접공급하는 경우는 농기계 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의 보증번호 : , 붙임사본 참조)를 공급하고 공급후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업기계화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공급농협, 생산업체 ○○○ (인)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용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기종명	제회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농기계 가격(천원)			
						계	용자금		자부담
							국고	농협	
부속 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용자금 수령을 다음 피 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 급 농 협 :

조합장 (인)

인수년월일 200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 5호서식]

농기계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차 주 (성명, 주소)	용자신청기종		구 입 금 액 (천원)			처 리		
			기종명 (수량)	업체명 (공급자명)	계	용자		자부담	일자	내용
						국고	농협			

농기계 공급상황 보고

1.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가. 재원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농특회계자금 재정자금 차관회전자금 국민투자자금 농협자금 등						
계						

나. 용도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B)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 농기계구입자금 - 중고농기계구입자금 - 임대용농기계구입자금						
○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수리용부품 장비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설치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 농기계생산지원 -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계						

2.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상황

(200 . . . 까지 접수중 발급실적)

가. 총괄

(단위 :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전월까지	당월	누계(B)		B/A	B/C

나.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다.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라.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기종별	금차지원					지원누계				
	수량	계	국고 융자	농협 융자	자담	수량	계	국고 융자	농협 융자	자담

마.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기종별	금차지원				지원누계			
	계	국고 융자	농협 융자	자담	계	국고 융자	농협 융자	자담

[별지 7호서식]

농기계 품질·사후봉사이행보증 발급실적 및 용자지원실적 보고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 및 용자지원실적

(단위 : 대, 천원)

기종별	제 조 업체명	사후봉사 이행보증 발급실적				용자지원실적				(A)-(B)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수량(A)	금액	수량	금액	수량(B)	금액	수량	금액	

기종별 사후봉사이행보증실적과 용자지원실적 대비분석

※ 차이가 있을 경우 분석

[별지 8호서식]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신규형식(모델)진입 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업기계자재과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 합격일자	
				생산자 가 격	대 농 민 판 매 가 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p>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신규형식)로 진입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공급업체명 : 대 표 자 :</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붙임 : ① 부품리스트, 부품분해도를 포함한 부품도면, 사용설명서 각 1부 ② 전·후·좌·우 주요부위 사진과 제품안내서(품질보증서 포함) 및 카달로그 각 1부 ③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④ 자유진입기종은 자체시험성적서(농업공학연구소의 농업기계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정서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존지원기종 대비 기능추가(대비가격 초과)기종은 기능추가설명서 작성 제출</p>								

- * 1. '부속작업기류'는 "구분"란에 형식 또는 적용 마력 기재
- 2. '구분'란에는 '농업기계가격'집 참조(형식 또는 트랙터·경운기 부속작업기는 본체 적용마력 명시) 기재

[별지 9호서식]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선정신청서

문서번호 :

참 조 : 농업기계자재과

공급업체	상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HP)			
				F A X			
기종명	규격	구 분	형식명	가격(천원)		검사(검정 합격번호)	검사(검정 합격일자)
				생산자 가 격	대 농 민 판 매 가 격		
기종특성 (구조 및 특징)							
<p>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기계구입지원』에 의거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공급업체명 : 대 표 자 :</p> <p style="text-align: left;">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붙임 : ① 총조립도면, 주요부품 설계도면,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각 1부 ② 전·후·좌·우 주요부위 사진 및 카달로그 각 1부 ③ 공인기관의 인증서(검사·검정성적서 또는 승인·인정·보증서 등 해당 서류만 첨부) ④ 기타자료(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 심의시 신청기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p>							

[별지 10호서식]

농기계 모델별 실거래가격,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대 , 백만원)

기종명	규격 및 모델	농협			대리점			계		
		실거래 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 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실거래 가격	판매 대수	판매액

- ※ 1. 작성대상 기종 : 주요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이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바인더, 과일선별기),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 2. 작업기등을 본체와 동시 구입시, 각각 별개의 대수로 함.
- 3. 실거래가격은 평균치로 함.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예시)

1. 중고농기계의 표시

농기계명	제조업체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수량	금액	비고
				대	천원	부속작업기 포함 여부 등 명시
계						

-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자체검사번호 기재
- ※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

2.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3. 대금지불 및 기대인수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200 년 월 일 기대를 인수한다.

구분	금액	지불 일자	지불 방법
계약금(자부담)	금 천원	200 년 월 일	(현금, 기타)
중도금	금 천원	200 년 월 일	(현금, 용자금, 기타)
잔금	금 천원	200 년 월 일	(현금, 용자금, 기타)
계	금 천원		

4.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및 무상수리

① 중고부품 사용 수리여부 (사용 수리함, 사용 안함)

사용 부위	사용 부품명	수량	특기 사항

- ※ 중고부품을 사용 수리한 경우에만 사용부위, 부품명, 수량등을 기재

9	농기계임대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정병학, 공업서기관 박상민)입니다.

1. 목 적

- 대형·고가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소농 중심의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제고를 위하여 농기계를 임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고가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소농 중심의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기존 임작업시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
-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체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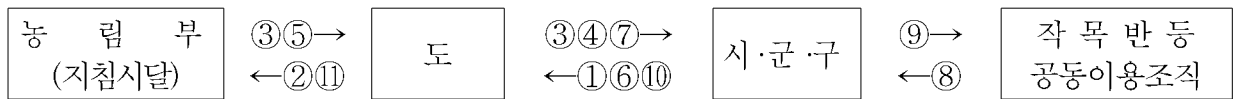
구 분		20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	7	8	8	142
사업비	계	-	1,750	2,000	2,000	42,000
	보 조	-	525	600	1,000	21,000
	지 방 비 자 부 담	-		1,400	1,000	21,000
		-	1,225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배경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필요
- 임대대상 :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지역농협
- 사업량 : 8개소[1개소당 25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주요 기능 :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사업시행체계



- ①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신청
- ② 사업신청
- ③ 사업량배정
- ④ 사업시행계획승인·통보
- ⑤ 보조금 예산통보, 배정, 자금교부
- ⑥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 ⑦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⑧ 농기계 임대 신청 및 임대료납부
- ⑨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 ⑩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 ⑪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보고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8	2,000	1,000	1,000	-	1,000	-

(2) 지원 조건 :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50% 국고보조(지방비 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88)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농산정책과)
- 시·군 : 산업과, 농정과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책임관리한다.
 - 임대농기계구입, 임대,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되, 임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임대농기계는 내구성이 있어 농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지역 실정(규격, 수량, 부속작업기 등)에 맞게 선택한다.
 - * 농기계 본체 외에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갖추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임대농기계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책임관리하되, 구입한 농기계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로 구입하여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 시·군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기계 임대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작목반 등은 임대사업자(시장·군수)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별지 1호서식]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지역여건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운영. 임차인이 장기 임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여야 함
 - 단기임대 : 1년미만, 장기임대 : 1년이상
- 임대사업자는 임대대상기준에 적합한 작목반 등의 신청순위, 작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를 임대한다.
- 농기계를 임차한 작목반 등은 부녀·고령영세소농가 및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임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작업을 실시해야함.
 - * 고령농가 : 65세이상, 영세소농가 : 경지면적 1.3ha이하

○ 임대료

-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임작업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납입방법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 임대료적립금을 통해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적정임대료 산정.
- 임대료 결정은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받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인건비 또는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임대료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6. 기타 및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을 통해 지도감독한다.
- 임대사업자는 농기계임대시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한다.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시장·군수)는 임대차계약대장,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 대장(별지 제1호~제5호서식)을 비치·기록한다.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별표 4]에 정한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용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다. 보고사항

- 도지사는 각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농림부장관에 제출한다.
- 추진실적보고
 -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함께 사업추진 실적[별표 2]을 '04. 7.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검정·정산보고
 - 도지사는 '04. 12. 20까지 사업추진실적[별표2] 및 보조금 검정·정산결과[별표3]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7. 2006년도 사업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05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신청기한 : 2006년 2월 20일

8.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 모델
- 별표 2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별표 3 : 사업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별표 4 :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나.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 별지 제2호서식 :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 임작업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임대료수납대장

[별표 1]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 모델

구 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임대농기계 구 입	- 트랙터: 6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 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 트랙터: 7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 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 트랙터: 80마력이하 - 콤바인: 4조이하 - 이앙기: 6조이하 - 지역실정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등 ※ 어느 한 기종을 구입 하지 않고 가능한한 여러 기종을 골고루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 농기계관리를 위해서 1년단위로 임대 후 재 임대 ※ 개인 사유화 금지 및 관리체계 유지(반납시 세차 및 청소 확인후 보관)		
임대료 산정	대체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여 임대료 책정 ※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시에는 임대료 수입금 또는 자체예산 으로 대체농기계를 구입해야 함		

[별표 2]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및 실적

○ 총괄

계 획 (A)		실 적 (B)		계획대비 실 적 (B/A)	사 업 비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국고보조	지방비
			천원	%		

2. 사업비 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 조	지 방 비
계 획(A)	개소	천원		
집 행 액(B)				
비 율(B/A)				

3. 농작업 실적

작 업 기 종		농 작 업		
기종명	수량	임작업		자가면적(평)
		면적(평)	농가수	

4. 사업평가(의견)

[별표 3]

농기계임대사업 (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100%)	()	()

○ 세부명세

구입기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합 계						

* 도지사는 농기계 구매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징구 및 확인

[별표 4]

주요 농업기계 내용년수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방 제 기	"	
	시 비 파 종 기	"	
	이 식 기 등	"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월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예”트랙터()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별 누계	/	/	/	/	/	/	/	/	/	/	/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10	농기계생산지원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정병학,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1. 목 적

- 계절별 사용 농기계의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 보급을 촉진코자 함.
-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국산기자재의 생산 보급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을 도모하고, 신기술 농기계 개발·보급을 촉진
- 첨단 농업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 촉진으로 우량 농업기자재 생산공급 실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이후
사업량		개소 320	16	16	32	-
사업비	계	백만원 457,600	10,000	10,000	20,000	-
	용자	457,600	10,000	10,000	20,000	-

※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농기계개발·보급 등 우량 농기계 생산 지원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생산지원,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지원 (다만, 부지 구입비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3) 지원규모 및 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농업종합자금지원”편 참조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농기계 생산지원	개소 32	백만원 20,000	20,000	-	20,000	-	-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전화 : 02-3431-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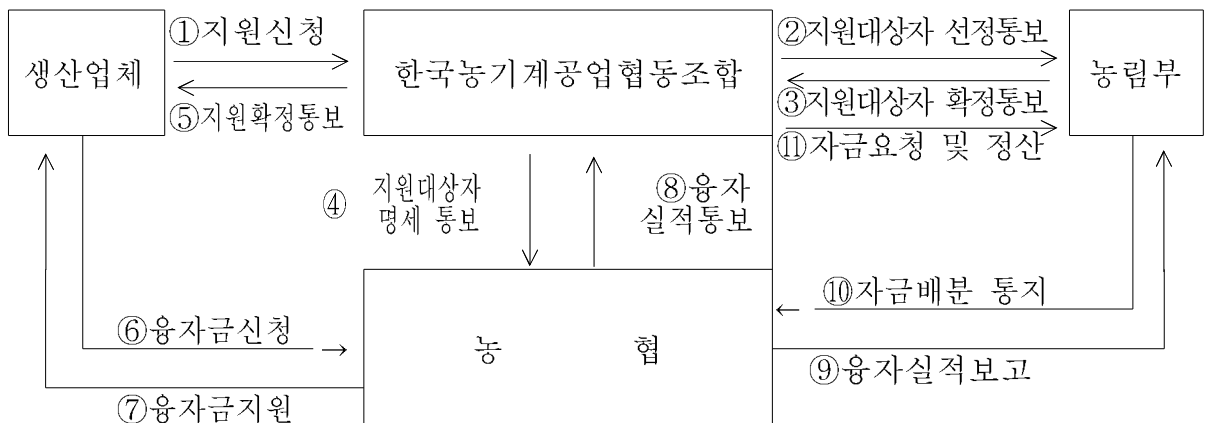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2) 사업시행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조합홈페이지 : www.kamico.co.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별표 1의 「2005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대상 업체별 지원한도액을 산정
- 업체별 지원규모는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당해년도 생산계획, 국산화율, 수출실적 및 가격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함. 다만, 불량 농기계 공급, 사후봉사 소홀 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행위 업체는 감액 조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지원명세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지원하고 사후관리
 - * 농기계 생산업체는 원자재구입 등 농기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조합은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 생산자금 배정에 활용함.

○ 시설농업기자재자금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기한 등을 인터넷 (조합 홈페이지 : www.kamico.co.kr)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선정은 별표1의 「2005 농기계생산지원기준」에 의거 농기계 조합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기계조합에서 정한다.(단, 품질수준 또는 성능이 낮은 것, 산업겸용으로서 주용도가 산업용인 생산업체는 제외함)
-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업체별 지원 금액을 심의선정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별 지원액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 받은 후 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업체별 대출희망 시기 및 대출농협을 파악(신용조사 포함), 자금을 배정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용자지원
 -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업체 및 금액을 농림부로부터 확정·통보받은 즉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동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가능여부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함.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자에게 재배정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3) 사업비 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에서 지원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시설농업기자재 자금지원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별지3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붙임의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별지 3호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사항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용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자금 용자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보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업체별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서식)

나. 신청자격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기계 생산업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용 기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지원대상자 선정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지원기준 : 별표1에 의함.
 - 선정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생산계획, 국산화율 등을 감안하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선정심의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지원기준 : 농림부에서 정한 지원심사기준에 의함

- 우선순위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② 국내제품의 품질이 낮아 향상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품목

③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원가를 상당수준 절감할 수 있는 품목

- 선정절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 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선정

· 농림부에서 지원업체 및 업체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후 농기계조합에 확정통보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1 : 2005 농기계생산지원기준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 서식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지원 신청서

○ 별지 2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별표 1]

2005 농기계생산지원기준

1. 농기계생산지원 예산 : 200억원

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시설농업 기 자 재 생산지원
	소 계	종합형업체	중소형업체	신기술농기계 지정업체	
억원 200 (100%)	180 (90%)	119	51	10	20 (10%)

※ 200억원중 10억원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업체에 별도 지원

2. 지원조건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농업종합자금편 참조

3. 농기계생산지원 배정기준

가.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종합형업체(5대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구분 지원기준
 -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향에 따라 종합형업체와 중소기업체 배정비율을 70% : 30%로 배정
 - 중소기업체는 최근 2년간(2003~2004) 년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에 지원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세부배정기준

항 목	세 부 배 정 기 준		관 련 서 류
	중 합 형 업 체	중 소 형 업 체	
<input type="checkbox"/>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	70.0(100.0)	80.0(100.0)	
최근2년간 평균매출액	10.0(14.3)	15.0(18.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작물용 농기계판매실적 (마늘생산농기계 포함)	10.0(14.3)	17.5(21.9)	농협 전산판매실적
친환경농업기계 판매실적	5.0(7.1)	5.0(6.3)	농협 전산판매실적
국산화율	10.0(14.3)	15.0(18.7)	농업기계화연구소 및 농기계 조합 국산화율 확인서
가격인상	7.5(10.7)	7.5(9.4)	2년간 대농민가격 대비
사후품질관리	7.5(10.7)	7.5(9.4)	농림부, 시·도 민원접수현황
수출실적	10.0(14.3)	12.5(15.6)	수출면장또는 수출신고서 (관세사확인) ※수출품목(기종명)명시분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10.0(14.3)	-	표준부품 사용실태조사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지원액환산비율	-	10.0	
<input type="checkbox"/> 기업건전성	10.0	-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수익성(매출액순이익율)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지원	15.0	5.0	매출액대비 R/D투자비
<input type="checkbox"/> 농기계순회수리봉사 참가업체	5.0	5.0	조합주관 중앙순회수리봉사
합 계	100.0	100.0	

- 주) 1. ()내서는 당해연도 지원환산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2.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대책에 의한 수리용부품 공급 불가능 사례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누적배점에서 경고 회수당 2점 감점

나.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사업비단가 : 기계설치비 3억원이내, 건축비 5억원이내
- 세부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합 계			100	
1. 기업 구조	○ 기업형태	○ 2등급 평가	5	○ 기업형태 (100) - 법인 (100) - 개인 (80)
2. 재무 능력	○ 공장부지 소유여부	2등급 평가	10	○ 공장부지 소유여부 (100) - 70 + 자가소유면적/200×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부지 등 (60)
	○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자기 자본×100	10	○ 유동부채비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 평균비율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 고정장기 적합율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자기 자본+고정 부채)×100	10	○ 고정장기적합율 (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하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을 초과할 경우 : 70-(업체비율/ 동업종평균비율×5) (단, 음수는 0점처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3. 기술 능력	o 사업영위 기간 (관련유사 업종포함)	4등급 평가	5	o 사업영위기간(100) - 7년 이상 (100) - 7년 미만 (80) - 3년 미만 (60)																										
	o 기술인력 보유현황	o 국가기술자격 소지 현황	10	o 기술인력 보유현황(100) - 기술사 및 기능장 : 40/1명 - 기사 및 산업기사 : 30/1명 - 기능사 : 25/1명 - 기능사보 : 15/1명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0점처리																										
	o 기술개발 실적	o 공업소유권 획득 현황 - 절대평가	20	o 공업소유권 획득현황 (단위:점/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30%;">신청제품</th> <th style="width: 30%;">타제품</th> </tr> </thead> <tbody> <tr> <td>- 발명특허 획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출원중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KS,JIS,UL규격 표시 획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실용신안등록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의장등록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형식승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품질관리등급 사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ISO 시리즈</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신기술농기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단,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신청제품	타제품	- 발명특허 획득	30 (출원중10)	10	- KS,JIS,UL규격 표시 획득	30	10	- 실용신안등록필	20	5	- 의장등록필	10	5	- 형식승인	10	3	- 품질관리등급 사정	30	10	- ISO 시리즈	30	10	- 신기술농기계	30
구 분	신청제품	타제품																												
- 발명특허 획득	30 (출원중10)	10																												
- KS,JIS,UL규격 표시 획득	30	10																												
- 실용신안등록필	20	5																												
- 의장등록필	10	5																												
- 형식승인	10	3																												
- 품질관리등급 사정	30	10																												
- ISO 시리즈	30	10																												
- 신기술농기계	30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가중치	비 고
4. 경영 능력	o 기업의 성장성	o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100-100	10	o 총자산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 전기말매출액) ×100-100	10	o 매출액 증가율(100)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평가점수가 음수일때와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0점 처리) ※ 전년대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70점 처리
	o 수익성 o 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총자본×100	10	o 수익성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이상일 경우 : 70+(업체비율/동업종평균비율×10) (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체평가비율이 동업종평균비율 미만일 경우 : 70-(동업종평균비율/업체비율×5) (단,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점처리)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신청서

생산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FAX	
2개년매출 실적 (백만원)	년도	1/4	2/4	3/4	4/4	합계	
	'03						
	'04						
	평균						
'04농기계 수출실적 (부품포함)	기종명						
	수량(대)						
	금액 (천US \$)						
<p>위와 같이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업체명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대표자 : (인)</p>							
<p>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p>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세무서장 확인) 각1부 2. 농업공학연구소장 확인 국산화율 확인서 사본 각1부 3. 수출신고서 사본 각1부 						

[별지 3호 서식]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천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100%)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사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 ~~~~~~							
○○○○	계 ○○○○ ○○○○ ·						
합 계							

< 작성요령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11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과장 정병학, 사무관 이범섭)입니다.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

**1. 목 적**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확대
  - 필요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마을공동·사후봉사업소·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기 설치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사 업 량		6,735	162	80	80	674
사 업 비	계	328,736	1,879	928	928	7,818
	보 조	93,788	-	-	-	-
	융 자	74,766	1,315	650	650	5,472
	지방비	93,787	-	-	-	-
자부담		66,395	564	278	278	2,346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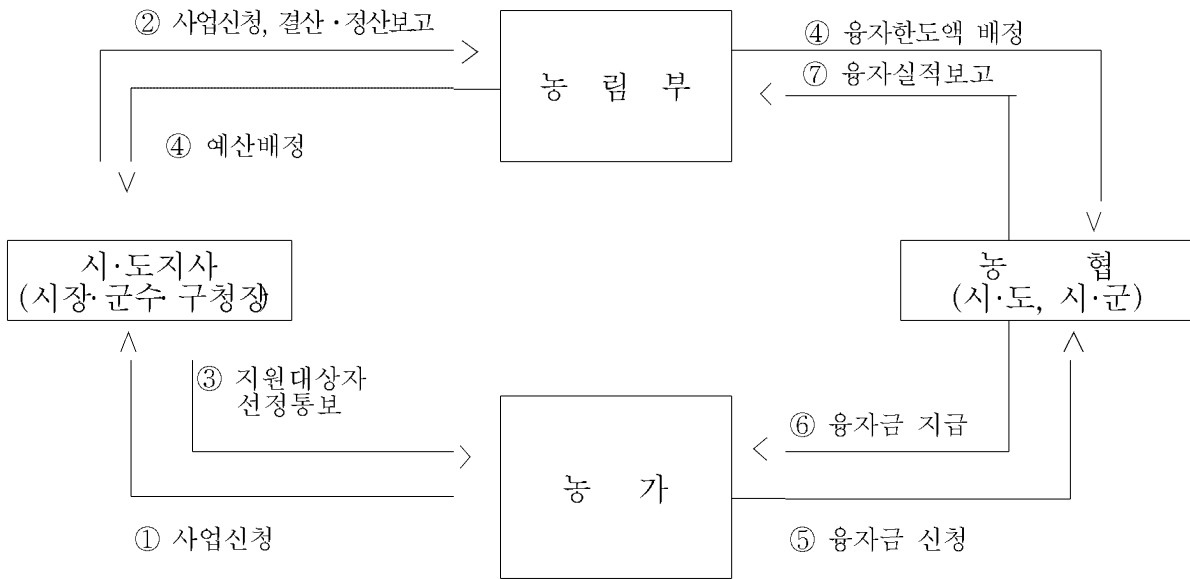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보유 농가
  - 마을공동 및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단,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마을공동·사후봉사업소·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에 대한 보관창고 설치 지원 가능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마을내 5호 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농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 시·군·구 단위 및 읍·면·동 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대형·중형·소형농기계 사후봉사업소)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02년~'03년동안 지원 설치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지원규모
  -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 10~3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 50~2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
- 지원조건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 사업비가 사업단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액(융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개소당 사업단가 >

구 분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일반농가농기계보관창고	평	천원				
	20	11,600	-	-	8,120	3,480
		100%	-	-	70	30
사후봉사업소 및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농기계보관창고	평	천원				
	100	58,000	-	-	40,600	17,400
		100%	-	-	70	30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평	천원				
	60	35,000	-	-	24,500	10,500
		100%	-	-	70	30

○ 사업시행체계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개소 80	백만원 928	650	-	650	-	278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은 별표 1과 같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양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2)
- 시·도 : 농산(농정·농산유통)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 시·군·구 : 산업(농산·농정)과,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다. 사업시행

-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용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농업기술지원과)에 배정 요구

-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농림부(농업기술지원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
-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용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로부터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즉시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원장사본 등 정산관련 서류를 월 1회이상 시·군에 통지
  - ※ 시·군에서는 대출취급기관의 실제 대출금(국고용자)을 자부담금과 함께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선정절차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희망자는 설치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부지 확보계획서, 자금소요액 및 농기계 보관계획 등을 명시한 창고설치 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농정심의회(자치구는 자체심의회기구)의 심의를 거쳐 2005.1.1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설치규모 및 지원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심의시 설치지원신청서, 부지확보가능성, 보관대상 농기계 등을 감안
  - 시·도지사는 보관창고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2005.2.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의 확정통보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확정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토록 조치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집행함
  - 사업비 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 4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창고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 행정사항 >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함
  - 사용시기가 지난 이앙기 및 콤팩트는 보관여부를 필히 확인
  - 영농기중 농기계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마을공동 보관창고 내에 비료·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용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건축물)하며,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나. 보고·기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조속히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
- 시·도지사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2호서식)

##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읍·면·동장)

나. 신청자격 : 일반농가(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농기계 보유농가)

다. 신청절차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신청서, 부지확보계획서, 자금소요액 등을 명시한 창고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 부지확보계획서 및 창고설치계획서 각 1부.

마. 지원조건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창고설치계획, 농기계 보관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농림부의 사업량 확정통보에 따라 확정
  - 대형농기계 보유농가로서 마을공동 및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7. 별표 및 별지서식

### 가. 별표

- 별표 1 :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 별표 2 : 사업검정 및 정산서

###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 별지 2호서식(자체가 26-33) :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별표 1]

##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융자	자부담
<b>합 계</b>	80	928,000	649,600	278,400
대 구	1	11,600	8,120	3,480
인 천	2	23,200	16,240	6,960
경 기	6	69,600	48,720	20,880
강 원	4	46,400	32,480	13,920
충 북	3	34,800	24,360	10,440
충 남	4	46,400	32,480	13,920
전 남	35	406,000	284,200	121,800
경 남	25	290,000	203,000	87,000

[별표 2]

##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용자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 ~~~~~~							
○○○○	계 · ·						
합 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 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함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함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검정 및 정산 담당자는 위 세부명세 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 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함
- 법인, 공동이용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함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현황

○ 총괄

개 소 수	설치규모	참 여 농가수	사 업 비		
			계	용 자	자부담
개소	평/동	호	천원		

※ 마을단위에서 동일한 설치자가 100평을 분리하여 설치한 것은 1개소(1동)로 본다.

○ 규모별 설치현황

계	10평형~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60평형	70평형~ 90평형	100평형~ 200평형
동							

2. 설치 추진상황

계 획	미 착 수	착 공	설 치 중	완 공
평/동				

※ 부진사유 별도 기재

3.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용 자	자 부 담
계 획(A)	평/동	천원		
집행액(B)				
비율(B/A)				

※ 일반농가, 마을공동, 사후봉사업소,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로 구분 작성

②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1. 목 적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고장을 줄여 이용율을 증진코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충분한 수리용부품을 확보 공급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 부품관리 전산화지원으로 신속한 수리용 부품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대형정밀 농기계의 수리봉사에 적합한 수리용시설·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신속한 수리봉사 촉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이후
○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 사업량	4,540	242	156	143	639
- 사업비	373,690	26,620	17,157	17,160	68,860
· 용 자	284,838	18,634	12,010	12,012	48,202
· 자부담	88,852	7,986	5,147	5,148	20,658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농림부령 제1482호, '04. 11 시행)으로 사후봉사업소의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규모별로 구분 시행함
 - (개정 전) 종합사후봉사업소,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
 - (개정 후)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 개정전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는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개정후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행규칙 개정 전 지정받은 사후봉사업소 기준

- 지원대상
 - 수리용부품 및 부품관리전산화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시·군 및 읍·면 단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 수리장비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또는 15개 이상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 부품 종합판매점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시·군·구 사후봉사업소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업소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			일 반			
			갑류	을류	병류	갑류	을류	병류	
백만원 1,000 ~2,000	700	400	400	300	200	300	200	100	50

-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중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수준이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소와 동일할 경우 해당 등급의 지원한도까지 지원가능
-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2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시·군 단위 사후봉사업소 및 상설판매장 설치 농협에 한정)

- 수리용 장비

업체 종합사후 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및 농협 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300 백만원	300	200	100

-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수리장비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가능
-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사후봉사업소에는 지게차 및 카고크레인 지원 가능

- 부품관리 전산화

전산화 장비 (시·군 및 읍·면단위 사후봉사업소)	전산화 S/W개발 (제조업체 및 농협부품센터)
50 백만원	250

- ※ 부품관리 전산화는 컴퓨터 및 S/W구입, 부품창고 건축비, 부품상자 및 적재대, 부품 입·출고 기록장치 등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용자

- 용자조건 : 연리 4%,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시행규칙 개정 후 지정받은 사후봉사업소 기준

○ 지원대상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판매점,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 수리장비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 ※ 권역 부품센터는 2개이상의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 계약을 맺은 사후봉사업소를 말함
 - ※ 부품종합판매점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부품구입계약을 맺고 5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와 부품공급계약을 맺은 부품판매점을 말함

- 지원한도
 - 수리용부품

농협부품센터	업체 및 권역 부품센터,부품종합 판매점	대형사후봉사업소	중형사후봉사업소	소형사후봉사업소
백만원 1,000~2,000	700	500	400	200

-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수리용부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2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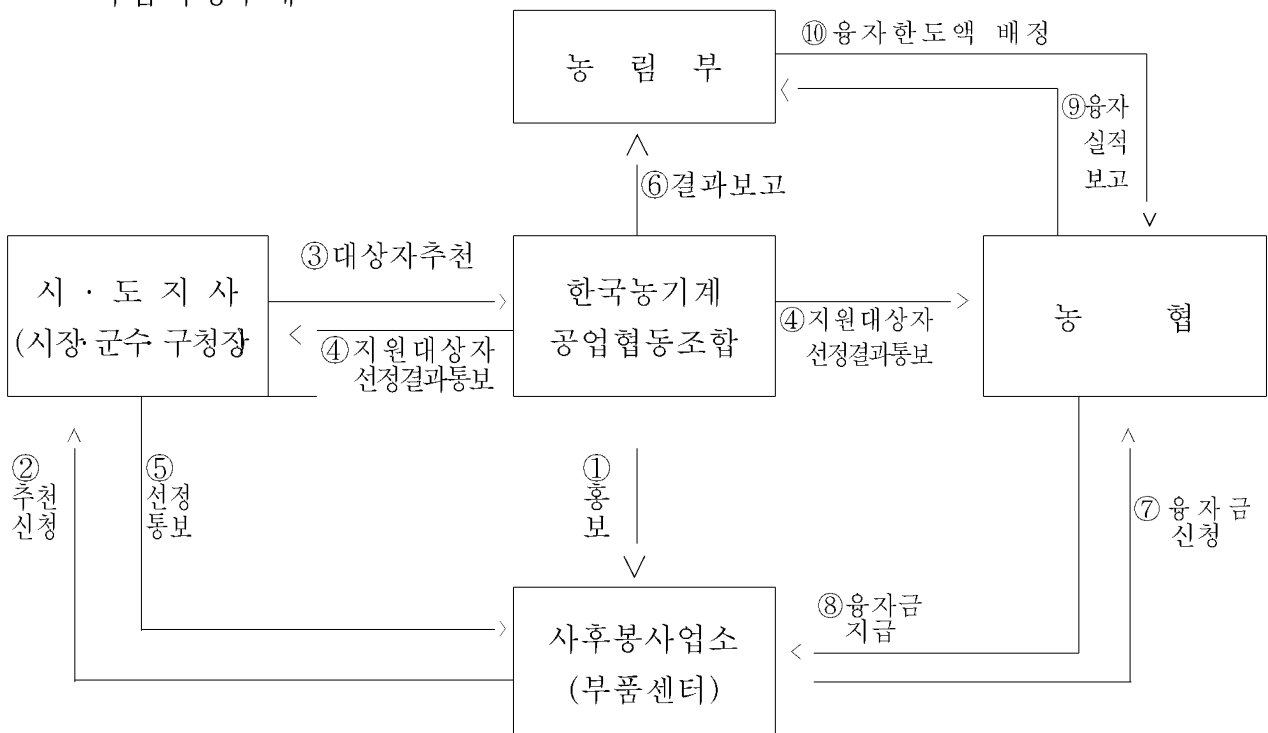
- 수리용 장비

대형 사후봉사업소	중형 사후봉사업소	소형 후봉사업소
400 백만원	300	200

- ※ 수리·정비용 건축비, 농기계운반용 차량 구입비, 수리장비 구입 및 설치비, 공구 구입비 등을 지원 가능
- ※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운영 사후봉사업소에는 지게차 및 카고 크레인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4.0%,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사업시행주체



나. 2005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개소 143	백만원 17,160	12,012	-	12,012	-	5,148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02-500-1791)
- 시·도: 농산(농정·유통)과, 농협 시·도 지역본부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다. 선정절차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에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업체 종합사후봉사업소, 대형사후봉사업소는 시·도지사)은 부품확보현황, 부품·장비확보 및 부품공급계획,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대상자를 2005.1.15일 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농기계조합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2005.2.15일까지 농업기계화 추진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추천기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시 부품관리 전산화계획, 이앙기 및 콤파인에 대한 A/S 및 B/S실적을 반영하여 우대 지원
 - 1개 시·군에서 동일한 제조업체(트랙터, 이앙기, 콤파인 제조업체에 한함)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2개 이상의 사후봉사업소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개 사후봉사업소만 지원
 -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를 선정한 경우는 당해 시·군내에 있는 다른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

○ 국고지원금 배정 및 집행절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용자한도액을 지원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농업기술지원과)에 배정 요구
-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당해월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당해금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 다만, 지원대상자로 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신청액중 배정 안된 금액(부족액)을 다시 신청받지 않아도 됨
- 용자한도액은 매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다음 월에 배분함
 - ※ 농기계조합이사장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신청 받을 때에는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지연하면 정부에 반납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주지시켜 실제의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도한 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하고 대출금액을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통지
 -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국고 용자금을 검정 및 정산서에 기재(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비 집행방법

- 수리용부품·장비확보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부품·장비를 우선 구입(설치)한 후 부품·장비 구입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배정요청서(별지 2호서식)를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 단,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용 부품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생산업체(부품센터)와 사후봉사업소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별 배정금액을 지원대상자 및 농협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배정 통보 받은 자는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신청서(별지 3호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용자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농기계조합이사장이 통보한 지원액 범위내에서 자금 지원하고, 지체없이 검정·정산을 위한 대출현황을 농기계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리봉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누적 총 금액은 대출금액의 125% 해당액, 부가가치세 별도)를 농기계조합이사장에게 제출한다.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 받은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에 대해 부품 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 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표4호 서식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함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
 - 부품보관창고 설치에 따라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 받게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받은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 등을 확인 점검·지도

-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 하여야 하며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기계의 내 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
 - 수리용 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 모든 부품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부품센터, 부품종합판매점)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 소모품
- 도 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기계와 구형모델의 농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 하고 배달차량 운영 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부당대출 사례(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부당공급” 준용)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농협중앙 회장에게 통보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부당거래된 지원자금을 회수조치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대출실적 및 검정·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후봉사업소에 대하여는 차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종합형농기계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대상으로 불량부품 유통여부를 공동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트랙터 및 이앙기는 상반기, 콤바인은 하반기로 구분조사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보고·기타

-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된 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기계조합이사장은 수리용 부품확보 및 공급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농협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 시·도지사 : 업체 종합사후봉사업소, 부품센터 및 부품종합판매점

(2) 신청자격

- 수리용부품 : 부품센터(농협, 제조업체, 권역), 부품종합 판매점, 대형·중형·소형 사후봉사업소(시·군 및 읍·면단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종합농기계 서비스센터
- 수리장비 : 농기계사후봉사업소(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포함),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농협 종합농기계서비스센터

(3) 신청절차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4) 구비서류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1호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수리용부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부품센터와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업소, 신규로 사후봉사업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수리용부품·장비(부품관리 전산화) 확보자금 신규신청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부품공급 및 수리봉사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대형정밀농기계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 참가업소

7. 별표 및 별지서식

가. 별표

- 별표 1 : 사업검정 및 정산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참고)

나. 별지서식

- 별지 1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 요청서
- 별지 3호서식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대출 신청서
- 별지 4호서식(자체 가26-34) :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현황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권역(), 부품종합판매(), 광역(), 농협종합(), 대형(), 중형(), 소형(), 시·군·구단위 : 갑()을()병()류, 읍면동단위(), 농협서비스()		
부품관리전산화 추진 여부	추진 (), 미추진 ()		

2. 자금신청

용 도	계	용자신청액	자 담
수리용부품 ()			
수리용장비 ()			
부품관리 전산화()			
중고농기계부품구입()			

- 위와 같이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자금배정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달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비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 배정요청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사업자의 구분	부품센터(), 권역(), 부품종합판매(), 광역(), 농협종합(), 대형(), 중형(), 소형() 시·군·구단위 : 갑()을()병()류, 읍면동단위(), 농협서비스(),		
부품관리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미추진()	

2. 자금신청

용 도	선 정 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	천원	2005년 월 일	천원	천원
수리용장비 ()		2005년 월 일		
부품관리전산화()				
중고농기계부품구입()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부품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리장비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전산화시설구입확인서(건축완공서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1부.

중고농기계구입확인서(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1부.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대출신청서

1. 신 청 자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존대출잔액	천원
총 자 산	백만원	담보능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자의 구 분	부품센터(), 권역(), 부품종합판매(), 광역(), 농협종합(), 대형(), 중형(), 소형() 시·군·구단위 : 갑() 을() 병() 류, 읍면동단위(), 농협서비스(),		
부품관리 전산화 추진여부	추진 (), 미추진 ()		

2. 자금신청

용 도	선정한도액	배정요청		포기금액
		대출사용시기	배정금액	
수리용부품() 수리용장비() 부품관리전산화() 중고농기계부품구입()	천원	2005년 월 일 2005년 월 일	천원	천원

위 대출금을 수리용부품·장비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대출취급기관명)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현황

1. 지원대상자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 분기		누 계		비 율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B/A)%
계							
○ 수리용부품확보 자금							
○ 수리용장비지원							
○ 부품관리 전산화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도단위, 대형·중형·소형단위, 시·군·구단위, 읍·면·동단위)부품 센터별로 구분 작성

2. 농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수입부품

※ 농기계조합 : 생산업체별 제조공장 및 도단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농 협 : 도 부품센터의 부품 확보공급현황

Ⅲ. 생산 및 유통개선

1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정책과(과장 김현수, 사무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미질 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
- 농가벼 판로를 보장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RPC : Rice Processing Complex)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하고, 경영개선 및 통합 등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RPC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등 인센티브 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비 고
사업량(개소)		325	328	328	328	
사 업 비 (백만원)	용 자	1,085,000	1,090,400	918,400	918,400	
	운영자금	585,000	590,400	590,400	590,400	
	특별자금	500,000	500,000	328,000	328,000	
	*개소당 지원액	3,300	3,300	2,800	2,800	

5. 2005년도 운영자금 지원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91년부터 수확후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관처리하기 위하여 RPC설치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나, RP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확기 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95년부터 농가벼 매입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 지원

(2) 사업기간 : '05.1.1 ~ '05.12.31

(3) 지원대상자

- ① RPC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RPC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미곡종합처리장(RPC)통합사업자(RPC통합시범사업대상자포함)
 - 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다만, 농가 벼 매입실적이 저조한 업체(1천톤 미만)와 RPC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② 전년도 산물벼 수매참여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중 단독운영 건조·저장시설(DSC)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위 RPC통합사업자 및 RPC사업자와는 차등 지원토록 함
 - RPC와 연계되지 않은 단독 DSC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당시 기존 RPC와 연합형태로 지원되었으나, 그후 분리된 DSC는 지원액을 감축조치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구조개선계정), 농협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04년도 벼 매입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등(세부지원계획 별도 통보)
- 지원조건 : 추후 별도통보
- 지원계획 : 9,184억원(운영자금 5,904억원, 특별자금 3,280억원)
 - 자금별, 사업별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결정
 - * '05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단, 기존에 벼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또는 특별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함)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지원규모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28	918,400	918,400	-	918,400	-	-
○ 운영자금		590,400	590,400	-	590,400	-	-
○ 특별자금		328,000	328,000	-	328,000	-	-

* 상기 '05년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02-500-1760~1)
- 농협중앙회 : 양곡부('02-397-6413)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다. 사업시행

- RPC별 운영자금 신청접수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RPC별 운영자금 지원계획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농림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 대출기간 : 2005. 12. 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05년 운영자금은 RPC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배정액을 확정하여 분기별로 배정
- '05년 특별자금은 '04년도 벼매입 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계약재배 계열화 사업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하여 배정
- 인센티브지원: 통합RPC는 추가지원하되, 농가벼 의무매입량은 1.5배이상 적용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업체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이상 농가벼를 의무적으로 당해연도에 매입해야 함,
 - 지원총액의 1.5배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조치
 - 지원총액의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 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이자를 징수하고, 차기지원시 1.5배적용 차액을 차감조치

- 원료권 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원료권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조치하고, 차기지원시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
-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 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사항

-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출장소, 농협 시·군지부 관계자, 민간RPC대표,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
 - 기 능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 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 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지역특산미 생산 활성화
 - 자체매입가격, 건조료 협의 등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부도 RPC의 신규 RPC 인정 절차 및 지원여부

- 시장·군수는 부도RPC가 자구 및 합병·제3자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1년간 정상 가동 후 신규RPC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RPC 적격여부 등을 1차로 검토하여 시·군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관련서류를 첨부제출
 - 시·도지사는 민간자체조성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별표 1참조)에 의한 RPC로 적격여부, 투자의 효율성, 원료수집권역내 RPC의 중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로 즉시 계통 보고
 - * 최소한 1년 이상의 경영실적(제무제표)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경영실적등을 토대로 종합검토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RPC로 인정.
 - 신규RPC로 인정된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여부를 결정
 - 부도RPC(정부지원 위성 DSC포함) 인수사업자가 RPC 재인정을 희망치 않거나 민간자체조성 RPC 정책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성 건조·저장시설(DSC)로 인정. 단, 건조·저장시설(DSC)로 지원 후에는 신규 RPC로 인정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함.
 - 부도RPC를 DSC로 인정할 경우 시설기준은 건조능력 800톤, 저장능력 800톤평창고 100평 이상이어야 하며, 원료권은 1,000ha이상, 산물수매 장비(호퍼스케일, 원료투입구, 체현울 측정기등)를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민간 자체조성 RPC에 대한 정책지원 기준(별표 1참조)의 심사절차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산물수매 전에 RPC(위성시설포함)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체현울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 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 (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나. 보고 등의 조치

□ 대출기관(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
 -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 시 수시 계통보고

□ 사업자 및 시·도

-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별지 제1호서식)비치(보관기간 3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의 기록상황을 수시 확인·점검 실시

- 사업자는 농관원출장소장의 원료벼 매입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 받아 원료벼 매입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말 기준,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조사하여 통보·보고하여야함(농관원출장소→시·군, 지원→시·도, 본원→농림부)

□ 보고사항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서식
○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 지 제4호서식
○ RPC 시설능력 조사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도통보

6. 부실업체 제재

- 산물벼 처리실적이 적은 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축소 내지 중단 또는 자금회수
 - 미곡유통관련 불법·부정업체 또는 산물수매 벼를 임의로 처분한 업체
⇒ 사고의 경중에 따라 1년이상 지원 중단
 - 운영실적이 1년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1년이상 정상가동시까지 지원중단
 - * 1년이상 정상가동 후 RPC로 인정되더라도 1년이상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7. '05년 RPC 경영평가 및 RPC 통합사업 추진 계획

<'05년 RPC 경영평가 실시계획>

가. 목 적

- RPC 운영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운영자)에 대하여 매년마다 전년도 RPC 사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RPC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RPC의 경영 건설화 추진

나. 2005년 경영평가 요령

1)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추후 통보(추후 농림부에서 지정 통보)
- 평가기간 : '05. 1.~'05. 5(5개월)
 - ※ 현지실사를 포함한 기간이며 사정상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2) 평가 절차

- 농림부는 평가계획을 정하여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04.12)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RPC업체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경영평가 신청('05.1월말~2월 중순)
 - 평가기관 및 경영평가조사서(소정 양식)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경영평가신청서 작성요령 등 평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RPC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문서 시행 예정
 - * 경영평가조사서 등 제출자료의 허위·조작 사실이 심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시달
- 평가기관은 RPC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보완 등 조치(업체협조)
- 평가기관은 RPC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실사결과 포함)를 농림부에 제출('05. 5월)
 - 평가기관은 평가관련자료 및 평가결과의 대외유출금지
- 평가기관의 RPC 경영평가 결과를 RPC경영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05. 5월말) : 등급별 차등지원
- 평가기관은 개별 RPC의 평가결과를 업체별로 통보('05. 5월말)
- 농림부는 '05년 운영자금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RPC별로 배정
- ※ 상기 일정은 경영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 결과 활용 등 지원방안

-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
- 평가결과 최하위등급 RPC는 운영자금 지원중단
 - ※ 다만, 통·폐합RPC는 우대지원 함
- 평가결과 우수RPC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05년 RPC통합사업 추진계획>

가.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 통합계획서 내용을 심의하여 대상 여부 결정

나.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통합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해당 RPC) → 1차 심의(농림부) → 2차 심의(RPC 경영개선위원회) → 우대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농림부) → 우대지원 시행(농림부, 농협, 시·도)
- ※ 통합계획서 제출 : 농협RPC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출하고, 민간RPC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제출

다.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사항

- 통합이후 책임경영체제 구축방안(법인전환 등의 구체적 일정 제시)
- 통합이후 구조조정, 가동율 제고방안, 시·군 브랜드 육성계획

- 경영손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 해당조합장의 의지 및 통합대상RPC의 의견
-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지방비 보조지원액 규모
- 지역여건, 인근RPC와의 관계, 1개 시·군 1개RPC원칙 등

라. 통합RPC 우대지원

□ 운영자금(또는 특별자금)

- 통합RPC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우대지원금액을 증액 하되, 통합연도에 따라 차등적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원액×보정 가중치¹⁾) + 우대지원금액²⁾

1) 보정가중치 : 통합RPC 개소수와 동일

2) 우대지원금액 : 통합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구 분	3년간 (‘04~’06)	이후 2년간 (‘07~’08)	‘09년 이후
2개 통합	20억원	15억원	10억원
3개 통합	30	20	15
4개 통합	40	30	20
5개 이상	1개소당 10억씩 증액	1개소당 10억씩 증액	1개소당 10억씩 증액

※ 지원조건 : 무이자(상환기간 1년), 지원자금의 150% 이상의 비매입 의무 부여

- 비RPC조합 지분 참여시 운영자금 2억원 추가 지원
 - 2개 이상 RPC간 통합을 전제로 하며, 최소 2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지원기간 : 3년
 - 통합 당해연도는 우대지원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통합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상기 우대지원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지원
- ※ 통합RPC가 추후 재통합할 경우 해당연도의 우대지원금액만 3년간 지원 (3차례이상 통합할 경우 우대지원 제외)
- 단, 상기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우대지원액이 RPC통합 이전 지원총액 보다 적을 경우 통합이전 지원 총액으로 산정함

□ 시설자금(건조·저장시설)

- 지원자금의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05년 예산요구)
 - 생산자단체(40%→50%)와 일반사업자(30%→40%)의 국고보조비율을 각각 10%p 상향 조정(국회 ‘05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건조·저장시설 지원 개소수 확대('05년 예산요구)

* 2개 RPC통합 : 2개소, 3개 통합 : 3개소, 4개 통합 : 4개소 등

※ 시설자금은 '05년부터 균특회계 예산이므로 해당 시·도의 예산반영 필요

□ 통합RPC의 경영형태

○ 통합후 운영방식은 법인전환을 전제로 함(농협법 개정 이후)

- 농협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내 분사체로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계획서 제출시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우대지원 불가

※ 농협법령 개정 공포 후(효력발생시점) 5개월 이내 법인전환 미이행시, 통합에 따른 우대지원(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금액은 시설자금 용자 대출금리(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할 계획임

□ 지자체 및 농협 등 관련단체 :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기타

○ 통합의 구체적 계획에 따라 우대지원 내용(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 통합계획서 제출 등

○ 상기 다.항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농협RPC : 참여조합장 전체연명의 통합계획서(이사회결의서 포함)를 제출

- 민간RPC : 참여RPC 경영자 전체연명의 통합계약서(공증)를 제출

*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 제출

* 사업을 중도포기시 지원금액 즉시 회수 등 불이익 조치 계획임

<'05년 RPC 경영컨설팅 지원 계획>

가. 지원대상(우선순위) : ① 통합RPC, ② 통합추진 RPC

※ 통합추진 RPC : 참여 조합장(농협) 또는 경영자(민간) 전체 연명의 통합 추진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3천만원 이내(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RPC 경영자와 컨설팅 업체간 계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다. 경영컨설팅 업체는 추후 선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별표1>

민간 자체조성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① 대상RPC 심사기준

<신청 자격요건>

- 정부지원(국고보조 등) 없이 자체부담으로 건조·저장·가공 일관시설을 설치하여 1년 이상 운용중인 자

<시설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원료투입시설은 2개소 이상 설치
 - ※ 원료투입시설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저장능력 각 1,500톤이상(평창고 능력외), 가공능력 20톤/일(8시간 기준) 이상
 - ※ 시설능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자연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단열사일로(50mm이상) 또는 단열된 저온시설을 갖춘 저장시설 800톤 이상
 - ※ 100평 이상의 보관창고 1동 이상(동일 울타리내) 설치. 다만, 총 저장능력이 1,900톤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고품질 쌀 생산시설 : 색채 선별기(3톤/시간당) 1대 이상 설치
- 품질검사 System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제현율 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 자동측정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기계설비기준 :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경제성 제고
- 기타 산물검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7의 “지정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용
 - ※ 주요시설(현미·정미시설, 선별시설,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시설 등)은 최근 3년내 제조회사에서 판매된 제품을 설치한 시설이어야 함(단, 부도RPC의 재인정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운영능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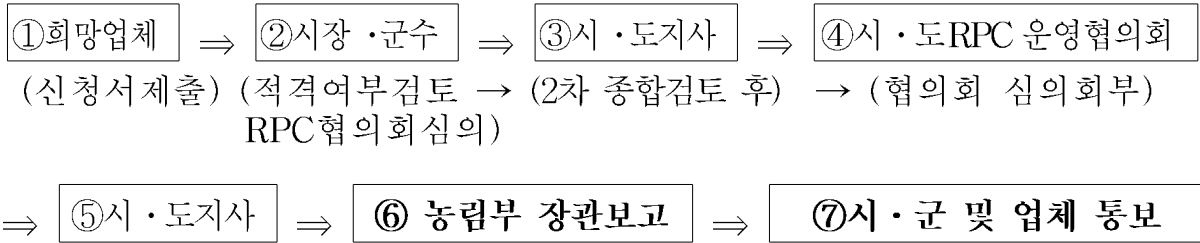
- 건조·저장·가공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 가동실적 판단은 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신고자료에 의함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2,000톤 이상 또는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신고자료) 이상인 업체
- 계약재배를 통해 1,500톤 이상 원료 벼를 확보해야 하고, 판매능력도 인정되는 업체
-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담보분을 제외한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1년간 예치금 평잔으로 확인)

<지역기준>

-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2,000ha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 2,000~3,000ha)
 -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을 종합 검토
 - ※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3,000ha이상의 논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관내 RPC, DSC, 임도정공장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도정시설 과잉지역은 신규RPC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 도정시설 과잉지역(11개 시·군) :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충북 진천·음성, 충남 당진,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영암·함평, 광주시 광산구
 - 동일 읍·면 2개 RPC설치 해당 지역 : (예시) 충남 당진 석문면, 전북 남원 주생면, 전남 영암 군서면, 전남 무안 일로읍, 영광 영광읍, 경남 고성 고성읍,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 ※ RPC처리량이 생산량의 50%이상 지역은 최대한 억제 : (예시) 경기 이천·안성·화성, 강원 강릉·양구·양양, 충북 보은·단양, 전북 순창, 전남 강진·영광, 경북 의성·영덕, 경남 창원
 - ※ 기존RPC의 부도발생 등으로 벼 매입량이 감소될 경우는 예외로 함
 - ※ RPC가 없는 시·군지역의 업체에 한함. 다만,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 3,000ha 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될 경우는 예외로 함(이 경우 DSC는 개소당 평균 논면적 1,000ha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시·군 단위 이상의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이어야 함

② 심사절차

-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RPC인정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RPC 운영협의회(농정협의회)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여부 최종결정(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보고)



<RPC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 농정국장(1), 쌀 유통관련 교수·전문연구기관연구원(3), 농협RPC 대표(1), 민간RPC업체대표(1), 임도정업체대표(1), 농업인대표(3)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
-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

③ 결정보고 및 지원 사항

- 시·도지사는 민간자체조성 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에 의거 RPC심사기준 적격 여부, 투자의 효율성, 원료 수집권역내 RPC의 중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로 계통 보고
 - 신규RPC로 인정되었더라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 신규RPC로 인정시 산물 벼 수매량 배정은 별도 수매지침에 따름

④ 자체시설 설치시 협조사항(시·군, 농협)

- 농협 또는 지자체의 보조지원으로 신규 RPC를 설치하거나, 증설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RPC운영협의회 심의)와 사전협의 후 시공해야 함
- 시·도는 지자체 또는 농협의 보조지원으로 신규RPC설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계통 보고해야 함

⑤ 기타사항

- 부도RPC의 신규RPC로 재인정 여부 결정시 모든 심사기준과 절차는 이 기준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대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계												

주) 년산별로 작성비치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확인서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년산												
○○년산												
계												

상기 원료벼 매입상황을 확인함

2003. . .

사업자 대표 : ○ ○ ○ (인)

확인자 : 농관원○○출장소장(인)

(별지 제3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비 매입실적보고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년산												
○○년산												
계												

2003. . .

보고자 : ○ ○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인)

(별지제4호서식)

RPC별 원료비 매입실적보고

시·군 RPC별	계		차액수매		자체매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백만원										

【농업(원예)구조개선】

I . 생산기반확충

13	마늘경쟁력제고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강귀순)입니다.

종구갱신

1. 목 적

- 마늘 종구갱신으로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종구갱신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사업추진확대를 위한 종구갱신 기술보급 및 지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및 제24조 (농업기계화등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합계 (‘03~‘07)	‘02	‘03	‘04	‘05 (예산안)	‘06	‘07
사업량		2,300	650	775	625	400	300	200
사 업 비	계	18,400	4,850	6,200	5,000	3,200	2,400	1,600
	보 조	11,040	1,940	3,720	3,000	1,920	1,440	960
	용 자	-	-	-	-	-	-	-
	지방비	7,360	1,940	2,480	2,000	1,280	960	640
	자부담	-	970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주아를 자가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지원

(2) 지원단가

- 800천원/10a(주아파종면적 기준)

(3)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농가를 우선하여 재배규모범위내에서 1회만 지원하되, 연도별 분할지원이 가능하며, 주아파종면적은 본밭면적의 1/6 기준하여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60%, 지방비보조 40%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 → 사업확정, 예산배정(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장·군수)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용 자		
		계	보 조	용 자			
400ha	3,200	1,920	1,920	-	1,280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2005. 3월 한
- 신청자격
 - 마늘주산단지내 900평이상 마늘재배농가 우선
-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종구(주아)갱신재배기술 습득여부와 기술수용능력, 경작규모 등을 감안,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침·관수·산사태 등)을 고려하는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 ※ 동일 요건일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자의 적격유무 확인(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기타 (지원대상 제외)

- 종구생산장려금지원 농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의한 종구(주아) 생산관련사업과 중복지원할 수 없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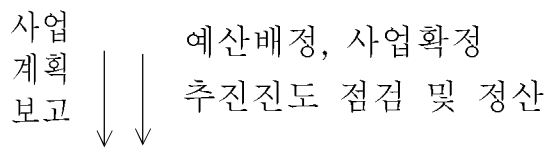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1) 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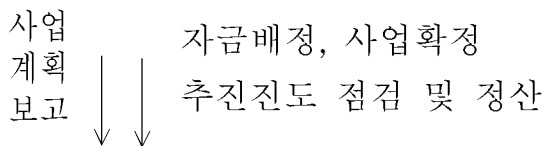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 마늘재배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함

(2) 사업추진절차

농림부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정, 사업추진점검



시·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사업추진점검



시·군 세부추진계획 작성,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자금지원, 사업정산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업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보고
- 시장·군수는 최초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종구(주아) 과종 면적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자체사업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금집행을 중단하고 필요시 기지원분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종구갱신1년)를 실시하여야 함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 2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1월말까지
 - 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비 집행개시 후 익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2월말 까지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또는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마늘주산지내 마늘재배농업인으로서 사업참여 의욕이 높고
기술수용 능력이 높은 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신청서
제출기관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2005년 사업추진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종구갱신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마늘재배현황 (전년기준)	재배면적	생산량	
	a (평)	kg	

※ 1a(아르) : 30평

2. 신청내용

사업구분	종구생산장려금지원				
사업신청 내역	사업예정지	도(시)	군(시)	면(읍·동)	리
	면적(수량)	a (평)			
	신청금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담
	원	원	원	원	

3. 기 타

- 마늘종구갱신사업 참여실적(사업명·지원연도·사업비 등, 농진청·지자체 사업
까지 포함)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에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중구갱신사업 지원 추진상황 보고(/4분기)

1. 사업추진실적

대 상	점 검	기술지도	교 육	홍 보	기 타
호	회(명)	회(명)	회(명)	회(명)	(회)
당분기					
누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 규모	예 산 액 (A)				집 행 액 (B)				미집행액				비율 (B/A)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ha														%	

<미집행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3. 기타애로 및 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

중구갱신사업 지원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불 용 액 (C-D)		대 비 (C/D)
농가 수	면적	농가 수	면적	농가 수	면적	계	국고 보조 (C)	지방 비 보조	계	국고 보조 (D)	지방 비 보조			

주) 시군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불용사유>

○

생산 기계화

1. 목 적

-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마늘생산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
 - '07년까지 마늘재배면적 17,000ha 일관기계화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합계 (‘03~‘07)	‘03	‘04	‘05 (예산안)	‘06	‘07
사업량(대)		12,640	1,896	2,528	3,160	3,160	1,896
사업비	계	19,554	2,933	3,911	4,889	4,888	2,933
	보 조	7,039	1,056	1,408	1,760	1,759	1,056
	지방비	5,671	851	1,134	1,418	1,418	850
	자부담	6,844	1,026	1,369	1,711	1,711	1,027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공동이용 : ① 지방자치단체 ② 농협조합 ③ 영농조합법인 ④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0.5ha이상의 마늘재배면적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기계』로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마늘 생산 농기계로 함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 명세
 - ① 마늘파종기 ② 마늘수확기 ③ 마늘쪽분리기 ④ 마늘쪽선별기
 - ⑤ 마늘줄기절단기
- 보조지원 대상 농기계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농업인 판매가격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조합은 매년 분기별(1.1기준, 4.1기준, 7.1 기준, 10.1기준)로 판매가격을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 및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시·도, 시·군 자치구)에 통보함

(3) 공급자

- 농업기계화 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과 동일함

(4) 신청기한 : 2005.3월한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국고보조(농특회계)	지방비보조	자부담
3,160	4,889	1,760	1,418	1,711

(2) 사업량 배정

- 개별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10%를 배정, 공동이용은 전체 사업량의 90% 배정(지방자치단체는 30%, 농협 등은 60%)을 원칙으로 함
- * 개별이용은 10% 이내 배정 가능함

(3) 지원조건(비율)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농협 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개별이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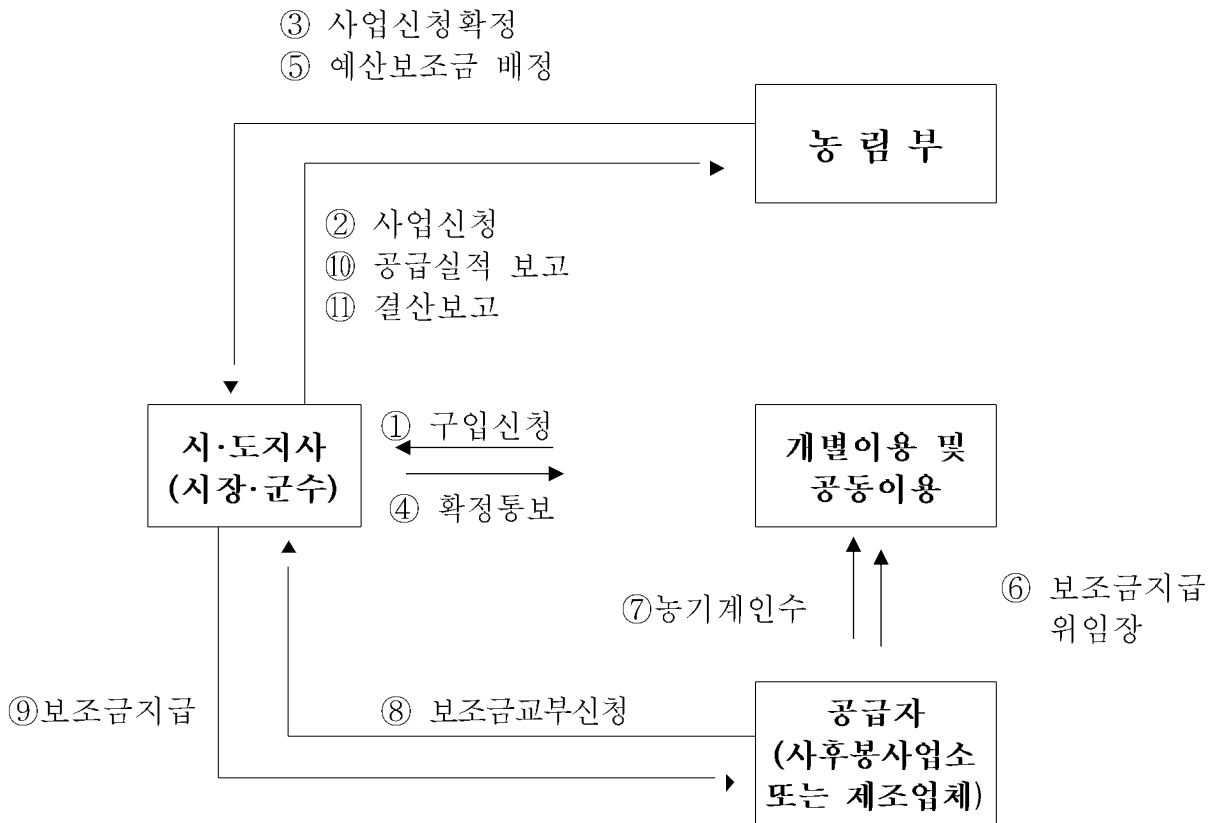
<추진체제>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사업시행 체계>



다. 사업신청자격

- 공동이용 : 0.5ha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이용조직을 마련한 주산단지의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0.5ha이상의 마늘재배 면적을 확보한 주산단지의 개별이용농가
 -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개별이용 농가에 대하여는 농기계의 내용년수동안 보조지원 하지 않음
- 신청 :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시·군 자치구에 제출

라. 대상자 선정 및 우선 순위

(1) 대상자 선정

-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동이용, 개별이용 구분하여 선정하되 개별이용은 전체사업비의 10%이내에서 정함

(2) 우선 순위

○ 공동이용

- 공동이용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마늘생산농기계의 활용도 높은 주산단지(읍·면, 자연마을단위)를 우선 선정함
- 공동이용 대상자 우선순위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중 당해지역에서 공동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순위로 대상자로 정함

○ 개별이용

- 1순위 : 자가소유 재배면적이 큰 농가로서 5개기종 일괄 구입희망자
 - 2순위 : 5개기종 일괄 구입 희망자
 - 3순위 : 파종기를 포함 4개기종 구입희망자
 - 4순위 : 파종기를 포함 3개기종 구입희망자
 - 5순위 : 2개기종이상 구입희망자
 - 6순위 : 2개기종 구입희망자
- * 동일 순위일 경우 주산단지의 재배면적이 큰 농가를 우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자 우선 선정

다. 사업시행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별이용 및 공동이용 대상자는 구입희망농기계 및 자금지원내역, 공급자(농협, 대리점) 등을 기록한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구입신청자가 제출한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확인한 후, 관련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발급함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와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기계공급자(사후봉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게 제출하고 관련농기계를 인수함
- 마늘생산농기계의 구입 보조금 신청은 농기계공급자가 1회 이상 시장·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시·도지사는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한도액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늦어도 매월 셋째주까지 농림부(채소특작과)에 배정요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1회 이상 지급하며 사전에 마늘생산농기계구입 및 규격상이 여부를 확인함
 -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함
- 자격기준(영농규모 등)이 미달하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금의 잔존액)를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마늘육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동 조건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개별이용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지원은 농가당 1회를 원칙으로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농기계 구입자의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구입 확인, 기계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공동이용지원대상자는 공동이용 농기계의 관리, 운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마늘생산농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5년간(내용연수기간)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받은 공동이용 또는 개별이용자가 5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늘생산 농기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당해 기계에 부착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공동이용(지자체)	'05. 0	'10. 0	내용연수동안 관리
○ 개별이용	(구입일)	(내용연수 일)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관리를 전환할 수 있음
- 보조지원 받은 개별이용 농가가 동일 시·도내에서 이주한 경우 거주지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대행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필요시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마늘생산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함
- 기타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 행정사항의 사후관리와 동일함

나. 농기계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농기계구입지원의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 봉사와 동일함

다. 보고사항

구 분	보고자	보고기한	서 식
마늘생산농기계 보조지원실적 보고(반기별)	시·도지사 (시장·군수)	'05.7.31 '06.1.31	(별지 제5호서식)

* 시장·군수는 보고기한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및 자치구청

나. 신청자격

- 공동이용 :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개별이용 : 0.5ha이상의 마늘생산 경영규모 농가중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다. 신청절차

- 마늘생산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록확인 관련서류, 마늘생산 경영규모 사실확인서류 등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추진체계> 라. 항에 의함

바.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마늘생산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접수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당해연도의 마늘생산 농기계구입 지원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

○ 신청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구입신청 농기계 : 붙임(별지 제1-1호 서식)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마늘생산농기계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공급자 : ○○○ 사후봉사업소 : 생산업체, 공급농협 ○○○ (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군·구청장) 귀하

----- 절 ----- 취 ----- 선 -----

발급번호 :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 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구 입 희망일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천원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 구입신청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계 금 액			공급,사후 봉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대	천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자금) 교부신청서

기종명	수 량	기 계 금 액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대	천원		

상기와 같이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요령에 의거 농기계를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붙임 : 1.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서식 3-1) 1부.
2. 보조금 지불대상자 현황(서식 3-2) 1부.
3.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계인수확인서(서식 제2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금 청구내역

구 분	기종명	수 량	기 계 금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3-2호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

구분	기종명	구 입 자		수 량	기계금액		
		주소	성명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대	천원		
개별이용							

[별지 제4호서식]

마늘생산 농기계 공급대장

구분	주소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비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이용						천원			
개별이용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마늘생산 농기계 보조 지원실적 보고

1.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과중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 기 절단기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소계	트랙터용	경운기용등			
계 획(A)	대									
실 적(B)										
비율(B/A)										

2. 사업비 지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예 산(A)	천원					
공 급 액(B)						
집 행 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C/B					

* 공급액(B)은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록

작목전환

1. 목 적

- 마늘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생산 체제구축 및 경쟁력 낮은 농가 작목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재배 농가중 향후 3년간 마늘이외의 작목으로 전환 또는 휴작하는 경우 매년 183만원/ha 지원(3년간 합계 550만원/ha 수준)
- 다만, 마늘재배 농가중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작목으로 전환하고 농업 종합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시설자금 대출금액의 10%를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3~’07)	‘03	‘04	‘05 (예산안)	‘06	‘07
사업량(ha)		5,676	2,804	1,472	1,400	-	-
사 업 비	계	31,266	7,700	7,700	7,700	5,116	3,050
	보 조	31,266	7,700	7,700	7,700	5,116	3,050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사업구분)

- 마늘재배 농가로서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 및 휴작하는 경우 농가에게 작목전환 및 휴작 자금 지원

(2) 지원단가

- 작목 전환 및 휴작 : 약정당시 마늘재배면적 기준, 매년 183만원/ha(183원/m²)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
- 생산시설 : 작목전환을 위한 생산시설면적 기준으로 신규로 대출(예정)된 농업종합자금의 10% 해당금액을 일괄지급
 - 다만, 10% 해당금액이 550만원/ha이하인 경우에도 550만원을, 1,100만원/h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만원만을 일괄지급
 - 시설을 설치한 이외면적에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한 경우 183만원/ha을 기준하여 지급
 - 시설설치 지원면적은 약정당시 신청농가의 마늘재배면적 이내에서 지급

(3)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로 지정된 읍·면이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04, '05년산 마늘을 본인소유농지에 10a(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 전체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
 - ※ '05년산 마늘은 '05.5~6월중에 수확되는 마늘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해당농가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 → 사업확정, 예산배정(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시·군(읍·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노지(작목전환 및 휴작)	3,757	6,875	6,875	6,875	-	-	-
생산시설	150	825	825	825	-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2005. 5월 한
- 사업신청 대상농가 및 농지
 - '04, '05년산 마늘을 본인소유농지에 10a(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
 - 본인소유 농지로서 '04, '05년산 마늘을 재배하여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지
 - 임차하여 마늘을 재배한 경우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05년 신청농가는 '05년부터 임차농지에도 마늘을 재배할 수 없음
- ※ 논마늘 재배농가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지원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포함
- * 자가소비용 소규모 마늘재배의 예외적 허용
 - 자가소비용 재배면적은 1a(약30평 정도) 이하이어야 하며, 작목전환 수혜면적에서 제외
 - 자가소비용 재배면적을 제외한 사업 수혜면적이 10a 이상일 것
 - 자가소비용 재배면적에서 생산된 마늘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기할 것
- * 약정대상 제외농가
 - 작목전환 시 공급과잉 등으로 생산감축정책품목(폐원을 지원하는 과수, 계약물량을 부여하는 작목(보리), 지자체 등이 생산감축을 명시하는 작목)과 최저가격보장품목(양파, 월동배추, 대파)은 약정대상에서 제외
 - 마늘주산단지 이외농가
 - 작목전환약정을 위약한 사실이 있는 농가
- 신청절차 : 작목전환 신청자는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① 마늘 작목전환 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② 마늘 작목전환 약정서(별지 제1-2호 서식, 2부)
 - ③ 농업종합자금 대출(예정)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농가에 한하며, 해당농협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 접수결과 신청량이 당년도 총 사업계획을 초과 할 경우 신청량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신청규모가 큰 농업인 우선 선정

(2) 선정절차

- 작목전환 약정체결 : 시장·군수와 사업신청농가('05. 8월중)
- 체결방법 : 사업신청시 제출하였던 약정서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선정 내역과 함께 신청농가에 송부(별지 제3-1호 서식)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다. 사업시행

(1) 대상자 선정기준

- 마늘을 본인소유농지에 10a(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 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

(2) 사업신청적합여부 확인

- 신청인의 '04년산 마늘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 모니터링에 의하며 농협의 피복용 비닐 등 농자재 판매 및 계약재배상황 등을 참고
- 신청인의 농지소유면적 및 임차실태 : 농지소유면적은 시·군·구 행정망(지적행정망)을 이용하고 임차재배여부는 모니터링에 의함

(3) 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약정을 이행한 농가

- 지급시기
 - 생산시설 : 농업종합자금에 대출되고 시설이 완료된 직후
 - 재배작물, 휴작 : 약정기간 중 매년 11~12월
- 지급방법 : 사업신청시의 예금계좌로 입금
- 보조금 회수 : 지급이후 부정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령시 또는 약정 위약시 회수조치

(4) 사업추진절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홍보 및 관계자교육	(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관계자 교육(2.말까지) ○ 사업계획 홍보(5.말까지)
↓		
② 사업신청 접수 및 적정여부 확인	(6.2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5월말) ○ 사업대상 적정여부 확인(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에 의한 적정여부 확인
↓		
③ 신청결과보고 및 사업량 조정	(7.2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결과 : 시·군 → 시·도 → 농림부(6.30) ○ 사업량 결정통보 : 농림부 → 시·도 → 시·군(7.20)
↓		
④ 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8.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읍·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8.30) *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시 받았던 약정서 2부중 1부를 대상자에게 송부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읍·면)에서 약정이행여부 점검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⑥ 보조금 지급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읍·면)에서 보조금 지급

라. 약정이행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신청서의 신청인 농지에 마늘재배 여부와 추가임차 등에 의한 마늘재배여부를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 등에 의해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약정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 3년간 연속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공공용지편입,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매년 1월 사업신청 사무소에 신고하여 해지가능

나. 보고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작목전환사업 접수결과 (별지 제2-1호 서식) : 6월말까지
 - 작목전환 약정 체결결과 보고(별지 제3-2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12.31일 기준, 다음연도 2월말 까지

6. 2006년도 사업 지원대상자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04, '05년 마늘작목전환 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을 이행한 농가

※ 마늘 작목전환사업 신청시 주의사항

- 작목전환 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서 1부를 사업신청인에게 송부함(8월)
- 사업신청시 마을대표(이장)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사업신청면적은 신청인의 마늘전체 재배면적 이어야 함
- 사업신청 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전환 또는 휴작하며 신청농가는 3년간 마늘을 재배할 수 없음

※ 신청인 작성방법

■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의 소유농지와 금후 3년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지현황을 기재합니다
- ③란은 신청인의 '04, '05년산 마늘재배면적을 해당지번(필지)에 기재하며 지번의 농지면적중 일부만 재배한 경우에는 실재면적만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신청인의 '05년산 마늘재배면적중 작목전환 또는 휴작하는 작목과 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휴작의 경우 작목란에 “휴작”으로 기재)
- ⑦란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 ⑤란은 신청농가의 '04년산 및 '05년산 마늘재배여부를 확인하고 재배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된 재배 면적을 기입하되 면적이 정확한지를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합니다
- ⑥란은 이행확인시기에 약정농가의 마늘재배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이행시는 “이행” 불이행시는 “불이행”으로 기재하며 ⑤란의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⑧란은 농가의 소유농지와 약정년도의 마늘재배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신청인 확인 결과는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뒷면)

마늘 작목전환 약정서

() 시장·군수

() 신청자

“마늘 작목전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 · 군수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05년 월 일부터 3년

2. 약정내용

제1조(책임과 임무)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마늘 작목전환 사업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목전환 참여농가는 농가의 마늘전체 재배면적(농가소재지 관할 동일 시·군 관내)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 한다
2. “을”은 약정당시의 소유 및 임차농지에 마늘을 재배할 수 없으며 추가 농지구입 및 임차 등을 통해서도 3년간 마늘을 재배하지 않는다

② 점검결과 제①항 제1호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늘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보조금 미지급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자격박탈) ① “갑”은 “을”이 약정이행 기간 중 약정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을”의 마늘 작목전환사업 참여대상자격을 박탈한다

② “갑”은 제①항의 “을”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갑”은 “을”이 제1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기간의 매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시설은 시설이 완료된 직후 지급한다.

② “갑”은 마늘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면)

※ 농업종합자금대출(예정) 확인 관련 주의사항

- 종합자금 취급농협, 군 지부에서 확인을 받아 마늘 작목전환사업 신청서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 작목전환을 위한 시설면적만을 기준 하여 신규로 대출된 종합자금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지원하한금액은 550만원/ha, 지원상한금액은 1,100만원/ha임

※ 신청인 작성방법

■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기존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 중 작목을 전환코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05년산 마늘 재배면적 중 시설전환 계획을 기재합니다.
- ③시설명과 시설코자하는 실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④시설설치에 필요한 종합자금 대출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농협의 종합자금대출(예정) 확인서 작성방법

- ⑤란에 시설내역(예 : 버섯재배사, 철재비닐하우스 등)과 시설면적,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된(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뒷면)

마늘 작목전환사업 신청접수 집계표

시·도(시·군, 읍·면) 명 :

일 현재

시·도 (시·군 읍·면)	신 청 농 가				작목전환 신청내역				
	호수	마늘재배면적		작목전 환면적	노지작목		생산시설		
		'04년산	'05년산		작목명	면적	시설명	면적	종합자금 대출금액
계	호	ha	ha	ha		ha		ha	백만원

- ※ 작목전환 면적은 확인에 의한 약정당년도 약정농가의 마늘 실 재배면적임
- ※ 휴작은 작목명에 휴작으로 구분하여 작목별 면적과 구분
- ※ 시설명에는 입식작목을 구분하여 기재(예 : 버섯재배사, 수박비가림 등)

마늘 작목전환 약정체결 통지서

1. 마늘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05년도 작목전환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05년산 마늘재배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마늘 작목전환사업 시행지침과 “마늘 작목전환 약정서”에 의거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유농지 소재지								읍·면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마늘재배면적		작목전환 신청		마늘면적		이행확인		
						'04년산	'05	작목	면적	'04년산	'05	'05년	'06	'07
자가 농지					m ²	m ²	m ²		m ²	m ²				
임차 농지														
소유농지 (임차포함)	(필지수)		(면적)		m ²		'05 마늘재배		(필지수)		(면적)		m ²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 약정이행시 보조금 지급예상액 : ()원

붙임 : 마늘 작목전환 약정서 1부.

2005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별지 제3-2호 서식]

마늘 작목전환 약정체결 결과 보고

시·도(시·군, 읍·면) 명 :

일 현재

시·도 (시·군, 읍·면)	신 청 농 가				작목전환 신청내역				
	호수	마늘재배면적		작목전 환면적	노지작목		생산시설		
		'04년산	'05년산		작목명	면적	시설명	면적	종합자금 대출금액
계	호	ha	ha	ha		ha		ha	백만원

- ※ 작목전환 면적은 확인에 의한 약정당년도 약정농가의 마늘 실 재배면적임
- ※ 휴작은 작목명에 휴작으로 구분하여 작목별 면적과 구분
- ※ 시설명에는 입식작목을 구분하여 기재(예 : 버섯재배사, 수박비가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작목전환사업 정산결과 보고

(천원, %)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A)		실적(B)		대비(B/A)		계획			집행실적(정산)			불용액(C-D)		대비(C/D)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국고보조(C)	지방비보조	계	국고보조(D)	지방비보조			

주) 시군별 세부정산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불용사유〉

○

〈작목전환·휴작결과1〉

합계		휴작		작목전환 내역 2)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소계		작목 1		작목 2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1) 시설사업이 있을 경우 시설명, 면적, 농가수 등을 별도로 기재
 2) 작목전환 내역은 전환한 작목명에 따라 면적, 농가수를 기재

마늘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1. 목 적

- 마늘산업종합대책의 추진에 따른 유통·경영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규모화된 농가중심으로 지원
- 신기술도입 등 생산성·품질향상과 유통·경영개선에 우선지원
- 지원신청 농가의 경영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농협이 농업종합자금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거쳐 지원
- 동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중인 농가는 지원제한, 상환 완료시 재지원 가능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촉진), 제24조(농업기계화등의 촉진)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예산안)
사업량		-	-	-
사 업 비	계	100,000	100,000	100,000
	보 조	-	-	-
	용 자	100,000	100,000	100,000
	지방비	-	-	-
	자부담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 관·배수시설 확충, 토양개량, 연작피해대책, 종구개량, 신기술도입 등에 필요한 투입 및 구입자금
- 유통·경영개선을 위한 마늘 건가 및 간이저장시설 설치, 포장·운송상자(PVC 상자 등) 구입, 마늘유통관련기계(줄기절단기, 선별기) 구입, 포장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 생산 및 유통관련 시설의 개·보수자금
- 기타 농협중앙회장이 생산성·품질향상, 유통·경영개선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요자금

(2) 지원단가

- 지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3)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 지정된 지역에서 0.3ha이상의 마늘을 재배하는 규모화된 농가
- 규모화 농가중 다음사항 해당농가에 대해 우선지원
 - 종구갱신 및 생산기계화등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계획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농가
 - 마늘 유통전문 조직의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
 -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시달 및 예산확보(농림부) →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상자 확정 및 용자(농협)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100,000	100,000	-	100,000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회원조합(읍·면 지역조합)
- 신청기한 : 2005. 6월 한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마늘 주산단지 지정된 지역에서 0.3ha이상의 마늘을 재배하는 규모화된 농가

(2) 선정절차

- 지원신청 농가의 경영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농협이 농업종합자금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거쳐 지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02-500-1861~2)
- 농협중앙회 : 읍·면 회원조합 자금담당 부서

다.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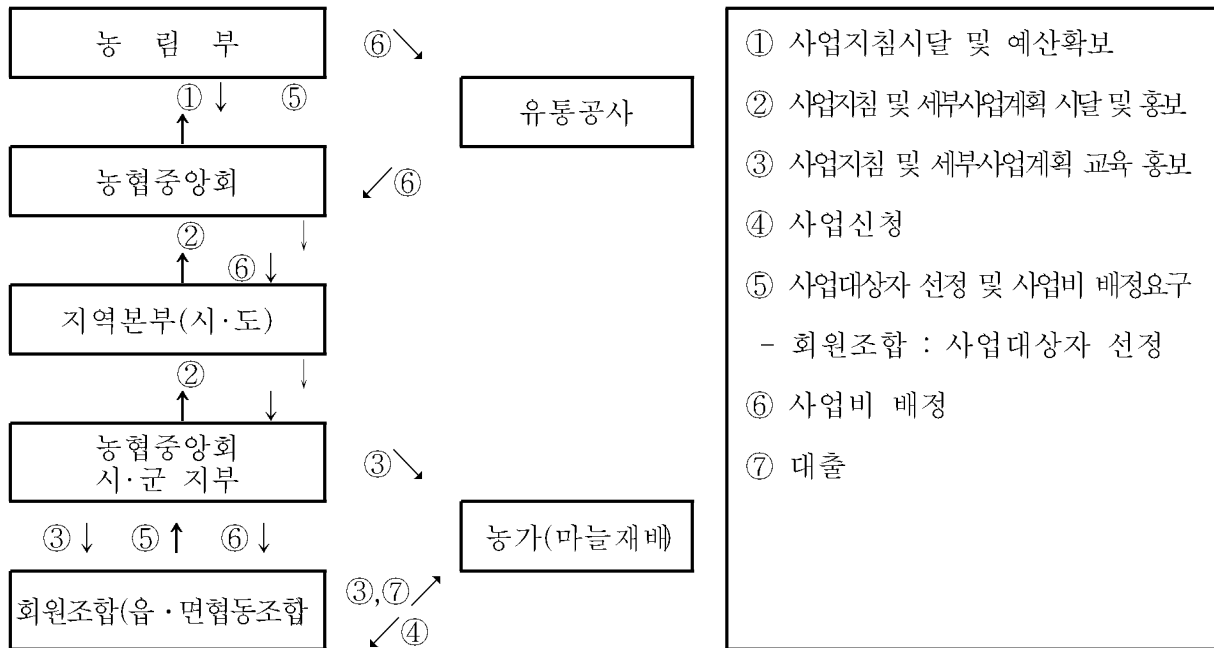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마늘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수립, 농협중앙회 및 시·도에 시달
- 농협중앙회장은 구체적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채소특작과)에 제출하고, 계통조직을 통해 회원조합(대출취급기관)에 시달

(2)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사용시기와 사업효율성제고 등을 위하여 분기별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보고 및 계통시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 소요시기 최소 15일 전에 농림부에 자금요구

(3) 사업추진절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마늘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시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통보하고 계통을 통하여 회원조합(대출 취급기관)에 시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 소요시기 최소 15일 전에 사업비 요청(서식1)
- 농협중앙회장은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농림부 제출(서식2)
- 농림부는 마늘농가 경영안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대출취급기관은 정책사업 목적 외 사용확인 시 즉시 회수조치

나. 기타

-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서식1>

마늘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배정 요청서

(금액단위: 천원)

시·도별	기 자금배정 실적			금회 배정요청		
	농가수	금액	비율	농가수	금액	비율
계	호		%	호		%

<서식 2>

마늘농가 경영안정자금(융자) 대출실적(누계) 보고서

(금액단위: 천원)

시도별	자금 배정실적(A)			대출실적(B)			잔액 (A-B)	사유
	농가수	금액	비율	농가수	금액	비율		
계	호		%	호		%		

* 보고 : 매 분기 말 기준 실적(누계)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

마늘생산 우수농가 육성지원

1. 목 적

- 마늘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가 육성을 통해 마늘산업경쟁력 강화
- 우수농가 자생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과 선도지역 및 선도농가 견학 등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늘산업종합대책 기간('03~'07) 중 20개 시·군에 지역당 사업비 25백만원을 기준하여 지원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거나, 마늘생산 우수농가 자생 조직체가 구성된 경우 조직체에 지원하여 집행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제24조(농업기계화등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3	'04	'05 (예산안)	'06	'07
사업량(개소)		20	4	4	4	4	4
사업비	계	500	100	100	100	100	100
	보 조	350	70	70	70	70	70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150	30	30	30	30	3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우수농가 조직체에 대한 경상 운영비
 - 사무용품비, 회의비, 시설임차료, 물품구입비(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사무실 집기류, 전화기, FAX등) 등
-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 유통개선 등을 위한 교육비
 - 교육장 임차료, 교재대, 강사수당, 급식비 등
-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선도지역 및 농가에 대한 현장 견학비
 - 차량임차료, 교재대, 급식비 등
- 기타 시장·군수가 우수농가 조직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2) 지원단가

- 지원규모(사업비) : 시·군당 25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 마늘산업종합대책 시행기간 중 시·군 당 1회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마늘주산단지 시·군 중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4) 사업추진주체 및 절차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 → 사업확정, 예산배정(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장·군수)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4	100	70	70	-	-	3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 신청기한 : 2005.5.20한
- 사업신청 대상
 - 마늘주산단지 시·군 중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마늘재배면적, 마늘관련시책 기여도,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성실성 등을 반영

(2)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마늘 주산단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500-186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농정·농산)과

다.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농림부 : 사업지침수립 시달
- 시·도 : 시행지침에 의거 자체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대상지역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보고
- 시·군 : 자체세부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
-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지원방법
 - 대상지역은 마늘생산 비중을 감안하되, 우수농가 중심의 조직체가 구성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
 - 보조금 집행자는 자부담금을 포함, 사업실적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되 일반예산 집행기준과 실비를 기준하여 집행
 - *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을 30% 보다 확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내용을 파악, 적정 시행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자체 평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행

나.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내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사업계획서	'05. 4. 20	별지1호 서식
〃	○ 사업추진결과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별지2호 서식
〃	○ 사업정산결과	'06. 1.말	별지3호 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나. 신청자격 : 마늘주산단지 시·군 중 우수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다.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 제출기관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2005년 사업추진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선정결과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계획 (요약)
				계	국고	자담	
계							

주) 사업자 : 시·군일 경우 부서명, 조직체일 경우 조직체명 기재

2. 대상지역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 시·군의 교육훈련 및 선도지역과 농가견학 등 사업시행 계획(총괄) 현황
- 사업내용,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목적, 추진방향,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에는 사업자 대표명, 대표주민번호, 사업자주소, 전화번호, 사업목적, 교육훈련기관 및 선도지역 등 방문 예정일정, 참석대상 예정인원, 교육훈련 예정기관 과 방문예정 선도지역 및 견학 농가의 주소지·연락처·규모·방문목적 등 현황 등 상세사항 기재

○ 기타 사항 등

※ 보고서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마늘생산 우수농가육성 사업추진결과 보고(/4분기)

1. 사업추진실적

구 분	시·군명	교육훈련	현장견학	...	기 타
당분기		회(명)	회(명)		(회,명)
누 계					

<사업내용설명 및 평가>

예) 교육기관명,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목적, 교육인원, 강사소속과 성명 및 연락처, 실습내용, 교육생반응, 활용가능정도, 성과와 평가 등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 규모	예 산 액 (A)			집 행 액 (B)			미집행액			비율 (B/A)
		계	국고	자담	계	국고	자담	계	국고	자담	
당분기	개소										%
누 계	개소										

○ 미집행 사유 :

○ 향후집행계획 :

3. 기타에로 및 특이사항

-
-

<별지 제3호 서식>

마늘생산 우수농가육성 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율 (B/A)
			예 산 액 (A)			집 행 액 (B)			미집행액			
	계획	실적	계	국고	자담	계	국고	자담	계	국고	자담	
	개소											

○ 사업비 미집행사유 :

Ⅱ.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①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사무관 전종철)입니다.

1. 목 적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의 공동이용 및 파렛타이징을 통하여 농산물 출하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상품성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점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체제 구축
 - 농산물의 파렛트 적재출하 및 컨테이너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산지의 농산물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조기 정착

3.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 개선), 화물유통촉진법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천매)

	2003예산	2004예산	2005예산(안)
○ 사업량	11,357	20,705	24,600
○ 사업비	5,845	10,653	12,667
- 국 고	3,507	6,392	7,600
- 자 부 담	2,338	4,261	5,067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 수송단위가 규모화 되어 있지 않고, 파렛트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물류효율이 저하
- 신선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범용 포장상자(플라스틱상자) 구입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채소류 대부분이 비포장 출하
 - 유통과정에서 손상·변질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쓰레기발생으로 소비지 시장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
- ※ 국정개혁보고 회의시('99. 4)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적재, 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를 유통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
 - 파렛트 적재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으로 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99)

(2)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3) 사업내용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포장화) 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보조

(4)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파렛트 및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유형별 사업기준단가(임차료)

① 유형1(공영도매시장)

파렛트 : 1,590원/매, 플라스틱상자 : 480원/매, 다단식목재상자 : 1,090원/매, 펠릿 철상자 : 4,360원/매.

② 유형2(농산물종합유통센터,대형유통업체)

파렛트 : 1,500원/매, 플라스틱상자 : 440원/매, 다단식목재상자 : 1,000원/매, 펠릿 철상자 : 4,000원/매.

③ 유형3(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파렛트 : 860원/매, 플라스틱상자 : 250원/매

○ 지원조건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나. 2005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파렛트 등 물류기기	24,600천매	12,660	7,596	5,064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0-1823~4
- 농 협 : 농협중앙회(농업경제기획실), 지역본부, 시·군지부, 농협
-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품목별, 월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협(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매년 1월중)

- 농협은 생산자조직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적재출하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적재출하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 이용료 지원 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
- 작황 및 유통여건변화에 따라 물류기기 소요량 변동이 있을 경우 농협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분기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 승인 후,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사업비 집행방법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 ①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은 각각 풀 회사에 물류기기 공급을 신청하고 풀회사는 신청조직별로 물류기기 공급
 - ② 생산자조직 등은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내역을 물류기기 통합관리 전산시스템(www.pool21.co.kr)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 및 풀회사는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확정
 - ③ 풀회사 및 지역본부(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는 물류기기 이용집계표를 농협중앙본부에 제출
 - ④ 물류기기 이용에 따른 보조금 신청(별지 제3호서식) 및 정산
 (신청) 산지이용자의 물류기기 전산시스템 출하등록 → 유통사업장 및 풀회사 확인(영농조합법인 이용분은 접수농협의 추가확인) → 지역본부(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확인 → 중앙본부 → 농림부
 (정산)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생산자조직
 - ⑤ 풀 회사와 이용자간에 이용료를 매월별로 정산

○ 운용절차

생산자조직 등

- ①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에 참여하여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전산망을 이용하여 풀회사에 입고 요청
 - ② 물류기기 입고시 입고등록내역을 확인
 - 물류기기를 산지이용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입고등록시 『자차운송』으로 등록
 - 유통사업장에서 물류기기를 입고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장의 출고등록 현황을 확인
 - ③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할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
 - ④ 농산물유통사업장의 검수자로부터 물류기기 이용내역을 거래명세서 또는 물류기기이동전표에 확인(기명날인)받아 자체보관 관리
 - ⑤ 지역농협은 매 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시 지부담분(VAT 포함) 이용료를 농협에 선납하여야 함.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신청시에는 자부담분(V.A.T포함)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하여야 함.
- ※ 영농조합법인 등이 보조금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 거래명세서(송품장 등)
 -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등록증 사본(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의 경우)
 -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가공공장 출하량 확인 자료
- ⑥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는 사후점검 및 감사에 대비하여 관리철저

농산물유통사업장

- ① 검수자는 거래명세서 및 공용전표에 기재된 물류기기의 품명, 수량을 확인 후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1부는 출하처(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부
- ② 유통사업장은 산지이용자가 전산 등록한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거래명세서 또는 공용이동전표 등과 확인하여 전산상에서 확정
- ③ 산지이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회수할 경우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유통사업장에서 입력
- ④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농산물유통사업장의 보관 증빙자료를 점검 확인할 수 있음

폴 회사

- ① 폴회사는 사용자의 입고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입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입고
- ② 폴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물류기기를 회수
- ③ 폴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전협약 체결
- ④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이용자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물류기기 이용신청을 폴회사가 확인함으로써 물류기기 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강화

- 농협중앙회(농협)은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생산자조직, 유통업체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책임을 규명하여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 보조금 부당사용 풀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 농협중앙회장은 각 풀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류기기의 세척여부 등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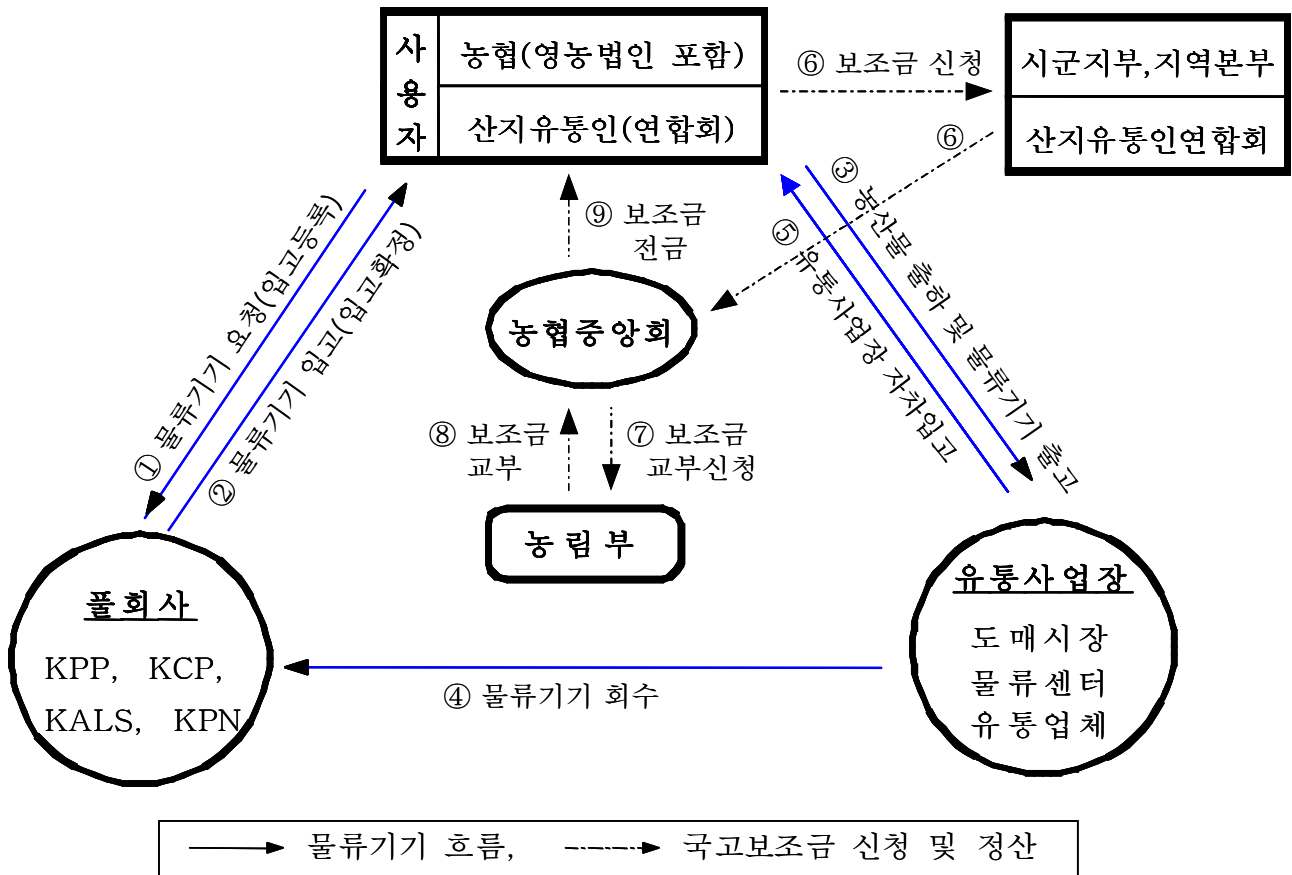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본부별 사업계획서를 2005. 1. 31까지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다. 기 타

- 물류기기 풀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풀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사전협약을 체결한다.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농림부 승인 후 시행

라. 사업시행 체계도



7. 2006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 산지유통인연합회
- 나. 대상사업 : 2005년도와 동일
- 다. 신청자격 : 2005년도와 동일
- 라. 구비서류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적재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마. 사업추진방법 : 2005년도와 동일

< 별지 제1호서식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 적재출하 계획서

1. 사업자(생산자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인명) : (인)
2. 주 소 :
3. 전화번호 : 4. FAX번호 :
5. 농산물 재배현황(매매계약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비 고
	ha			

※ 산지유통인은 매매계약 현황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명시

6. 물류기기공동이용 적재출하 계획

(단위 : 매)

품목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펠릿철상자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펠릿철상자													
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펠릿철상자													

<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별 농산물파렛트/플라스틱상자등풀이용료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 별	파 렛 트					플라 스틱 상자					다 단 식 목 재 상자					펠 릿 철 상자					합 계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 별지 제3호서식 >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자
 - 농협명 : ○ 조합 환코드 :
 - 주소 : ○ 전화번호 :
- 물류기기 사용자
 - 농협(법인)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물류기기 사용내역

구 분	총출하수량	유형	보조단가	보조금
파 렛 트		①		
		②		
		③		
플라ستيك상자		①		
		②		
		③		
다단식목재상자		①		
		②		
		③		
펠릿 철상자		①		
		②		
		③		
합 계				

※ 증거서류 첨부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유통사업장별 출하내역 포함) 첨부, 입고회수전표, 거래명세서 등 첨부
- 산지유통인의 경우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등록증 사본 첨부
- 가공공장 출하시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조합장 인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공동)

이용자 : 00농협

NO	거래처명	일자	물류 기기	재고	입고(+)				출고(-)				기타(+,-)				
					풀회 사	유통	산지	이동	풀회 사	출하	산지	이동	조정	망실	폐기	기타	
1		전일재고															
2																	
3																	
4																	
5																	
6																	
7																	
8																	
9																	
10																	
11																	

②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양태선, 사무관 김문갑)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 추진
-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통명거래 정착
-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유사도매시장과의 차별화 실현으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 선별·포장비용 중점 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 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 유통량이 많으나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상차비 추가 지원으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정
- 규격출하실적 평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여 지원
- 물류비용 축소를 위하여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 조직 추가 지원
-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우대지원 단계적으로 축소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1조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92~'00	2002	2003	2004	2005	2006이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	사업량	1,277,000	272,000	272,000	256,397	260,500	842,281	
	사 업 비	계	745,650	181,966	181,966	171,530	173,620	564,264
		국 고	943,422	54,590	54,590	51,459	52,086	169,280
		지방비	64,376	-	-	-	-	-
		자부담	1,426,924	127,376	127,376	120,071	121,534	394,984

5. 2005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포장재비 일부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켓팅조직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일부 지원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무, 배추, 양배추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조직 및 산지유통인 등에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 지원

나. '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260,500	174,275	52,086	121,534
- 포장재비 지원			38,086	
- 공동선별비 지원			12,000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2,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소비안전과 : (02)500-183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031)446-012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품질관리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농업경제기획실, 02-397-5858~9),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사업별 지원요령

(1) 포장재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다) 대상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 단,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아 수송목적으로 사용하는 겉포장은 포장규격 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내용

-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국고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지원**

(2) 공동선별비 지원

(가) 대상조직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나) 지원품목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단, **포장화우대품목(무, 배추, 양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조직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 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도 공동선별 인정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가산지원**

(3)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가) 지원대상

- 포장화우대품목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

(나) 지원품목

-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결구배추, 양배추**

(다) 지원내용

- 지원품목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
 -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지원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출하품 (단,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는 수확상차비만 일부 지원)
 - 포장재비 일부지원 :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출하품
 - 단,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 목재상자 등에 출하할 경우 산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품은 생산자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의 100%를 지원
 - 단,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조직평가 후 조직등급 분류에 따라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2006년도부터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지역연합 판매사업을 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공동마켓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05 신규선정 지역연합 판매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지원)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2) 사업계획서 제출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 (2005. 1. 10일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005.1.15일까지)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2005. 1.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후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5. 1. 15일까지)
- 2004. 1. 20일까지 2005년도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2005년도 사업신청 생략가능
 - 포장화우대품목은 매년 신청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와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2005.1.15일까지)**
- 2004. 1. 20일까지 2005년도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중 사업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2005년도 사업신청 생략가능

(3)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2005. 1. 31일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2005. 1월중)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및 지원에 보고
 - 농관원 출장소
 - 지원 보고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2005. 2. 5일까지)
 - 사업자 및 제외조직에 통보(2005. 2. 10일까지)
 - 농협 시·군지부
 - 지역 농협에 통보(2005. 2. 10일까지)

- 포장화우대품목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가 포함된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지원 : 출장소 및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통보(2005. 2. 10일까지)
 -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 :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05. 2. 15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2005. 1. 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보고하고, 농관원 본원에 통보 및 농협 지역본부에 통보(2005. 2. 5일까지)
 - 농관원 본원 : 농관원 지원에 통보(2005. 2. 10일까지)
 - 농관원 지원 :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5. 2. 15일까지)
 - 농협 지역본부는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이 농협 시·군지부를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토록 조치(2005. 2. 15일까지)

(4) 지원기준 및 조건

(가) 포장재비 지원 (국고 20~40%, 자부담 80~60%)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계산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의 100%, 포장재비의 30%를 지원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이하인 품목은 아래와 같이 포장재비 국고 지원을 지원 확대
 - 국고 40%, 자부담 60% : 건고추, 풋호박, 수박, 마늘, 대파, 쪽파, 미나리, 고구마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이상인 품목은 아래와 같이 포장재비 국고 지원을 지원 축소
 - 국고 20%, 자부담 80% : 사과, 배, 방울토마토, 조롱수박, 들깨잎, 장미(기존품목)
 - 국고 25%, 자부담 75% : 단감, 감귤, 포도, 오이, 파리고추, 토마토(05년도 신규품목)
 - 단, 신규품목은 2006년도에도 국고 지원비율을 5%P 축소
- 그 외 사업자는 해당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하는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을 결정하고 포장재비의 30% 지원
-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다이징 출하한 포장재는 국고보조금지원율을 5%P 가산하여 지원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100%	신청량의 70~90%	신청량의 50%이하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 항목		

주)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 (5kg미만의 소포장 농산물은 포장규격의 거래단위와 다른 거래단위 적용 인정)에 대해 “붙임 2”의 「품목별 공동선별비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 수탁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40%
 - 매취공동선별 : 공동선별비의 30%

○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가산 지원

(다) 포장화우대품목지원 (국고 30%, 자부담 70%)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중에서 각 사업장이 발급한 「표준규격포장출하 확인서」 물량에 대해 “붙임 3”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지원단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사업량 차감 적용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전년도 시판품조사,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었거나, 부적합품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유통조절명령제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지원사업량에서 차감

- 지원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적발횟수(회)	1	2~3	4~5	6~7	8~9	10	11이상
차감사업량(%)	5	10	15	25	30	40	지원제한

- 위 차감기준은 품위(속박이),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 적용하고, 표시사항, 포장재 부적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친환경인증은 행정처분건수이고, 표준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은 부적합 건수를 말하며 출하단계에 한함.

마. 사업시행

(1) 사업비 지원

(가) 포장재 제작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고, 포장화우대 품목은 협의생략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의무화
 - 겹포장내의 속포장에는 “포장재중량”, “포장재치수”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표전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은 “표준규격품문구” “포장표시” 생략은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목재상자)을 통한 파렛타이징 규격출하시는 「표시사항」 표시 생략 가능
 - 단, 플라스틱상자 및 다단식 목재상자 등에 출하할 경우 산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농관원은 포장재제작 협의시 사업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여 협의안 대로 규격 포장재가 제작되도록 하고,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자체보관, 사업자 각1부)

(나) 사업비 지원

- 농관원은 특정사업자에게 사업비의 편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여건을 종합검토한 후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변경 시행가능

(2) 보조금지급 신청

(가) 포장재비 지원

- 사업자가 포장재비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년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농가별포장재공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서」는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원본을 제출
- 사업자가 농관원에 증빙서류 제출시 『제작포장재 1매』를 제출
 - 포장재 제작협약서와 실제 제작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 확인
- 표준규격 농산물은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 출하처의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타이징 출하확인서」(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농협시·군지부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작성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농협지역 본부를 경유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교부 요청(매월 10일한, '05년도 신청은 '05.11.30일까지 선별·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을 '05.12.10일한)
-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은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시 농협시·군 지부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이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개발 “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제출
- 농협지역 본부장은 신청자료에 의거 「공동선별비 지원신청 집계표」를 작성, 보조금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해당 농관원 지원에 보조금 지급 요청(매월 15일까지, '05년도 신청은 '05.11.30일까지 선별·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을 '05.12.10일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 9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10호서식)
 - 공동선별·공동출하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11호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별지 제13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14호 서식”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각 사업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대표는 해당 사업장에 출하된 무, 배추, 양배추에 대해 표준규격품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의 「포장화 우대품목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하처 농관원 출장소로 송부

단, 각 사업장에서 발급한 「포장화 우대품목 표준규격 포장출하확인서」가 1개월 안에 출하처 농관원 출장소로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도매시장의 경우 포장화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사업장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규격포장공동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
- 출하처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 「표준규격포장화 우대품목 출하확인서」 “별지5호서식”의 내용을 검토하여, 월단위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출하주 경작지 관할 출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준규격 포장화우대품목 출하내역서」을 통보(2005.11월말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12월 10일까지 신청)
 -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 활용

(3) 보조금 집행

(가) 포장재비 지원

- 농관원 출장소장은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농관원 지원자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예금계좌에 국고보조 지원액 입금
단, 사업비 범위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급
- 우수한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도매시장 등 파렛타이징 출하 표준규격 포장재는 지원금액의 5%p 가산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붙임 2” 적용 지원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후 농림부와 협의 지원단가 확정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비교하여 적정 할 경우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 '04.12.21일 이후 출하물량의 공동선별비에 대하여는 '04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5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경작지 관할 출장소장은 출하처 관할 출장소장이 통보한 사업자별 「포장 화우대품목 출하내역」 “별지 제8호서식” 을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지원단가」 “붙임 3”을 적용하여 지원하되, 단량이 없는 품목은 비슷한 단량의 기준단가 적용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출장소장이 요청한 「보조금교부신청자」의 예금계좌에 보조금 지원액 입금
 - '04.12.21일 이후 출하물량에 대하여 '04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05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바. 사업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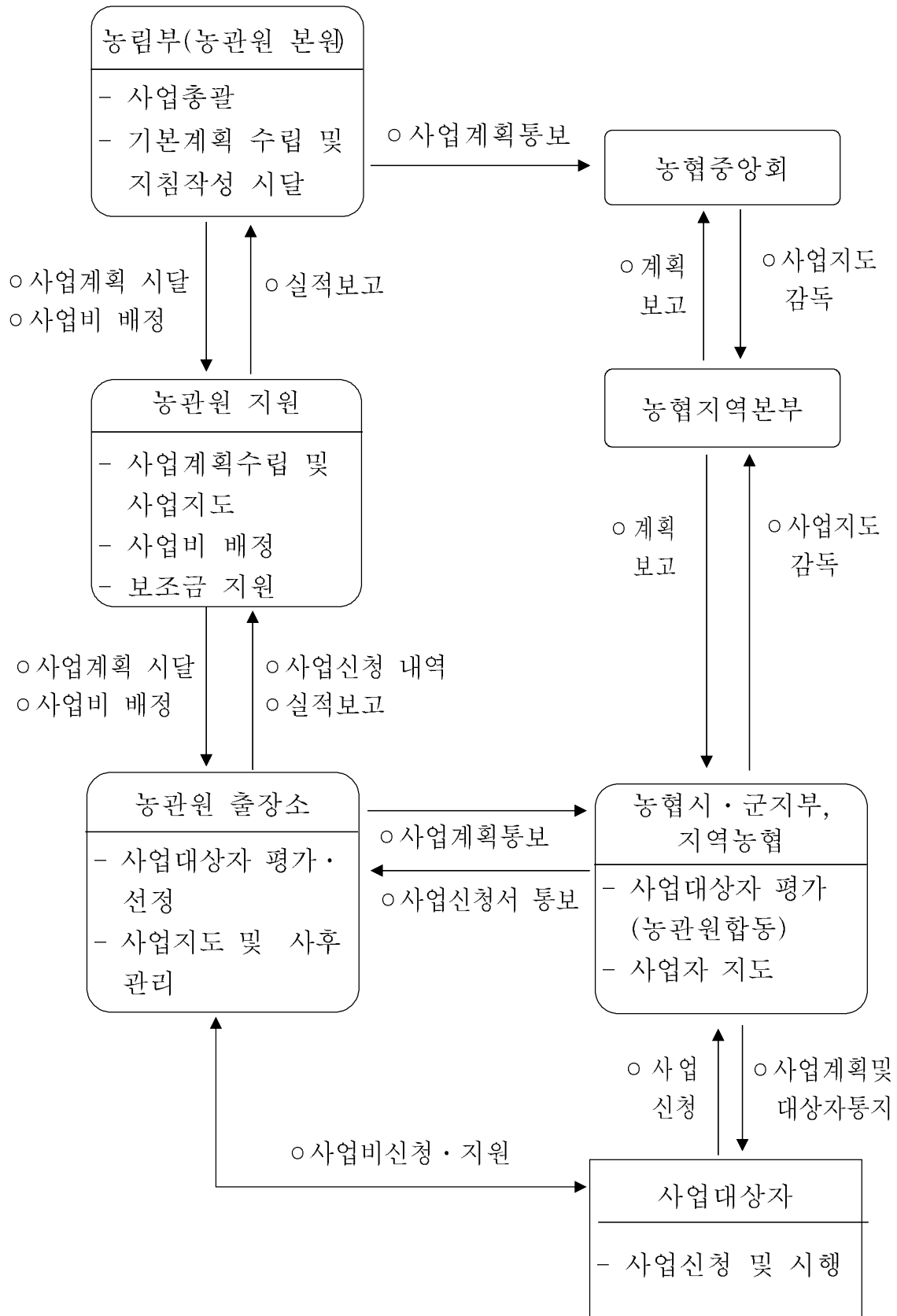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발생, 사업추가(변경)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 「품목」, 「사업비」 「지원비율」 등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재해발생시 :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재해로 인하여 출하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대상 조직의 지원비율 조정이나, 사업대상조직의 추가선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추가(변경) 시 :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5호)를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토록 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변경 시행 가능
- **공동선별비 사업변경 내역을 해당조직으로부터 공동선별·공동계산사업변경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 받아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상호 검토·확인후 변경 시행 가능**
- 사업기간중 농관원 출장소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평가대상 조직의 사업신청시 생산자조직 평가 후 지원

사. '05 사업예산 전배

- 농관원 지원장은 시·군간, 사업간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시행
- **조직간 전배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출장소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
- 시·군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시·도간, 사업간 전배 : 지원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장이 전배하고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
- 단, 타지원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9.30, 10.30일까지 전배 요청(별지 제16호서식)

아. 사업시행 체계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업자 교육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빠른 시일내에 교육 실시
 - 협 조 : 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품질평가 방법 등

(2) 산지표준규격출하 지도·감독

- 농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 농협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단,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사업자는 생산과정조사로 대체 가능
- 포장재비 지원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및 『제작포장재』 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수시확인
 - 보조금 지급신청시 포장재 1매를 제시토록하여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확인하고 사업년도 말까지 보관
-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시 『표준규격포장 확인서 발급대장』 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대장」 수시확인
-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자는 농관원, 농협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

(3) 소비지 품질평가

- 농관원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 및 사업자에게 수시 통보(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준용)
- 농관원은 포장화우대품목에 대한 품목별 출하수량, 포장재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적정여부,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수시 확인

(4) 제제사항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조직의 지원 사업량 결정시 등급분류에 의한 차등 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정 시행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는 확정사업량의 50%범위내에서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지원사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한다.

나. 보고(통보)

- 사업장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은 전년도분의 보조금교부자료를 2005. 1. 31일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별지 제17호서식)
- 농관원 출장소장은 '05사업 지원계획서를 2005.02.05일까지 시·군농협지부장에게 통보 및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2005.02.10일까지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
- 농관원 지원장은 '05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를 농관원 본원에 2005.02.15일까지 보고하고, 농관원 본원은 2005.02.2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8호 서식)
- '05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출장소는 익년 1. 10일까지 지원에, 지원은 익년 1. 20일까지 본원에 보고(별지 제20호서식)

다. 기 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관원 지원장(출장소장)이 농협 지역본부장(시·군 농협지부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농협 지역본부장(농협시·군지부장)은 각종 특산품전, 기획판매전, 직거래 등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지방공영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및 종합유통센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포장재비 및 포장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표시변경 처분·명령 등 관련법령에 없는 사항은 다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포장재 표시사항 중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산지유통조직명만 표시(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
 - 단,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은 「개인, 작목반 명칭」 표시 가능
-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반품교환 안내문구」 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 적극 권장

6. 2006년도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1)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 (2)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
- (3) 포장화 우대품목 : 농관원 출장소 또는 지역농협,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

나. 신청자격

- (1) 포장재비 지원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06년도부터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 (2) 공동선별비 지원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3)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1)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 사업신청자는 사업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조직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관원이나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신청분에 대하여 취합,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5. 1. 31일까지)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경작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2005. 1. 31일까지)
- 농관원 지원장은 지역 산지유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사업자별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경작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2005.2.10일까지)
- 2005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중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006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2) 공동선별비

- 공동선별조직은 해당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사업장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2005. 1. 20일까지)
-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및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2005. 1. 31일까지)
- 2005년도에 2006년도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중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2006년도 사업신청 생략 가능

라. 신청서 제출기간

- 2005. 1. 20일까지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가) 포장재비·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농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평가대상 사업자의 경우 농관원은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
- 포장화우대품목은 농관원 지원장이 사업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지원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별, 품목별,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가 포함된 지원계획서를 작성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원에 보고(2005. 2. 28일까지)

- 농관원 지원장은 시·도별 사업량, 소요예산액 등을 본원에 보고(2005.3.5일까지)
- 농관원 원장은 2005년도 시·도별 사업계획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농림부에 보고(2005.3.10일까지)

(나)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장은(별지 제1-1호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의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한 후 농협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신청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수립
- 농협중앙회는 신청조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량을 농관원 본원에 제출 및 농림부에 보고(2005.3.20일까지)

(2) 사업별 우선순위

(가) 포장재비 지원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2순위 : 생산자조직 평가결과(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
 - 단,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잔량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잔량은 최우수조직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1순위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켓팅조직**
- 2순위 : 신규 산지유통전문조직

(다)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바. 지원대상 제외 예고

- 2006년도부터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7. 보고(통보) 사항

제 목	양 식	보 낸	받 음	기 한
○ 2005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지역농협 (유통인)	지역농협, 농관원 출장소 (지역산지연합회)	2005. 1. 10 2005. 1. 15 (2005. 1. 10)
○ 2006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지역농협 (유통인)	지역농협, 농관원 출장소 (지역산지연합회)	2005. 1. 20 2005. 1. 31 (2005. 1. 20)
○ 2006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제1-1호서식	산지전문조직등	농협시·군지부	2005. 1. 15
○ 2005 생산자조직 평가(합동)	별지 제2호서식	출장소, 지역농 협		2005. 1월중
○ 2005 지원계획서 통보(보고)	별지 제3호서식	출장소 농협시·군지부	농협시·군지부 지원 사업자 지역농협	2005. 2. 05 2005. 2. 05 2005. 2. 10 2005. 2. 10
○ 표준규격품 품질평가결과 통보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사용	출장소	농협, 사업자	수시
○ 2005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 배 요청	별지 제16호서식	지원	본원	2005. 9. 30 2005. 10.30
○ 보조금 교부자료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출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익년 1. 31
○ 2005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지원 본원	본원 농림부	2005. 2. 15 2005. 2. 25
○ 2005 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 2005 사업 집행실적 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출장소 지원	지원 본원	익년 1. 10 익년 1. 20
○ 사업 신청내역 보고	별지 제21호서식	출장소 지원 본원	지원 본원 농림부	2005. 2. 28 2005. 3. 05 2005. 3. 10

【붙임 1】

생산자조직 평가표

- 생산자조직명 :
 □ 주소및전화번호 :
 □ 평가월일 : 200 년 월 일
 □ 평 가 자 : 소속 : 직 : 성명 : (인)
 소속 : 직 : 성명 : (인)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산출근거
		점수	기준	
계	100			
1. 조직 및 시설	(15)			
가. 조직규모	10		○ 조직원수 30명이상 또는 실제배면적 30ha(시설 10ha) 이상 ○ 조직원수 20명이상 또는 실제배면적 20ha(시설 7ha) 이상 ○ 조직원수 10명이상 또는 실제배면적 10ha(시설 5ha) 이상 ○ 조직원수 10명미만 또는 실제배면적 10ha(시설 5ha) 미만	조직원수 실제배면적
	7			
	5			
	3			
나. 품질관리 시설 장비 확보	5		○ 보관시설, 선별기, 포장기, 예냉시설 등 공동 품질관리시설(장비) 보유(임대), 항목당 1점	시설, 장비명
2. 상품의 고급화	(35)			
가. 공동선별·포장	5		○ 공동선별(선과)·포장 (50%이상) ○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선별(선과)·포장 (50% 이상) ○ 농가별 선별(선과)·포장	총출하실적 공동선별실적
	3			
	1			
나. 출하·수송방법	5		○ 파렛트화 수송(30%이상) ○ 표준바코드표시 출하(30%이상) ○ 공동 수송(30%이상) ○ 농가별 수송	파렛트수송실적 바코드표시실적 공동수송실적
	3			
	2			
	1			
다. 공동계산물량	5		○ 총출하량 대비 20%이상 ○ 총출하량 대비 10%이상 20%미만 ○ 총출하량 대비 10%미만	총출하량 공동계산물량
	3			
	1			
라. 브랜드 사용	5		○ 공동브랜드 사용·등록 ○ 공동브랜드 사용·미등록 ○ 개별브랜드 사용·등록 ○ 개별브랜드 사용·미등록	상표명 상표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번호
	4			
	3			
	1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산출근거	
		점수	기준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실적비율이 3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비율이 20%이상 점유 ○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20%미만 점유 										총출하실적 직거래실적
바. 수출 실적	5		○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있는 조직										
사.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이상 100%미만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미만 제작 										전년 신청량 제작수량 신청대비 %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비지 점검	(30)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 명령제 위반건수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적발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감점(점)	0	1	2	3	4	5	6	7	8	9	10	
	배점(점)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4. 품질관리 활동	(20)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10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 이 참가 ○ " 조직원 30~70%미만이 참가 ○ " 조직원 30%미만이 참가 										일자 주관 참석율(%) (참석자/조직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점(50명 미만)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산출근거
		점수	기준		
나. 자율검사원 확보 및 활동	10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10%이상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상”인 경우			조직원수
	7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10%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중”인 경우			자율검사원수
	5	○자율검사원을 조직원의 5%미만 확보하고 활동정도가 “하”인 경우			품질평가결과 부적합품건수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 가점	한도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5점, 50%이상 : 7점, 30%이상 : 3점 ○ 과실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5점) - 과실계약출하계획 300톤이상 : 5점 - 과실계약출하계획 100톤이상 300톤미만: 3점 - 과실계약출하계획 100톤미만 : 2점 ○ 우수조직 선발·언론보도 회수(10점) 2회이하(3점), 3회(5점), 4회(7점), 5회이상(10점) ○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우대품목 지원 실적 비율(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30%이상 : 5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30%미만: 3점 - 우대품목 지원실적 10%미만 : 1점 ○ 전자상거래 실적(5점) - 여건을 갖추고 실적 있음(생산량 대비 5%미만) : 5점 - 여건을 갖추었으나 실적 없음 : 2점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5점)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5점 - 구성원 평균 2회이상 : 3점 - 구성원 평균 3회이상 : 2점 			가입실적 계약체결실적 선발회수 보도회수 지원실적 비율 홈페이지주소 전자상거래실적 잔류농약 분석 적합건수
나. 특별 감점	한도 15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3회이상(5점), 2회(3점), 1회(1점)			발생회수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300%이상 신청한 경우(5점) - 생산량 대비 200%이상 신청한 경우(3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5점)			부적합건수	
	<구성원수>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행정처분건수
	30명 이상	10건이상	5-9건	5건미만	
10-30명미만	7건이상	3-6건	3건미만		
10명 미만	5건이상	2-4건	1건		
감점	7점	5점	3점		

주)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생산자조직 평가 세부기준】

1. 조직 및 시설

가. 조직 규모

○ 조직원수 또는 실재배면적 중 한가지를 반영하되, 품목별 연재배면적이 아님.

나. 품질관리시설·장비 확보

○ 조직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 예냉시설 등), 장비(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등)의 종류별 보유 또는 임대 상황을 말함.

2. 상품의 고급화

가. 공동선별·포장

○ 산지유통센터(APC), 집하장 등에서 표준규격에 따라 동일 등급기준으로 공동선별 선과, 포장하는지의 여부

나. 출하·수송 방법

○ 파렛트화 수송은 표준규격품을 파렛트화하여 일관작업 수송하는 것을 말함.

○ 한국유통정보센터에 국제표준바코드(Kan Code, Ean Code)를 등록한 생산자조직이 바코드 체계를 사용,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함.

○ 공동수송은 농협, 작목반 단위로 수송을(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다. 공동계산 물량

○ 농협, 생산자조직 등의 출하정산서 공동계산 물량을 말함

라. 브랜드 사용

○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로 구분되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 중에 있는 경우 등록 적용

-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또는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의미함.

- 개별브랜드 :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 조직이 개발하여 참여조직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의미함

마.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실적

○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거래를 제외한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비율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바.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전년도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수량대비 실제제작수량 비율을 적용

3. 소비자 점검

가. 부적합품 발생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4. 품질관리 활동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조직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중 실시한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평가

나. 자율검사원 확보 및 활동

○ 자율검사원 확보인원과 자율검사 활동상황, 자체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가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신청서 제배면적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과실계약출하사업 계약체결 실적
 - 과실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의 과실계약출하계획 계약체결 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우수조직 선발전수와 언론보도 회수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품에 대한 농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품질인증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우수출하조직으로 선발, 통보되어 확인된 회수와 우수조직에 대한 언론보도 (TV, 신문 등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실적 비율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대비 포장화우대품목 (무 ·배추 ·마늘 ·양배추 외) 지원실적 비율
- 전자상거래 실적
 - 홈페이지구축 등 전자상거래 여건을 갖추고, 전자상거래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
 - 잔류농약 분석결과 구성원 대비 평균 적합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나. 특별감점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회수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과 관련 인터넷 등으로 관계기관·단체에 제기(상부기관 이첩분 포함),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횟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복사하여 다수기관·단체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계산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
 - 전년도 해당품목의 시·군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판정하되, 우수한 재배기술 등에 따른 생산량을 감안하여 판정
- 잔류농약 부적합 건수 및 행정처분
 - 농관원(관계기관·단체 통보분 포함)에서 친환경인증·품질인증품 및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위반한 ¹⁾ 부적합 건수 및 ²⁾ 행정처분 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¹⁾ 부적합 건수 : 출하단계 규격출하품(일반농산물 포함)
 - ²⁾ 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품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kg)	선별비 조정 (원/kg)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과실류	사과	49	49	15	20	24
	배	101	100	30	40	50
	단감	81	81	24	32	40
	포도	103	100	30	40	50
	복숭아	57	57	17	23	28
	감귤	55	55	16	22	27
	매실	64	64	19	26	32
	참다래	69	69	21	28	34
	자두	89	89	27	36	44
서류	감자	26	26	8	10	13
	고구마	101	100	30	40	50
일 반 채소류	오이	52	52	16	21	26
	방울토마토	69	69	21	28	34
	토마토	43	43	13	17	21
	가지	100	100	30	40	50
	양파	45	45	13	18	22
	딸기	265	160	48	64	80
	단호박	54	54	16	22	27
	애호박	76	76	23	30	38
	수박	20	20	6	8	10
	참외	56	56	17	22	28
	당근	73	73	22	29	36
	풋옥수수	23	23	7	9	11
	알타리무	477	160	48	64	80
	짜리고추	155	155	46	62	77
	홍고추	116	116	35	46	58
	풋고추	117	117	35	47	58
	피망	116	116	35	46	58
	순무	81	81	24	32	40
마늘	150	150	45	60	75	

류별	품목	선별비용 (원/kg)	선별비 조정 (원/kg)	kg당 지원단가		
				선별비의 30%	선별비의 40%	선별비의 50%
일 반 채소류	간마늘	108	108	32	43	54
	쪽마늘	141	141	42	56	70
	메론	45	45	13	18	22
	마늘쫘	47	47	14	19	23
	파프리카	122	122	37	49	61
엽채류	쪽파	101	101	30	40	50
	간대파	262	200	60	80	100
	달래	1,116	200	60	80	100
	결구상추	94	94	28	38	47
	대파	189	189	57	76	94
	부추	187	187	56	75	93
	시금치	156	156	47	62	78
	열무	144	144	43	58	72
	셀러리	55	55	16	22	27
	상추	673	200	60	80	100
	쭈갓	773	200	60	80	100
	케일	673	200	60	80	100
	신선초	418	200	60	80	100
	치커리	896	200	60	80	100
	들깻잎	270	200	60	80	100
	청경채	969	200	60	80	100
	미나리	625	200	60	80	100
	참나물	773	200	60	80	100
	브로커리	40	40	12	16	20
	향미나리	700	200	60	80	100
버섯류	양송이버섯	349	200	60	80	100
	새송이버섯	173	173	52	69	86
	팽이버섯	166	166	50	66	83
	느타리버섯	312	200	60	80	100
화훼류	국화	10(본당)	10(본당)	3	4	5
	장미	18(본당)	18(본당)	5	7	9

【붙임 3】

포장화우대품목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지원단가

(단위 : 원/매, 대)

품목	포장재종류	단량(kg)	포장재비	수확상차비	계
무	골판지상자	8~12	270	90	360
무	그물망	5~9(5개)	25	95	120
무	PP대	15	40	140	180
무	PP대	18~20	50	150	200
무	PE대	10~14(5개)	15	95	110
무	PE대	18~20	50	150	200
무	플라스틱상자	1매	-	150	150
배추	골판지상자	8~12(3~4포기)	270	90	360
배추	그물망	8~12(3~4포기)	20	100	120
배추	그물망	15	30	110	140
배추	PE대	8~12(3~4포기)	20	105	125
배추	PE대	15~20(5포기)	50	170	220
배추	플라스틱상자	1매	-	150	150
양배추	골판지상자	8~12(4~6포기)	270	90	360
양배추	그물망	6~8(3포기)	25	100	125
양배추	그물망	8~10(3포기)	25	100	125
양배추	그물망	8~10(3~4포기)	25	100	125
양배추	그물망	10~12(3포기)	25	100	125

※ 다단식 목재상자의 수확 상차비는 해당 속포장재의 단가를 적용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조직·개인,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수출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 황	사업자		사업자명					
			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품질관리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이수과정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10a당 수량	생산량	출하시기	
			(m ² 평)		kg	톤		
전 년 도 지 원 · 출 하 실 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포장재 지원· 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수확상차비				지원수량	
			선별비				제작수량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계산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일반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 등록번호			
기타실적		전자상거래		직거래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견학 회, 명		
				톤	톤			
공 동 유통 시 설 보 유 현 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

※ ()내서는 유통시설의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기재

[붙임]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 조직명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표준규격량
				m ²	kg	kg
합계						

주1)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현황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 표준규격품 = 친환경인증품 + 품질인증품 + 규격출하품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 설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m ²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 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톤	원	천원	조직수	인원
					개	명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 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수송방법별	농가별 수송(톤)	공 동 수 송				
		계(톤)	파렛트수송	농협계통수송	조직공동 수송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순위	조직명	품목	등급	합계 (100)	(1) 조직·시설 (15)		(2) 상품의 고급화 (35)						(3) 소비지 점검 (30)	(4) 품질관리 활동(20)		(5) 특별 가· 감점	
					조직 규모 (10)	품질 관리 시설 장비 (5)	공동 선별 (5)	출하 수법 (5)	공동 산물 량 (5)	브랜드 사용 (5)	전자 상거래 실적 (5)	직거 래 실적 (5)	포장 재 신청 (5)	부적합 품 발생 (30)	조직 원 교육 (10)	자율 검사 원 활동 (10)	가점
				점													

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소비지점검결과, 상품的高급화, 품질관리활동, 조직 및 시설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

시군명	사업명	구분	지원대상	사업명	생산조건	조직원수	평가점수	평가등급	지원율	품목명	배적면적	생산계획량	규격출하량	포장재신청			과다신청감	지원계획							
														재질	단량	수량		사업량	사업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수확상차비	선별비		
						명	점		%		m ²	톤	톤		kg	매	매	매	매	원	천원				
계																									

-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기재
 2)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원, 수출으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개인으로 기재
 4) 생산조건은 친환경인증의 경우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기재
 5)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표준규격포장화우대품목 출하내역

출하처 관할 출장소명 : _____

확인서 접수일자	산지		표준규격품						출 하 자		
	출장소	시군	출하 처명	구분	품목	포장재 종류	단량 (kg)	수량 (대)	출하처명	주소	전화번호

주) 구분란에는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으로 기재

공동선별 · 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_____ (품목 : _____)

□ 공동선별 기간 : _____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_____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 1) 출하물량은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계산 정산서 (수탁분)

(기준일 : . .)

○ 조직명(사무소) :

○ 공동계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하일	정산일	출하처	출하주	품목	규격	등급	수량 (kg)	단가 (원)	판매 금액	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
장으로 출하한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Kg당 금액으로 등급별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 (매취분)

조직명 :

공동선별·공동출하기간 :

일자	매입실적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품목	수량(Kg)	금액(원)	수량(Kg)	등급규격	단가(원)	금액(원/kg)
계							

- 주) 1. 등급규격은 표준규격에 해당하여야 함(특,상,보통)
 2.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수량은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에 명시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 공동 작업일지

(2005. . .)

조 장		품 질 관 리 사		책 임 자	
--------	--	-----------------------	--	-------------	--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A농가 밭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명	출근 여부	차례	성명	출근 여부	차례	성명	출근 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00,000원(총0,000,000원)						

-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공동선별·공동계산 사업 변경 계획서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품목			
출하계획물량(Kg)			
사업방식(매취,수탁)			
사업비 소요액(원)			
상표명(브랜드명)			
기타(1)			
기타(2)			
기타(3)			

※ 변경사항에 한해 작성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직인)

농협 ○○(시)군지부장 귀하

농협 ○○지역본부장 귀하

※ 처리절차 :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이
농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가능

○ 시·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역본부를 경유
하여 농관원 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별지 제16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시도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수확 상차비	선별비	계	포장재비	수확 상차비	선별비	계	
		천원	"	"	"	천원	"	"	"	
계										

주)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구분

작성요령

1. 제출대상기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2. 작성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무상으로 교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융자금 및 출자금은 제외)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8호(모자보건법 제21조 및 제1항, 제2항 및 제4호(고용보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
3. 작성 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년도별)
4. 제출하실 곳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장
5. 상호(법인명)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6. 성명(대표자) : 교부받은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8. 사업장소재지 :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9. 교부자금명 : 교부한 자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관련법령 :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기재합니다.
11. 기타 : 작성 대상기간중 교부받은 자별, 교부일순으로 기재하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사업량·사업비 확정결과

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 총괄

시도별	구분	지원대상	지원등급	조직수	조직원수	재배면적	생산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 주1)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기타생산자조직, 수출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으로 기재
 3) 지원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 기재
 4)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 품목별

시도별	종류별	품목	조직수	조직원수	생산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개	명	톤	톤	매	매	천원			
계												

- 주1) 종류별은 곡류, 과일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버섯류, 화훼류순 기재
 2) 조직수, 조직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나. 포장화우대품목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원수	재배면적	생산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수확상차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천원		
계											

- 주) 조직수, 구성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 제19호서식】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상황

1.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시군별 (시도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 수	농가 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 수	농가 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화훼류 출하량은 상자당 15kg으로 환산하여 기재

2)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작성)

○ 품목별 : 양식은 위와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2. 포장화우대품목

시도별	사업장명 (출하장)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 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사업 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수확 상차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수확 상차비
명	톤	매	천원			명	톤	매	천원					
계														

주1) 사업장명은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명을 기재

2) 사업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집행실적

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반환액) (A-B)
		계	국고	자부담		계	국고 (B)	자부담	
		원			원	원			원
	계								

-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구분
 2) 사업계획의 국고는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친 것
 3)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 중 배정된 금액
 4) 예산집행액 : 농관원 지원장이 자금을 집행한 금액
 5)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국고집행액을 뺀 금액
 6)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집행결과),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집행결과)

2.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군·구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내역

가. 총괄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구분	지원 대상	조직수	농가수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 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신청 내역				
									사업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 재비	수확 상차 비	선별 비
				개	명	톤	톤	매	매	천원			
합계													

-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기재
- 2) 구분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기타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수출으로 기재
- 3)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유통인회원, 개인으로 구분
- 4) 출장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신청내역),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신청내역)

나. 품목별 : 양식은 총괄과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1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서기관 김원일)입니다.

①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1. 목 적

-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생산자조직에 중기·저리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농산물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조직의 집중육성과 사업내실화를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적정 조직수를 지정·운영하되,
 - 조직간 사업연합 또는 공동출자방식의 공동마케팅조직 설립 등 사업연합·계열화·기업적 경영방식 적용을 통한 농산물 마케팅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사업 및 유통효율화 개선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부진조직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성 있는 산지조직 신규 선정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유통시설 현대화·규모화 및 유통전문인력 육성 중점 추진
- 자금사용에 대한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사업실적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유통시설투자 참여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 전문조직사업 적극 활성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다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4조, 제6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7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직수, 백만원)

		20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안	2006년이후
사업량신규지원 기준		129	99	66	110	80~100전후
사 업 비	계	1,094,590	307,500	313,125	500,000	2,914,250
	용 자	875,673	246,000	250,500	400,000	2,331,400
	자부담	218,917	61,500	62,625	100,000	582,850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 경과

- 규모화·전문화된 조직이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중기(3년) 저리(3%)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
- 2002년도부터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사업을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영농조합법인 등까지 지원대상 범위확대
- 2005년부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을 선정·지원

2) 2005년 지원방향

- 지원기한 도래조직과 신규참여를 신청한 생산자단체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을 지정·운영
 - 사업연합,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운영, 자조금단체가입조직등 유통개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신청대상조직에 우선 선정·지원
- 2005년도부터는 공동마케팅조직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

3) 지원대상조직의 신청자격

- 최근 1년간¹⁾ 매출실적²⁾ 이 30억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
 - 신청대상조직 : 사업연합, 공역조직,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 사업연합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공동법인 등
 - 신청자격제한 : 축협조합, 축산류 또는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상법상 자회사 등

* 기 산지유통전문조직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자금 전액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신청자격 제한

- 1』 “최근 1년간”이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함
- 2』 “매출실적”이란 농산물(양곡류 제외) 판매 및 가공품 판매실적을 말함.

- 구비시설 :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금액기준)
- 조직 및 전문인력 : 판매사업전담부서(전무 또는 상무) 및 품질관리·마케팅 전담 실무인력을 2명이상 확보
- 안정적인 출하조직 :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 품종 및 재배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출하조직 육성
- 품질 및 브랜드관리기준 : 자체 상품품질 및 브랜드 관리기준 운영조직
- 기타 다음 사항을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전문인력 양성 : 품질관리사 육성 및 유통교육 실시
 - 유통효율화 목표관리 : 사업주관기관이 사전공지한 공동선별·공동계산율, 파렛트출하율 목표이행계획 (향후 사업실적평가지 중점평가사항 연계)
- 다만,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 공동마케팅조직 지원자격은 추후 공동마케팅조직 지원계획에 의거 별도로 정함

4) 지원대상품목 : 아래품목 및 그 가공품

부류별	세 부 품 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서류, 참깨·땅콩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임산물류	○ 목과류(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인삼(백삼, 홍삼, 뿌리삼) 및 한약재용 약용작물류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부업축산에 한함)

* 단, 양곡부류, 수산부류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공장) 원료구입 자금
-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채소·과실 등 수급안정사업 품목제외)
- 매취사업자금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자금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유통전문인력 육성 인센티브 자금(농림부에서 별도 지원)
- ※ 공동마케팅조직은 각종 자금지원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6) 재원 및 지원조건

- 재 원 : 정부자금 80%, 자부담 20%
 - 협동조합의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와 협동조합에서 부담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은 정부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
- 융자조건
 - 회원조합 : 연리 3.0%(대여 2.5%),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영농조합법인 등 : 대출 3.0%(대여 1.0%), 3년 거치후 일시상환

나. 2005년 지원계획

(단위 : 조직수, 백만원)

구 분	2004년 실적	2005년도 예산안
○ 사업량	66	110
○ 사업비	303,125	500,000
- 정부자금(농안기금)	250,500	400,000
- 농협자금(자부담)	62,625	100,00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후 일시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1829~30)

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397-5843, 5857)

다. 사업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사업평가팀 : 6300-1301~2)

라.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 방식

- 산지유통전문가로 구성된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위원회 : 심사에 관한 독립성 보장

- 매년 사업비 지원기간이 만료된 조직과 전문조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를 심사하여 선정
- 매년 평가를 실시, 기준미달 조직은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지정취소 결정은 자연재해, 단기적 경기변동 영향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마. 지원대상 심사기준

- **공동계산의 확대¹⁾**은, 상품의 고급화 추진, 유통비용 절감, 유통개혁 추진 및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산지유통시설 등의 활용 실태를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공동선별·공동계산조직,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영조직, 유휴시설 및 설비 인수활용조직, 자조금단체 가입조직에는 기본점수에서 우대하고
 - **공동마케팅조직²⁾**은 별첨의 별도 기준에 의거 선정·지원
 - **사업연합³⁾**, **광역조직⁴⁾**은 우선선정대상조직으로 가점 부여
- 계량부문 심사항목(85%)과 비계량부문 심사항목(15%)을 설정하되,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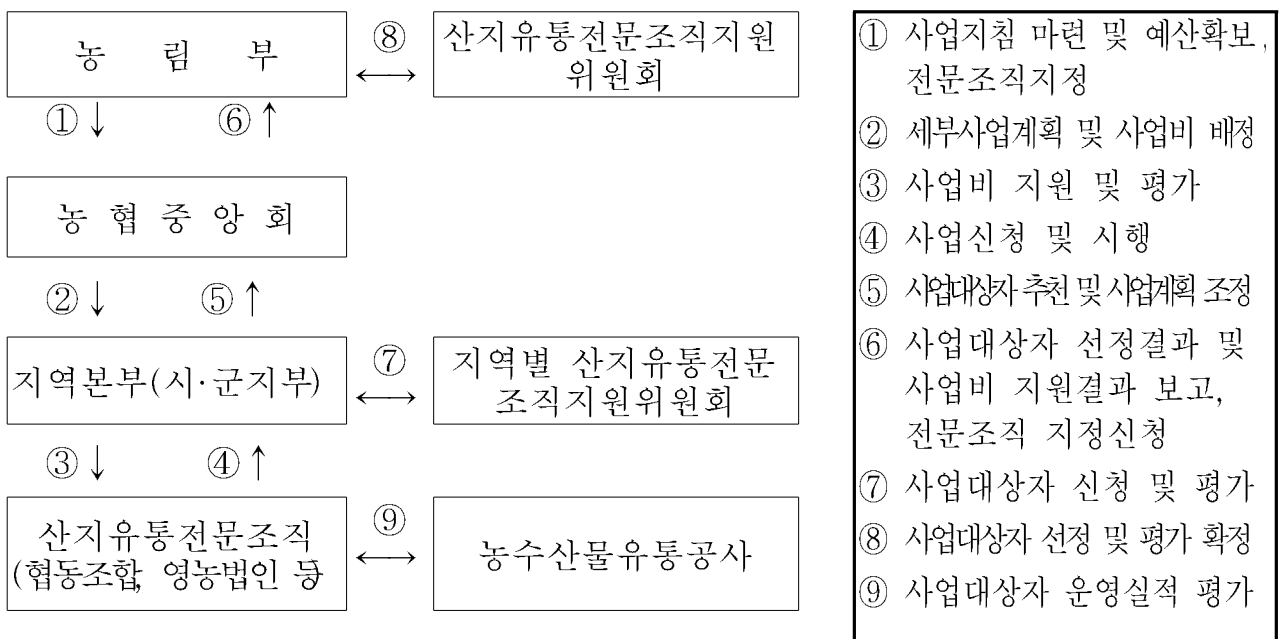
<p>1』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다만, 조직의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이를 검품한 후 공동 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봄</p> <p>2』 별도 육성계획에 의거 지정된 공동마케팅조직을 말함</p> <p>3』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회(법인여부 무관)를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단, 연합사업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된 연합회에 한함)</p> <p>4』 조합원 수 5천명 이상인 지역조합, 조합원 수 2천명 이상인 품목조합, 2004년 중에 위 규모로 합병 등 광역화할 계획인 조직</p>

- 사업신청 조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능력을 심사
- 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① 우선선정대상조직
 - ② 상위 심사항목의 득점비율이 높은 조직
 - ③ 유통사업 규모가 큰 조직
 - ④ 조합원 수가 많은 조직
 - ⑤ 기타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 우수한 조직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총사업비)을 70억원으로 원칙으로 함
 -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예외로 하며, 사업연합·광역조직은 예산범내에서 예외로 인정
 - 신청 조직의 사업비 신청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되, 해당 조직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구분·작성 제출
- ※ 다만, 전년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조기에 반납한 경우 해당액 만큼 신청액에 감액 조치

사. 사업추진체계



※ 공동마케팅조직 추진체계는 별도로 정함

아. 사업시행

- 1) 사업신청(공동마케팅조직은 추후 별도 별도계획에 의해 시행할 예정임)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3개년 사업추진방향과 지원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신청서(심사기초자료)양식 共知(2004. 12.)
 - * 지원신청액(총사업비)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요건 기재

- 신청조직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70억원 초과지원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 제출(2005. 1월)
- 2) 농협중앙회(지역본부)의 지원대상조직 추천(2005. 1, 세부일정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함)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신청자격을 갖춘 조직 중에서 다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조직을 엄선하여 각 지역본부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추천
 - ① 우선선정대상조직(사업연합, 광역조직,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영조직,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조직, 자조금 단체가입조직)
 - ② 전처리상품등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고유 브랜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농산물유통혁신 실천조직
 - ③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 공동이용(유휴 산지유통시설 인수·임차 등 포함)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직
 - ④ 기타 농산물 유통개혁에 선도적 역할수행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조직
 - 지역본부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 학계, 유통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고 구체적 운영지침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함
 -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과다계상등 사후 각종 실사등에서 현저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조직은 농협중앙회 최종 심사결과의 총 배점에서 5%를 감함
 -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지원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3) 농협중앙회 심사(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 및 심사결과 농림부 제출(2005. 2월말까지)
-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지원신청액이 지원액 산출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실적 평가자료가 없는 신청조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지실사 평가결과를 선정심사에 반영
 - 조직별로 심사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현황표 작성(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제출용)
 - ※ 농협중앙회는 신청액이 70억원을 초과한 조직 및 심사과정에서 감점 처리된 조직의 현황 등 특이사항 별도 첨부, 제출

4)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2005. 4월말까지)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심의·의결 및 확정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은 확정된 지원액과 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조직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농협중앙회에서 표준양식 별도제공
- 지원대상조직은 확정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의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범위내에서 용도별로 구분·작성
- 농협중앙회의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직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사회 의결서 비치)**

6) 사업부진조직 등에 대한 지원 제한

- 자금지원일 현재 사업실적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어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확정되었거나, 지원자금 부당운용 또는 사업의무 미달 등으로 동 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은 조직은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실적의 평가》

가. 원칙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원 또는 부진조직 자금회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쟁촉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나. 2005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05년 사업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추진개요, 평가실시절차등 주요 개편 사항은 추후 별도 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의함

1) 평가개요 : 생략

2) 평가실시절차 : 생략

- 3)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인센티브지원 및 패널티 부과
- 상위 20% 이내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마케팅법인형의 경우 0.5%), 1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내용
 - 상위 5%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40%
 - 상위 6~10%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30%
 - 상위 11% 이상 20%이내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20%
 - 하위 20% 이내 조직의 지원자금 회수 또는 경고조치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규모
 - 하위 5% 초과 10% 이하 해당조직은 정부지원액의 10%
 - 하위 5% 이하 조직은 정부지원액의 20%
 - 하위 11~20%이하 조직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 * 2년 연속 평가 하위10%이하에 해당하는 조직은 자금 전액회수 및 향후 3개년간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자격 제한
 - * 다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농협중앙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회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조직과 동일연도에 선정된 우수조직에게 잔여기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조직이 자율적으로 유통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등 실시 여부 및 결과는 평가에 반영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조직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조직의 담당자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반기별 지도·점검 실시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
 -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 회원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 직거래사업지원자금
 - 우수농산물지원자금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출하촉진자금

나. 제 제

- 1) 지원자금을 다음과 같이 부당등의 사용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와 제29조의 규정 준용)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2) 사업의무량 미달 등에 대한 조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계획상의 총사업비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25% 미만일 경우는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25%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액
 -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 3) 사업의무량 산출인정 기준
 - 출하선도금(선급금) : 본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선급금 지원액(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출하선도금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선도금과 일반출하선도금으로 구분 관리 단, 자체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도금은 지원실적의 50%만 인정

- 매취사업자금
 -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 및 기타 매취사업 실적(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산지유통센터 및 가공시설 원료구입자금과 기타 매취사업자금으로 구분 관리
- 유통사업운전자금
 - 본 사업과 관련된 유통사업 운전자금 운용실적의 30%(또는 평균잔액의 100%). 단, 양곡, 수산 등 관련실적은 제외
 - * 자체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 가공공장은 유통사업 운전자금 운용실적의 15%(또는 평균잔액의 50%)만 인정
-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장비구입자금
 -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장비구입 사용금액(시설개보수대금 지급시기부터 자금의 상환기일까지 실적 인정)

다. 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는 정부자금취급수수료 0.5%p중 80% 는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용도에 사용(예산범위내)하되, 취급수수료중 20%는 용자취급관리비로 인정
 - 산지유통혁신 연구, 국내외 세미나 개최, 국내외 자료수집, 공동마케팅 조직 홍보지원,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마케팅 강화
 - ※ 마케팅자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등 공동마케팅조직 및 우수조직 우선 지원
 -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습득, 농산물마케팅관리사과정등 전문과정, 전자상거래 등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 유통정보의 제공 및 회원농가의 D/B 구축 등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등), 정기 연찬회등 개최
 - 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등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선진사례 견학 등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는 공동계산·상품화·브랜드화·친환경농업 기술등의 맞춤형 전문컨설팅지원이 필요한 조직의 용역, 컨설팅 결과 보고 및 평가회등 지원
 - APC클리닉(유통공사) 및 APC지원단(농협),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결과등에서 마케팅 강화 또는 보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통시설등의 시설설치비 지원
 - ※ 다만, 시설 및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은 사전 농림부와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

- 동 대여금 수입에 의한 공익사업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 반영계획등 세부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집행 실적등에 대한 사업실적을 농림부장관에게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승인 후 시행

라. 일시운용수익금의 관리

- 정부지원액 중 사업시기 전후 사업에 투입되지 않은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관리(총 수입액에서 차입이자 3.0%해당액을 뺀 금액)
- 일시운용수익금은 해당 전문조직(생산자등)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 고유상표 및 포장재 개발비, 예냉기술 습득 관련 비용, 유통정보화 관련 비용(교육·조사·전산 개발 등),공동계산 프로그램 개발비, 선별작업단 운영비, 개발상품 홍보·판촉비, 유통전문기술 자문비, 상품성 제고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경영진단(컨설팅)비, 시설 개보수비(수익적 지출에 한함) 등 유통사업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함.(자조금조성조직은 자조금으로 활용가능)
- 일시운용수익금의 사용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자금의 미운용기간, 미운용 규모, 운용가능 금리 등 운용수익을 감안하여 조직의 연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반영(품목의 종류, 생산자의 자금수요 형태, 재고 보유기간 등을 감안)
 -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객관적인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에서는 2005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림부 보고(2004.12)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다음 사항은 기한내 제출하여 농림부와 사전협의 내지 승인을 거쳐 사업추진
 - 유통전문인력 육성 인센티브지원 세부사업계획서(2005.1월말까지)
 - 공익사업(정부 대여금 수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2005.1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2006년 산지유통전문조직자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조직별 명세(2002년~2004년 지원액과 중도 회수액 현황 포함)등 현황 자료를 2005. 3. 31.까지 농림부에 제출
 - '06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등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서기관 김원일)입니다.

1. 목 적

-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생산자조직의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체계화 유도로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신선농산물 유통 확산
-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 및 시장교섭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3년도부터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공동규격출하 촉진,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을 통합하여 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자금지원
 - 유통사업이 규모화되어 있거나, 재배기술, 마케팅 계획이 우수한 생산자조직에게 운영자금 우선 지원
- 지역단위의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활성화
- 사업평가 실시로 우수조직에게는 추가자금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조합에게는 자금지원 규모 축소
 - 평가결과 우수 생산자조직(작목반 등)을 보유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우선 선정
- 산지유통인의 농산물 출하촉진 및 유통질서 확립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51호(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이후
사 업 비	계	2,480,547	143,188	123,851	95,412	910,000
	용 자	1,986,048	120,770	105,281	80,530	728,000
	자부담	494,499	22,418	18,570	14,882	182,000

○ 사업별 과거 지원실적

- 일반조직유통활성화 : ('97~'02)1,787,794 → ('03)89,670 → ('04)74,281백만원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 ('98~'01)187,521 → ('03)30,000 → ('04)27,000백만원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 : ('97~'01)10,733 → ('03)1,100 → ('04)1,100백만원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 배경

- '92년부터 작목반을 공동출하의 기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 '97년부터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유통 활성화자금지원
- '98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원료확보자금지원
- '95년도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전국 농산물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금 지원으로 농산물의 출하촉진,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 2003년도부터 산지유통관련 운영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유통활성화, 공동규격출하촉진지원,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사업명칭을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하고, 유통사업실적이 우수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에게 집중지원 추진

2)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한

- 지원대상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자 포함), 도매시장(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지원품목 : 농산물(양곡류·축산류 제외)
- 지원제한
 -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참여 품목

3) 자금사용용도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을 촉진하기 위한 출하선도자금 등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생산자단체의 매취 및 출하선도금
- 산지유통인은 생산농업인과의 포전매매 등을 위한 출하선도자금

4)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2월이내
- 지원금리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출하선도금 : 대출 4.0%(대여 2.0%)
 - 회원조합 자체 매취자금 : 대출 4.0%(대여 3.5%)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 대출 4.5%(대여 2.5%)

○ 사업의무량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회원농협, 산지유통센터 등 생산자조직 : 정부지원액의 125%이상에 해당하는 유통사업 실시
- 산지유통인 : 정부지원금액의 220%이상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의무

나. 2004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농안기금)			비고
	계	용자	자부담	
○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	95,412	80,530	14,882	
-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74,412	59,530	14,882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1,000	1,000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	20,000	20,000		

- 용자조건 : 연리 4%, 12월이내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1829~30)

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사업비 신청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협동조합 → 농협(시·군지부)
 - 신청서류 :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사업장 포함 → 농협(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년도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받은 사업장 또는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사업장등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농협(시·군) 또는 유통공사에 대출 신청(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신청서류)
 - 농협, 유통공사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서류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용자신청서(붙임5) 및 농산물출하실적확인서(붙임6)

마. 사업대상자 선정요건 및 지원한도액

1) 사업대상자 선정시 기본요건

- 작목반 : 농협의 「작목반육성및지원준칙」에 의거 평가를 받은(전산등록)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조합원이 5명 이상인 법인
 -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서 농산물유통사업실적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
 - 사업장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지원한도액을 통보 받은 사업자(통보자 : 농협 또는 유통공사)
- 산지유통인 : 농산물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청과부류)으로서 신청일 현재 출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

2)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유통활성화지원

- 농협중앙회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을 설정하되, 유통사업실적 우수 조직과 유통활성화 의지가 강한 생산자조직에게 집중 지원되도록 함.
 - 자금형편을 고려하여 생산자조직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 영농조합법인 등은 사업실적,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이내까지 지원가능
 - 영농조합법인은 생산농가 또는 개인에게 대출지원이 불가능함(위반시 대출 자금 회수조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 포함)

- 사업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도액 결정

등급	등급구분	지원한도액
A	평점 90점이상	30억원
B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	20억원
C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	15억원
D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	10억원
E~F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등 평가결과 평점 60점미만 사업자	3억원

- * 2005년부터는 평가결과 E, F 등급 사업자의 경우 지원 중단.
단, '05년도 또는 향후 2년이내에 농림부 시행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의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자체 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인의 규모, 취급물량의 과다, 수출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대출 신청하여 자금을 배정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평가시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농협, 유통공사 등 대출취급기관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신용상태와 담보제공 등을 고려하여 대출 실행

□ 산지유통인

- 최근 1년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출하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배정
 - 용자포기 등 미사용자금 발생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정
- 지원한도액
 - 지원금액은 법인 최대 4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함.

구 분	출하실적규모	지원한도액	출하의무액
법 인	2,000백만원이상	400백만원	880백만원
개 인	300백만원이상	200백만원	440백만원
	200백만원이상~300백만원미만	150백만원	330백만원
	100백만원이상~200백만원미만	100백만원	220백만원
	30백만원이상~100백만원미만	50백만원	110백만원
	신규사업자	50백만원	110백만원

바. 2005년도 사업비 지원범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지원(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포함) : 20,000백만원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은 아래의 사업비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 : 1,000백만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등 유통사업을 활성화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 : 59,530백만원
- ※ 화훼비회원조합의 3,000백만원은 별도 지원

사. 사업시행

1) 사업시행요령

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사업비 지원절차

- 농협중앙회는 “2004년도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계획서(붙임1)” 양식을 협동조합에 배부하고 협동조합은 관내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1월)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신청자는 붙임1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내 협동조합에 사업신청(1.30까지)
- 협동조합은 관할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실확인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제출(2.10까지)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자격·심사기초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농협 시·군지부는 신청자별로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신청자 배점기준표 및 평가표(붙임2)”에 의거 심사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하고,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역본부에 제출(2.20까지)
- 지역본부는 시·군지부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내역을 근거로 하여 지원순위와 사업비를 심사·결정하고,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신청(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청과부문 판매사업실적, 우수작목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범위내에서 지역본부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본부에 통보(3.10까지)
- 농협중앙회는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방침을 확정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를 배정

< 지역본부별 한도배정 산출기준 >

- ① 기준금액 산출(50%) : 청과부문 판매사업실적에서 다음의 사업금액을 차감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금액
 - 채소수급안정사업(노지+시설)
 - 과실계약출하사업자금(연도말 기준)
- ② 지역본부별 가점금액 산출(50%)
 - 우수작목반 보유현황(30%)
 - 품목별 협의회 회원조합수(20%)

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사업장 포함) 운영자금지원 절차

-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된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출실행
 - 농협, 유통공사는 지원한도액을 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비 신청자는 협동조합 또는 유통공사에 자금대출 신청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대출신청하여야 함.
-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사업장은 자금대출을 받아 유통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유통공사에서 정한 기한내)

다)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지원절차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통공사에 신청
- 유통공사에서 사업실적, 자격여건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라) 화훼비회원조합 사업자금 지원은 사업주관부서의 별도의 지침에 의해 사업시행 및 지원

2) 운영실태 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평가시기 : 지원기간종료 30일 이내
 - 평가방법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별로 사업실적 평가
 - 평가배점기준표에 의거 현지 및 서류심사 평가(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와 협의하여 평가표 별도 마련)
 - 평가결과 반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경우는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시 우수조직에게는 사업비 추가(지원액의 20%내) 지원하고, 부진조직에게는 감액(지원액의 20%내) 지원 또는 지원제외
 - 추가지원 및 감액지원범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방안 마련 추진
- ※ ① 산지유통인 지원 결과는 자금지원부서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함.
② 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평가 및 지원계획』에 의거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부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전년도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상환기한 만료일에 금년도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담보능력 및 사업능력 등 여건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지원예정금액에서 이미 사용중인 금액을 相計處理하는 방법으로 대출실행
- 자금배정 이후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으로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051호, 2000.12.15 개정)에 따름.

나. 사후관리

- 사업자(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인 등)는 “농산물출하 실적관리대장(붙임3)”과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대출기관은 대출실행 후 지원기간 중의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사업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 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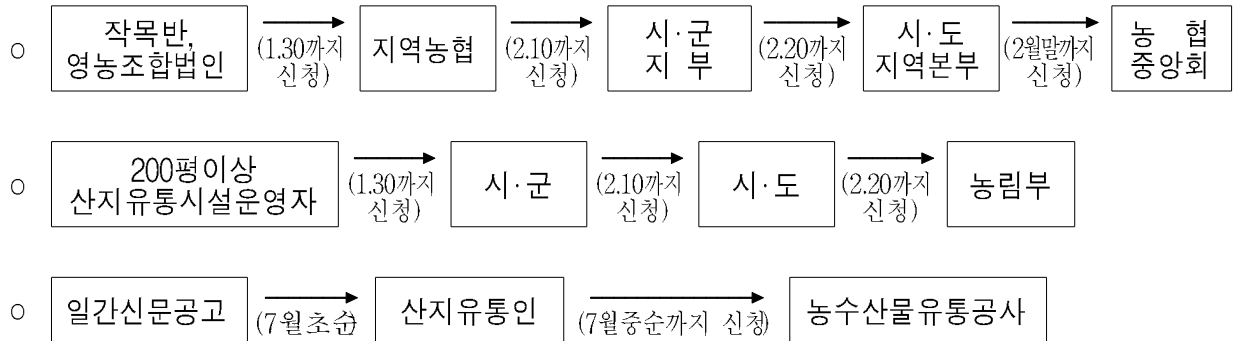
- 지원자금을 다음과 같이 부당 사용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준용)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사업의무 미달 등에 대한 조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계획상의 총사업비에 미달할 경우는 당해 미달액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25%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비의 25%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액
 -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단,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환한 경우 제외)

라. 사업추진결과 제출

- 세부사업계획 및 조직별 사업비 배정내역 : 사업실시전 30일 이내
- 사업운영실적 및 사업평가결과보고 : 사업완료후 60일 이내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사업평가결과는 농협중앙회에서 취합·분석하여 제출(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분석 등)
 - 산지유통센터는 운영실태 평가결과로 대체하고,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유통공사에서 취합·분석 제출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 지원실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
 - 화훼비회원조합은 사업시행 또는 대출지원부서에서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제출

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기한



※ 산지유통센터로 지정된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없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으로 사업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의거 사업비 지원

나. 신청자격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 산지유통인

다. 신청절차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 관할 협동조합 → 농협중앙회 → 농림부
-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 → 관할시·군 → 시·도 → 농림부
- 일간신문광고(유통공사) →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2005년도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등
- 2005년도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자금 신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태 평가 및 지원계획 참조(붙임4)
- 2005년도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지원신청서(붙임5) 및 농산물출하실적
확인서(붙임6) : 산지유통인

(붙임 1)

()년도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신청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용)

1. 사업실시조직명 : (대표자 :)

2. 사업장소재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작목반원수 또는 영농법인조합원수 : 명

4. 주요유통시설현황

(단위 : 평,대)

부지면적	집하·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창고등 기타	주요장비 및 기계
평	평	평	평	평	대·조

5. 주요취급품목(3개이내) :

6. 출하실적 : 톤(백만원)

품목명	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주요출하처				
브랜드명				

※ 주요 3개품목과 출하물량만 기입(전년도 실적기재)

- 공동계산출하실적 : 톤, 백만원
 - 공동계산방법(간략히 기재) :
- 공동선별작업단 운영인원 : 명
 - 운영방법 기재 :

(붙임 2)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신청자 심사배점표 및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기준 산출	평가 점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1. 농협의 「작목반육성및지원준칙」에 의한 평가결과 반영	1. 작목반 평가결과 - 선진조직(30점) - 일반조직(15점) - 기초조직(5점)	30	-	○ 선진조직(85점이상) ○ 일반조직(70~84점) ○ 기초조직(69점이하)	
2. 유통시설 보유 및 공동선별단 운영	2. 유통시설보유 - 100평이상(20 점) - 100평미만(15 점) - 50평미만(10 점) - 시설없음(0 점)	-	20	○ 임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3. 공동선별작업단 운영 - 운영(10점) - 미운영(0점)	-	10	○ 공동규격출하를 위한 공동선별작업단 운영 여부	
3. 공동선별 공동출하 실적	4. 공동선별 공동출하 실적	20	20	공동선별·공동출하량 —————×20 총출하량	
4. 출하실적	5. 총출하규모	20 - 1억원미만 4 점 - 1~3억원(8 점) - 3~5억원(12 점) - 5~10억원(16 점) - 10억이상(20 점)	30 - 1억원미만 0 점 - 1~3억원(8 점) - 3~10억원(15 점) - 11~15억원(25 점) - 15억이상(30 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총출하액 기준	
5. 공동계산	6. 공동계산실적 - 실시(10점) - 미실시(0점)	10	10	○ 출하대금의 공동정산 실시여부	
6. 유통활성화 우수사례 가점	7. 유통활성화 우수사례 가점(10점)	10	10	○ 우수사례 건당 2점 부여 : 1건×2점	
7. 품목별 협의회 가입	8. 품목별 협의회 가입조합소속작목반	10	0		
합 계		100점	100점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 및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붙임 3)

농산물 출하실적 관리대장

월 별	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출하실적중 공동계산 출하물량		주거래처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물 량 (톤)	금 액 (백만원)	
'05.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붙임 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평가 및 지원

1. 운영실태평가

가.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협조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나. 평가대상

- 유통시설규모가 200평이상이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사업장(신규사업자포함)으로서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비)”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 평가방법

-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운영 사업장평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관(협조 : 시·도 또는 농협중앙회)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평가 배점기준표 및 평가표(덧붙임1)”에 의거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라. 평가시기 : 2005. 2. 1 ~ 3. 31

- 평가주관기관인 유통공사는 평가결과를 2005. 4. 20까지 농림부에 제출

2. 운영실태 평가

가. 유통시설규모 200평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산지유통기능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신규자에 준하여 사업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사업장 운영자금지원신청서(덧붙임2)”를 작성하여 사업신청(1.30까지)

※ 평가결과 E, F 등급 사업자의 경우 2005년부터는 지원 중단

나. 신규자(신청일 현재 건축준공검사를 마치고 당해연도에 운영예정인 자)는 공동규격출하실적(12점), 계약재배실시 또는 매취사업(10점), 이용농가수(4점), 매출실적(10점), 출하조합원수 및 출하액 규모(6점)의 합계 42점 중 16점이상 득점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 행정기관(시·도)은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사업장 운영자금신청자 명단(덧붙임3)을 농림부에 제출(2.20까지)
 - 농림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명단을 유통공사(협조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사업자금신청자 평가토록 함.
 - 유통공사, 농협, 시·도는 대상자가 자금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안내

(덧붙임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평가 배점기준표 및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배점기준	평가점수
		농협외	농협		
1.시설활용도 (20점)	1-1 시설 활용율	12	12	○ '03년 총취급량÷(선별기 처리능력 + 저온저장고 일시저장능력 + 기타 시설)×12점 - 총취급량 : 총사업량 + 전년도 이월량 - 선별기처리능력 : 제원상 처리능력의 50%×100일 - 저온저장고 일시저장능력 : 면적×평당 4톤 ※ 단순한 계통출하 실적은 50%감하여 반영	
	1-2 선별기 가동일수	4	4	○ '03년 가동일수÷100일×4점	
	1-3 저온저장고 가동일수	4	4	○ '03년 가동일수÷300일×4점 - 단, 저온저장고의 30%이상 가동된 일수 기준이며, 호실이 30%이하 가동된 일수는 50%감하여 산정	
2.산지유통 기능 수행 (30점)	2-1 공동규격 출하실적	12	12	○ 산출기준 $\frac{\text{공동규격출하량}}{\text{총 출하량}} \times 12$	
	2-2 계약재배 실시 또는 매취사업 실적	10	10	○ 산출기준 $\frac{\text{매취물량}}{\text{총 취급량} \times 0.6} \times 10$	
	2-3 이용 농가수	4	4	○ '03년 이용 농가수÷100명×4점 (농협외) ○ '03년 이용 농가수÷300명×4점 (농협)	
	2-4 파렛트 출하	2	2	○ 파렛트에 의한 출하가 보편화 (2점) ○ 파렛트 출하가 미흡 (1점), 없음(0점)	
	2-5 산지바코드 사용	2	2	○ 출하시 산지 바코드를 부착하여 출하(2점) ○ 출하실적 없음(0)	

주) 1) 공동규격출하 : 정부표준규격(정부표준규격보다 세분한 경우 포함)에 따라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는 것

2) 신규자, 산지유통센터 이외의 사업자 평가시 동 배점기준표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 2-1, 2-2, 2-3, 3-5, 4-8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기준	평가 점수	
		농협	농협			
3. 경영 실적 (농협의 28점) (농협 20 점)	3-1 고정자산 이익율	6	6	○ '03년 세전 순이익(감가상각비 및 신용사업부문 제외)÷산지유통센터 설치비(실제 투자비) - 5% 이상(6점) - 2.5 이상 5 미만(5) - 0 이상(4점) - △2.5 이상 0 미만(2점) - △2.5 미만(0점)		
	3-2 자기자본 비율	4	-	○ '03년말기준 자기자본÷총 고정자산가액의 30%×4점 * 자기자본 : 출자금 + 이익잉여금		
	3-3 유동비율	4	-	○ '03년말 기준 유동자산÷유동부채÷150%×4점		
	3-4 매출액 증가율	4	4	○ ('03년매출액 - '02년매출액) ÷ ('01년매출액 × 10%) × 4점		
	3-5 매출실적	10	10	○ '03년 매출액(시설을 활용한 매출액) - 30억원 이상(10점)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8점)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6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4점) - 5억원 미만(2점)		
4. 운영활성화 노 력 (농협의 22점) (농협 30점)	4-1 회계처리 능력	4	-	○ '03년 실적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및 자체결산능력 보유(4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4개 이상)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3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3개 이상)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2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2개 미만)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1점) <확인항목> - 매입·매출, 조합원 수, 이용농가 수, 저온저장고 가동, 선별기 가동, 운영비 집행 등		
	4-2 운영관리의 전산화 노력	-	4	○ 농협 경제종합정보시스템 적용 실적 - 공동출하(수탁), 일반유통(매취), 산지유통센터 공동계산프로그램 4개 중 항목 당 1점 - 위 항목 중 1개 이하 적용(0점)		
	4-3 경영개선 구조 및 전문인력	8	8	○ 평점 18점이상 : 8 평점 14점이상 18점미만 : 6 평점 10점이상 14점미만 : 4 평점 10점미만 : 2		
		경영구조	평점	품질관리 전담인력	마케팅	평점
		독립채산·책임경영	10	4명 이상		10
분사장 책임경영		8	3명		8	
판매사업전담부서 (상무이상)		6	2명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1명		4		
4-4 자체 손실 보전기금의 조성규모 (채소수급조정 자금 제외)	-	8	○ '03년말 조성규모 (잔액기준) - 70백만원 이상 (8점) - 50백만원 이상 70백만원 미만 (6점) - 3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4점)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2점) - 0 ~ 10백만원 미만 (·점)			

(덧붙임 2)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사업장 운영자금지원신청서

1. 사업장명

○ 소재지 :

2. 대표자 성명 :

3. 사업장 종사자 : 명(상시종사자 명, 임시고용자 명)

4. 산지유통시설현황(신청일 기준)

○ 유통시설

(단위 : 평)

사업장부지	산지유통시설					
	계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사무실	기타

○ 유통장비 및 기계

(대, 개, 초)

장비 및 기계명							
수 량							
장비 및 기계명							
수 량							

○ 주요 취급품목(3개이내 기입) :

5. 산지유통시설운영실태

○ 2004 매출실적 : 백만원

○ 2005 매출계획 : 백만원

○ 운영수지(2004년 수익상황)

○ 원료확보방법

○ 현재까지 운영자금 조달방법 :

6. 운영자금 신청 요구액 : 백만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5년 월 일

사업자 성명 및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붙임 5)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 성명(대표자) : _____ (법인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 _____
- 주소 : (우: _____)
- 전화번호 : (자택 : _____ - _____), (사무실 : _____ - _____)
(휴대폰 : _____ - _____)
- 산지유통인등록번호 : _____ - _____ (등록처 : _____ , 등록일 : _____ . _____)

※ 주소 및 전화번호는 연락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확히 기재할 것

2. 용자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출하실적기간	출 하 실 적	용자신청액	담보제공계획	비 고
2004. 7. 1 ~ 2005. 6. 30	백만원			

주) 용자신청액은 출하실적의 2분의 1의 90% 이내로서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자금지원세부요령 및 귀 공사의 자금용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를 받고자 신청하오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산지유통인 농산물 출하실적 확인서

아래와 같이 귀사(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출하실적 확인기간 : 2004. 7. 1 ~ 2005. 6. 30

품 목	물 량(톤)	금 액(백만원)	산지유통인등록번호
계			

- ※ 용 도 :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용
- ※ 품목수가 많으면 별지작성 첨부

2005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법 인 명 : (인)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2005 년 월 일

확 인 자 [관리사무소(공사) 또는 도매법인(공판장)명] :

대 표 자 : (인)

③	인삼계열화사업(자율)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박종서, 사무관 김상경)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개선
- 인삼 생산·가공·유통 등의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인삼 경작농가와 생산자단체간에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재배자금의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며 포전매매 등 전근대적인 유통구조개선
- 계약재배물량은 생산자단체가 수매를 통해 농가판로확보와 소득안정
- 수매물량은 가공판매로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 제고

3.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97~'01	2002	2003	2004계획	2005예산안
계	122,323	21,425	37,000	42,966	43,500
정부융자	97,858	17,140	29,600	34,373	34,800
자부담	24,465	4,285	7,400	8,593	8,700

- 2003년까지는 가공용 민간수매 및 출하장려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 계열화사업으로 변경지원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97년 부터 출하장려 및 가공용 민간수매지원 사업을 추진
- 출하장려사업은 단기 융자금으로 인삼 재배특성에 맞지 않고 민간수매 지원사업에도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미흡 등 지원사업의 효과가 낮음
- 2004년부터 출하장려사업과 생산자단체 민간수매지원사업을 계열화사업으로 개선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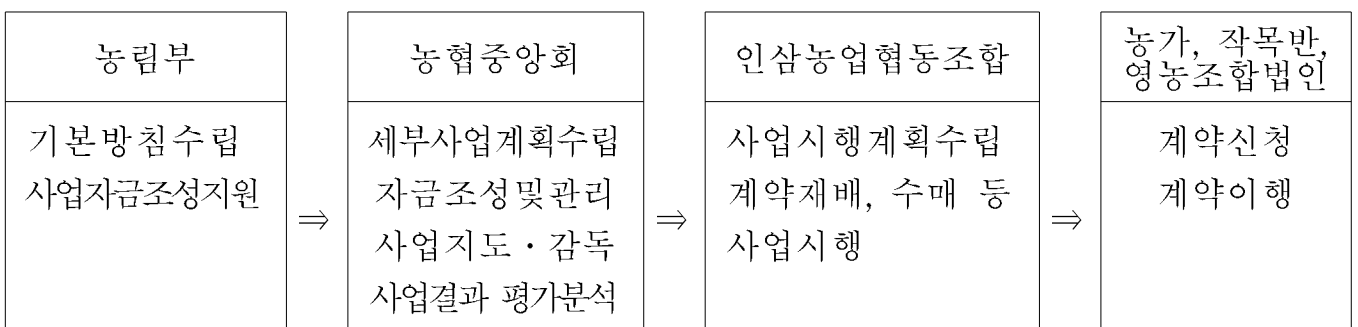
2) 2005년 지원방향

-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재배이력관리를 이행할 경작농가와 인삼농협간에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 인삼농협의 판매사업 여건조성 위해 수매자금 지원
- 가공시설을 보유한 인삼농협에 지원한 가공운영자금 지원은 중단

3)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인삼계열화사업 자금을 조성 하여 인삼농협에 지원하고 지원된 자금으로 계약재배, 수매 및 가공·판매 등 계열화사업 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안정 도모

4) 사업추진체계



5) 사업대상자 : 인삼농업협동조합

6) 사업추진방법

가) 계약재배

- 계약주체 : 인삼농협
- 계약대상 : 4년근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사업신청 : 계약대상자가 인삼경작 신고시에 인삼농협에 사업신청
- 계약체결 : 인삼농협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확인후 7.31일한 계약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단가 : 평당 9,000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기간 : 6년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 지원금리 : 무이자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나) 수매 및 판매사업

- 수매물량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전량수매
 - 계약재배물량 수매이전까지는 당해년도 수매사업 계획물량을 수매
 - 조합별 수매물량 배정은 과거수매실적, 재배면적 등을 감안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수매단가 :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와 협의결정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회수 및 자금지원 기간동안 시중금리를 부과하여 위약금을 징수하고 수매대상 제외

- 구매기간 : 당해연도 8월~11월까지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구매기전 조합별 구매계획에 따라 자금지원
- 지원조건 : 6년 일시상환, 금리 연 3%
 - 중앙회는 구매물량의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자금관리
 - 조합은 구매물량의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내에서 구매자금으로 회전운용, 동 자금을 구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구매정산 : 구매자금은 구매시 전액 지급하되, 구매금액에서 계약채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구매물량의 처리
 - 구매물량은 인삼농협이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
 -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구매실적보고 : 인삼농협은 당해연도 구매실적을 12.15일까지 중앙회 보고

7) 사업우수조합 인센티브 및 부진조합 등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조합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및 계약채배·구매자금 우선 지원
- 사업부진조합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조합 등 평가결과 부진조합은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구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8)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에서 상환한 구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인삼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총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농가교육비, 안전성 분석비, 홍보비 등)
 - ②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5년 사업계획

1)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 총 사업비	43,500	34,800	8,700
○ 계약재배자금	13,500	10,800	2,700
○ 수매사업자금	30,000	24,000	6,000

2) 사업내역

- 계약재배사업 : 500ha
- 수매사업 : 1,000톤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02-500-1868/9)
- 농협중앙회 : 인삼부 사업지원팀(02-397-2981)

다.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 인삼농협에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인삼농협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 시달
 - 농협중앙회는 조합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인삼농협에 시달
 - 조합별 사업계획은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 사업비 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당해사업 시행전에 인삼농협에 지원
 - 계약재배자금은 인삼농협이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자금지원
 - 중앙회는 조합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합간 자금 전수배 조치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다.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라.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은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장 최대휴, 행정사무관 윤명중 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이하 “가공업체”라 함)에게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 구입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업체에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
- 성출하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산물가공부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사업’이라 함)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선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거양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평가를 강화, 업체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함으로써 상호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경영체 육성

3. 사업개요

가. 정 의

- “가공원료수매자금”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업체(또는 외식)가 당해 업체의 가공(또는 외식)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자금(이하 “자금”이라 함)을 말함.
- “국내산 가공원료 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원생산물을 말하며, 위의 원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도 포함함.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1군 1명품사업)에서 가공공장건설 사업비를 지원한 식품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농협 및 산림조합의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 국산 식자재를 이용, 한식 등을 체인점으로 운영 하는 업체
- ※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든지 10년이 넘어 사후관리 해제를 받은 업체도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에 포함하여 지원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라 함은 정부(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식품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기타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가 아닌 비농업인 개인 또는 법인업체

나. 지원대상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 및 외식업체,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외식 프렌차이즈(한식)업체. 단,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명인·신지식인·주류제조면허 추천·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및 정부지원업체에서 사후관리 해제된 업체는 정부지원 업체에 포함 지원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중 정부에서 가공시설 미지원 회원조합은 포함하되,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자금」 및 「축산업발전기금」 수혜조합은 제외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기타 가공업체

다. 지원품목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제외)
단, 우리부 사후관리중인 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 제조·가공시는 일괄지원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국내산 가공용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라. 2005 자금지원 내용(안)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금리	대출 취급기관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 기타 가공업체	백만원 74,054	연리 4% 연리 4% 연리 4.5%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27,199	연리 4% 연리 4.5%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 전통주류 제조업체 - 농업경영체 - 기타 가공업체	2,305	연리 4% 연리 4.5%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계	103,558		

※ 지원규모 및 금리는 농안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금배정 시기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연1회 신청하여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에 대하여는 월별신청, 월별배정도 가능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연1회 신청하여 연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및 신규업체신청자금에 대하여 월별 신청, 월별배정도 가능
-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지원 자금을 연중수요에 따라 지원하되,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 운용

바. 구매대상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68조의 구매대상처
- 국내산 전분·밀가루 제조업체(전분·밀가루 구매용에 한함)

사.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업체당 30억원이내
 - 업체의 생산규모,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업체당 연간 30억원 한도내에서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지원한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업체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경쟁원리 도입)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업체당 20억원이내
 -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구매 우수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컨설팅사업에 2년(회)연속 참여한 업체 : 업체당 10억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 ※ 위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식품산업과)과 협의하여야 함.

아. 구매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자. 대출기간 : 2년이내

- 대출기간은 2년이내이나, 원료구매는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4. 사업실시요령

가. 사업홍보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가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기간 신문광고·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사업내용 적극 홍보

나. 신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업체는 가공원료구매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접수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농협 시·군지부
 -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지원금액 결정 포함)
- 대출기간이 2년이내이므로 가공원료의 부류별 회전율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도 차등적용

- ① 컨설팅사업을 2회이상 받은 자(확인서 첨부)
- ② 총 수매액 대비 농가계약 수매실적 비율이 높은 자
- ③ 소규모 가공원료를 사용(영세업체)하는 자
- ④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첨부)
- 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명인지정을 받은 자(지정서 첨부)
- ⑥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증서 첨부)
- ⑦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별지 제2호 서식)
 - 발급절차 : 신청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시·도지회 추천 → 중앙회장 검토 → 적격시 신청자에게 추천서 발부

라. 자금지원 시기

- 농협(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경영평가 지표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의거 지원하되, 업체별 자금 지원액은 실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월별)로 자금대여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일반 농산물가공업체 및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 경영평가 지표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정기준에 의거 해당 품목부류의 지원 시기를 감안하여 업체별 지원액 배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업체별 자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실적을 농림부에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별지 제3호 서식)
 - 업체별 자금지원 대상자 보고시 배정기준 첨부

마. 지원금액 통보 및 대출지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시 해당업체에 연간 지원금액을 통보하고 업체로부터 자금 소요시기 및 소요금액을 제출받아 분기별(월별)로 자금배정후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사업추진절차 >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광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 업체별 지원대상자 농림부 보고 및 시·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5.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업체 평가실시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업체별 경영실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효율적인 경영지도와 다음년도 자금 지원시 차등지원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나. 기 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의 적정한 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신청업체의 재무구조, 담보능력 등을 감안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실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음을 감안, 우선 대출후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지도 및 사후관리 실시
 - 지원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국산농산물 미사용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시행
-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외식포함) 지원신청서

(단위 : 백만원)

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지 원 형 태		공장완공(점포개관 년도(가동일)	()				
	주 생 산 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점포) 규모	대지 : 평, 건물 : 평, 공장 : 평, 창고 : 평, 기타 : 평						
사업 계획	구 입 원 료		총 소 요 액	백만원				
	재 원 조 달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정부융자 월별 소요액		월						
		금액						
<p>상기와 같이 가공(외식)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4년 월 일 신 청 자 (인)</p>								
<p>(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p>								
<p>첨부서류 : 사업현황(소정양식) 1부.</p>								

※ ()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관련임

사 업 현 황

1. 가공(외식생산) 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톤, 백만원)

제품명	생 산		관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 내		수 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가동율 및 수율(전년도)

(단위: 톤, %)

가 동 율			수 율			
연가동가능일 (A)	실가동일 (B)	가 동 율 (C)	제 품 명	원료투입량 (D)	가공량 (E)	수 율 (E/D)

- 가동율 : 연간 가동가능일에 대한 직전년도 1일8시간 이상 실가동 일수의 비율
- 수 율 : 직전년도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총 원료량에 대한 가공량의 비율

4. 원료수급상황

(단위 : kg, 원)

구 분	계 약 재 배				수 매			기 타()			합 계	
	품 목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금액
전년실적												
금년계획												

주) 단가 : 원/kg

5. 2003년도 원료구입 계획 대 실적

(단위: 톤, 백만원)

주원료	계 획				실 적					
	계		정부지원		계		정부지원		자 부 담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자금신청서와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기선정된 후에도 자금 지원중단 및 기지원된 자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등 조치

6. 가공(외식)원료 구입자금 지원금액

구 분	'00	'01	'02	'03	'04
지원금액					
융자잔액					

7. 기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추천서

업 체 명 :

대 표 :

생 산 품 목 :

지원신청액 :

위 업체를 2004년도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4년 월 일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업체별 자금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업체명	지원연도 구 분	대표자	기지원실적		신청액	지원액 (확정액)
				'02	'03		
		예) '94 1군 1명품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가공업체, 일반가공업체(품목 부류별) 구분 작

17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행정사무관 박영근, 행정사무관 진종철)입니다.

1. 목 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 상장거래제도를 정착시켜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기능 강화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과 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도매시장 농산물 취급 중도매인에게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을 지원, 중도매인의 재무건전성 제고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인 예약수의거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선도금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제57조, 제68조,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획 안)
계	71,715	96,250	88,250	86,5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25,620	25,155	17,155	17,155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46,095	46,095	46,095	46,095
종합유통센터 운 영 주 체	25,000	25,000	25,000	23,25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농산물 출하촉진 유인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조기활성화와 예약수의 거래제도의 조기정착 지원

(2) 사업 세부내용 : 소비지 유통개선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의 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및 경락대금 등의 결제자금

<종합유통센터>

- 선 도 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 약정을 위한 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용자실행기관에서 결정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 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전자경매 실적, 표준하역비 부담 실적, 포장화사업 추진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시장도매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경락 대금 체납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차등지원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공판장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농안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5) 지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5%
○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4.0%
○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4.0% 4.0%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계 획 안(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	86,500	86,500	-	86,500	-	-
도매시장법인 시 장 도 매 인 중도매(법)인	-	17,155	17,155	-	17,155	-	-
농협 공판장 중도매(법)인	-	46,095	46,095	-	46,095	-	-
종합유통센터	-	23,250	23,250	-	23,25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농 립 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02-500-1828)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사업평가팀 (02-6300-1299)
 - 농 협 : 공판사업부 (02-3782-8313)
-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 농 립 부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02-500-1824)

다. 자금지원예정자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중도매(법)인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의함
- 농안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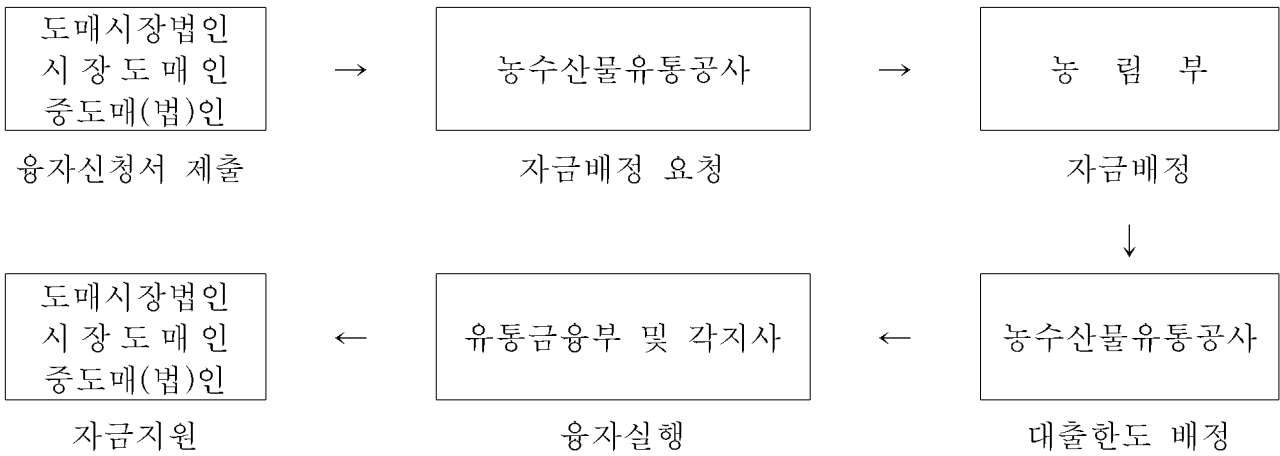
라. 사업시행

(1) 자금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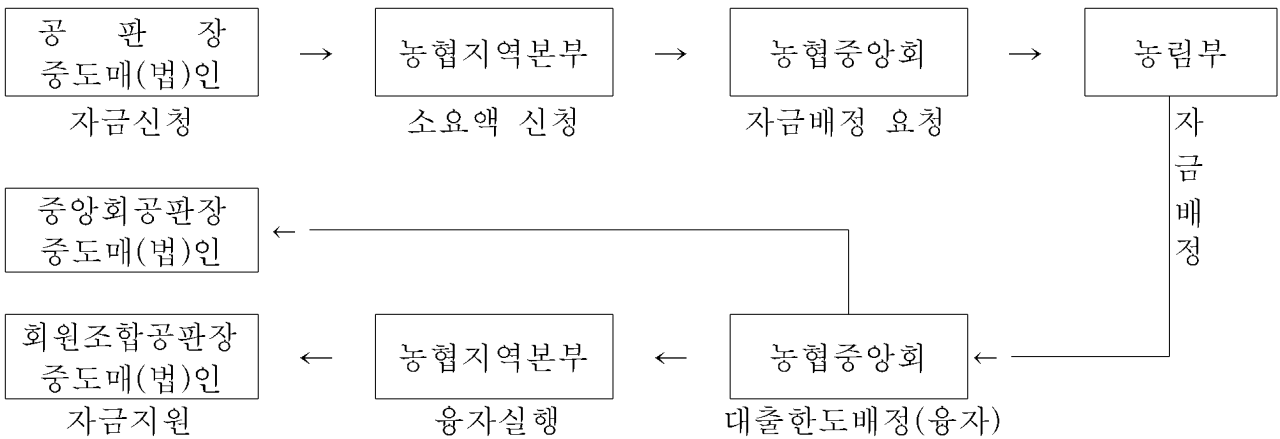
- 자 격
 - 용자실행 기관의 별도기준에 의함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용자실행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용자실행 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2) 사업시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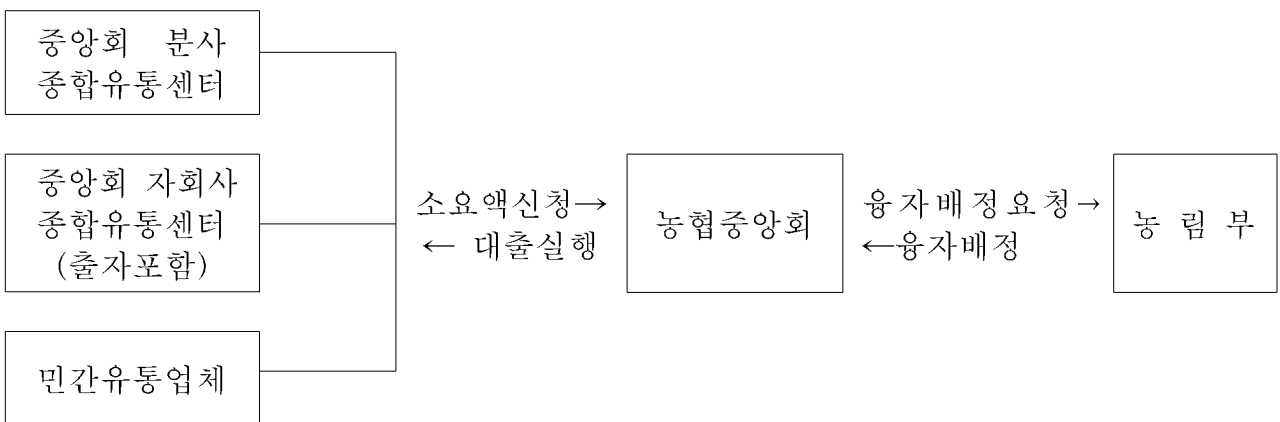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3) 융자액 산정

(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거래금액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배정
(시장규모별 배정계획으로 정함)

(나) 중도매(법)인

- 대금결제자금 : 경락대금 소요액(시장규모별로 배정계획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배정, 중도매인당 5천만원 이내

(다) 농협공판장

- 융자대상 공판장의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 등을 기준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10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배정비율 산정
 - 농산물유통정책 목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와 협의 배정비율 조정 가능

(라) 종합유통센터

- 선도금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 선도금의 80% 이내
- 대금결제자금 : 예약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의 80%이내
 - * 종합유통센터별 거래실적, 도·소매비율, 거래형태, 운영계획, 입지여건, 개장 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공판장 : 농협중앙회
- 종합유통센터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자금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안기금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

나. 보고·기타

○ 도매시장·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융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보고한다

○ 종합유통센터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 등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사업 평가팀
 - 도매시장법인은 협회 회원사인 경우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도매시장법인협회 비회원사,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은 직접 신청
-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분사
 - 농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은 직접, 회원농협공판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신청
- 종합유통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기획실

나. 신청자격

- 도매시장·공판장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법)인
- 종합유통센터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체계도 참조

라. 구비서류

- 도매시장·공판장 : 용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 종합유통센터 : 용자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에서 요구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은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은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종합유통센터는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양태선, 사무관 이건호)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업의 운영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저금리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거래가격 안정화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동시 보호 추진
- 백화점·대형점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구매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개선 촉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
직거래 자 금	사 업 비	158,720	40,600	43,600	37,000	32,000	375,700
	생산자단체	105,120	19,600	19,600	12,000	7,000	111,261
	소비자단체	18,600	3,000	3,000	5,000	5,000	52,739
	대형유통업체	35,000	15,000	18,000	20,000	20,000	211,700
	전자상거래	-	3,000	3,000			

주) '04년부터 전자상거래지원 예산은 소비자단체 포함, '06년 이후 지원계획은 변동 가능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대형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 : 직거래 추진실적·계획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읍이하지역은 125%이상)
- 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의무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

나. 2005년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	32,000	32,000	-	32,000	-	-
○ 직거래자금	-	32,000	32,000	-	32,000	-	-
- 생산자단체	-	7,000	7,000	-	7,000	-	-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	-	5,000	5,000	-	5,000	-	-
- 유통업체	-	20,000	20,000	-	20,000	-	-

* 용자조건 및 금리 : 생산자·소비자단체·전자상거래(3.0%), 유통업체(4.5), 1년이내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02-500-1836~1837)
- 농협중앙회 : 과수화훼부 직거래사업팀(02-397-6563~5)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장지원팀(02-6300-1292~3)

다.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

라. 신청절차

-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별도 통지(공고)

마.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 (판매장 포함), 영농조합법인
 - * 산지유통전문조직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합 제외
 - 농산물 전자상거래(임산물을 포함하되, 목재등만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선정절차 : ①사업지원지침 통보(농림부) → ②사업지원계획 통지 또는 공고(사업실시기관) → ③사업신청(사업희망자) → ④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확정통보 (사업실시기관) → ⑤자금배정요구(사업실시기관) → ⑥자금배정(농림부) → ⑦용자실행 및 실적점검(사업실시기관)

사. 사업시행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 사업지원지침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용자실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관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 사업실시기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수립
 - 계약서·입출금자료 및 현장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 사업의무를 미달한 경우에는 농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각 사업실시기관은 매월말 대출실적을 익월 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자는 용자금 상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실적을 사업실시기관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안사업실시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기타사항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5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19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 자조금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서기관 김원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조금 조성단체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자조금 조성액의 100%범위내에서 지원
- 자발적인 대표조직화 및 자율성 중시, 재정능력 등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능 강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4. 2005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추진 경과

- '90년 농발법에 자조금제도의 근거 마련
- '93년 신농정 5개년계획에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주요과제로 포함
 - 농협중앙회 주도 품목별전국협의회 결성 ('93: 사과·배등 5개)
- '98년 생산자조직 지원 농안기금 확보, 품목별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00년 자조금제도 및 품목조합연합회 근거 마련(농안법, 협동조합법)
- '04년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및 의무기능 강화 방안 마련

나. 지원 대상품목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 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
- 최근 3개년 총생산액이 300억원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300억원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산지유통정책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단, 자조금납부하는 생산자가 최소 100가구이상이어야 함)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단, 단체구성원의 출하량(액)의 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50%이상의 구성원 출하량(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 자조금구성단체의 형태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법제 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자조금구성 단체는 동일 품목 생산자단체, 생산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자조금구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구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3년 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 이상의 자율적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지원 대표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을 취득하였다 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등 엄격심사 실시

라.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구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등으로 구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등 자조금 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의 연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해당액(연간 1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등의 자족기능에 필요한 운영경비 사용
 - 단, 동일 자조금조성단체에서 2개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상기 운영경비의 50%범위내 추가사용 가능

마. 보조금 지급대상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조건

- 자조금조성액 :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1%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 보조금 지원 :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조성액 범위 내에서 자조금 사용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응보조금을 지원
 - 단,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10백만원이하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바. 자조금의 용도

- 조성된 자조금(보조금 포함)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품목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품목의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005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4년 농안기금	2005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발적 납부금
			소 계	보 조	용 자		
농산물자조금 지원	1,200	6,400	3,200	3,200	-	-	3,2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나.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1829~30)
- 원예류·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58)
- 과수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7, 1882~83)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12, 1814)

다. 사업시행절차

1)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

-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금조성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은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함

2) 자조금관리규정 작성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자조금 관리 규정을 작성함.
 - 목적, 사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가입·탈퇴·제제사항 등), 회원의 탈퇴·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 납입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수납장소,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의결(집행)기관 및 의결(집행)방법, 기구·인원 및 경비의 범위,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조금사업계획서 신청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하반기(2월말 또는 7월말)기한까지 해당 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 1부)
 -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최근연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품목의 자조금관리규정 등
- 최근연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는 자조금조성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4) 자조금조성단체 인정기준 검토

-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 업무 전담자 배치여부, 회원 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사업구조 심사기준 강화
 -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이내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함
 - 사무국은 주회원조직 또는 주산지 특성등을 감안한 사무소 설치 및 업무 전담자 상시배치 등 실질적이고 독립적 사무기능 확보 여부
 - 정부자조금 지원없이 기본적 사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구조인지 여부
 - 모든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함.
- ※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및 동 법시행령 제 4조를 말함
- 민주적이고 회원농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조금 거출 방식 운영 여부
 - 예) 농가 직접납입, 부과방식, 회원동의하에 당해 품목 이익배당유보금 납입 유형등 자율성 확보

5) 자조금조성단체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대상품목,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 기준, 사용용도, 인정기준 및 절차등 사업계획서, 정관, 자조금관리규정등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상·하반기(3월 20일 또는 8월 20일)기한내 유통정책과에 제출
-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산지유통정책협의회를 개최(상·하반기 각 1회)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
 - 단, 주요 사업구조 기능이 완비된 자조금단체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음.

6) 보조금 교부 및 지급

-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2월중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 처음 자조금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도까지 자체 조성한 자조금을 기준으로 함.

7) 사업 추진절차 및 시행

-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확보(농림부) → 사업계획수립·제출 → 서면심사 및 산지유통정책협의회 심의·확정 → 보조금교부(사업주관기관) → 자조금 집행(자조금 조성단체) → 사업비 정산(사업주관기관)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행정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조성이 가능한 품목별로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
- 자조금조성단체는 2006. 1.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2005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보고(붙임)를 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익년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 이 경우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체적립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등의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정산결과를 근거로 연간 자조금조성액 및 보조금 지급액 현황등 사업 총괄실적을 유통정책과에 제출

5.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나. 신청자격 : 자조금 조성단체 형태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이 자조금조성 단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조직

다. 신청절차

-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조금구성단체는 동 지침에 의한 적정요건을 갖춘 후 각각 상·하반기(2월말 또는 7월말)기한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자격요건, 자조금구성규모 등 자조금 구성단체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제출, 심의·확정 후 예산 집행등

(붙임1)

2005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5. 1. 1. ~ 2006.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5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06.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② 축산 자조금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안호근, 사무관 김권영)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
-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특히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02.5.13제정·공포)
- 축산법 제26의 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3개축종	3	3	6	6	8
사 업 비	계	11,167	3,758	2,658	18,900	20,500	323,400
	보 조	4,288	1,879	1,329	9,450	10,250	161,700
	자부담	6,879	1,879	1,329	9,450	10,250	161,7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젓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00.6.1)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02.5.13)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포('02.11.14)

2)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3)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

4) 자조활동자금의 재원

-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밖의 수입

5)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자조활동자금의 운용

-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조활동자금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함
 -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도록 함
 - 축산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축산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7) 세부시행계획 내용(예시)

① 소비촉진 홍보사업

- 소비홍보에는 특히, 비선호 부위(수출부위) 소비 활성화 및 축산업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광고와 홍보 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
- 요리개발 및 홍보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개발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 개발 등 소비 촉진을 위해
 - 소비홍보 이벤트 행사와 병행한 비선호 부위 요리경연대회 개최, 여성단체·음식협회·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한 요리 시식회 및 요리강습회 개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 시식사업 실시와 TV 광고 및 방송사 취재유도, 음식점과 주부들에게 요리책자·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

② 축산업자·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및 위생 개선, 축산관련 전문 신문, 잡지 등에 계도 광고, 홍보물 제작 배부, 시·도별 축산농가 교육, 단체별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항생제 잔류의 문제점 등 농가교육 내용 포함
- 생산자 교육에는 자조활동자금의 조기정착 및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별 자조금 설명회,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대상 사업 설명회, 자조금 거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자조활동 사업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 포함
- 정보 제공에는 선진 사양관리 기술 보급 및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월간지 발행, 양축농가 계도 홍보물 제작·배부, 질병, 사양기술, 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등 내용 포함

③ 조사·연구사업

-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내 소비현황 및 시장분석 등 소비 실태 조사, 축산물의 식품영양학적·의학적·한의학적 효능 연구 포함
- 선진국의 축산업 실태와 경쟁력 비교 조사
 - 선진국의 축산물 생산정보, 기술수준, 수출진흥 전략,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여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출전략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연구
 - 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비선호 부위 소비 및 수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
 -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축산 선진국의 자조금사업 운영, 축산 실태 조사

나. 2005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4년 축발기금	2005년 사업비					
		합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용자		
축산자조활동자금	9,450	20,500	10,250	10,250 (50%)	-	-	10,250 (50%)
- 한 우	800	1,600	800	800			800
- 젓 소	2,100	4,200	2,100	2,100			2,100
- 양 돈	4,500	9,000	4,500	4,500			4,500
- 산란계	700	3,000	1,500	1,500			1,500
- 육 계	1,000	2,000	1,000	1,000			1,000
- 오리	250	500	250	250			250
- 사슴	100	200	100	100			1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사업주관기관 : 축종별 생산자단체
- 담당부서
 - 한우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2)
 - 낙농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9)
 - 양계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오리자조활동자금 : 축산경영과(02-500-1907)
 - 양돈자조활동자금 : 축산물위생과(02-500-1923)
 - 양록자조활동자금 : 축산정책과(02-500-1899)

나.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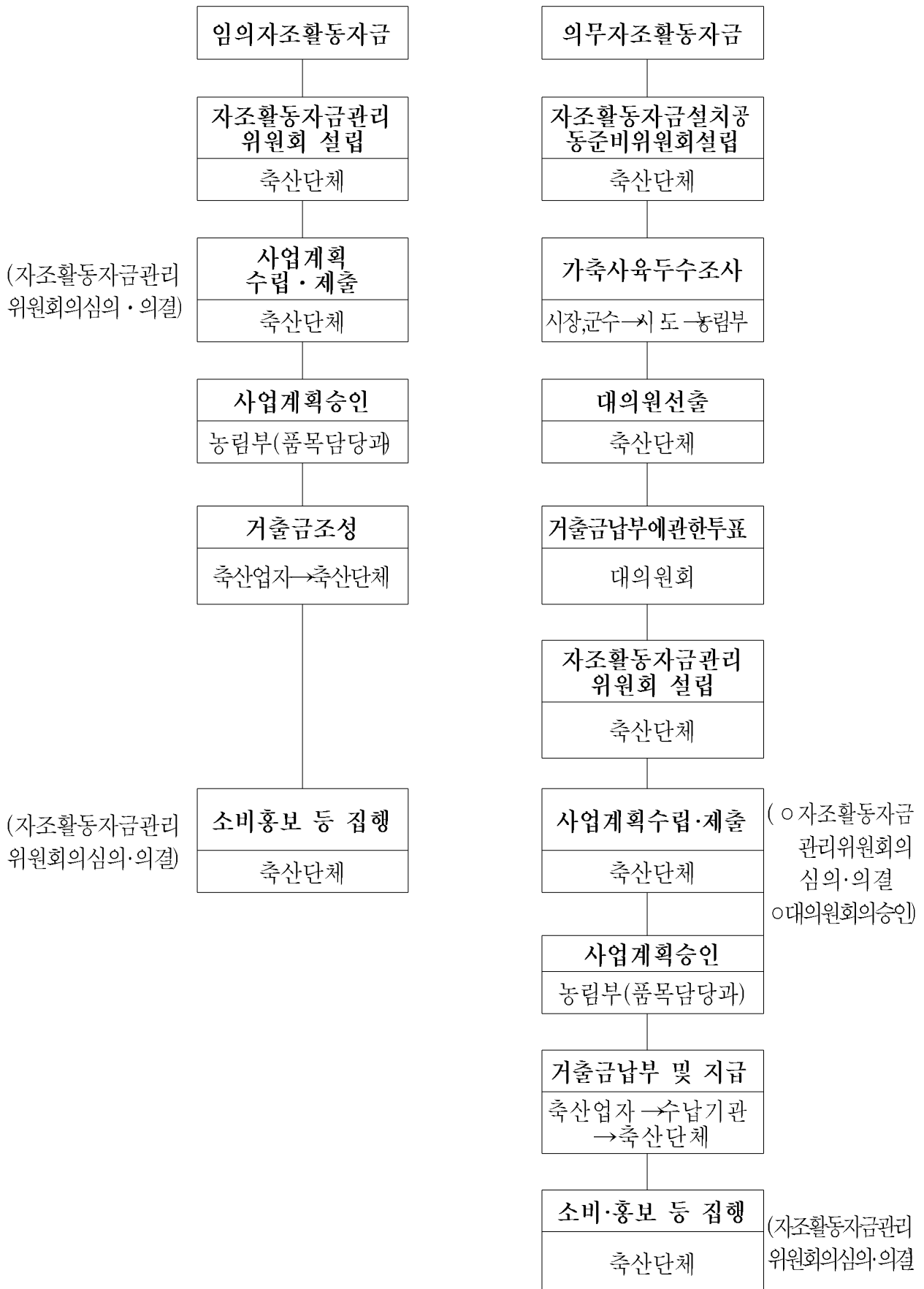
- 자조금사업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05.1.31일까지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 받아야 함)을 거쳐 농림부 사업담당과에 우선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활동자금의 명칭, 자조활동자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활동자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담당과는 축산단체별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단체에 통보
- 자조금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 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활동자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령의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활동자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다. 사업비 정산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라. 사업추진절차



《 행정사항 》

- 농림부장관은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물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의 보조금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2005.1.31일까지 보고(별지1)

5.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담당기관(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위생과)

나. 신청자격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축산단체

다. 신청절차

- 2005. 3. 31.까지 사업담당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2005. 4. 20.까지 예산요구

(별지1)

축산자조활동자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활동자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5. . . ~ 2005.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5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 . .
(농협중앙회장) (인)

20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박종서,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 농업사무관 장대수, 시설채소 : 토목사무관 한준희)입니다.

① 계약재배사업 (노지채소)

1. 목 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산단지 재배농가(작목반, 산지법인 등)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계	580,000	450,000	30,000	75,000	25,000	50,000
정부융자	464,000	360,000	24,000	60,000	20,000	50,000
농협자금	116,000	90,000	6,000	15,000	5,000	-

주) '05년도 예산은 '95년도에 지원된 농특세전입금(500억원) 상환자금으로 “계”에 미포함

- 정부융자 재원 : '95년 → 농특세 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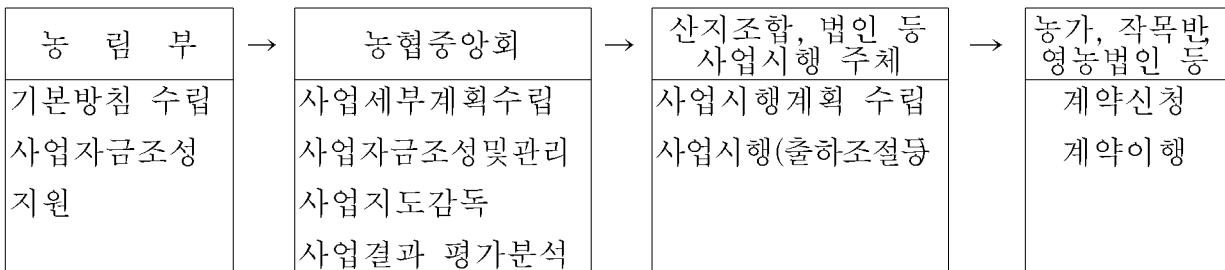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지원하면 사업대상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계약물량의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지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으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합(주산지조합 위주)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사업적격자 검토기준 >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 ② 법인의 구성원수
-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5) 사업추진방법

가) 계약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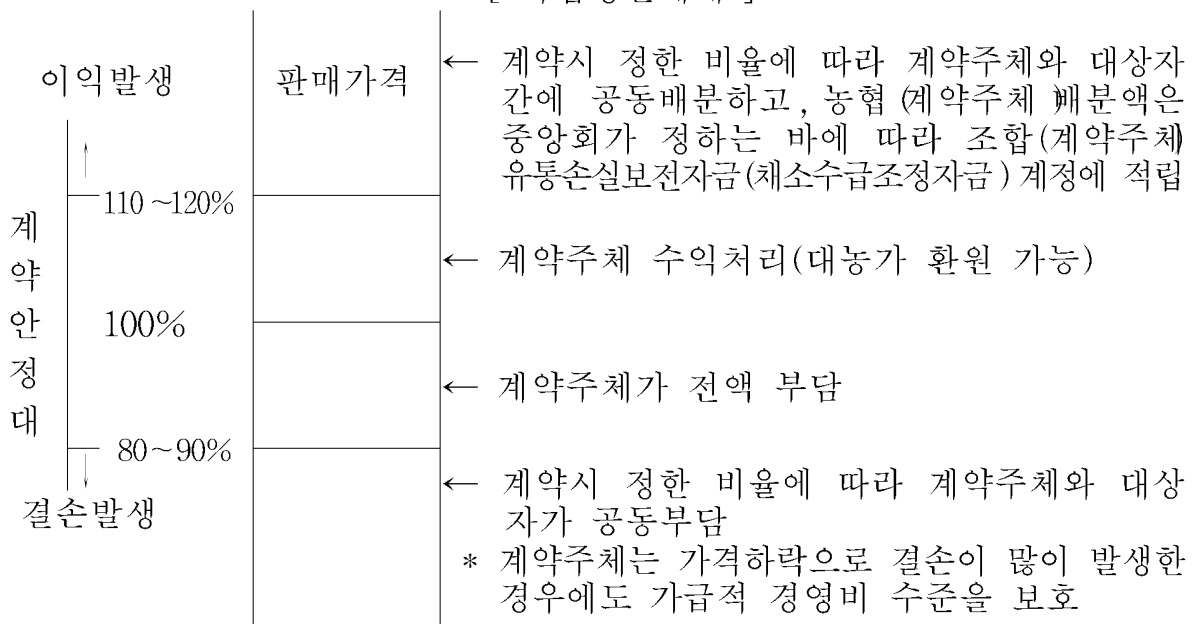
(1)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형태 : 매취형 원칙(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매취형+수탁형도 가능)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의 $\pm 10\% \sim \pm 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pm 10\% \sim \pm 20\%$ 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계약후 출하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목은 출하시 또는 출하전에 정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출하결과 이익 발생시 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 할 수 있음
- 정산단위 : 농가단위 정산원칙(품목·지역 특성감안 중앙회장이 조정가능)

[사업정산체계]



주)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체에 대한 사업정산방식과 수탁형 사업정산 방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가격폭락시 수급안정 방안

(1)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마늘, 양파, 고추
가격폭락시	○ 수매·폐기, 저온저장	○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확대

(2) 시행방법

- 무·배추 저온저장 등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 봄·고랭지배추 출하기(5~9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 소요비용은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또는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활용
- 가격폭락시 자체 폐기
 - 요건 :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물량 : 회원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및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 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6)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조합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과태료를 부과
-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등 지원자금 및 위약금 징수
- 익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① 교육·홍보, 조사연구, 중앙단위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
 - 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③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계약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중 중앙회장이 정하는 적립 대상액과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5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업비	580,000	464,000	116,000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단, 영농조합법인등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관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공업체 등 영리법인체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자금과 운용자금 비율
 - 총자금중 사업자금 70~80%, 운용자금 30~2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장이 운용자금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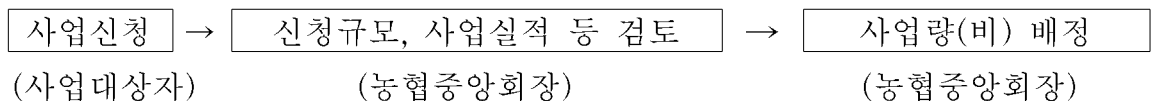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 (02-500-1857/8)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채소수급팀(02-397-5734)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운용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관리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1. 목 적

- 생산과잉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설채소류의 출하량과 시기를 수급상황에 따라 산지조합이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공급불안정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증대로 수급조절능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조합과 농가간 출하량과 시기를 미리 약정하여 균형출하 도모
- 가격수준별 출하조절 방법을 차등화하여 수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 전국단위 품목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
- 생산량 증가 등 공급상황 악화시 유통협약을 통한 출하량 축소로 신속한 수급균형 유지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222,150	60,000	90,000	47,150	25,000	-
정부융자	177,720	48,000	72,000	37,720	20,000	-
농협자금	44,430	12,000	18,000	9,430	5,000	-

- 정부융자 재원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농협자금 : 농협자체자금(중앙회와 사업참여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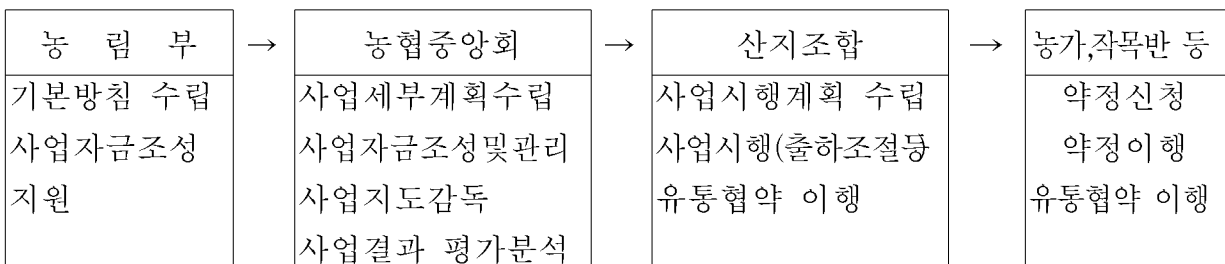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방식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약정출하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산지농협에 지원
 - 자금조성시 분담율 : 정부용자금 80%(10년거치, 무이자), 농협자금 2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산지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
 - 약정생산한 물량은 농가가 조합에 전량 판매위탁하는 조건으로 약정체결
 - 시기별 위탁물량, 규격, 물량조절 방법등 조건 명시
 - 농가에게는 약정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을 지급
- 조합은 농가가 약정생산한 물량을 농협에 판매위탁하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출하처, 판매량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안정 도모
 - 가격하락 심화등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통협약내용에 따라 출하조절 실시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품목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의 공동마켓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제한을 두지 않음

4)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조합

- 약정대상자 : 대상품목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

5) 출하조절방법

가) 평상시

-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조합이 판매수탁 받아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실시
- 약정물량 미수탁등 약정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리 부과

나) 도매가격이 「생산비+출하비용」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원간 품질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출하량 축소
 - 품위저하품의 출하를 억제하고 상품위주 출하
 - 협약사항의 이행은 작목반 등 조직단위 시행이 가능하며, 이행여부 확인은 조합에서 담당
 - 협약사항 미이행 농가는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 체제로 환원

다) 도매가격이 「출하비용+경영비」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전국협의회 회원간 물량규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조합별 출하량 할당 또는 일정물량 산지폐기
 - 폐기는 상품성이 있는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
 - 폐기물량은 산지농협이 확인 한 후 식용 불가능한 상태로 처분하고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으로 수확비의 100%까지 지원
 - 협약 미이행농가 또는 작목반은 정부지원 배제등 불이익 조치
-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회복시 평시 출하체제로 환원

6) 자금운용수익 등의 적립 및 사용

가) 자금운용수익 등의 적립

- 조합은 자금운용수익, 위약금 등을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 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 부터 징수한 과태료와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시설채소출하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

나) 자금의 사용

- 산지 폐기시 수확비 지원(수확비의 100% 이내)
- 중앙회장이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조합의 사업관리비용
- 유통협약 이행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조합의 사용한도는 적립금 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함

다) 자금운용 지침 :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7)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조직체계 정비

가) 산지조합 중심의 품목별 지역협의회 구성

- 작목반(회)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조정 등의 기초조직으로 육성
 - 전업농,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출법인 등 참여유도
 - 지역협의회는 회원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운영

○ 주요기능

- ① 시기별 적정면적 재배유도
- ② 생산시기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
- ③ 공동선별, 규격포장 출하 및 수출촉진
- ④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
- ⑤ 유통협약사항 이행, 상품개발, 홍보등
- ⑥ 자체자조금 조성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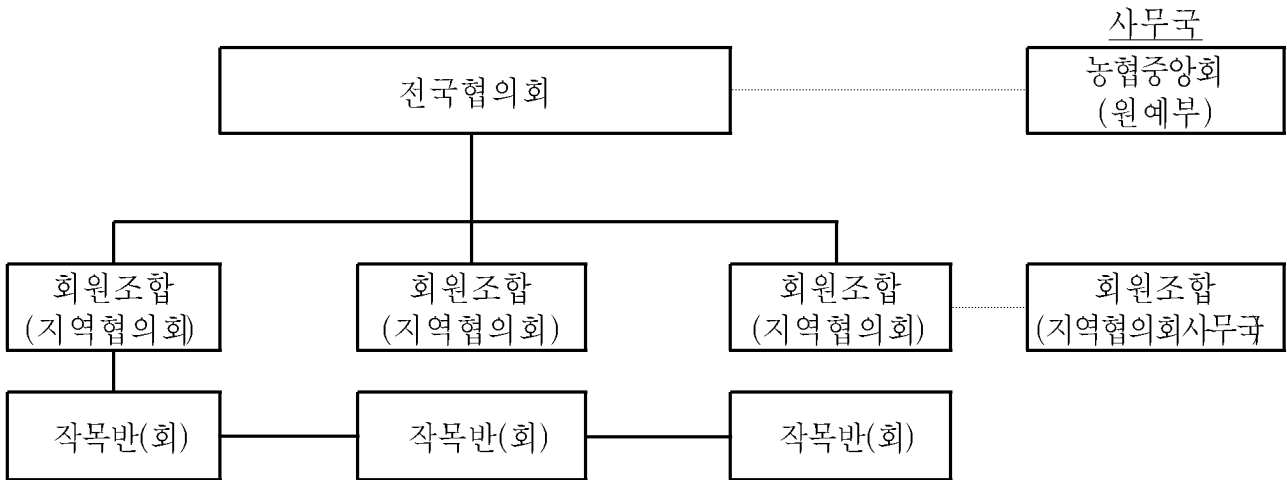
나) 품목별 전국협의회 구성운영

- 전국협의회 결성 대상품목은 약정출하사업 품목으로 함
 - 행정업무는 농협중앙회 원예부에서 담당

○ 주요기능

- ① 회원간 생산정보 교환 및 생산·출하시기 조절 추진
- ② 생산기술보급 및 교육, 공동구매 활동방향 등 설정
- ③ 가격하락시 유통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추진
- ④ 가격안정을 위한 판촉 및 홍보활동

【 조 직 도 】



- * 조직이 결성된 품목 및 동 조직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사업지원 혜택부여
- * 조직운영이 미숙한 지역은 규약(안) 작성 등 지도실시(중앙회,회원조합)

8) 사업 부진자에 대한 조치

- 자금배정액 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률의 과태료를 부과
- 위약농가에 대해서는 위약금리 부과 및 차년도 대상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나. 2005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업비	222,150	177,720	44,43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로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11개월 무이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은 중앙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약정농가 지원 : 약정금액(물량)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
 - 지급후 6개월 이내에 판매대금 등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금의 운용
 - 사업농협은 농가에 대한 약정이행 보증금 지급기간 이외의 기간은 자금을 운용하여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시설채소출하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릫 부 : 채소특작과 : (02-500-1866/7)
- 농협중앙회 : 원예부 시설채소팀(02-397-5746)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 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사업신청	→	신청규모, 사업실적등 검토	→	사업량(비) 배정
------	---	----------------	---	-----------

(사업대상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융자지원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기 타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기 타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출대상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 때는 정부의 개별적인 승인 조치가 없더라도 담보취득 가능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21	농축산물 판매 촉진 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최대휴, 사무관 강신복)입니다.

1. 목적

-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에 대하여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도모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위생·식물위생의 확보와 규격화·품질향상을 위한 지문·검사·연구·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축산물 수출전문농가 및 업체를 집중육성하여 수출경쟁력제고
- 우수농축산물의 수출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물류비 차등지원
- 국제규범의 준수 및 수출업체 및 농가의 전문성향상 등을 위한 지원확대

3. 근거법령

- 농축산물 수출전문농가·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 우수농축산물의 수출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물류비 차등 지원
- 국제규범의 준수 및 수출업체·농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한)	2006년이후	
사업량(톤)	565,279	105,523	111,083	124,170	422,000	
사업비	계	109,906	26,605	28,882	28,882	387,300
	보조	109,906	26,605	28,882	28,882	387,300
	융자					
	지방비 자부담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수출용 농축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자·단체(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인센티브지원대상자의 경우)
- '04년도 또는 '05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이 15만불(US\$) 이상인 업체
 - 농축산물의 수출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업체는 지원 제외

2) 지원대상품목

- 국내산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 및 축산물

3) 지원대상 비용

- 수출물류비 : 수출시 소요되는 포장, 선별, 운송비 등
-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위생·식물위생의 확보와 규격화·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검사·연구, 정보 서비스 및 제도개선 등 제 비용
 -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상품화 지원 등
 - 수출농가·관련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교육 비용

4) 지원금액

- 수출물류비 : 수출대상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 이내
 - 지원금액의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단가가 전년도 지원단가보다 작을 경우 차액의 70%를 가산 지원하고, 전년도 지원단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의 50%를 감액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수출물류비 산정시 인센티브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음)
-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 총예산액의 10% 수준에서 지원
- 인센티브
 - 신규시장개척인센티브는 표준물류비의 5%범위내,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필요시 국내수급안정 등을 위한 수출전략인센티브 추가 지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축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24,170	28,882	28,882	28,882	-	-	-
○ 김 치	26,000	2,834	2,834	2,834	-	-	-
○ 채 소	33,140	6,595	6,595	6,595	-	-	-
○ 인 삼	570	1,140	1,140	1,140	-	-	-
○ 과 실	42,000	12,726	12,726	12,726	-	-	-
○ 화 훼	12,760	5,015	5,015	5,015	-	-	-
○ 축산물	9,700	572	572	572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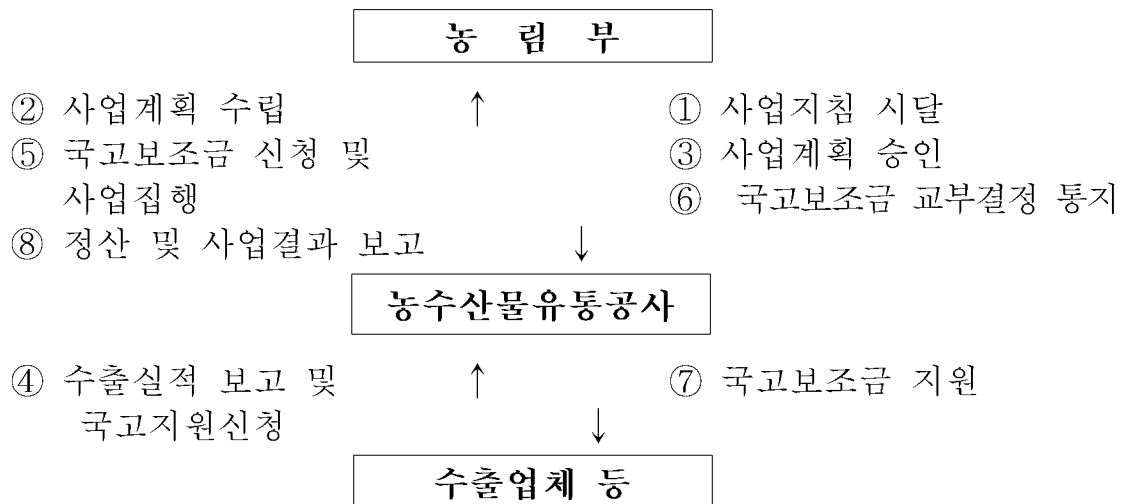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식품산업과(500-1855), 채소특작과(500-1864)
과수화훼과(500-1878), 축산경영과(500-1907), 축산물위생과(500-1923)

나. 사업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개발처 농산부(02-6300-1352),
가공수산부(02-6300-1374)

다. 사업시행절차



< 행정사항 >

가. 보 고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2005년 세부지원계획 : '04.12.30까지
 - 세부지원계획에는 지원단가 산정방법,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업체나 생산자의 규정 위반시 제재사항,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 추진 방법 등을 포함
 - 사업추진, 평가분석 및 정산 실적 : 상반기(7. 15까지), 최종('06.1.30까지)

나.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현지 확인, 서류조사 등을 통하여 수시 지도·점검
- 사업지원기관은 필요시 사업주관기관의 사업예산 운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권고나 시정 지시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상사업 : 2005년도와 동일
- 지원대상자 : 2005년도와 동일<단, 지원대상업체의 수출실적 한도를 연도별로 상향 조정 : ('06)농산물 수출실적 20만불이상 업체>
- 기타
 - 수출인프라 구축, 전문성향상 및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수출품질경쟁력 확보사업은 연차적으로 증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최대휴, 행정 사무관 이시혜)입니다.

1. 목 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업기반 구축 및 수출진흥여건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수출현장 컨설팅, 전문생산단지 활성화 지원 활동과 새로운 수출유망농산물 발굴·육성을 위한 개발수출 추진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매체광고 및 식문화전과 추진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및 해외유통업체와의 연계관측 추진
- 해외 수출정보조사 및 전파활동과 인터넷 거래시스템을 통한 바이어 알선지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 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예산안)
합 계	62,474	9,989	10,773	12,735
국제농산물박람회 사업	25,666	3,225	4,124	4,105
현지유통업체 직수출	3,445	1,313	1,100	1,200
수출홍보 사업	14,380	3,244	2,650	4,780
농산물 수출상품화 사업	13,391	1,166	1,749	1,300
해외시장 정보사업	5,592	1,041	1,150	1,350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국제농산물박람회 사업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목적
 - 국제유명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신규거래선 발굴, 기존거래선 유대 강화,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등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 지원내용(사업시행자)
 -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설치 / 현지 매체홍보(광고, 홍보물 제작 등)
 - 현지시장 정보조사, 주요바이어발굴제공 및 사전수출마케팅 지원
 - 전시품 운송통관 지원, 현지출장 지원(여권 및 비자 준비 등)
 - 박람회 참가, 한국관 운영 및 현장 수출상담지원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한국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목적
 - 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전문 전시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국내 대형유통업체 구매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 지원내용
 - 사업시행자가 전시장 임차 및 기본 장치 후 업체별로 전시부스 제공
 - 전시회 개최홍보 및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지원, 전시회장 총괄관리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3회	4,105	4,105	4,105			
○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2	3,700	3,700	3,700			
○ 한국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1	405	405	405			

* 박람회 참가계획 및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 체계 >

(가) 국제박람회 참가사업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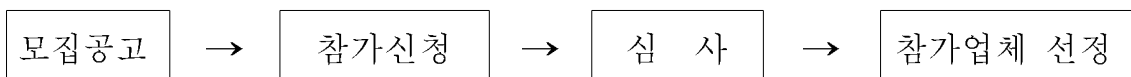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구미부 (02-6300-1451~7)
아태부 (02-6300-1491~8)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관련단체포함)
로서 국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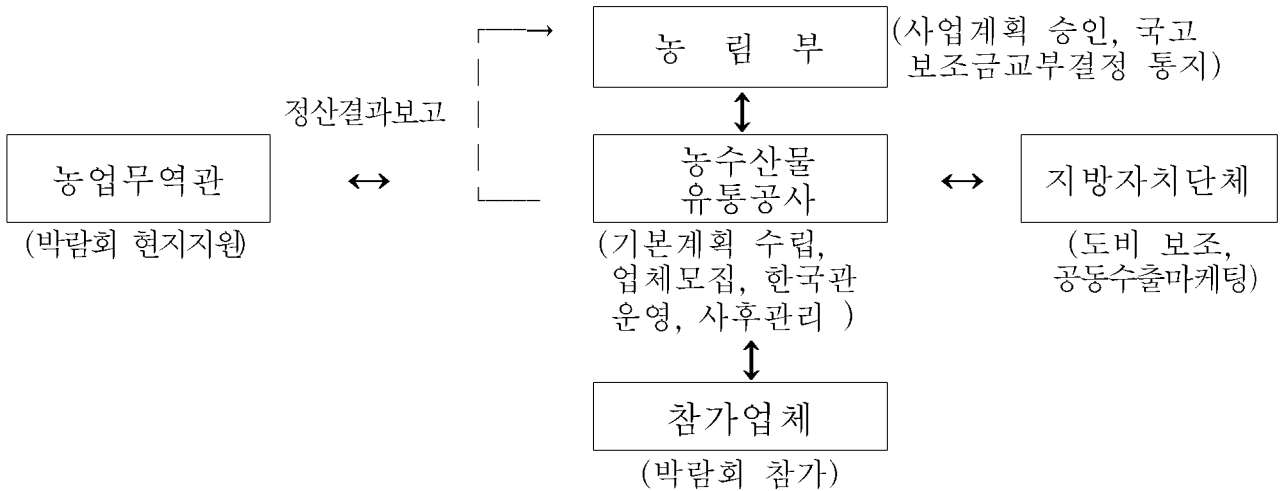


○ 선정방법 및 기준

- 수출실적·포장표기상태, 홍보팸프렛 준비여부, 홈페이지 보유상태 등 수출 시장개척의지와 해당지역 시장진출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4) 사업 시행

○ 사업체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국제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 검정, 확인

(나) 한국 우수농산물 수출상담회 개최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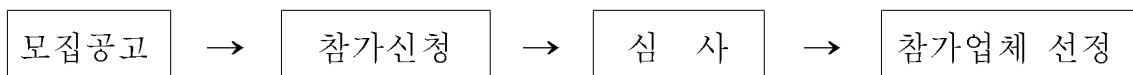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02-6300-1471~3)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 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의 생산 및 수출 업체로서 우수농산물전시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관련 협회, 조합, 단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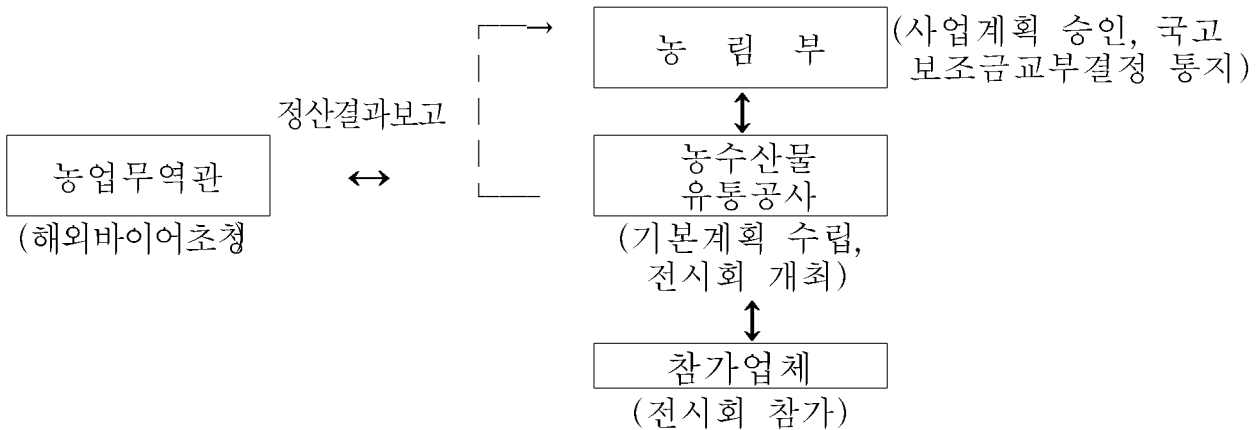


○ 선정방법 및 기준

- 기일내 참가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참가업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 포장표기 상태, 홍보물 준비여부, 홈페이지 보유상태 등 해외시장 개척의지와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

4) 사업 시행

○ 사업체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시회 경험을 고려하여 연간 전시회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 여부 검정, 확인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종합 평가 실시 (4/4분기)
 -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
- 박람회 및 전시회 종료후 수출상담 및 계약에 대한 수출이행 지원관리
- 참가업체 수출애로사항 지원 및 수출실적 관리

(2) 기타 사항

- 매 박람회, 전시회 개최후 결과 분석 및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나. 현지 유통업체 직수출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현지 판촉행사 지원

- 사업목적
 -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 소비자 직접 판촉행사를 통한 해외 판로망 확대
- 행사횟수 : 24회
- 지원내용 : 행사장 사용료, 홍보비, 현지운송비 등 행사 제비용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바이어 거래알선

- 사업목적
 - 해외대형유통업체 및 유력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수출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농산물 홍보 및 신규바이어 발굴
- 초청 및 파견대상
 - 주수출국 또는 수출확대가 가능한 지역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 수출목표시장에 수출 거래선을 개척코자 희망하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 6회 (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지원내용
 - 바이어초청 :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수출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업체 파견 : 왕복항공료, 수출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국외 체재비는 참가업체 부담)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계	-	1,200	1,200	1,200	-	-	-	
○ 현지 판촉행사 지원	24회	900	900	900	-	-	-	
○ 바이어 거래알선 지원	6회	300	300	300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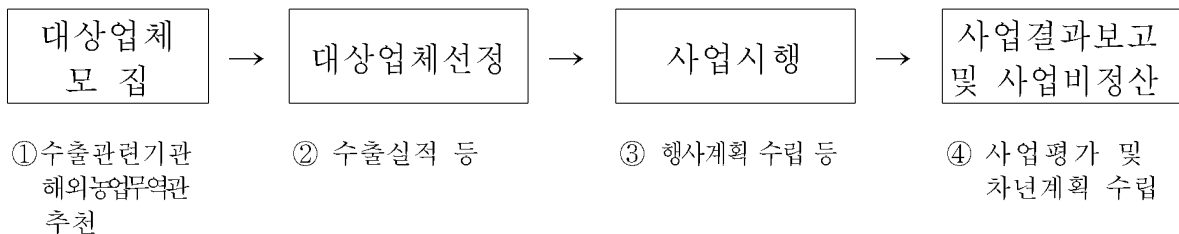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아태부 (02-6300-1491~8),
구미부 (02-6300-1451~7)

(3) 대상자 선정

(가) 현지 판촉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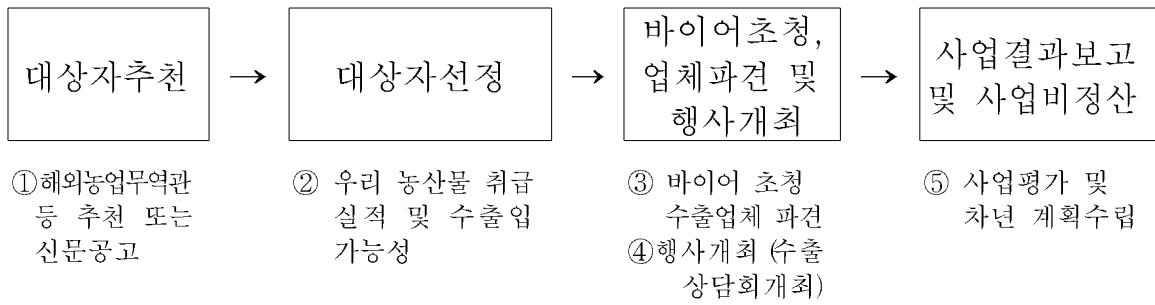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해외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농산물의 판촉 및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수출업체 및 현지 유통업체
 - 해외에 수출거래선의 개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 사업추진절차



(나) 바이어 거래알선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우리 농산물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 바이어 또는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 신규 수출시장에 수출 거래선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거래실적 및 향후 거래 전망과 한국의 농산식품의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내 초청대상자 결정
 - 수출계획, 수출준비상태 등 수출가능성을 감안하여 해외 파견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절차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교부조건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검정, 확인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추진상황 점검 (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사업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대형유통업체 현지판매 실적 및 운영실태조사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다. 수출홍보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 광고내용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 및 CF 광고
- 주요 광고지역 :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미국 등 우리농산물 주 수출지역
- 광고매체 : 빌보드, 라이트박스, TV, 인터넷, 전문지·일간지 등
- 광고절차 : 매체별 광고계획 수립→ 광고대행사 선정→ 광고물제작→ 광고시행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 내 용 :
 - 기획이벤트 홍보 : 한국음식요리교실, 김치학술세미나, 김치시식행사, 아이치 엑스포‘한국식문화관’운영, 해외식당활용 식문화전과
 - 한국식품 로드쇼 : 일본 주요 거점도시를 순회하면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
 - 과일·채소 해외홍보 : 한국산 과일·채소 주요 수출시장에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식 및 판촉행사 개최
- 대상국가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미국, EU 등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780	4,780	4,780	-	-	-
○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10종	2,090	2,090	2,090			
○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2,690)	(2,690)	(2,690)			
-기획이벤트 홍보 등	5종	840	840	840			
-한국식품 로드쇼	1회	350	350	350			
-과실·채소 해외홍보	45회	1,500	1,50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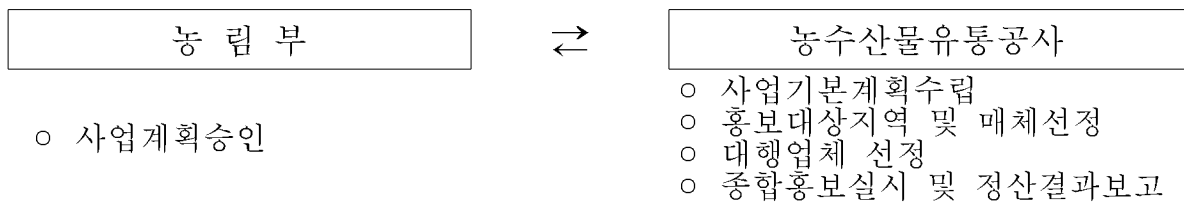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마케팅전략부(02-6300-1441~50), 수출개발처(02-6300-1358, 02-6300-1373)

(3) 사업추진절차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식품산업과)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사업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사업중간 점검실시
 - 사업종료시 결과보고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라. 농산물 수출상품화 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사업목적
 -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현지인의 기호, 식습관에 맞도록 개발 및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도모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수출 컨설팅

-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 운송, 포장, 검역, 통관, 홍보, 시장개척 등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 수출컨설팅 및 전문가 초빙 지도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사업시행기관의 컨설팅지도 요원 출장비,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청비, 교재 및 사례집 발간·배포 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다)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

- 사업내용
 - ISO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안전성관리 시스템구축, 전문생산단지평가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 ISO 국제품질인증서 획득을 위한 인증기관의 컨설팅 및 심사비용 일부지원
 -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홍보·교육, 전문생산단지 조사 및 평가

(2)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300	1,300	1,300	-	-	-
○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25품목	700	700	700			
○ 수출컨설팅	85회	400	400	400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	2종	200	200	200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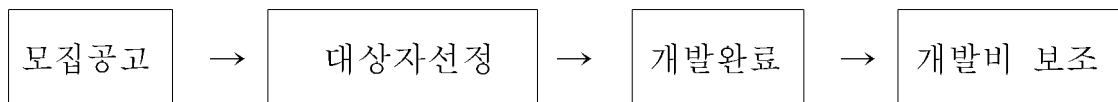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4)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농산부(02-6300-1351~9) 가공수산부(02-6300-1371~6), 수출컨설팅팀(02-6300-1431~6)

(3) 대상자 선정

가)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계획이 있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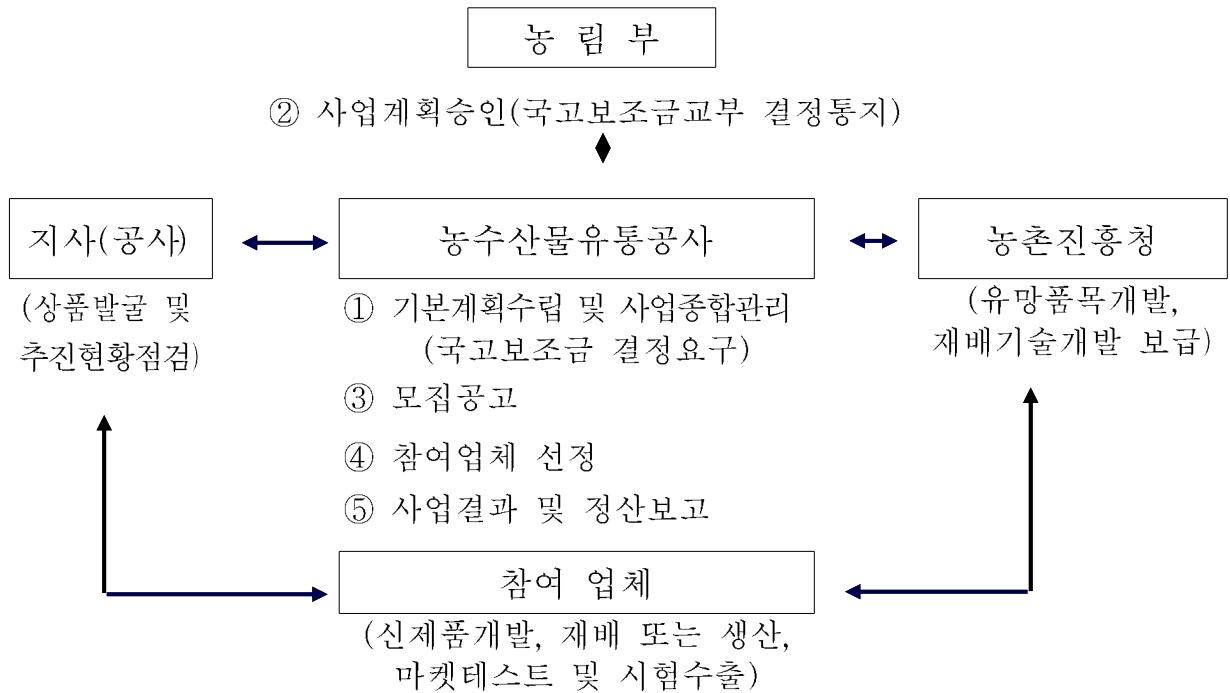
○ 선정절차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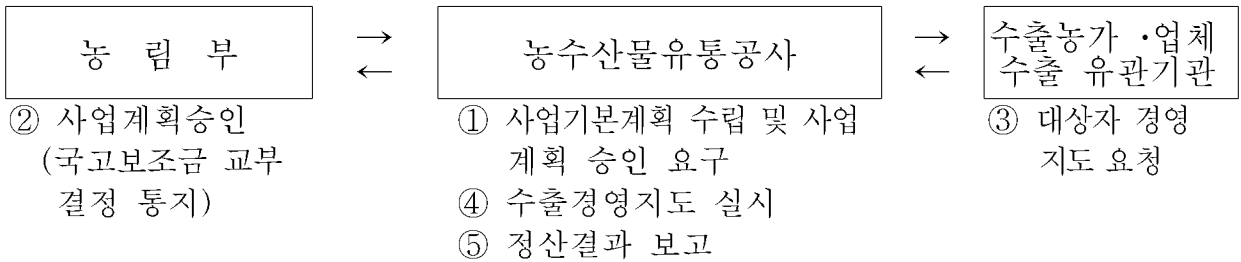
- 수출확대가능성, 해외시장개척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사업추진절차



나) 수출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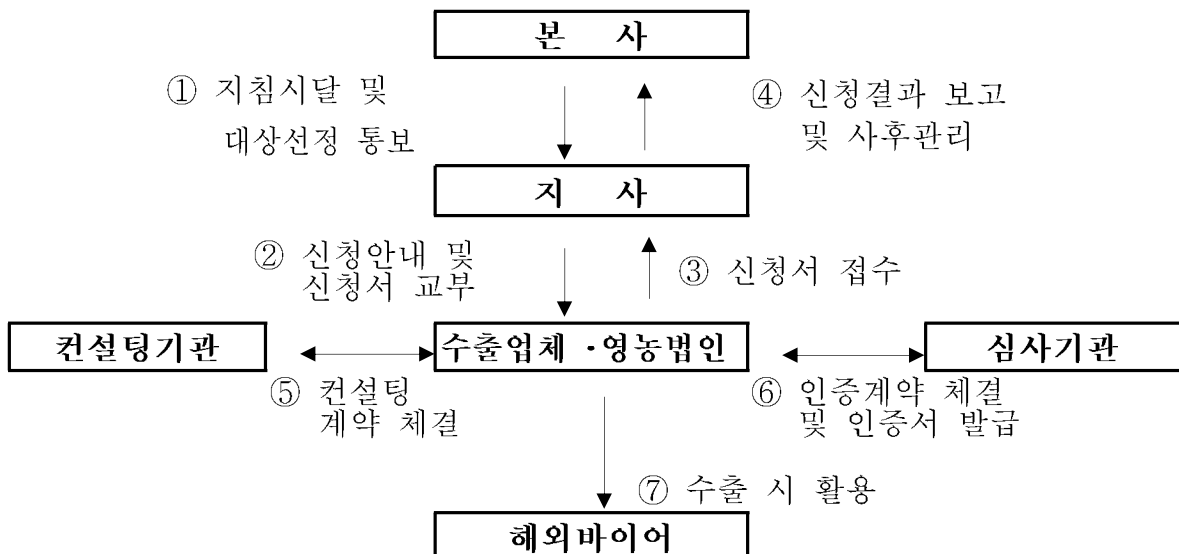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수출경영지도 희망자의 신청 또는 시군 등 지자체의 추천에 의거 선정 (FAX,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대상선정 : 관내 농업기술원, 수출업체 또는 품목별 수출 주산지 지자체 등과 협의후 선정
- 추진체계



다) 고품질·안전성 농산물 생산지원

□ ISO 국제품질인증 지원

- 지원대상
 - 생산량 중 수출비중이 높은 영농법인 및 작목반
 - 지원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는 전문생산단지
 - 전년도 품목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업체
- 지원대상 품목 : 대일 수출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수출용 신선채소류
- 대상선정 : 업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업체 선정
- 사업추진절차



(4)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병행)
- 관련 농림사업 추진시 전문생산단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육성 추진
- 고품질·안전성 농산물 생산지원
 - 지원대상자 및 대외 소비자 신뢰도 제고 조사 등 성과 분석
 - 지원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국내외 심층조사 및 해외 수출현장에서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의 생산·유통·시장상황 등 정보를 분석가공·DB화하여 전파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DB 관리
- 인터넷을 통한 한국 농산물의 해외홍보 및 거래 알선
- 지원기준 : 정액보조

(2) 2005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350	1,350	1,350	-	-	-
○ 무역정보 조사 및 전파	○무역정보조사 및 DB구축	1,030	1,030	1,030	-	-	-
○ e-Trade시스템운영	○ 시스템구축운영	320	320	32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0-1853~54)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처(02-6300-13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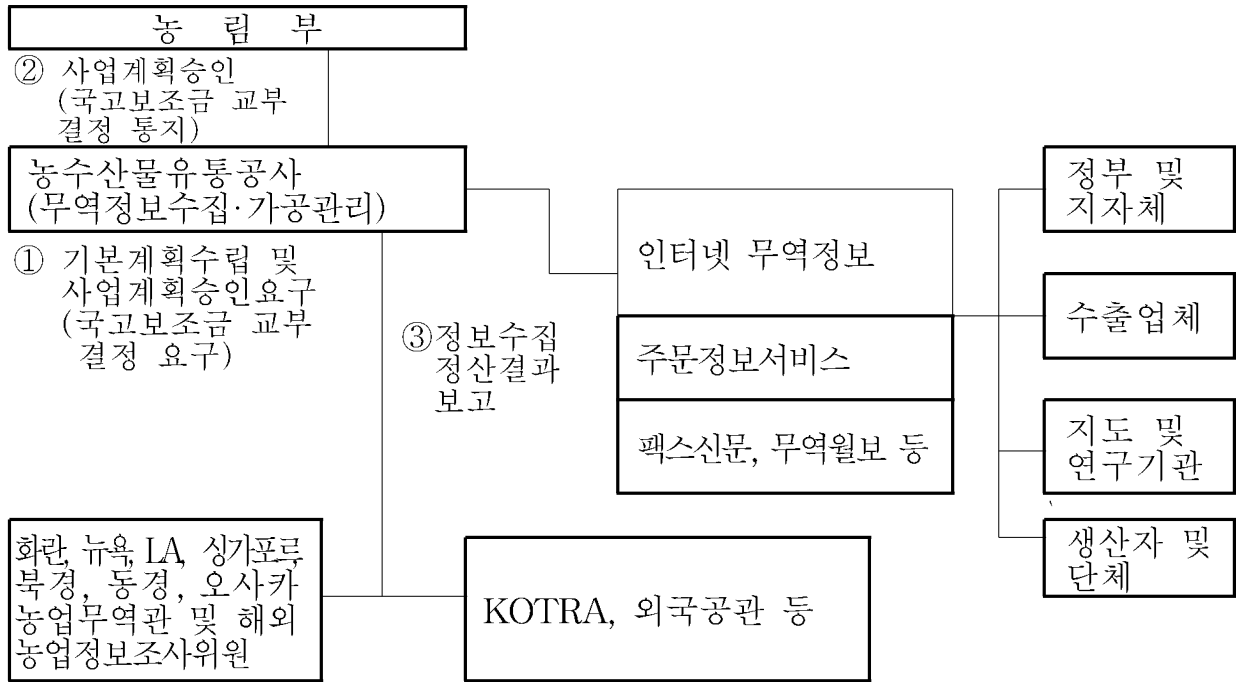
(3) 사업시행

○ 사업체계도

무역정보 수집·분석·가공

정보분산·배분

활 용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농수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 자료집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농수산물무역정보 DB관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의 내용 및 범위 등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 e-Trade 시스템 운영
 - Agro Trade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거래알선시스템 홍보 및 프로모션 강화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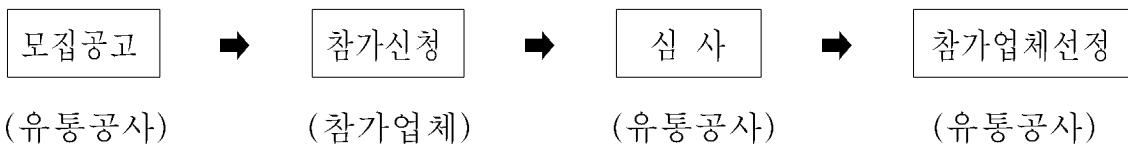
(2) 기타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국제박람회 참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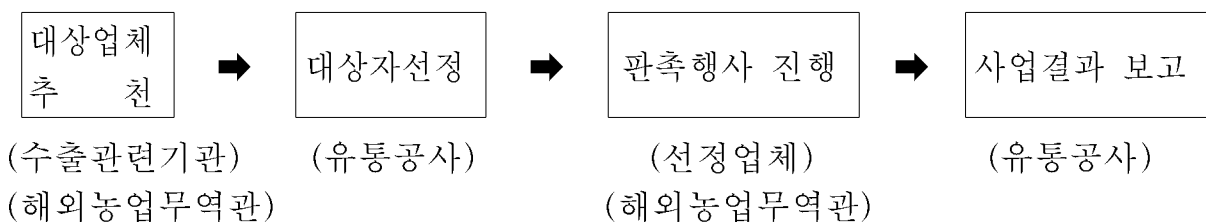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구미부(02-6300-1451~7), aT사업본부 전시사업팀(02-6300-1471~5)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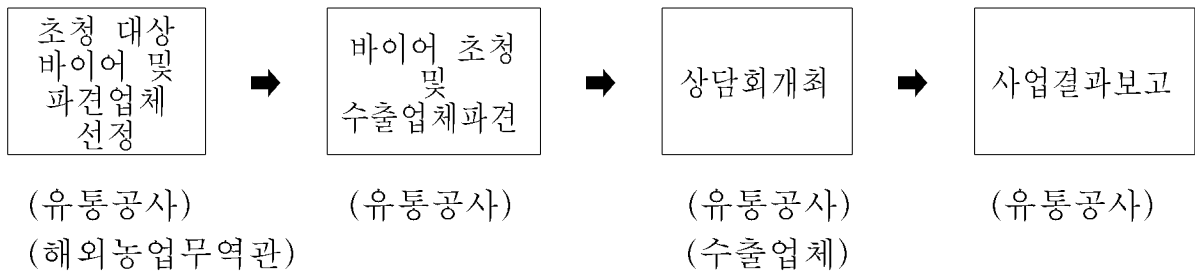
나. 현지유통업체 직수출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아태부(02-6300-1491~8)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업체, 해외현지 수입업체, 해외대형유통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현지 판촉행사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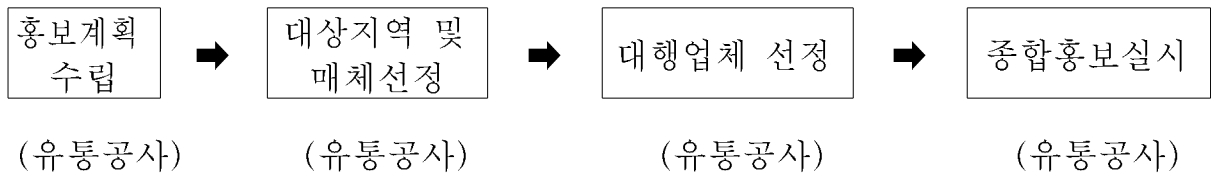
< 바이어 거래알선 >



다.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마케팅전략부(02-6300-1441~50)
아태부(02-6300-1491~8), 구미부(02-6300-1451~7)

< 농산물 해외광고 및 식문화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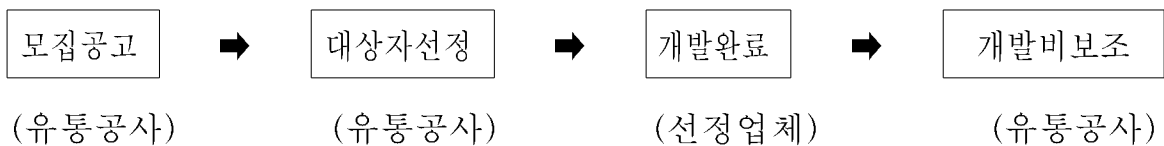
· 한국농산물해외홍보

라. 농산물수출상품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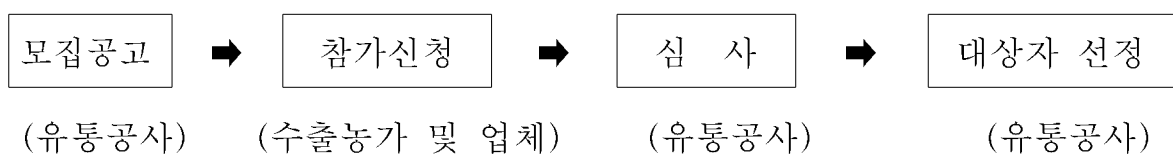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02-6300-1351~9)
마케팅홍보처(02-6300-1441~50)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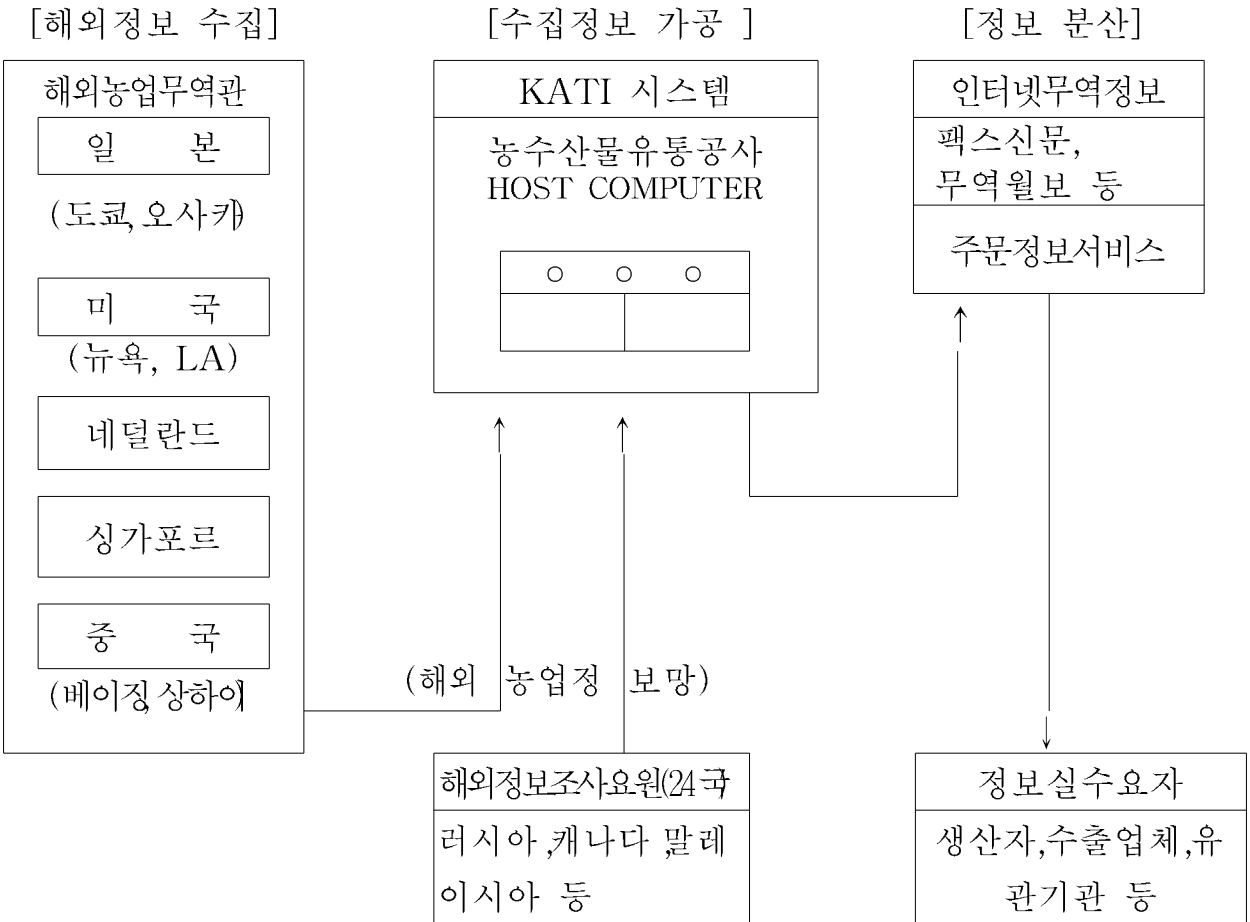


< ISO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 >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 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처(02-6300-1381~5)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업무 관련 부서

- 마켓분석부 : 02-6300-1381~5
- 정보서비스부 : 02-6300-1391~5, 1402~4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최대휴, 사무관 강신복)입니다.

1. 목 적

- 우수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수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기반 확충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우수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계약생산 체제 적극 유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업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한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95~'02년	'03년	'04년	'05년 (예산안)
합 계		2,092,858	361,600	368,891	330,500
우수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용 자	1,966,833	349,000	360,891	323,400
우수농산물 시설현대화지원	"	126,025	12,600	8,000	7,100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우수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자

- 우수농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 및 부자재를 생산·저장·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업체

나) 지원용도

- 우수농산물의 원료구매자금
- 우수농산물의 저장·가공·포장·운송비 및 부자재 구입비 등 수출경비
- 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비(우수농산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에 한함)

다)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4%
 - 인센티브 부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업체를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는 3.0%, 우수업체는 3.5%의 금리를 적용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자금 배정 : 수출(공급)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배정
- 사업 의무 : 대출금액의 55%이상 수출
 -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원료구매의무 또는 공급의무 부여

라) 지원업체 선정기준

- 구비서류 적정성,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

2) 2005 사업비(예산안)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수출업체·단체	323,400	323,400	-	323,400	-	-

* 단위농협 지원자금(기존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51,000백만원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도 지원 가능

<추진체계>

1)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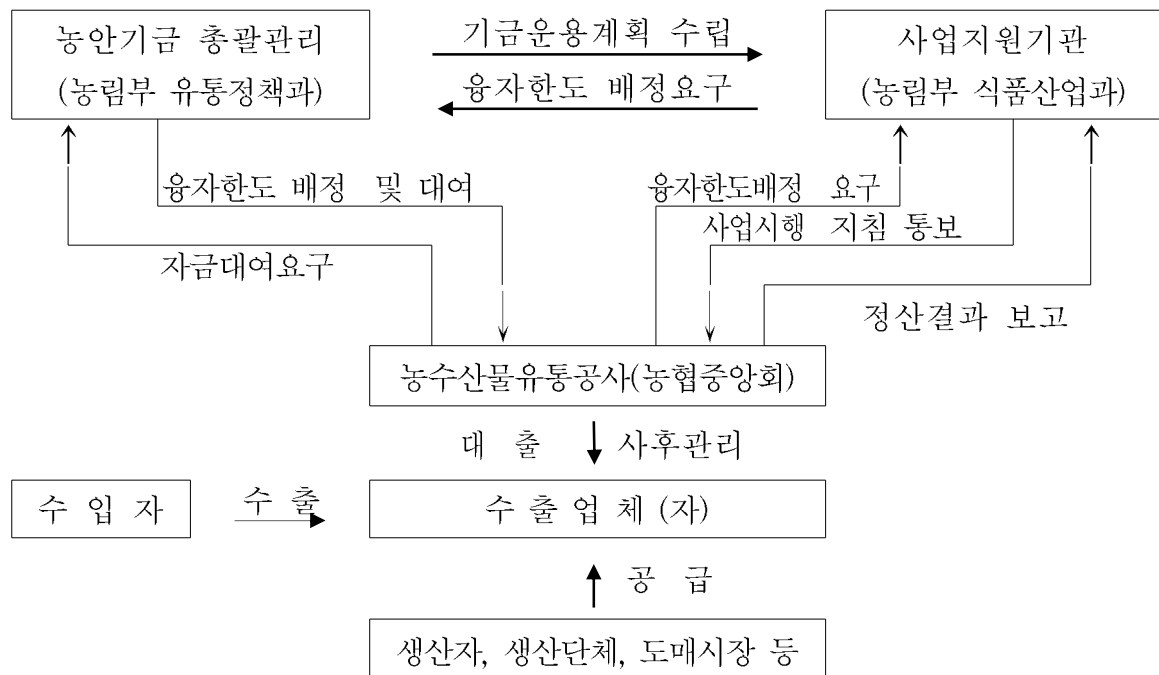
2)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컨설팅팀(02-6300-1433)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지원자금) : 수출지원팀(02-397-5879)

3)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4.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2005. 1월(추가자금은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5.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4) 사업시행 체계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 사후관리방법 : 사업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업체에 대해 제재조치
- 사업정산 : 대출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실시

2) 제제사항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출과정 중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국가 이미지나 국익을 손상시킨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미이행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을 징구

3) 평 가

- 대출취급기관별로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업체 제재조치

4)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5.1.31까지 농림부에 보고

나.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자

- 농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에 한해 인정)이 100천\$ 이상인 업체
-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 수출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자)

나) 지원용도

- 우수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시설(건물 등) 증축(설) 및 개보수
- 우수농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장비(운반차량 등) 구입

다)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
- 대출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비율 : 자금 지원액의 25% 이상

라) 지원업체 선정 기준

-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또는 사업의무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자) 및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선정
 - 재무구조의 건전성, 매출액 등 영업실적, 최근 2개년간 농산물 수출실적
 - 자기자금 조달능력, 사업수행능력, 수출계획 등 사업타당성

마) 업체별 자금배정

- 사업지원 신청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배정하되 업체별 배정총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평점 산출하여 배정
 - 평점 구성은 적격심사 평점 40%, 수출실적 3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

2) 2004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일반업체	7,100	7,100	-	7,100	-	-

<추진체계>

1)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02-500-1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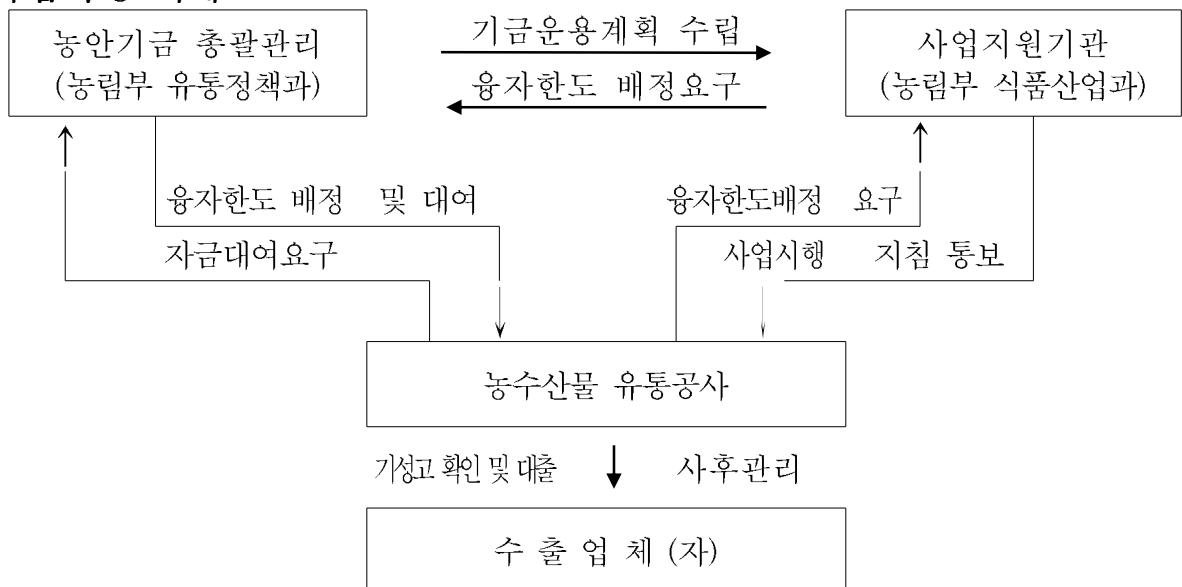
2)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컨설팅팀(02-6300-1433)

3)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4.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 2005. 1. 2 ~ 4. 15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5. 5월
- 대출실행 : 기성고에 따라 지급

4) 사업시행 체계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방법 : 기성고 확인

2) 제제사항

- 대출금의 사용실태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적용)
 - 대출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5.1.31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운영활성화지원, 우수농산물시설현대화지원

나. 신청서 제출 및 수요조사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다. 신청자격 : 우수농산물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라.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05. 12월 중순(일간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05. 12월 중순 ~ '06. 1월(필요시 수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06. 3월
- 대출실행 : 품목별 성출하기 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기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양태선, 사무관 윤광일)입니다.

1. 목 적

- FAO(세계식량농업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
- GAP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
- DDA 이후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착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GAP의 효율적 도입 및 생산농업인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토양·수질검사비 및 생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등 검사비 지원.
- 선진 수준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경영을 생산농업인에게 교육시키고, 이행토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 GAP 위생시설 보완은 운영체계 및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시설보완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산안)
○ GAP도입 시범사업	사업량		-	-	350	700
	사업비	계	-	-	109	290
		국 고	-	-	109	290
○ GAP위생 시설·생산 기반지원	사업량		-	-	-	2
	사업비	계	-	-	-	2,000
		국 고	-	-	-	600
		지방비 자부담	-	-	-	400
					1,0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수입산과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WTO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

(2) 지원대상자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GAP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위생처리가 가능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과 연계된 사업자(운영자) 또는 생산자단체
 - * APC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GAP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함.
- 생산물의 안전·위생처리가 가능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 * 안전·위생처리 가능시설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GAP 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함.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 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A등급 사업자에 한함.
- 유통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처리물량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

(3) 지원내용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토양·수질검사비 지원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4의 규정에 의한 항목
 - 수질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
- 수확농산물의 중금속·잔류농약 등의 분석비용 지원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전 제3장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한 항목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선정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보유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4) 지원기준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토양·수질검사비 및 중금속·잔류농약 등 안전성 분석 비용을 지원.
- 검사 및 분석비 기준단가 : 1개 구역당 4개 항목 소요금액 304,000원
- * 구역 : 토양·수질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0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 GAP제도 기반조성에 기여한 사업체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위생시설·장비 지원
- 위생시설·장비 (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처리시설(세척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참고사항>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 및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5) 지원조건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지원비율 : 국고 100%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	290	290	290	-	-	-
○ GAP도입 시범사업	700농가	290	290	290	-	-	-
○ GAP위생 시설 생산 기반지원	2개소	2,000	600	600	-	400	1,00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1) GAP 도입 시범사업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생약협회, 유통업체 등 사업실시기관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시장·군수 (자치구 포함)

나. 신청자격

(1) GAP 도입 시범사업

- GAP 기준에 부합되는 안전·위생처리가 가능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과 연계된 사업자(운영자) 또는 생산자단체
 - * APC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GAP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함.
- 생산물의 안전·위생처리가 가능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 * 안전·위생처리 가능시설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GAP 지침을 이행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함.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지원범위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 출자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한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를 취급(특용·약용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최근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A등급 사업자에 한함.

다. 대상품목

(1) GAP 도입 시범사업

- 표준재배관리지침이 마련된 신선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및 기타

라. 구비서류

(1) GAP 도입 시범사업

- 「사업실시기관별 자체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유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GAP 시범사업 신청서(농가·조직별)」 (별지 제3호 서식)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GAP 위생 시설 보완에 관한 의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사업실적 입증서류 등.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1) GAP 도입 시범사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지자체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다만, 지원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1) GAP 도입 시범사업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500-1838, 2027)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관리과 (031-446-5595)
- 농협중앙회 : 농업경제기획실 (02-397-5833)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품질안전팀 (02-6300-1361~2)

- 한국생약협회 (02-967-8133)
- 기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과 연계 또는 보유한 사업자(유통업체) 등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500-1838, 2027)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05년 GAP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사업실시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사업실시기관(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생약협회, 유통업체 등)은 계통기관의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조직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를 심사·선정하고,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 사업실시기관에서는 신청농가 또는 조직에 대해 품목(군)별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 평가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필수항목(70)을 준수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또는 조직을 우선 선정
- 통보시 사업실시기관별 자체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산지유통 시설 보유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우선선정대상 기준>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단체(기관·사업자 등)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한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인증을 받은 조직 또는 농가
- 기타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조직 또는 농가 등

- 참여 희망농가 또는 조직은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아래의 사업실시기관에 GAP 시범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협(품목농협) → 농협중앙회
 - * 기타 참여희망 농가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제출
 - 영농조합법인, 수출단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약용작물 생산자 → 생약협회
 - 기타 농가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된 유통업체 등
- 대상품목(농촌진흥청 작성) : 표준재배관리지침이 마련된 82개 품목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업실시기관의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및 사업실시기관에 보고(통보)
- 농촌진흥청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행에 필요한 재배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참여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GAP교육은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 주관으로 GAP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추진.
- 사업실시기관은 선정조직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GAP 생산관리 및 사업실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 의뢰 및 사업수행 지도.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GAP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1.30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를 2.10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2.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는 필요한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 대상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인증 또는 GAP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또는 농가 (단, '04년 시범사업 자진포기 농가는 제외)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3월중).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3월).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145호) 제4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GAP 위생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의견을 사업성 진단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GAP 위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

○ 한국식품연구원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유통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3.20)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3.30)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제6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7호 서식)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4.10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4.20까지 시·도에 통지.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5.30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토양·수질 검사비 및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비용 지원 (구역당 304,000원)
- GAP 교육
 - 지원자로 확정된 조직 또는 농가는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GAP 교육을 받아야 함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우수 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한 위생시설·장비 지원 (1개소당 국고보조 3억원)

(3) 사업비 집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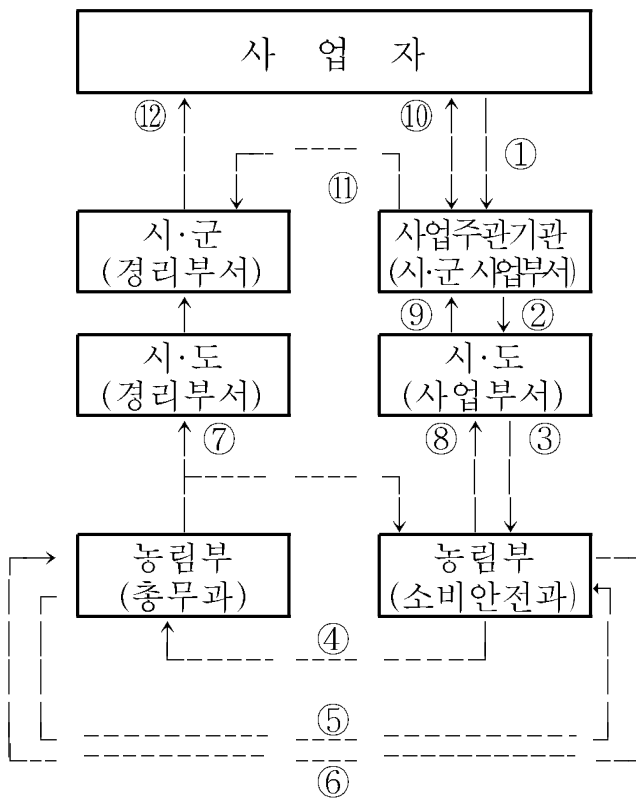
(가) GAP 도입 시범사업

- GAP도입 시범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사업실시기관은 확정된 구역에 대하여 토양·수질 검사, 수확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중금속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실시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
 - 사업실시기관 중 토양·수질, 수확농산물의 안전성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검사 접수 중 일부를 자체 검사 가능.
- * 공인검정기관 : 식품, 환경 등의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공인검정기관이나 자체 분석시설, 연구기자재 등을 보유한 사업실시기관 중 농림부(농관원)에서 토양·수질, 안전성 분석능력을 검토하여 자체검정가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연구소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배정된 예산을 집행한 후 정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나)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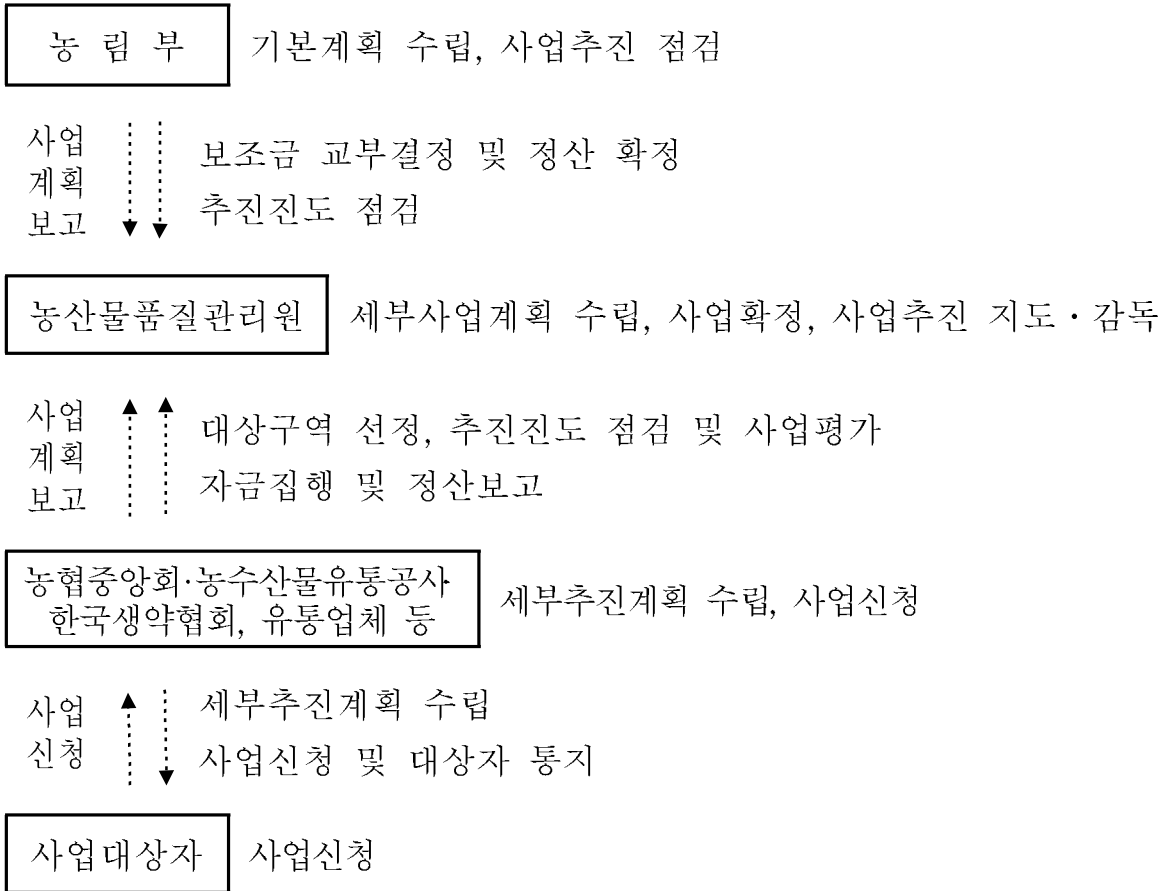
<보조금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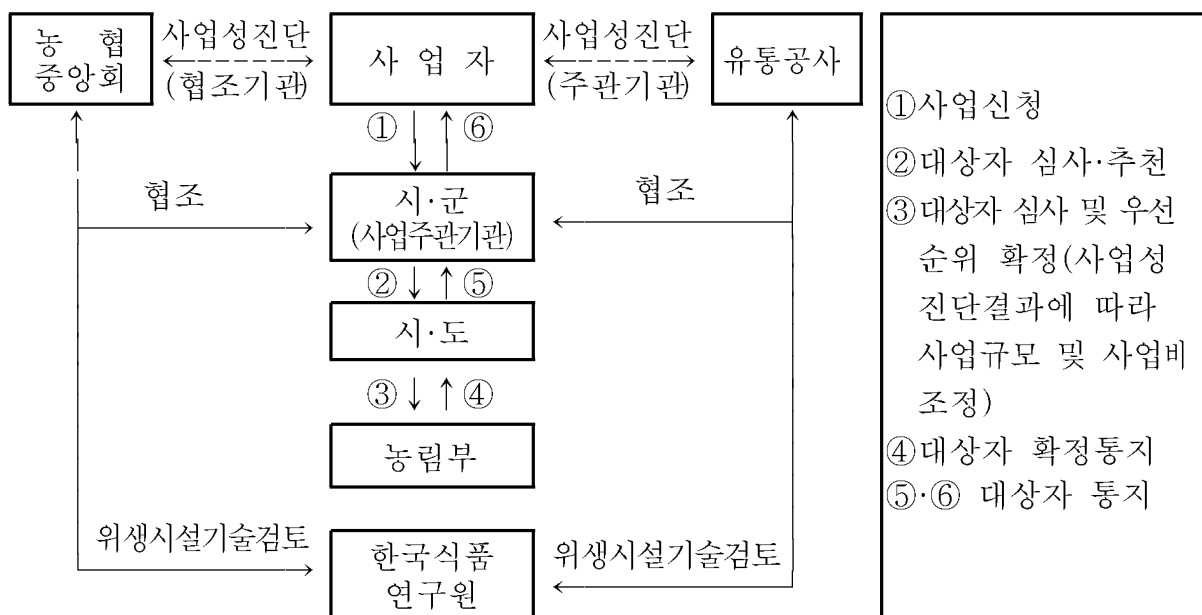
-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서 통지
-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라. 사업시행 체계

(1) GAP 도입 시범사업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GAP 도입 시범사업

- 사업실시기관은 추천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
 -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수출단지, 약용작물 생산자 등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범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 및 해당 산지유통센터 등 관련조직·농가에 대해 지도관리 및 감독 수행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지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7년간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나. 보고사항

(1) GAP 도입 시범사업

- 사업실시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사업실시기관은 추진실적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농림부에 제출.

(2) GAP 위생시설·생산기반 지원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다.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시범사업 참여자는 농촌진흥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생약협회, 유통업체 등과 사업진행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지자체(시·도,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인력을 확보하여 GAP 전문교관으로 양성하여야 하며, '05년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단계의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GAP 도입 시범사업은 2005년도 사업으로 종료함.

나. 제출기한 : 2005년 6월말까지

다. 신청자격 : 2005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 2005년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라 기타사항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05년 내용을 참조바라며,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시기관별 자체사업계획서

기관현황

- 소재지 :
- GAP사업 담당부서 :
- 사업참여 조직구성 및 관리인력 현황
 - 조직구성 :
 - 관리인력 현황 :

품목별 계획서(총괄)

구분 품목별	총재배면적 (m ²)	생산계획량 (kg)	인증계획량 (kg)	비 고

산지유통시설과의 연계 현황

APC명	소재지	주요 전처리품목	비 고

자체 검사시설 보유현황

검사기기별	검사가능항목	자체검사 계획건수	비 고

농가 또는 산지유통시설 등 사후관리계획서

- 자체점검 및 컨설팅 계획

품목별	지 역	대상농가인원	시 기	비 고

수확농산물에 대한 판매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유현황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명칭 :

○ 대표자 : (전화 :)

○ 소재지 주소 :

2. 시설면적

○

3. 주요 시설·장비

○ 전처리 작업장 :

○ 세척기 :

○ 위생소독실 :

○ 부산물 처리시설 :

○ 물류기기 세척시설 :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

○ 기타 시설·장비 :

4. 기 타

○

(별지 제3호 서식)

GAP 시범사업 신청서(농가·조직별)

1. 신청인 성명(조직명) : _____ (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

3. 시범사업 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총괄)

품목명	재배면적 m ²	생 산 계 획 량 kg	경작지		과종 또는 정식예정일	수확예정일
			지목	지번		

4.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품목명	재배포장			생산 계 획 량 kg	종자(종물)보증확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소재지	지번	면적 m ²		품종명	확인량 kg	보증기관명

5. 토양 및 수질·비배관리 계획

○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

붙임 : 종자(종물)보증서 부.

GAP 재배관리지침에 따라 재배를 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GAP 생산관리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는 소속 사업실시기관의 권고에 따라 약정을 취소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 사업실시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목
		천원	백만원	-		
○ 시설·장비						
- 전처리작업장	평			처리능력 시간		
- 세척기	조			"		
- 위생소독실	평			"		
- 부산물처리시설	평			"		
- 물류기기세척 시설	평			"		
-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평			"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평			"		
-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평			"		
- 기타시설·장비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영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위생처리 농산물 판매 및 유통계획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5호 서식)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장비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 시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내부 안전시설	식품오염 물질을 처리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 시설	기타시설 ·장비			
		기존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기존												
		신청												
		계												

- (주)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 연도를 ()안에 기재. 예 : 확장('95, '97, '99)

(별지 제6호 서식)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APC)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GAP위생 시설 설계 및시범사업 참여도 (30점)	1-1.GAP위생 시설 설계의 적합성	15	10	-	-	A : HACCP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 B : GAP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는 원료관리·처리· 가공·포장 등 식품 생산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예방·통제하는 제도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수확 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	
	1-2.GAP시범 사업 참여도	15	10	7	5	A : 처리물량 중 GAP 시범사업 농산물 처리 비율이 90% 이상 B : 처리물량 중 GAP 시범사업 농산물 처리 비율이 80% 이상 C : 처리물량 중 GAP 시범사업 농산물 처리 비율이 60% 이상 D : 처리물량 중 GAP 시범사업 농산물 처리 비율이 40% 이상 * GAP 시범사업 농산물 처리물량은 계약기준임	
2.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15점)	2-1.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 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 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2-2.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사업수행 능력 (30점)	3-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카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3-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3-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4-2.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4-3.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4-4.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산점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최근의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9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90점 미만인 사업자 - 9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사 군	구 분	주요 시설										사 업 비		주 요 품 목
				전 작 업 장	세 척 기	위 소 독 실	부 산 물 처 리 시 설	물 류 기 기 세 척 시 설	작 업 장 격 리 내 부 시 설	식품 오 염 리 시 설	세 척 수 및 관 시 설	기 타 시 설 · 장 비	신 청 액	조 정 액		
1			신청	평	조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천원	천원	
(00.0)			조정												< >	
2			신청													
(00.0)			조정												< >	
3			신청													
(00.0)			조정												< >	
4			신청													
(00.0)			조정												< >	
5			신청													
(00.0)			조정												< >	

- (주)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월별 공정계획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설계	공정				설계 보완								
		금액 (백만원)				()								
	인허가	공정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완료							
	공사등 계약	공정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건축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전기 공사	공정					착공	%	%	%	100%			
		금액 (백만원)							()	()	()			
	설비 공사	공정						착공	%	%	100%			
		금액 (백만원)								()	()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			
제작	공정								착수	%	100%			
	금액 (백만원)										()			
사업비계	공정				%	%	%	%	%	100%				
	금액 (백만원)					()	()	()	()	(2,000)				

- (주) ○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제10호 서식)

총 공통 - 9

2005년 GAP 위생시설·생산기반지원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시 설 (A)	장비별 수량	시 설 (B)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시설·장비류(평, 개소수)										
계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위생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시설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 시설	식품오염 물질처리 시설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 ·장비

(주) 사업세부명세는 APC 등의 GAP위생시설·장비에 한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준원, 서기관 정연호)입니다.

1. 목 적

- 산지·소비지의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실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인적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유통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교육 실시
 - 마케팅, 경영혁신 등 현장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집중육성
-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희망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관별 경쟁체제 구축으로 교육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경북대학, 경상대학, 전북대학, 전남대학, 충남대학, 단국대학, 농협대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 교육비는 농안기금에서 지원하되 일정부분을 자부담으로 하여 교육참여 의식을 고취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3 ~ '02	'03	'04	'05(예산안)	'06년 이후
사업량(명)				400	420	3,620
사업비	계 (백만원)			1,920	2,076	21,918
	보 조			1,320	1,427	12,800
	자부담			600	649	9,128

5. 2005 사업시행요령

가. 전문과정 개설분야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전문과정을 개설 하되, 산지 마케팅, 소비지 마케팅, 품목별 마케팅, 유통업 경영 혁신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교육

- 산지 마케팅분야 : 시설운영(APC·RPC·LPC), 수확후관리, 저장 및 가공, 상품화 전략, 물류혁신 등
 - 소비지 마케팅분야 : 상품개발, 판매촉진, 광고 및 홍보, 소비자 행동분석 등
 - 품목별 마케팅분야 : 과일, 채소, 화훼, 쌀, 육류, 친환경농산물, 가공 식품 등 품목별로도 특화하여 마케팅 능력 강화
 - 유통업 경영혁신 : 신유통업체, 도매시장, 전자상거래 등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경영개선
- 과정개설분야는 개설기관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수요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나. 교육대상 및 정원

- 산지·소비지 등의 농산물 유통·가공업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인력을 중점교육 대상으로 함

< 중점교육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협지역조합장,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 임직원, 신유통업체 임직원, 영농조합법인 임직원, 품질관리사, 경매사,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인, 전통식품 가공·제조업체, 농산물 유통 및 지도관련 공직자, 기타 농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임직원 등

- 산지유통전문조직 임직원 : 정부에서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한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의 종사자
 - 산지유통센터 임직원 : 정부지원 산지유통센터 종사자
 - 농협지역조합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 도매시장 임직원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임직원,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 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공사) 종사자
 - 종합유통센터 임직원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종사자
 - 신유통업체 임직원 : 매장면적 1천㎡ 이상인 수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식자재 유통업체의 종사자
 - 영농조합법인 임직원 : 농업인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의 종사자
 - 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품질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 경매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지식농업인 : 농림부 장관이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한 자
 - 선도농업인 :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으로 부터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및 농업관련대학 졸업생
 - 전통식품 가공·제조업체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정부지원대상인 전통식품가공업체 종사자 및 주세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농민주, 민속주 제조업체
 - 농산물 유통 및 지도관련 공직자 : 농산물유통, 수출, 가공, 지도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식품 유통 및 가공업체 임직원 : 사업자등록증에 관련업무가 명시된 업체의 종사자
- 1개 과정당 피교육생의 정원은 35명 수준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과정당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피교육생 모집기준은 교육기관이 정함. 가급적 중점교육대상을 80%이상 우선하여 선정

다. 교과과정 편성

< 교 과 과 정 >
유통이론 + 현장실습 + 선진사례연수

- 교과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유통이론, 현장실습, 선진 사례연수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교수요원은 현장전문가를 외래 강사로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최대한 제고**
- 현장실습은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에서의 전문가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실습장소에 현장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유통 현장을 방문·실습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되, 해외연수 지역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해외 유통전문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해외 연수단 파견 및 교수진 교류 등을 추진

라. 교육기간 및 장소

-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는 유통인의 상황과 농산물 생산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필요시 3개월내에서 가감 가능) 기간에 걸쳐 교육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 (예시 : 6개월과정) 이론 30시간(1주×5일×6시간) + 세미나 40시간(10주×4시간) + 현장실습 40시간(10주×4시간) + 해외연수 40시간(1주×5일×8시간)
- 합숙·통학, 이론·현장실습, 주·야간 교육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을 정하되, **최소 150시간 이상 필수**
- **교육장소**는 교육기관 소재 장소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세미나 등을 위해 **이동 가능**

마. 전문교육기관 현황

1) 거점교육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을 거점교육기관으로 함
- 대학교수 등 인재풀을 활용하여 교수진을 확보하고, 과정별로 1~2명의 대학교수 또는 현장 전문가 등을 겸임교수로 임명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은 '05년에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05. 3월부터 개강함

2) 지역별 전문교육기관

- 지역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문과정개설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
 - '04년 선정된 교육기관이 '05년까지 운영
 - 농협대학은 농협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영농조합법인 등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시 국고를 지원 할 수 있음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05년 교육계획서를 '04. 12. 20(월)까지 **별도양식** (붙임1)에 의해 작성하여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05년도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교육일정 등을 조정하여 '04년말까지 교육기관에 통보
- * 붙임2 : 교육기관별 '04년 교육과정명 및 연락처 현황

바. 기관별 역할 분담

- 농림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를 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지출·정산 등)을 담당
- 각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실시 등 교육수행업무를 담당

사. 교육비 지원

1) 교육비 지원 예산 및 한도

- 교육비 지원 예산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
- 교육과정별로 **교육예산의 70%이내에서 지원**
- 총교육비는 과정당 최고 17,500만원 교육생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함
- 교육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과정개설기관에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은 지방비를 적극 지원하여 교육효과 제고
- 농업협동조합은 전문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 자부담액을 지원 가능

2) 교육비 지원절차 및 정산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개시 이전 및 교육생 등록 마감후 15일 이내에 등록결과를 첨부하여 유통교육원에 교육비를 신청하고 유통교육원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비를 지급
 - 신청서는 공문으로 요청
 - 지역별 전문교육기관은 농림부와 협약(별도작성)을 체결
 - 교육과정 개설기관은 교육비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교육종료시점에서 교육비 미집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설기관은 이를 반납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교육과정 개설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약을 위반하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부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교육기간 중 전항에 의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교육과정 개설기관은 위탁 교육비 전액을 반환
- * 기타 사항은 농림부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실시요령 적용**

3) 교육결과 제출

- 교육과정 개설기관은 매기 교육종료후 교육성과분석 및 예산집행내역을 첨부하여 20일이내에 유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도로 정함
- 유통교육원은 교육실시결과를 종합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유통교육원은 교육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개설기관의 교육운영 자료 등 교육기관 및 교육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의 사실적 집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교육과정 개설기관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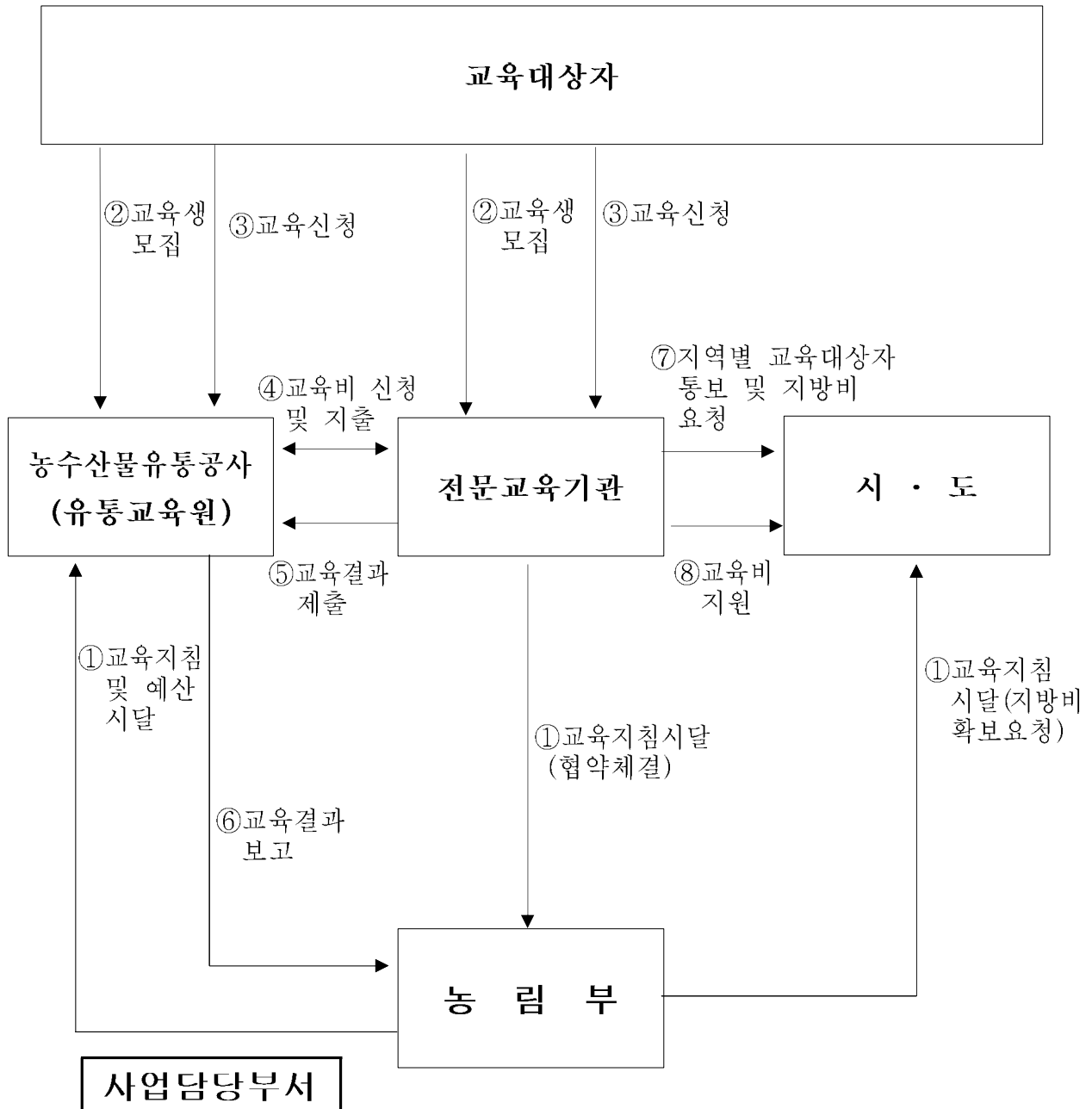
4) 교육결과 평가

- '05년도에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기관 계속 선정여부 심의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 평가기준
 - 교육이수자의 교육만족도
 - 교육계획 대비 실적 : 교육커리큘럼 및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의 직업, 지역별 분포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 교육결과 및 정산자료의 적정성 : 기한내 제출 등

아.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관리

- 교육과정개설기관은 교육생간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결성 지도 등 교육이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통정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유통조직 및 기업의 취업정보 등을 제공
- 전문과정 이수자를 고용하는 산지전문유통조직 등은 각종 유통사업 정부 지원 및 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산지유통전문조직선정·운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지원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시 우선권 부여 등
- 교육과정 개설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과대학 등의 연구진과 민간유통기업, 생산자단체, 품목별 유통조직 등의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연결

< 사업시행 체계도 >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17~8)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031-419-3705~6)
- 시·도 농산물유통담당부서

<붙임1> '05년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계획서(양식 및 작성요령)

1. 표지 : 교육과정명칭 및 교육기관

○○○○ 과정 계획서

기관명 : △△△

※ 과정 명칭은 교육내용이 나타나도록 자율적으로 결정

2. 교육과정 목표

-
-
-

< 목표설정 배경 >

3. 교육대상자 모집 및 선발

가. 중점교육대상

※ 직업(소속기관 등), 지역(거주지) 등을 가급적 구분표시하여 작성

나. 교육계획인원('05년)

○ 계획인원 :

○ 기 간 : ○○월 ○○일 ~ ○○월 ○○일

다. 교육생 선발기준 및 모집방법

(1) 선발기준

(2) 모집방법

4.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의 중점

< 총 교육시간 : >

○ 이 론 :

○ 실 습 :

○ 해외연수 :

※ 주요 교육내용을 기술하되 커리큘럼 편성방향 및 교육주제 등을 명기하고,
그 사유 및 배경을 설명

※ 교육시간은 실제 교육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연수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함

(3) 해외연수프로그램

○

○

○

※ 기간 명시

※ 연수대상국, 연수장소, 연수내용, 연수방법, 제휴기관 등

※ 해외유통전문기관과 제휴하여 해외연수단 및 교수진 교류 추진 여부

다. 교육일정표

주	일자	교육시간			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및 소속기관
		이론	현장	워크샵		

5. 교육평가

- 교육참가자 출석관리
- 교육참가자 이수관리 기준
- 논문 또는 자격시험 기준
- 우수 교육이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 등

6. 교육기관 컨소시엄 방식(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컨소시엄 기관별 지역 구분
- 연계가능한 기관(기관명, 주요강사진, 주요시설 등)
- 연계가능한 분야(연계가능기관의 전문성 및 강점 등)

※ 연계기관과의 협약서 등의 사본 제출(협약서 양식은 임의로 작성 가능)

7. 강사의 학력 및 경력현황

□ 이론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며, 경력은 최근 주요경력 2개 정도를 기술

□ 현장실습 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학력, 경력 기재는 이론교육과 같음

8. 교육비 산정

○ 총교육비 추정(세부명세 포함) :

○ 1인당 교육비(세부명세 포함) :

○ 국고지원액

○ 지방비 확보 계획 :

※ 교육비 지원액은 선정된 교육기관의 교육생 모집후 실제등록된
교육인원에 따라 신청하게 됨

9. 교육훈련기반 현황

□ 보유교육시설

시설명	개수	면적(평)	수용인원	비 고
강의실				
실습장				
...				
...				
...				
...				
...				

※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

※ 실제 교육에 투입가능한 시설만 기재

□ 교원 확보 : 전담교수 및 전담진행요원

구 분	성 명	학 력	경 력	비 고
과 정 장				
전담교수				
...				
...				
...				
소계				
진행요원				
...				
...				
...				
소계				

※ 학력, 경력 기재는 전항과 같음

10. 교육생 사후관리 방안

○

○

○

※ 졸업생 네트워킹관리 및 재교육 방안, 유통조직 및 기업의 취업정보 제공 등 제공, 유통전문가와 교육이수자간의 네트워크 연결 등 교육이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

<붙임2> '04년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연락처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명	교육 인원	교육기간	연 락 처
유통교육원 (경기 수원)	농산물마케팅관리사	75	1기 : 3.2~7.1(18주) 158시간 내외	031) 419-3705~6
	도매시장경영관리사	75	2기: 7.20~12.1(18 주) 160시간 내외	
경북대학 (대구광역시)	디지털유통전문화 과정	35	9.3~12.17(17주) 162시간	053) 950-5770
경상대학 (경남 진주)	농산물마케팅전문가 과정	35	5.20~9.16(18주) 158시간	055) 751-5409
충남대학 (대전광역시)	수확후관리기술·경 영 전문교육과정	38	5.20~9.16(18주) 156시간	042) 821-5718
전북대학 (전북 전주)	농식품유통관리전문 교육과정	35	7.14~12.8(22주) 177시간	063) 270-2236,8
전남대학 (광주광역시)	산지 농산물 마케팅 관리사	36	5.20~10.14(20주) 161시간	062) 530-5170
농협대학 ·농식품농산물 유통연구원 (경기 고양)	마케팅 리더과정	40	5.19~11.26(12주) 202시간	031) 960-4248,50
한국식품 개발연구원 (경기 성남)	농산물유통기술경영 관리사과정	31	7.15~11.18(18주) 168시간	031) 780-9195,76
단국대학 (충남 천안)	'05년 예정	-	-	041) 550-3612
합계	9개 과정	400	-	

Ⅲ. FTA 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 입니다.

1.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지원
 - 고품질 안전생산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수경영체에 우선지원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일괄 지원
 - 엄격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별 광역 생산·유통조직을 중점 육성
 - 농가단위 지원도 지역 또는 조직단위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중심으로 지원
-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지자체의 생산·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연차적 종합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특별법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4 ~ '2010년까지(FTA기금 지원액)

(국고지원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09	'10
사 업 비	계	6,163	967	979	931	881	858	804	743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4,216	669	621	587	587	588	587	577
	② 과수우량묘목생산	160	25	35	20	20	20	20	20
	③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150	50	50	50	-	-	-	-
	④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19	53	103	104	104	104	51	-
	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768	120	120	120	120	96	96	96
	⑥ 과실가공품품질향상지원	350	50	50	50	50	50	50	5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1) 시장군수 : 자체계획의 수립시행

- 시도 계획 또는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2) 시도지사 : 2개 시군이상 광역계획의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내 사업의 시행
- 시군 사업계획의 심사조정관리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반영(계획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 시도(시군)의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전국단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필요시 농림부가 사업계획 심사·조정

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사업

- 고품질·안전 과실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계열화에 필요한 사업

— < 지원대상 단위사업 > —

-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개발사업 및 전국 단위 조직이 과수경쟁력제고를 위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제외 > —

- 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과원조성
- ② 개별농가 및 마을단위 등 소규모 유통시설설치
- ③ 직접 투입제(비료농약농기계, 소모성자재 등)구입 지원
- ④ 기타 부지매입비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및 임대비행사성·경상적 경비(단순 교육비 포함) 등

(2) 지원기준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 고품질생산으로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등 지원	○ 기금보조 25%, 기금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②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 과수전문생산단지에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반정비로 수출기반 확충	○ 기금보조80%, 지방비 20
③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 대형·고가인 과수용 농기계 임대 지원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	○ 기금보조 50%, 자부담 50
④ 거점산지유통 센터건설	○ 과수 주산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 센터를 설치,규격·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제고	○ 지자체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⑤ 과수우량묘목 생산	○ 우량규격(품질보증)묘가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금보조 30%, 기금융자 20, 지방비30, 자부담 20
⑥ 과실가공품 품질 향상 지원	○ 국산과실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등 품질향상 지원으로 국산과실 소비촉진	○ 기금융자 100%

- 지자체 자체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비율은 지원대상자, 사업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용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주체(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 ① 품목 전문조합
- ② 지역농협
- ③ 지역농협 연합사업단(지원대상자선정은 개정될 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전제로 선정·지원)
- ④ 영농조합법인
- ⑤ 산지유통센터(APC), 공동마케팅조직
- ⑥ ① ~⑤조직의 연합사업단(단, 사업시행후 1년 이내 법인화를 전제로 지원)

- ※ 당해 품목의 관할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일 것(단, 100ha미만인 경우에도 조직화 정도, 과원의 밀집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가능)
-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①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준에 맞추거나 ② 필요시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 ※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또는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

(3) 선정절차

- 지자체는 지원대상 사업시행주체와 협의
-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 APC, 전문출하조직의 경우는 출하협약 체결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발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농가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지침에 의거 융자금의 3천만원을 넘는 사업은 대출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심사·확정시 선정된 경영체만 지원 대상으로 검토

[선정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
 - 사업성취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후 대출기관에 통보
 - * 심사위원회 : 전문가 협의체,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 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

라.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74,723	97,573	63,421	34,152	52,088	25,062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5,908	58,249	26,477	31,772	26,477	21,182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2,915	10,374	10,374		2,541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7,000	3,500	3,500			3,500
권역별 APC 설치사업	45,000	22,500	22,500		22,500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1,900	950	570	380	570	380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2,000	2,000		2,000		

<추진 체계>

가.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1) 「지방자율계획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주체 : 시군, 시도

○ 계획기간 : '05~'10(6년간)

※ 전국단위 사업주체도 지자체에 준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과수분야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 구 성 : 10명 내외로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

- 과수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품목생산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과수전문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실무자급으로 구성

※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의 주 사업품목과 같은 경우 사업단으로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자문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후 평가 참여

⑤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협의체 운영비 : 선정된 사업계획별로 별도 기금사업비에서 지원

-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단을 활용하는 경우 차등 지원

(3) 계획수립 방향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가능한 품목을 선정
- 지역단위 또는 품목조직 단위로 **발전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수출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생산·유통의 계열화 주체가 있는 **품목별조직 단위로 지원계획 수립**
- FTA, DDA 등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선택과 집중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과수산업 현황(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과제
- 중장기 비전 및 육성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
- 시행사업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내역 및 컨설팅 계획
- 사업시행주체의 사업여건 분석 및 발전목표 설정
- 사업시행주체 육성목표 및 목표달성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사업량
- 사업별 단가 산정기준 및 총 사업비, 자원별 부담액

(5) 사업계획 세부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1) 시·군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주체 및 농업인, 전문가 협의체 등의 참여하에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에 사업물량,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명시
- 전문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에 제출시 사업신청 제외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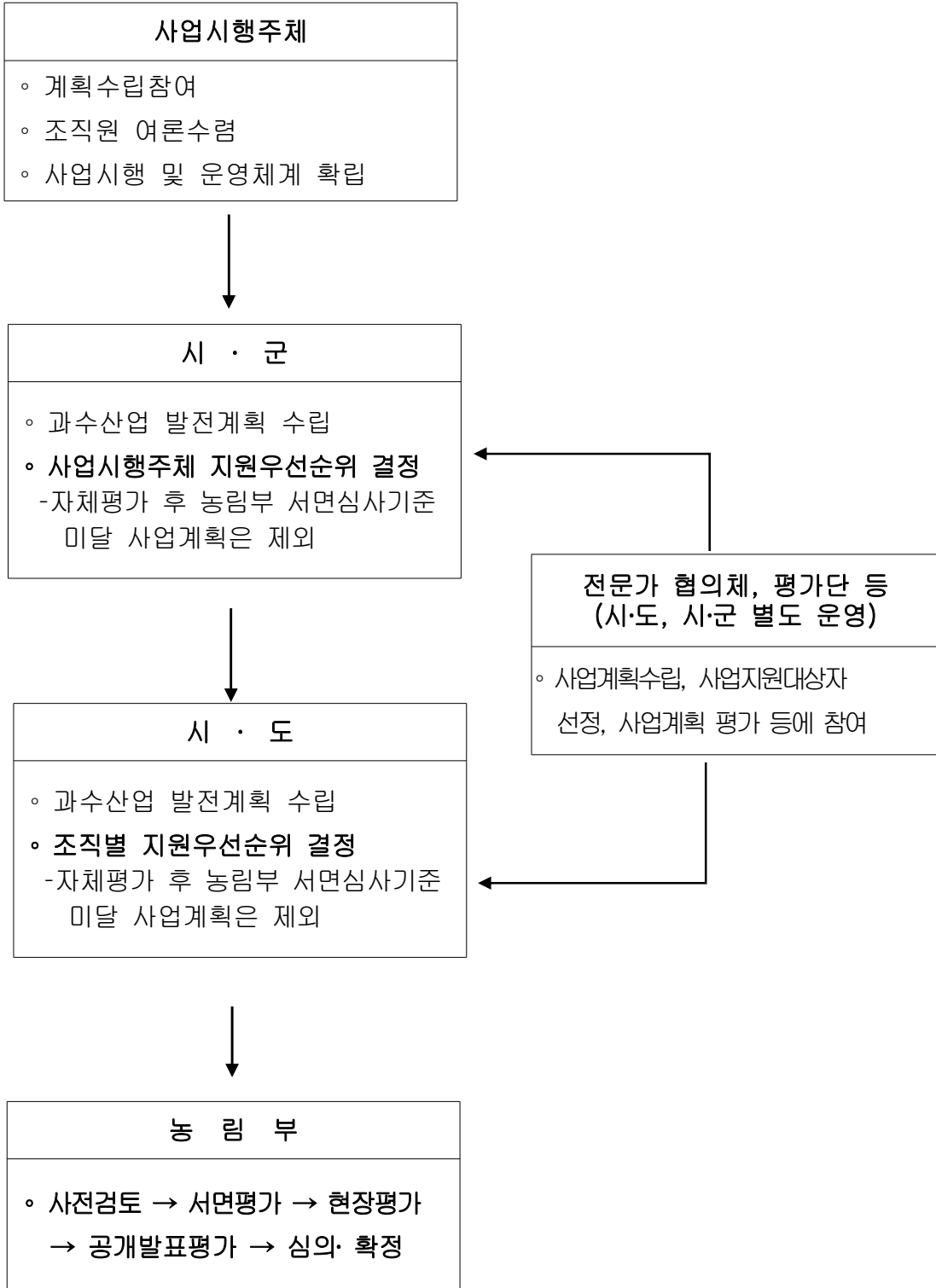
(2)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시·군과 같은 절차로 수립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시·도 단위 사업계획과 시·군 사업계획평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평가 실시
 - 농림부 서면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은 사업신청 제외
- 시·군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3) 전국단위 사업주체 : 농림부에 직접제출

-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품목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사업계획수립에 적극참여

【 사업 신청절차 】



다.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1) 원칙과 방향

□ 「과수산업육성대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심사

-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사
- 품목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단위사업계획심사
- 공동마케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심사
- 사업계획의 보완·조정·통합을 통한 정책방향 지향적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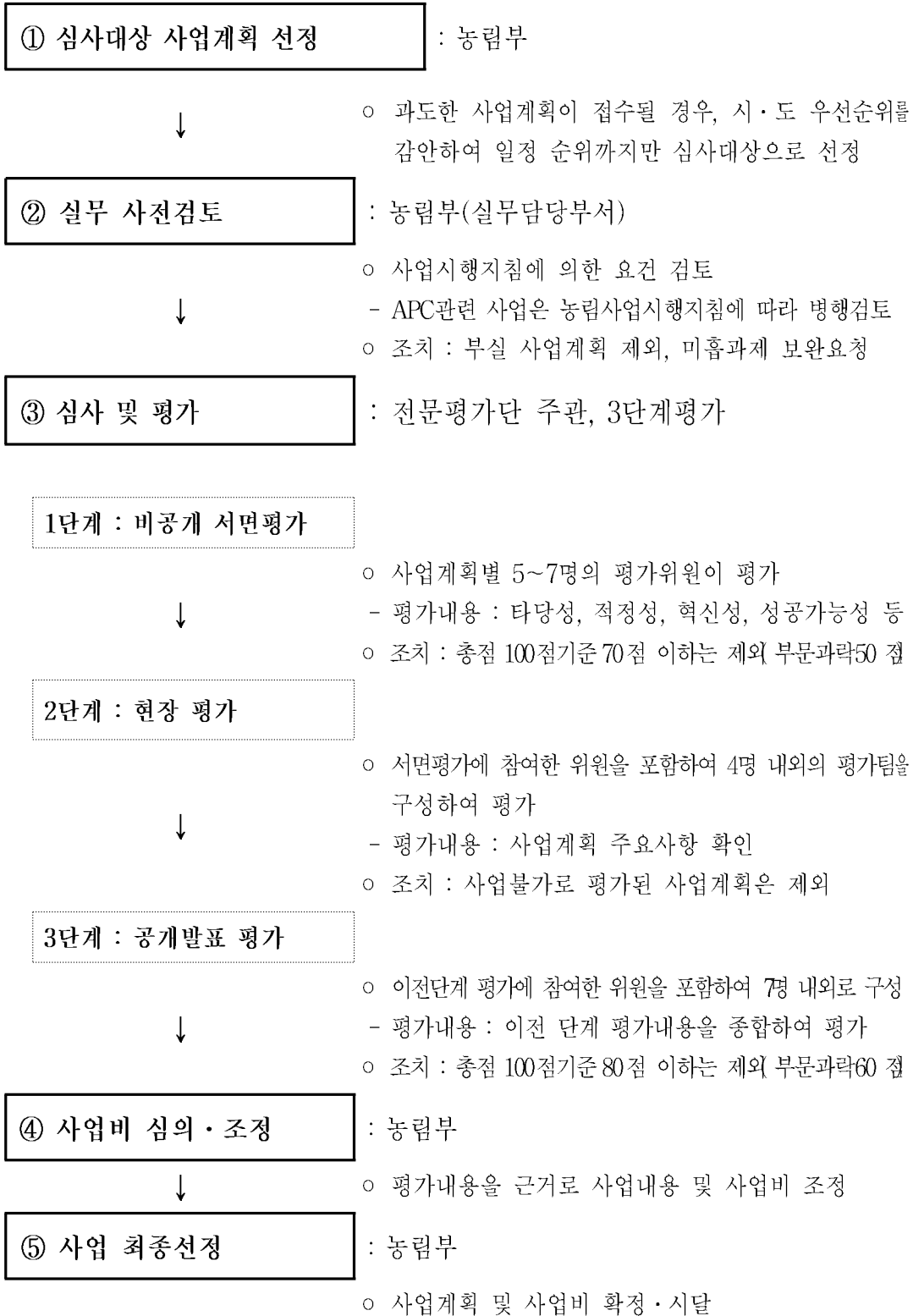
□ 사업계획의 수립 → 집행 → 성과까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평가
- 생산·유통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평가
- 사업목표의 성공가능성과 사업효과를 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평가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을 현장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평가

(2) 절차와 방법



※ 세부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은 별첨 참조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총괄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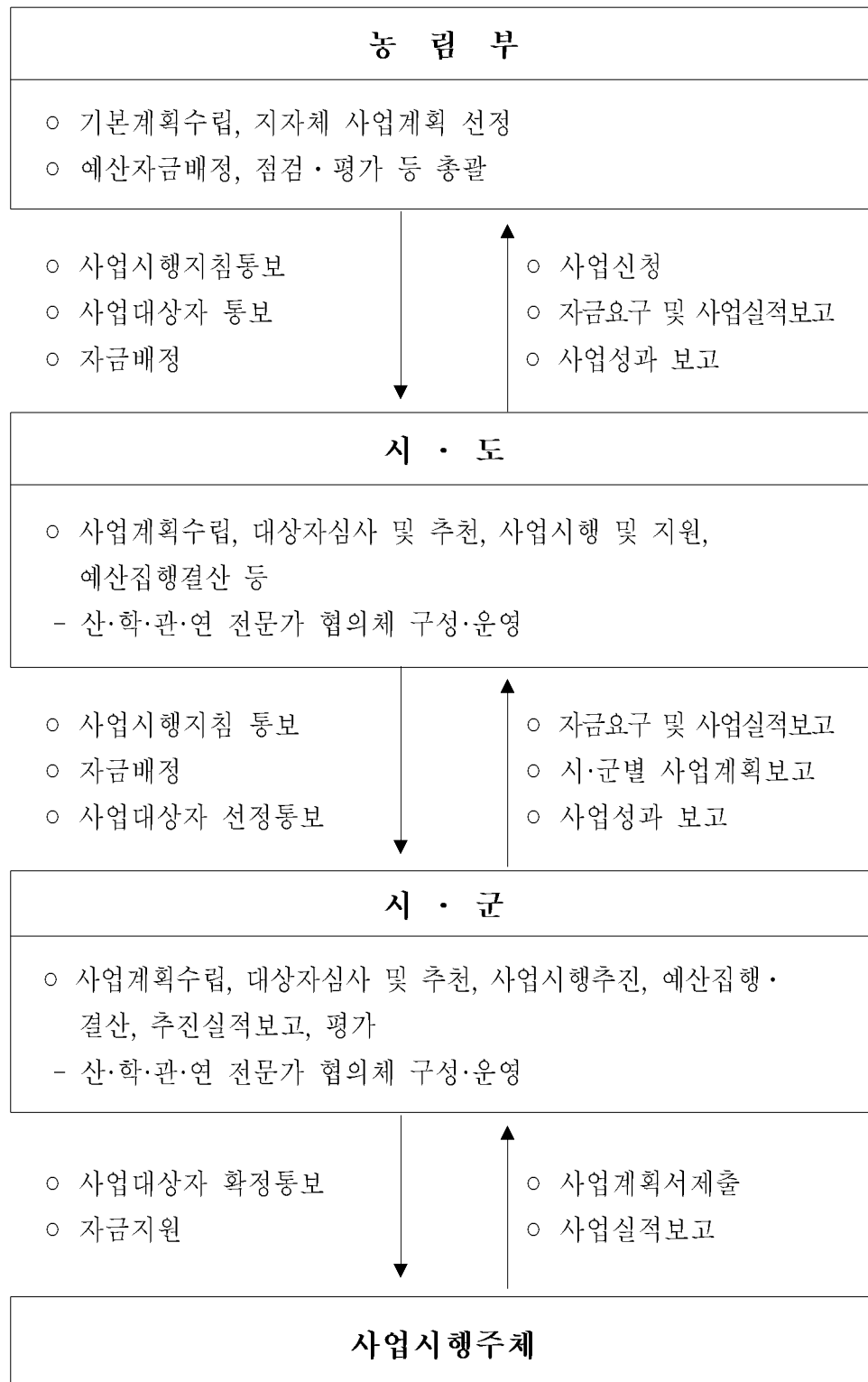
(2) 사업담당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80,1884)
 - 협조부서 : 유통정책과, 식품산업과, 채소특작과, 시설관리과, 농업기술지원과
- 시·도 : 과수담당부서(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 과수산업 지원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생산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과수담당부서(농림과, 농정과 등)
 - **단위사업 시행부서(협조부서)**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3) 사업시행체계(순서)

-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시·군, 시·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 ② 품목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군, 시·도)
- ③ 자율심사·평가(시·군, 시·도)
- ④ 사업신청서 제출(시·군→시·도→농림부)
- ⑤ 사업심사·평가(농림부)
- ⑥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
- ⑦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사업시행자)
- ⑧ 지자체 자체 평가(시·군, 시·도)
- ⑨ 중앙 평가(농림부)

【 사업시행 체계도 】



마. 사업시행

< 일 러 두 기 >

- 단위사업 추진은 이 지방자율계획사업 시행지침 후반부에 있는 개별 단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 이 지침서의 개별 내용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서로 다른 경우 이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

(1)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시행계획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확정후 30일 이내에 농림부 제출

(2) 사업추진 컨설팅

전문가협의체(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단)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

- 전문가 협의체의 주요 역할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사업계획의 규모·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운영비에서 일괄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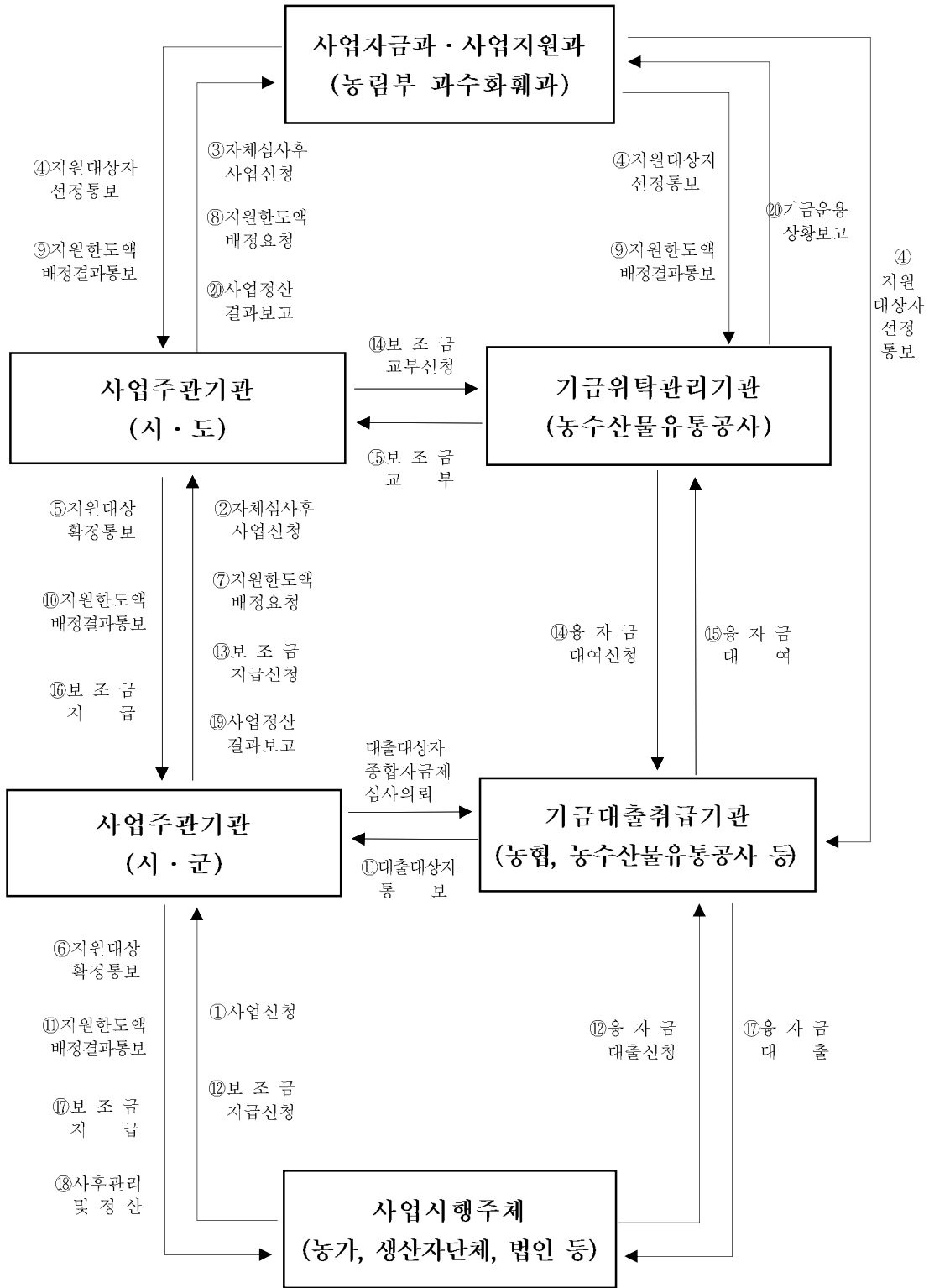
(3)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공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단위사업(중분류사업)의 세부사업비(세분류사업 또는 비목)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 차 상부기관에 사전 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바. 사업평가 실시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3월 이내('04년도 사업은 '05년도 사업과 같이 평가)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행정사항 >

가.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다.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종합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은 10년, 기계·자재 등은 5년(별도로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라. 보고 및 기타사항

- 세부사업 사업추진계획 보고 : 별도 양식 없음
 - 시·도 → 농림부 : 사업계획을 확정·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과수화훼과) : 매월 25일까지
- 사업추진 진도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사항 등은 붙임의 개별 단위사업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예) 농기계임대사업 : 시도지사는 매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 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농기계임대사업 별지 제3-3호 서식)

6. 2006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 신청안내

가. 사전준비 사항

-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이행하고 시·군(시·도) 사업계획에 반영
- 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준수

나. 사업신청 기한

- 시·군 → 시·도 : '05. 2월말까지
- 시·도 → 농림부 : '05. 3월말까지

다.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신규사업 : 「추진체계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지자체 과수산업 발전계획별로 제분하여 2부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 지자체 과수산업발전 계획 속에 여러개 지원대상조직(연합사업에 의한 총괄사업조직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 제분
- 계속사업 : '06년도 해당 세부사업계획만 제출

라. 사업계획 선정 및 사업비 확정

(1) 신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

- 신규 사업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신규 사업계획의 범위 : 이전년도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조직, 품목, 지역을 벗어나는 사업계획
- '05년도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 받은 사업계획 : 평가단계를 통과한 이후단계부터 평가
 - 예) '05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단계 비공개 서면평가에서 사업계획이 제외된 경우 : '06년도에는 비공개 서면평가부터 심사·평가 실시

(2) 기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신청시 선정된 「지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른 '06년도 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심의·조정
 -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계획으로 재평가

마. 지원조건 및 사업비

- '06년도 사업비 및 지원조건은 정부의 '06년도 FTA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심의회나 국회심의회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첨부 >

지자체의 과수산업 발전계획 작성 예시

○○○○ 종합육성계획

1. 과수산업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시군, 읍면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에 대한 현황

사업신청품목 :

사업신청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일반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00(a)							
2002							
2004(b)							
a/b 등락율(%)							

* 2000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작성

과원 규모별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가수								
비율(%)								100.0
면적(ha)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가수						
비율(%)						100.0
면적(ha)						

□ 수령별 과수현황

구분	미과수	성과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						기타	계
재배면적(ha)	'03						
	'04						
	04비율						100.0
생산량(톤)	'03						
	'04						
	04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목생산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기타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ha (%)	ha (%)	ha	천주	대	ha	%	

* 키낮은과원은 예시이며, 해당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분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경매식집하장
개소								
면적(m ²)								
04처리량(톤)								
투자비(백만원)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고

※ 연합사업단의 경우 사업참여조직별로 작성

미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직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목표연도의 지역 과수산업 청사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2004년						
()년						
증감(%)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06~'10)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0000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 신규 연합사업단은 작성가능한 사항만 성실히 기재

가. 사업시행주체(총괄사업조직) 현황

□ 조직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목		출하실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 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 (※ 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생산노력
 - IFP, IPM, INM, GAP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진흥청, 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 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구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시설간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관측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파)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품질인증 (○, %)	규격출하 (○,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계통출하	개별출하	수출			
	'03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0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 · 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총괄사업조직과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전부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총괄사업조직, 참여조직,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06	'07	'08	'09	'10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생산시설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산지유통센터							
우량묘목생산							
가공시설현대화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합 계							
○ 생산시설현대화 - .							
○ 생산기반정비 - .							
○ 농기계임대 - .							
○ 거점산지유통센터 - .							
○ 기 타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별·품종별·재배형태별 생산계획 등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출하주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전문인력 및 전문 CEO 영입 등

- 품질관리, 마케팅, 경영분야 등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계획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브랜드 마케팅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기대효과

-

-

-

7. '06 사업추진 계획

가. 2006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용자(C)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용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세부사업내용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

-

※ 붙임 :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

(3) 기타 세부사업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1-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별지 제2-1호 서식)
- 1-2.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의 붙임)
- 1-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서식)
- 1-4. 과수 우량묘목생산 사업(지원)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
- 1-5. 과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제6-1호 서식의 붙임)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 2-1.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등)
- 2-2.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 3-1.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 4-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 4-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 4-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진흥청, 센터 등 확인)
- 4-6. 조직(단체)의 친환경안전과실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 4-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5. 사업준비상황 및 실적자료

- 5-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 5-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 자료, 실시결과 등
- 5-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 5-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 5-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 5-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 5-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 5-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첨]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 절차와 방법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비를 감안하여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산지유통센터(APC) 신설·증설이 포함된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의한 심사기준으로 검토 실시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③ 심사 및 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부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4명내외로 팀구성(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내용 정밀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대상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APC, 기반정비)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불가로 평가된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점이하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④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범위(연차사업, 당해연도 사업),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 세부 사업별로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

⑤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 사업계획 최종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으로 구분선정>

- 연차사업계획 선정의 의미 : 연차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차년도 사업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심사·평가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매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심의·조정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심사평가지침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②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2.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농업혁신 차원에서 전략이 적정한가? ② 우수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수출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품목선정의 적정성	5	4	3	2	① 해당품목이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② 시장인지도, 생산·출하 등 유통부문에서 타지역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가? ③ 과잉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원조성 등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1-4.세부사업간 연계성	5	4	3	2	① 세부사업간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1-5.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5	4	3	2	①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적정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2-1.고품질과실 생산	5	4	3	2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2-2.안전과실 생산	5	4	3	2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F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2-3.생산성향상	5	4	3	2	① 사업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2-4.경영안정	5	4	3	2	①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감귤 및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은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3-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① APC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사용 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3-2.물류개선	5	4	3	2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3.수확후관리	5	4	3	2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② 수확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3-4.판매·수출	5	4	3	2	① 대형유통업체(대량수요처) 직거래, 브랜드마케팅,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출하형태	5	4	3	2	① 공동마케팅에 적절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연합판매사업 실적 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 ③ 공동마케팅, 연합판매 등을 위한 자체규약은 있는가?		
	3-6.총괄사업 조직의 형태	5	4	3	2	① 총괄사업조직이 공동마케팅, 출하광역화 물량규모화)등 산지유통혁신을 총괄할 만한 조직인가? ② 과거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신생조직은 평가제외)		
4. 사업의 성공가능성 (25점)	4-1.사업추진의지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바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부지확보, 자부담조달, 전문인력(전문경영인·품질관리·마케팅) 확보현황 및 계획은 어떠한가?		
	4-2.전문인력확보	5	4	3	2	①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 정도는?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및 계획		
	4-3.투자효율성	5	4	3	2	① 사업 완료연도기준 투자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4-4.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협의체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할 시스템이 있는가?		
	4-5.성공가능성	5	4	3	2	①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음 ① 공동마케팅 실적(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이 있는 경우 (3점) ② “조직간 연합사업”, ¹⁾ “공동브랜드 출하”, “공동계산”을 위한 자체 규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각 항목별 1점씩 가점 (3점) ③ 자조금조성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3점) ¹⁾ 공동브랜드 출하는 시군경계를 넘어선 광역 브랜드로서 사업참여조직이 자체 개발한 것이어야 함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생산혁신 분야		
3. 유통혁신 분야		
4. 사업의 성공가능성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대분류 평가항목 : 평균 5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60점)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선정 사업을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별지 제3호 서식]

〇〇〇〇년도 〇〇월분 국고 자금배정 신청서

(〇〇시·도)(단위

:

천 원)

사 업 별		예산액	교 부 결정액	자 금 배 정			사업추진 진 도
				기배정	금회배정	누계	
합 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별지 제4호 서식]

FTA기금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지역 별	조직 별	세 부 사 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집 행 잔 액	
			품 목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국 고	용 자	자 방 비	자 부 담	계	국 고	용 자	자 방 비	자 부 담	국 고	용 자	국 고	용 자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
 사업내용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 마. 세부사업별 공통양식이외 사항은 사업별 양식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이상의 과수(시설)재배 농가(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농가(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으로서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

나.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

- 1 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규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2 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 3 순위 : 위 사업 중 1개 사업 참여 농가(조직)
 - ※ 선정순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

- 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 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평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평을 신청 ⇒ A,B 농가에 각각 300평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평을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지 중점 점검사항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향후 이용할 경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운영조직 주체로부터 향후 출하계약 동의서 또는 가계약서 등 출하계약에 준하는 서류를 통보받아 확인

다. 지원사업(시설 및 장비)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 타 : 시설포도, 시설과채류(권역별 거점APC를 이용할 시설과채류에 한함)의 시설 개보수 등

[예시사업]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키낮은사과원, 지주시설, 시설포도시설과채류의 시설개보수 등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④ 포도·감귤의 난방시설
-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⑥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별	단 가	지 원 기 준
○ 우량품종갱신	5,000천원/ha	○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 키 낮은 사과원갱신	39,000천원/ha	○ 기존과원의 갱신만 가능(신규불가)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에 한함
○ 배 지주시설 설치	13,000천원/ha	
○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 비가림시설(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 소립계	9,000천원/600평	
- 대립계	16,000천원/600평	
○ 감귤하우스생산시설설치	32,000천원/600평	○ 비가림시설
○ 복숭아 등 관수시설설치	5,000천원/ha	○ 관수시설, 배수시설 설치
○ 참다래 방풍시설 설치	45,000천원/ha	○ 방풍시설 설치
○ 기타 고품질생산		○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시설 및 자재 등

※ 시설과채류 등 기타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사업단가 적용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예시기준”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표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 우량묘목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 이어야 하고, 식재 후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는 계약서를 공급자와 농가(조직)가 시장군수 입회하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지원사업기간 (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

<붙임>

세부 사업별 단가(예시)

□ 품종갱신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배 5,642	* 포도 11,300, 단감 6,620, 감귤 11,840
노목제거	1,160	○ 노목제거 등 (여자 4명×3일×30,000원)+(남자 4명×4일×50,000원)
재식준비	1,250	○ (굴삭기 1대×3일×350,000원)+(남자 4명×1일×50,000원)
비료시용	1,830	○ (퇴비 20톤, 석회 1톤 등 1,510,000원)+(남자 4명×1일×50,000원)+(여자 4명×1일×30,000원)
묘목심기	배 1,402 (포도 7,060, 단감 2,380, 감귤 7,600)	○ (배 묘목 167주×6,000원)+(남자 4명×2일×50,000원) * 포도 1,110주, 단감 330주, 감귤 1,200주

※ 묘목은 기존품종이 아닌 신품종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 키 낮은 사과원 갱신(3.5×1.5m, 1,900주)

(단위 : 천원/ha)

구 분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9,084	
준 비	기존나무굴취	625	○ 굴삭기 1대×1.5일×350,000원 ○ 전기톱특수인부 1인×1일×100,000원
토 양 개 량	퇴비, 비료대	3,708	○ (퇴비50톤×53,400원)+(용성인비 3,000kg×146원)+(석회 4,000kg×150원)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 비 대	2,100	○ 굴삭기 1대×6일×350,000원
	유 공 관 대	2,025	○ 2,700m×750원
	차 광 망 대	612	○ 2,700m×227원
	수관하부 PP피복	1,311	○ 19롤×6,900원
토 양 안 정	목 초 대	183	○ 수단그라스 50kg×3,650원
재 식	묘 목 대	12,350	○ (묘목 1,900주×6,000원)+(수분수 190주×5,000원)
	재 식 비	600	○ 12명×50,000원
지 주 설 치	지 주 대	11,569	○ 378개×30,600원
관 수 시 설	자동관수(관비)	4,001	○ (5,400m×278원)+(콘트롤장치 1세트 2,500,000원)

※ 식재주수에 따라 조정

□ 배 지주시설 설치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3,571	
구석지주	256	○ 백관(75mm×3.65T×2.35m)16개×16,000원
갓 지주	600	○ 백관(48mm×3.65T×2.35m)50개×12,000원
중 주	3,120	○ 백관(48mm×3.65T×2.00m)260개×12,000원
와이어	2,300	○ 1/4인치, 5롤(1,620m)×460,000원
와이어크립	65	○ 540개×120원
철 선(스텐)	3,870	○ 86롤×45,000원
당 김 돌	378	○ 철근 54개(25mm×2.1m)×7,000원
당 김 돌	810	○ 철근 135개(25mm×1.7m)×6,000원
적 벽 돌	324	○ 324개(19cm×9cm×5.5cm)×1,000원
받 침 돌	48	○ 16개(30cm×30cm)×3,000원
인 건 비	1,800	○ 6명×6일×50,000원

□ 포도 고품질생산시설(소립계 비가림시설)

(단위 : 천원/600평)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9,660			
기 초 석	1,904	Ø200×500	○ 238개×8,000원	
농원용파이프	565	Ø32×1.5t	○ 595m×950원	
농원용파이프	1,117	Ø25×1.5t	○ 1,489m×750원	
농원용파이프	1,338	Ø25×1.2t	○ 2,058m×650원	
강 선	704	Ø5	○ 2,345m×300원	
U클램프	452	Ø32	○ 532개×850원	
조 리 개	60	Ø25	○ 1,190개×50원	
연 결 편	51	Ø25	○ 343개×150원	
고 정 구	38	Ø32	○ 238개×160원	
장수필름	287	0.05×250×50m	○ 14롤×20,500원	
비닐클립	114	Ø25	○ 1,904개×60원	
피 스 못	30		○ 5봉지×6,000원	
설 치 비	3,000	철골공	○ 60인×50,000원	

□ 포도 고품질생산시설(대립계 비가림시설)

(단위 : 천원/600평)

품 명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16,605			
기 초 석	1,632	Ø200×500	○ 204개×8,000원	
백관파이프	3,043	Ø48×2.1t	○ 1,790m×1,700원	
농원용파이프	2,308	Ø25×1.5t	○ 3,078m×750원	
농원용파이프	1,170	Ø25×1.2t	○ 1,800m×650원	
T클램프	184	Ø48	○ 204개×900원	
U클램프	184	Ø48	○ 204개×900원	
연동꽃이	1,026	Ø48×25	○ 684개×1,500원	
조 리 개	103	Ø25	○ 2,052개×50원	
비닐패드	330	0.7t×6m	○ 118개×2,800원	
물 받 이	2,020	0.45t×600	○ 561m×3,600원	
연 결 핀	106	Ø48	○ 213개×500원	
연 결 핀	27	Ø25	○ 180개×150원	
패 드 핀	4		○ 118개×30원	
새들고정구	7	Ø25	○ 72개×100원	
밴드고정구	360	Ø25	○ 720개×500원	
장수필름	890	0.1×450×50m	○ 12롤×74,200원	
비닐클립	121	Ø25	○ 2,016개×60원	
패드필름	90	0.125	○ 6롤×15,000원	
설 치 비	3,000	철골공	○ 60인×50,000원	

□ 감골고품질생산기술(비가림)

(단위 : 천원/600평)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32,984			
가설공사	101	평 귀	○ 30개소×3,373원	재료비
	53		○ 10개소×5,304원	인건비
	400		○ 8인×50,000원	
소 계	554			
토목공사	249	m ³	○ 티파기 192×1300원	재료비
	250	m ³	○ 되메우기 100×2500원	인건비
	125	m ³	○ 지면정리 50×2500원	
	1,000		○ 20인×50,000원	
소 계	1,624			
콘크리트공사	805	m ²	○ 합판거푸짚 150×5,368원	재료비
	750	m ³	○ 레미콘 10×75,000원	인건비
	400		○ 8인×50,000원	
소 계	1,955			
골조공사	4,350	50A	○ 주기둥 294본×14,796원	재료비
	7,236	40A	○ 주서가래 520본×13,916원	인건비
	2,441	Ø15.9	○ 보조서가래 651본×3,750원	
	4,570	25A	○ 횡대 546본×8,370원	
	1,450	600×25	○ 물흙 20롤×72,500원	
	1,350		○ 패트 500본×2,700원	
	2,000		○ 40인×50,000원	
	소 계	23,397		
관수시설	197	50A	○ PE관 80m×2,470원	
	875	30A	○ PE관 500m×1,750원	인건비
	140	L231T	○ 노즐 200개×700원	
	540		○ 말브외 9점×300개×200원	
	500		○ 10인×50,000원	
소 계	2,252			
피복공사	1,600	3.2×0.1	○ 비닐 10롤×160,000원	재료비
	500		○ 땅 10롤×50,000원	인건비
	102		○ 부속재료 102,000원	
	1,000		○ 20인×50,000원	
소 계	3,202			

□ 복숭아 등 배수관수(관비)시설

○ 배수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703	
유 공 관	1,245	○ 1,660m×750원
차 광 망	378	○ 1,660m×228원
장비사용	2,800	○ 굴삭기 2대×4일×350,000원
인 건 비	1,280	○ (남4명×4일×50,000원)+(여4명×4일×30,000원)

○ 관수(관비)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175	
메 인 관	2,500	○ (100m×50m)=2,500천원
점적라인	2,025	○ 1,350m×1,500원
장비사용	350	○ 굴삭기 1대×1일×350,000원
인 건 비	300	○ 남자 2명×3일×50,000원

□ 참다래 방풍시설

(단위 : 천원/ha)

구 분	금 액	규 격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12,840			
주 위 주	1,183	Ø48.1×2.3×6m	○ 71개×16,660원	
지 주 대	1,599	Ø48.1×2.1×6m	○ 96개×16,660원	
지주받침대	824	Ø48.1×2.1×1.5m	○ 192개×4,290원	
크 램 프	839	Ø48×Ø48	○ 693개×1,210원	
주위주상부캡	687	Ø48	○ 71개×9,680원	
지지철근	89	D22×1.5	○ 23개×3,850원	
와 이 어	350	5mm	○ 1,750m×200원	
와 이 어	690	2.8mm	○ 5,750m×120원	
와이어크립	36	5mm	○ 296개×120원	
방 풍 망	1,493	0.5×0.5×5×100m	○ 4.6롤×324,500원	
소모자재	550	1식	○ 1식×550,000원	
설 치 비	4,500	철골공	○ 90인×50,000원	

②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과수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지역 여건, 농업인 수요에 따라 개발 유형을 달리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농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사업시행 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 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나. 지원기준

- 지원비율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5,410천원/ha(기본조사비 : 419천원/ha, 국고보조 100%)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산지는 지원단가 보다 최고 30%까지 지원

<개발유형>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다.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 이상)인 지구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현재 49개 단지 지정)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라.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당해년도 사업마무리 가능)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마.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등)
- 시·군 : 건설과(협조 : 과수생산유통관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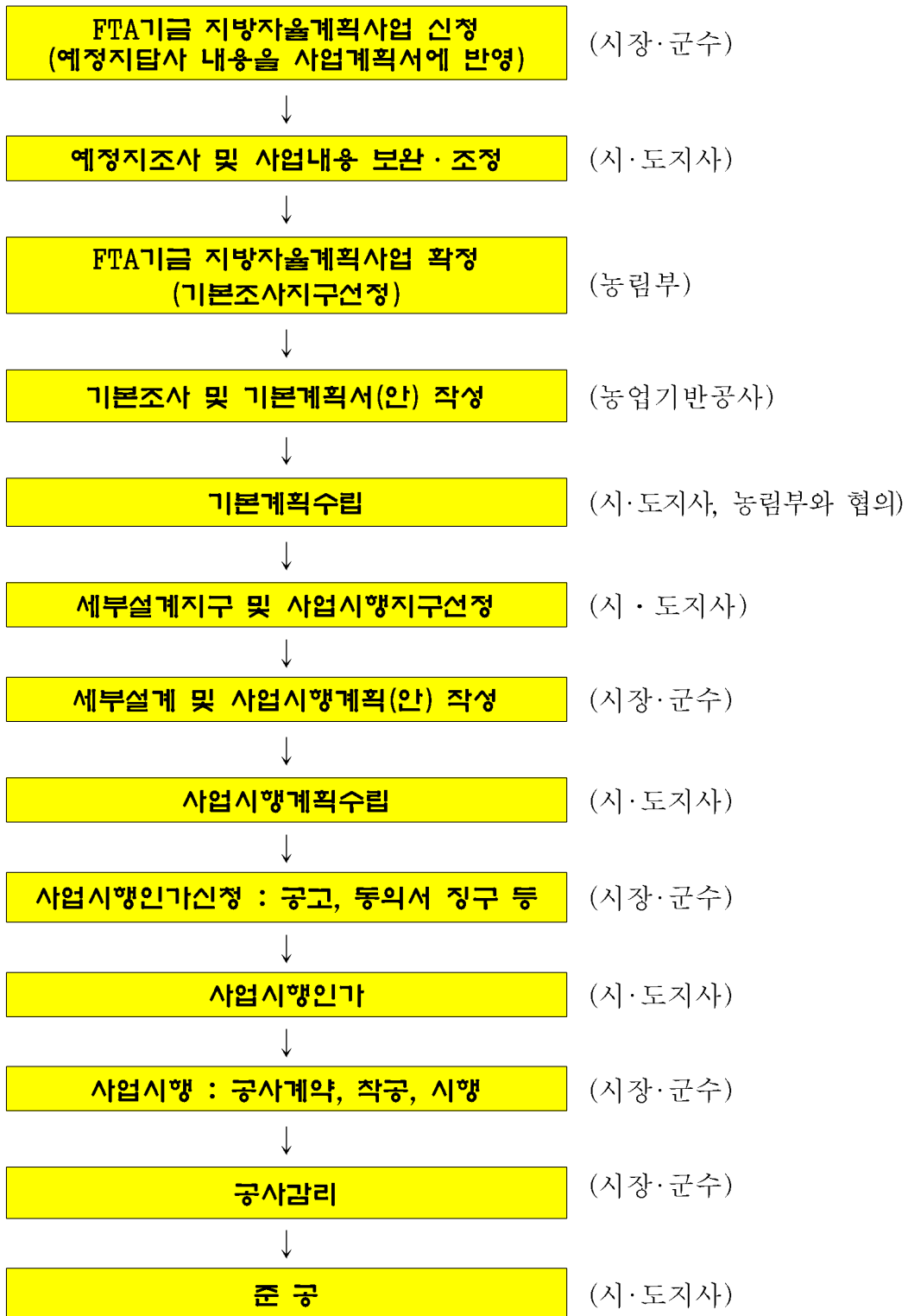
바.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 ※ 주 관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사. 사업 추진 절차

- 예정지 조사(농업기반공사 지사 합동) → 사업계획신청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 주 관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5. 사업대상지구 선정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 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6. 사업계획수립 · 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 2005년도 사업 >

-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지구선정 	'04.12월초	농림부	
2.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05. 3월	시·도지사 농업기반공사 농림부(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보고서
3.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 	4월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실시 • 세부설계 확정 및 시행 계획 수립 	5월중	시·도지사 ⇒사업시행자(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 작성 및 공고 • 동의서 징구 • 이의신청 접수 • 재정신청(이의신청이 있을시) 	6월중 ※이의신청시 공고일로 부터 73일 소요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수조서 및 수해면적조서 • 별도서식
6.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농어촌정비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인가 신청 • 사업시행인가 	7월중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인가 ⇒사업시행자(통보) ⇒농림부보고 ⇒도지사 인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동의서 사본 • 공고문 사본 • 재정결과(신청이 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발주 요청 • 입찰공고 • 계약 	인가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 입찰내역서 •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내역서 검토 • 공사착공 	즉시		

나.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1)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급수면적을 늘리므로써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된 지역은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가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추진사업 신청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3)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
 - (4)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FTA기금 지방자율추진사업 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 ※ '04년도 사업대상 지구는 사업추진일정상 시·군과 시·도가 협의하여 예정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율추진사업계획서에 첨부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농업기반공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서(안)을 수립할시 시장·군수의 예정지 답사 및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
- (2)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실시
- (3) 기본조사자(농업기반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타법·타사업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 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5)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8)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농림부, 시군,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 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 (3)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이용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기 타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별지 제2-1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소요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과실생산(수출)단지정여부	품목별생산자단체조직여부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명	%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시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타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농업기반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별지 제2-2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해면적			소 요 사업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요 시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력
			시 · 군	읍 · 면	계	진 홍	비 진 홍	총 사 업 비	ha 당			수 원 공 ^ 관 정 v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정 지 공 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별지 제2-3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 명	위 치		수혜 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인 가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국고 차등보조율 등을 표기
-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별지 제2-4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제2-5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4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제2-6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 해 면 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군	읍· 면		진 흥	비 진 흥	사 과	배	감 귤	기 타	계	국고	지방비	수 [^] 원관 공정 _v	진 입 로	경 작 로	송 급 수 관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별지 제2-7호 서식]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 작 로 : km<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수 원 공 : 개소<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³/일)·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³/sec-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과원경지정리 : ha○ 공 사 기 간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시 공 회 사 :○ 공 사 감 리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 연 수 위	m					
안 정 수 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²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국내 과수농가의 영세성에 비해 구입비용이 과다한 과수전용 농기계의 임대를 통해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수전문생산(수출)단지 또는 농기계 이용율 제고 및 농업 생산비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영농조건 불리지역 및 영세소농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
- 내구연한 경과 후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자체 등

나. 지원내용

- 대상농기계 : 잔가지파쇄기, 과수인공교배기,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상이고, 내구성이 있는 과실생산관련 농기계
- 부속시설 설치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규모 : 1개소당 500백만원(부속시설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단가 : 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기종별 기준금액 적용
- 해당기종의 단가예시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견적서 등 산출근거를 첨부

라. 사업운영주체

- 운영주체 :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대표, 지자체 장
- 주요 기능 : 농기계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등

마.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과수전용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사업시행 방법

-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사업자가 구입하려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운영주체의 농기계구입임대,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등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점검
- 시장군수는 임대농기계관리, 임대사업자 선정, 임대료 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농기계임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 사업대상자는 구입농기계를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유상임대 실시
- 사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계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 운영
- 내구연한 경과후 임대수입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
- 임대사업자는 임대농기계의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수입금 또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시작 당시와 같은 수량의 농기계를 1회이상 대체 구입

사. 농기계 구입 및 관리

- 과수전용 임대농기계 기종은 내구성이 있고 농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종중에서 수요자(농가)가 요구하는 기종 및 모델 선택
- 농기계의 규격, 수량, 부속작업기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구입한 농기계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농기계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과수전용 임대농기계

이 농기계는 FTA 지원대책으로 과수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가의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00 년 월 일

- 규 격 : 가로 12cm × 세로 6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아. 농기계 임대

- 임대기간은 1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내구연수까지 연장
 - 1년 단위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임대기간 변경
- 시장군수 및 임대사업자는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작업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임대대상자를 선정
-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선 보험가입 의무화
 - 재계약 체결시 또는 만기시에는 반드시 가입유지여부 확인
- 면세유 공급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자. 임대료 산정

-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함
- 임대료 적립금을 통해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적정임대료 산정 계상

차.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연2회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 고장장비 방치여부, 사후봉사 실태 등 점검
- 사후관리기간은 기종별 내구연한을 준용함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담인력 배치
- 사업자는 별도 계정 등을 통하여 임대료를 관리

(붙임)

과수전용농기계임대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사업지역 일반현황

일반현황	과수재배면적	ha(평)	호당평균면적	ha(평)
	참여농가수	호	평 균 수 령	년
	주요과종			
농기계 보유현황	기 종	보유대수		비 고

□ 농기계 구입계획

구입기종	규 격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기재
합 계					

□ 부속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규모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 농기계보관창고	평			
○ 간이수리시설	평			
○				

[별지 제3-2호 서식]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계 획				집행실적(정산)					
기준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										

○ 세부명세

구입기준	규 격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기 타
					* 구입회사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합 계					

[별지 제3-3호 서식]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임대실적

(단위 : 대, 호, 천원)

시군	기종별	수해농가수	임대료 징수금액	비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향후 조치계획

4. 기타(우수사례 등)

(참고 1)

과수전용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대사업자)		임차인(임대대상자 또는 농가)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물 건			
농기계명		수 량	대
작업기명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원

농 기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 (일 평)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
3. 임대기간중 발생한 고장 수리비 및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때에는 임차인이 변상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7. 기타사항 :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임대사업자) : 시장·군수 (인)

임차인(임대대상자 또는 농가) : (인)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 기존시설 보완은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을 담당할 산지전문유통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시·군 단위 또는 2개 시·군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공공유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콘소시움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희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품목전문조합(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지방자치단체

나. 지원 조건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지방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 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 공공유형은 완공 후 공공소유를 전제로 지원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증액가능), 자부담 50%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기존시설 보완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선별기 설치 : 농진청(원예연구소 및 농업공학연구소),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연합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종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파레트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기종을 설치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1%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다양한 품종 및 여러 지역의 과실을 적용 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오존수 세척 설비 선택
 - 감귤은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다.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예시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단가 : 백만원 >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5.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 최대양 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이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평		평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기보유감안)
소계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랩핑 포함
2. 토 목				- 에탈렌가스제거기	대		20평당 1개
- 기반 공사	식			소계			
- 수배전설비	kw			6. 위생시설			
- 상하수도설비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소계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3. 건 물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평	15	향은 클린룸설치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집하장 *	평	10	하차, 검수 등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출고장 *	평	27	상차, 배송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예냉고 *	평	3.5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저온저장고 *	평	30	처리물량의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평	20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품질검사실 *	평	20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일반창고 *	평	10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소계			
- 교육실 *	평	20	장비, 비품은 비인정	7.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평	20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소계	평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4. 선별포장장비				소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톤처리	8.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SCM,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9.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날개포장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합기	대		자동 박스 봉합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펀넬포장	총계			
- 이온수 제조기	조		1일 ()톤 생산				
소계							

주) * 표시사항 항목은 표준단가로 모든 사업에 동일 기준 적용 항목임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라. 지원 대상사업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실(과채류 제외) 선별물량이 1만톤 이상인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조직으로 사업자 확정후 1년 이내에 법인화를 전제로 한 사업조직
 - * 공동마케팅조직 : 농협조합 분사·자회사 또는 수개의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한 독립채산제 마케팅회사형태로서 회원제 공동계산 출하조직(출하 의무계약 등 체결)을 기반으로 전문인력 책임경영으로 운영되는 조직
 - * 사업연합 : 수개 조직의 사업연합을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이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거점산지유통시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예) 지역농협단위 APC 설치 및 보완(선별기·저온창고 교체 또는 증설 등)

마.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 지원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바. 사업시행 추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붙임1)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초기년도에는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사.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매년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 참조(후면참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02.4.1) 시행 참조

아.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 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 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함

5. 2006년도 사업신청 요령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2006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하고 2006년도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
 - 사업성 진단신청 기한 : 2006년 1월말까지
 - 진단결과 통보 : 신청자에게 2006년 2월 15일까지 통보
- 사업성진단 결과는 2006년 지방자율계획사업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이 사업시행지침 「4의 라.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 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사업성진단서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 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별지 4-4호 서식)(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2006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별지 4-5호 서식)
- 사업성진단결과반영현황(별지 4-6호서식)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연합 · 산지유통전문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 (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 (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별지 4-1호 서식]

○○○○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온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 건 물	평			저장능력/일		
- 집하선별포장장	평			"		
- 예냉고	평			"		
- 저온저장고	평			-		
- 예냉·저온저장 겸용 고	평					
- 사무·회의실	평					
·						
·						
○ 기 계	조			처리능력/시간		
- 선별기	대			"		
- 포장기	대					
- 컨베어	대					
·						
·						
○ 장 비	대					
- 냉장탑차	개					
- 팔레트	대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 1부.

[별지 4-2호 서식]

〇〇〇〇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재지			면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재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4-3호 서식]

〇〇〇〇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시설									사업비	주요품목	비고
			예강고	저온저장고	예방저온결빙용	집하선별장포장장	사무실	냉장탑차	간마늘시설	비과과糖度機	선별기			
() (/)		기존 신청 계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간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1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생산자 단체)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카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 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 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 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 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 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table border="1"> <tr> <th>부지소유권</th> <th>평점</th> <th>관련법규 제한여부</th> <th>평점</th> </tr> <tr> <td>대표자 또는 법인명의</td> <td>10</td> <td>제한 없음</td> <td>5</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td> <td>6</td> <td>조건부로 설치가능</td> <td>3</td> </tr> <tr> <td>타인명의, 사용승락</td> <td>4</td> <td rowspan="2">제한 있음</td> <td rowspan="2">0</td> </tr> <tr> <td>타인명의, 사용 미승락</td> <td>0</td> </tr> </table>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6	조건부로 설치가능	3																					
타인명의, 사용승락	4	제한 있음	0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0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table border="1"> <tr> <th>경합 보완성</th> <th>평점</th> <th>교통여건</th> <th>평점</th> </tr> <tr> <td>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td> <td>10</td> <td>양호</td> <td>5</td> </tr> <tr> <td>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td> <td>7</td> <td>보통</td> <td>3</td> </tr> <tr> <td>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td> <td>4</td> <td>미흡</td> <td>0</td> </tr> </table>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h>선과기 가동일수</th> <th>평점</th> <th>저온창고 가동일수</th> <th>평점</th> </tr> <tr> <td>150일 이상</td> <td>5</td> <td>300일 이상</td> <td>5</td> </tr> <tr> <td>120일 이상 150일 미만</td> <td>4</td> <td>250일 이상 300일 미만</td> <td>4</td> </tr> <tr> <td>100일 이상 120일 미만</td> <td>3</td> <td>200일 이상 250일 미만</td> <td>3</td> </tr> <tr> <td>100일 미만</td> <td>2</td> <td>200일 미만</td> <td>2</td> </tr> </table>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3-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사업연합,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④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입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심사자					

○○○○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 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 (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부서 (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 추진여건 (20점)	3-1.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여부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A : 공동마켓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4-2.부지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10	제한 없음	5
						타인명의, 사용승락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6 4 0	조건부로 설치가능 제한 있음	3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결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지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 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 호 보 통 미 흡	5 3 0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50일 미만 100일 이상 120일 미만 1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4-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③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모화 산지유통시설사업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4-5호 서식]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온 겸용	집하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간마늘 시설	비파괴 糖度機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		신청														
(00.0)			조정														
2	()		신청														
(00.0)			조정														
3	()		신청												< >		
(00.0)			조정														
4	()		신청												< >		
(00.0)			조정														
5	()		신청												< >		
(00.0)			조정														
6	()		신청												< >		
(00.0)			조정														
7	()		신청												< >		
(00.0)			조정														
8	()		신청												< >		
(00.0)			조정														
9	()		신청												< >		
(00.0)			조정														
10	()		신청												< >		
(00.0)			조정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4-6호 서식]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시·도)

사업자 (법인명)	사 업 성 진단기관	사업성진단 주요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문제점> <보완사항>	<반영내용>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사업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1)

〇〇〇〇년 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工種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부지 확보	工程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工程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工程		농지전용 신청	농지전용 완료,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완료								
공사등 계약	工程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토목 공사	工程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工程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工程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工程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工程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별지 4-7호 서식]

○○○○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용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용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	테핑기· 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 차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과수 재배의 근간인 무독·우량·규격묘목을 생산검증공급토록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소요가 많고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생산성 저위 과원의 갱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적법하게 등록·판매되는 우량규격묘 생산·검증·공급을 지원하여 무독·우량 과수묘목 유통체계 확립
- 무독·건전묘 재식을 통한 IFP, GAP 등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체계 조기 정착
- 생산성 저위 과원을 고품질 생산과원으로 개편을 유도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질보증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농협, 영농법인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 무독묘 검증 사업자(도기술원 또는 묘목협회)는 도별 1개 정도로 제한(무독묘 검증, 현장 과수묘목생산지 실사 등의 업무 수행)
(원예연 또는 종자관리소에서 무독묘 검증기술개발 및 도단위 조직 교육/관리)

나. 대상과종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기타 핵과류 등

다. 개소당 지원단가

- 개소당 총 500백만원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우량규격묘 생산기준>

	적정생산주수	우량규격묘목 기준
	주 이상	
키 낮은 사과 자근대묘	80,000	○ M.9 자근대묘길이 40cm이상, 묘목길이 140cm이상, 줄기직경 1.2cm이상, 결가지(30~60cm)수 5개 이상
포도 접목묘	150,000	○ 대목길이 60cm이상, 줄기직경 0.6cm이상
감 귤 묘	120,000	○ 대목길이 80cm이상, 줄기직경 0.7cm이상
공 통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미 감염묘 ○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보증묘

라. 지원조건

- 기반조성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마. 지원내용

-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결가지발생 및 유인 등 묘목 생산 비용
- 바이러스·바이로이드·문제 병해충 검정용 설비, 장비, 시약, 및 인증시스템 확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 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 농협, 영농법인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서 품질보증 과수묘목을 생산·공급가능한 자

(2) 우선선정 대상자

-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전문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10개 이상인 자
 - 과수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병해충 등에 대한 검정 시설 및 인력 보유자
 - 무독 대목 자체 생산시설을 갖춘 자(대목 통한 감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히 할 수 있음)
 - 격리된 무독 모수포를 확보한 자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
 - 묘포장 면적이 10,000평 이상인 자
- 2순위 : 상기선정기준이 3개 이상 충족되는 전문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영농법인

(3)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묘목 생산, 검증 및 공급계획 등에 관한 자체 사업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별로 묘포장 부지 확보여부, 연도별 묘목생산 및 공급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용자담보 능력유무, 신용보증기금 활용가능 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통합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우선 순위를 정해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 사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 사업시행

- 무독·무병 모수포 조성
 - 실생대목 또는 검증된 무독·무병 접목묘 확보
 - 주변 과원과 일정 거리를 둔 망실 등 보호시설 내에서 포장 조성
- 묘포장 조성
 -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묘포장 설치, 기자재 도입 등 사업실시
- 묘목생산
 - 종자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우량규격을 생산하여 품질보증 실시
- 생산묘목 공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묘목생산자 대표·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한 “우량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
 - 품질평가 및 적정 공급가격 결정,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복병해충 등 하자 발생시 공급자의 보상 수준 등 결정
 - 우량규격묘 생산·공급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생산·공급관리 대장)
 - 묘목 공급은 기존 저위과원의 갱신용으로 최우선 공급하고, 신규과원조성 및 면적 확대농가 공급은 지양할 것
 - 농가공급 묘목은 우량규격묘 이어야 하며, 공급자는 결실기까지 사후 관리 실시

<첨부>

사과 자근대묘 생산사업 단가(예시/30,000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계			500,000	
○ 배수시설 설치	30,000평	1,333	40,000	유공관 외
○ 관수시설 설치	30,000평	1,333	40,000	물탱크 외
○ 지주설치	30,000평	700	42,000	강선(5mm×1.8m) 60,000개
○ 관정개발	1공	30,000,000	30,000	5HP수중모터 외
○ 농기계구입				
- 트랙터 외	80HP, 1대	50,000,000	50,000	
- SS분무기	500ℓ, 1대	15,000,000	15,000	
- 대목수확기	2대	2,000,000	4,000	
○ 토양개량비				
- 소식회 외	30,000평	1,500	45,000	
○ 무독·무병묘 검정 시설장비 및 묘목 보관시설	20평	2,500,000	234,000	자근대묘구입비 (184백만원) 포함

[별지 제5-1호 서식]

○○년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인)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종묘업현황

등록자	등록일	등록번호	기술자 현황			
			성 명	주민번호	자격증	경 력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 묘목 생산판매신고 현황			신고된 과종		과종별 신고 품종수	

다. 키 낮은 사과, 포도접목묘 등 우량묘목 생산실적

연도별	묘목종류	품 종	생산량	공급량	공급가격	비 고
			주	주	원/주	

라. 대목 등 모수 보유현황

품종	수령	보유량	확보경로	증식가능량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검정여부
	년	주		주	

3. 묘포장 설치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묘포장 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모수포설치					
- 묘포장설치					
- 기자재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20

○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활용능력	비 고
○ 부 지		천원	백만원	-	
○ 모수포설치 - - -					
○ 묘포장설치 - - -					
○ 기자재구입 - - -					
○ 묘목양성 -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
-
-
-

4. 묘목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확보

	과종	품종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이후
대목생산			주			
묘목생산			주			
공급가격			원/주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사후관리계획

- 묘목 공급후 이품종, 잠재병해충 발생시 보상대책 등 사후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추진(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시군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또는 집행잔액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용자	국고	용자
	합계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세부
 사업내용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부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별로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및 사유 등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 이 사업은 지방자율계획사업(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의한 단위사업으로 지자체의 장 또는 전국단위 조직의 장이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농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및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추진
- 가공용 농산물의 수요개발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업체의 시설확장으로 생산·경영규모를 늘려 규모화경제 촉진
- 시설현대화·자동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경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추진
- 오·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친환경산업으로 육성
- 저장시설 확충으로 원료농산물의 선도유지(안전성 높은 식품 생산)
- 포도·사과주 등 과실주의 장기저장·숙성을 유도하여 고급명주 개발 지원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국산과실을 이용하여 주류, 주스, 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품목별 조직에 속하는 업체 또는 품목별 조직과 원료공급과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업체

※ 품목별 조직의 범위 : 「제Ⅱ장 4. 지원대상자 선정」을 참조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10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단가 : 개소당 500백만원(자부담 포함)
 -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성 등에 따라 증감가능

다. 지원사업 내용 및 종류

- 가공공장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및 용기, 오·폐수 처리 시설, 수확후 전처리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시설과 기계·장비의 구입·설치(부지구입 및 신규건설은 제외)

라. 지원대상자 선정순위

- 국산과실 가공실적(비율)이 많은 업체
-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된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정부지원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품질인증 업체 등

마.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물가관련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융자사업의 공장증설, 현대화·자동화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 내역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에 중복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식품 51150~359, '01.7.2)의 '농산물가공공장'의 사후관리에 준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지도를 철저히 실시

[별지 제6-1호 서식]

사업계획신청서(총괄)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증설	m ²	시설현대화 (개·보수시설, 오·폐수시설 등)	종, 점 m ²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융자	금융기관 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특별법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품생산공장을 증설(또는 시설개보수)하고자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p>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예시 참조)					수수료	
					'없음'	

< 붙임 >

사 업 계 획 서(예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사업여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국산농산물 수요창출 측면
- 3) 가공품 품질향상 측면
- 4) 고용효과
- 5) 향후전망
- 6) 기 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주요품목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건물 평, 기계·장비류 점,	사업구분	공장증설, 시설개보수
자 금 총소요액	백만원	자금지원 요 청 액	백만원
시설자금등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등 기지원내역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 융자 구분)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등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등기 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자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업인 및 농가공동(공동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소요경지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백만원)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월·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계획)

* 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품 목		원 료 명	
<p>○ 제품개발내역(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방법 : - 제조가공방법 : - 제품특징 및 내용 <p>○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 - 연구기간 : - 연구기관 및 대표자 : - 비 용 : 			

4. 세부 사업계획

가. 공장증설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건 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2.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 다. 오폐수시설 라. 기 타					
3. 가공기계·설비 2」					
4. 공기구비품					
5. 전기공사					
6. 설 계 비					
7. 기 타					
계					

주) 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설비의 경우 총수량 및 총금액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 첨부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나. 시설개보수 등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시설개보수 내역1」	규 격	생산능력2」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 입 (계획)처	비 고 (TEL)
		W×L×H					

주) 1」 시설개보수 내역에는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 및 오·폐수처리 시설, 기타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시설과 기계·장비의 내역을 종류별·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구분·기재

2」 생산능력은 각 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조달계획(총괄)

항 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융자	업체 자부담			
					소계	금융기관 차입	자부담	
증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 타							
구 축 물	구 축 물							
	- 용수시설							
	- 수매전시설							
	- 오·폐수시설							
	- 기 타							
가 공 기 계 · 장 비	가공기계·장비							
	기 타							
증설자금합계(A)								
시설개보수 자금(B)								
총 계 (A+B)								

주) 총계란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세부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m ²)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6. 원료 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달처는 구입원료의 생산지임.
 2. 조달방법은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가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제품명은 생산품목을,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 판매단가를 기재
 2.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 년300일로 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매(예정)처	비 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예정)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9. 생산·판매실적

구 분	년 도	물 량	금 액	주판매처 (주수출국)	비 고
생 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판 매 (수출)	전전년도	(톤)	(백만원 천\$)		
	직전년도				

주)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별지 제6-2호 서식]

○○○○사업(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증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 융자	자 부 담
	(100%)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합 계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 금전출납부와 거래 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별지 제6-3호 서식]

○○○○사업(○○년말) 검정 및 정산서

<시설개보수(기계·장비)>

- 1. 사업주관기관명 :
- 2. 작성년월일 :
- 3. 작성자 직·성명 :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품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용자	자부담		
						(100%)	()	()		
						(100%)	()	()		
						(100%)	()	()		
						(100%)	()	()		

< 작성요령 >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백영현)입니다.

1. 목 적

- 과원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발전 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 조성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업인 등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2	2003년	2004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ha)		-	-	300	300	2,400
사 업 비	계	-	-	23,500	23,500	188,000
	보 조	-	-	-	-	-
	용 자	-	-	21,400	21,400	171,2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2,100	2,100	16,800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에 대비, 과원의 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을 높이고자 함

(2) 사업기간 : 1. 1 ~ 12. 31(1년간)

- 총 사업시행 기간 : 2004~2010(7년간)

(3) 사업의 종류

○ 과원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장기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장기 임대

(4) 지원대상

-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 기준)
- 지원대상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종류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융자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매 매	기존소유규모 포함 5ha	연리 3.0%	연령에 따라 10~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 임대차	기존임차규모 포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매매사업의 사업비 부담조건

- 지원상한 : 평당 40,000원 (과수목 포함)
- 자 부 담 : 지원상한 범위내에서 10%(지원상한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00	23,500	21,400	-	21,400	-	2,100
매 때	200	21,000	18,900	-	18,900	-	2,100
임대차	100	2,500	2,500	-	2,5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02) 500-1873~1883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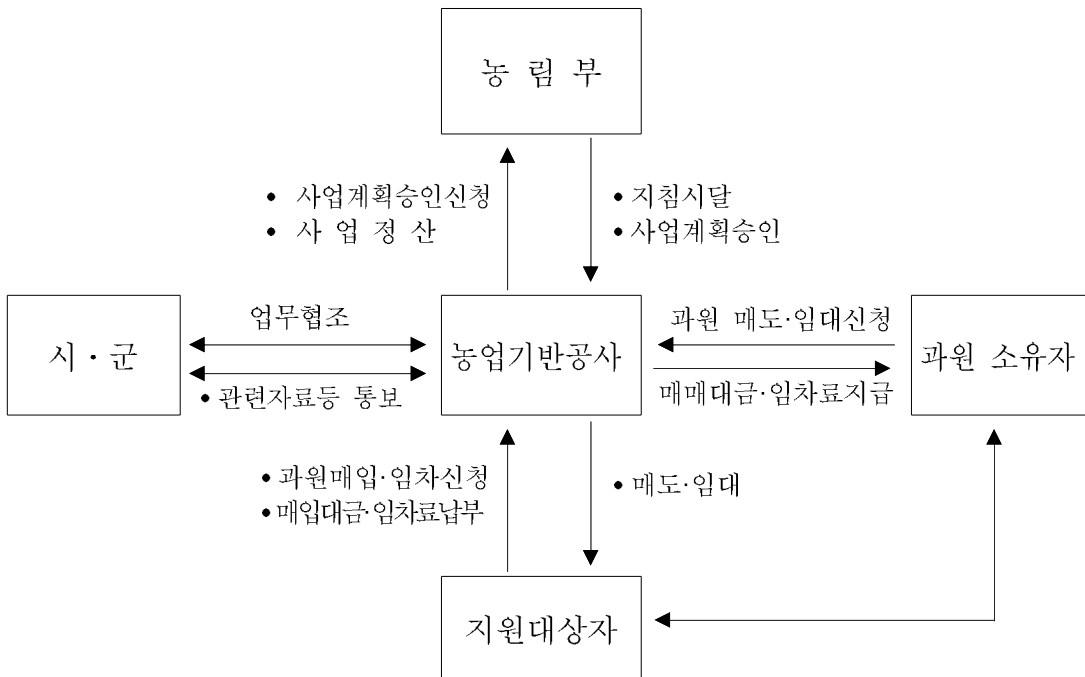
- 본 사 : 농지사업처(031) 420-3058, 3356
- 각 도본부 : 농지사업부
- 시군 관할지사 : 농지사업부, 사업부 또는 총무부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공사 → 농림부)
- ②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공사)
- ③ 사업자금 대여신청(공사 → 기금수탁관리자)
- ④ 사업자금 대여(기금수탁관리자 → 공사)
- ⑤ 과원매도·임대차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⑥ 신청내용 현지조사·확인(공사 지사)
- ⑦ 과원매입·임차계약(공사 ↔ 과원소유자)
- ⑧ 매입대금·임차료지급(공사 → 과원소유자)
- ⑨ 과원매입·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⑩ 신청내용현지조사·확인, 지원대상자 선정(공사 지사)
- ⑪ 과원매도·임대계약 및 채권확보(지원대상자 ↔ 공사)
- ⑫ 원리금·임차료납부(지원대상자 → 공사)

<사업추진 체계도>



(2) 사업시행 방법

매 매 사 업

(가) 대상과원 확보

① 매입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포함)

② 매입우선순위

-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 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③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 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매도하는 과원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 ④ 과원매도 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매도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원 매도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⑤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가격 및 감정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감정평가비용은 과원소유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시에는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⑥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대금지급
- 공사는 매입대상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아래의 각 항목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농지관리위원회나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㉔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㉕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30%이상을 과원으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명의 소유과원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조합원 2/3이상인 과수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②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보유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기존 경작지나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③ 과원매입 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원 매입신청서를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규 신청자나 기 지원자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 과원을 매입코자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과원소유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다)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① 매매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으로 매입신청자와 매매가격 결정. 다만,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②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③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원리금 분할 납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61세이상 10년
 -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
 - 과원매입가격이 지원상한을 20%이상 초과하여 자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 후계농업인 등 지원 초기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 공사는 과원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대금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 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납부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 연기기준 : 1년간 납부 연기

임 대 차 사 업

(가) 임차대상과원확보

- ① 대상과원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 ②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 ③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과원매매사업에서 매입이 제외되는 과원
- ④ 과원임대신청(과원소유자 → 공사)
 - 과원을 공사에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원임대 신청서를 연중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⑤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⑥ 임차계약 체결

- 임차기간 : 5~10년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 (과원소유자)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보증능력이 있는 자 1인의 입보.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인 입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⑦ 임차료 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임차계약 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 과원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① 지원대상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

② 임대지원 제외자

- 당해 연도 1월 1일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매매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농업인

③ 과원임차신청(지원대상자 → 공사)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원 임차신청서를 '04년 사업시행지침 통보후부터 연중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첨부서류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음)

④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임대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공사로부터 임차한 과원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재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코자 하는 자
- 임차신청 규모가 큰 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⑤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음 한도내에서 지원 하되,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의 거래시는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0ha
- ※ 지원 대상자의 농업노동력 보유현황,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사는 과원매매사업과 같이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 수준 설정)

(다)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① 임대차 기간 : 5~10년

②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③ 임대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다음 중 1의 보증서를 징구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보증능력 있는 자의 보증서

④ 임차료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⑤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청구한 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과원영농 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과원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피해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조사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필지별 피해율 적용)
-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과실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를 받아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에서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라) 공과금 등의 부담

- 공사에 과원을 장기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용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장기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사업비정산

- 공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과원규모화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과원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 및 고의·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부실채권 등 손실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 손비처리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관리기관

- 관리책임자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 관리보조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관별 업무분장

- 농업기반공사(기금대출취급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후 사후관리, 사업추진상황 점검, 경영지도 및 교육
- 농업기술센터 : 과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3) 과수농가 관리(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 관리기간
 -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1회이상 점검
- 계약해제해지 및 지원자금 회수

<계약해제해지>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으로서 과원규모화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 지원대상농가로 선정된 경우
- 과원을 지원 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하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 ※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제외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승계신청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하여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승인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승계신청인에게 통보

(4) 지원과원 관리(농업기반공사)

○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경영규모 축소여부
-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 과원매매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과원 회수
- 회수과원 가격결정 : 실제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당초 매도가격에 다음 경비를 가산한 금액(경매취득 과원의 경우 실거래가격)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과원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 공사의 전매동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재매입하는 경우의 가격 결정과는 다름에 유의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5%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임대·위탁 경영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장기간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농업노동력이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 (5) 공공사업 등에 의한 과원전용시 조치
-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
 -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
 -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관리기록부 비치 및 채권관리 등
 - 공사는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기타 행정사항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달

- 농림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 사장은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

(2)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이상 게시 공고

(3) 사업비 대여

- 자금지원기관은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통지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실을 통지받은 공사 지사장은 이전후 관할 지사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이관조치
 - * 이관조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 보증인교체(필요시) :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이전후 지사)
 - *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지사에서 담당

(4) 기관간 협조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과원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농업기반 공사의 과원가격 및 임대차료 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매도과원 현황 등을 게재하여 사업참여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6)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7) 업무지침 운영·기타

- 공사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지원 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다. 보고

(1)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원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후관리상황 보고

- 공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결과를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5. 2006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관할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나. 신청자격

- (1) 과원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2) 과원매입·임차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신청절차

- 2005년도에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신청서식은 공사 각 지사에 비치)

라. 신청서식

- (1) 과원매도 : 별지 제1호 서식
- (2) 과원매입 : 별지 제2호 서식
- (3) 과원임대 : 별지 제3호 서식
- (4) 과원임차 : 별지 제4호 서식

27	과수산업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농업사무관 백영현) 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대비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으로 증가하고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지원
-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사업시행기간 : 2004~2010년 (7년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2	2003년	2004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ha)		-	-	2,514	2,414	13,466
사 업 비	계	-	-	13,917	13,390	153,458
	보 조	-	-	13,519	13,390	153,458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 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출하시기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3)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을 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키위 : 20주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수

-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

이 경우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은 농림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작물통계조사(농림통계연보)에 의한 당해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하고,

작물통계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집)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말함

- * 조정계수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산출결과 1을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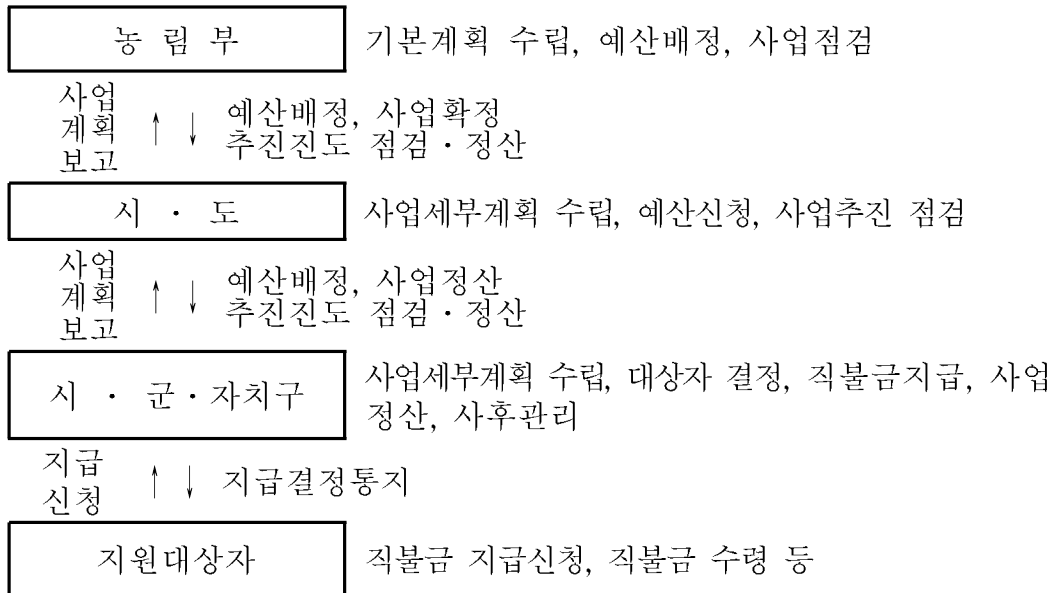
- 당해품목의 최소허용보조액 : 품목총생산액×10%(WTO허용 보조율)
- 조정계수는 지급총액이 WTO 최소허용 보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급신청총액이 WTO 최소허용보조를 초과할 경우에만 최소허용 보조액과 같아지도록 조정

(4) 사업추진 절차

- ① 사업지침통보(농림부→시·도)
- ② 사업지침공고(시·군·자치구)
- ③ 직불금지원 심사요청(전국단위 생산자 조직→농림부)
-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될 경우
- ④ 지원 계획시달(농림부→시·도→시·군·자치구)
- ⑤ 직불금 지급신청(신청인→시·군·자치구)
- ⑥ 신청서 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 ⑦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농정심의회)
- ⑧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시·군·자치구→시·도→농림부)
- ⑨ 예산배정(농림부→시·도→시·군·자치구)
- ⑩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시·군·자치구→신청인)
- ⑪ 직불금 지급(시·군·자치구→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도 >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414	13,390	13,390	13,390	-	-	-
시설포도	1,581	11,541	11,541	11,541	-	-	-
키 위	833	1,849	1,849	1,849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2) 사업홍보

- 사업내용공고 및 홍보
 - 시·군·자치구에서는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3)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 요청주체 :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
- 요청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 출하 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11~익년5월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 관측정보 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계획시달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5)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6) 신청서 등 조사·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토지대장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사항을 조사·확인(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3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인지 여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 및 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등을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필요시 마을 이장등을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등을 조사·확인 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 확인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작성 비치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 조사·확인한 관련 서류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최종지급일부터 5년간 보관 관리

(7) 지원대상자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8) 사업세부 계획보고 및 예산배정요구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소득보전직불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농림부장관에 보고 및 소득보전직불사업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9)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세부계획서 및 소득보전 직불사업예산(자금) 신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 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배정

(10)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시 에는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내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행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포기나 지원대상자의 추가 등으로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행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시 계통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 전체 사업량 변경이 없는 경우는 농림부보고 생략

(11) 직불금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 시·군·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하고 그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입금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소득보전직불사업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동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업은 “농림부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소득보전직불금 최종지급한 후 5년간 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관리

-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후 다음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보 고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결과보고(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
 - 시·군·자치구(완료후 5일 이내) → 시·도(시·군·자치구 보고된 후 5일 이내) → 농림부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보고

5. 2006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실제생산(경작)하는 농업인 등

다. 신청기간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여인홍, 사무관 백영현)입니다.

1. 목 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
-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6조(폐업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02	2003년	2004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ha)	-	-	632	772	4,996
사 업 비	계	-	23,368	28,353	208,279
	보 조	-	23,368	28,353	208,279
	용 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이 어려운 품목의 재배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기간 : 1. 1 ~ 12. 31

- 총 사업 시행기간 : 2004~2008년(5년간)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 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함
 - ① 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 ② 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과수목)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자
 - ※ 과수재배농가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과원을 매도하는 농업인 등을 포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건축·도로개설 그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을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 및 과수목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국·공유지에 식재한 과수목의 경우(다만, 국공유지를 임차계약, 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재식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 과원전체를 폐업하지 않고 부분 폐업(철거·폐기)하거나 부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지원금을 받고 양도한 과원을 매입한 자가 재 폐원하거나 재 양도하는 경우

- 지원이 가능한 경우
 - 폐원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일시에 폐원하기가 곤란하여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연도 폐원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되, 2년내 전체면적이 폐원되지 않을 경우 기 지원금을 환수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같이 재식된 과원의 경우로써 시설포도만을 완전 폐원하는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천원/10a, 키위 4,159, 복숭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금, 보조100%, 농가단위로 일시 전액 지원

(5) 지원금 산출방법

- 폐원 : 폐원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양도 : 양도면적×지원대상품목별 지원단가
- ※ 지원면적은 $m^2(10a = 1,000m^2)$ 로 계상

(6) 지원대상(폐원 또는 양도)면적 산출 방법 :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읍·면)의 확인으로도 가능함
- 폐업지원금 지원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 재식주수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대상 면적으로 함

<표준재식주수(10a당)>

- 시설포도 : 올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 복숭아 : 자연형 24주, Y자형 42주
- 키 위 : 20주
- 다만,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 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이하로 재식되었을 경우에는 과원 실제 면적에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 면적×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재식 주수 : 실제면적 ÷ 10a(300평) × 10a당 표준재식주수

예 1) 2,500평의 키위 표준주수 **166.67주**(2,500평 ÷ 300평(10a) × 20주)

⇒ 2,500평에 키위 106주가 재식된 경우 2,500평 × 106주/166.67주 = **1,590평**

예 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 예 1)의 면적 1,590평 × 106주/186(키위주수 + 감주수 + 대추주수) = **906평**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FTA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772	28,353	28,353	28,353	-	-	-
폐 원	615	26,055	26,055	26,055	-	-	-
양 도	157	2,298	2,298	2,298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업무협조기관 :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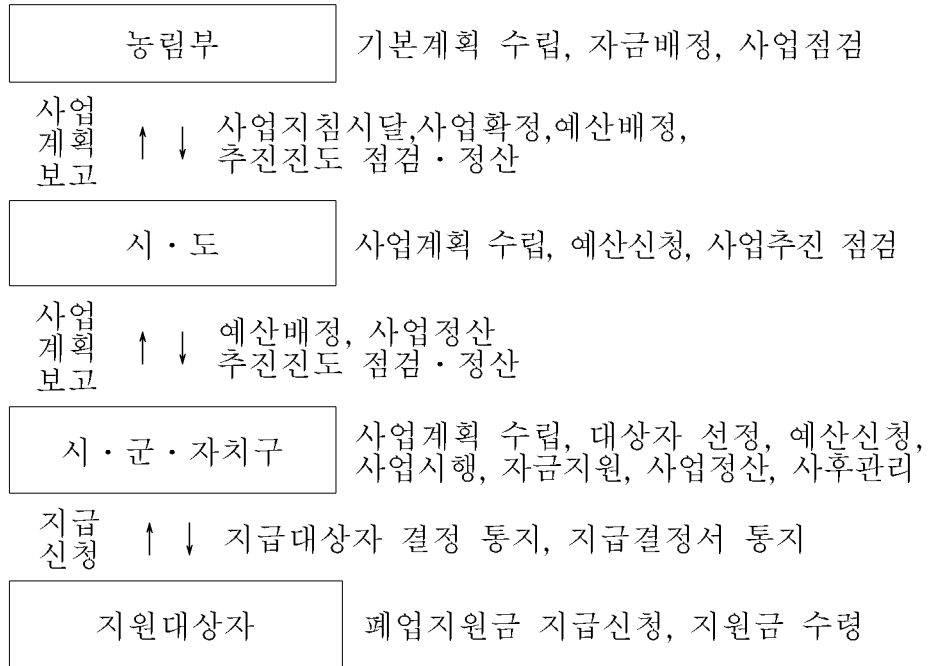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절차

-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신청인 → 시·군·자치구)
- ② 신청서등 조사·확인(시·군·자치구)
- ③ 예산안통지(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심의 및 결정(시·군·자치구, 농정심의회)
- ⑤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보고(시·군·자치구 → 시·도 → 농림부)
- ⑥ 예산배정(농림부 → 시·도 → 시·군·자치구)
- ⑦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 ⑧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신청자 → 시·군·자치구)
- ⑨ 폐원등 현지확인·조사(시·군·자치구·농업기술센터)
- ⑩ 폐원(양도) 결과 통보(신청인 → 시·군·자치구)
- ⑪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시·군·자치구 → 신청인)
- ⑫ 폐업지원금 지급(시·군·자치구 → 신청인)

<사업추진 체계도>



(2)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기관 : 농가 → 폐업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원예담당부서)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서류 : 농업 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추가 서류>

- 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 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및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아래 사항이 기재된 양도계약서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양도대금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3) 신청서 등 조사·확인

-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 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재식주수 확인 등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현지조사·확인)

< 신청서 등 조사·확인할 사항 >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건축·도로 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지 않을 것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것(당해 과원의 양수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산자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된 자 포함)
 -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 일 것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 양수인의 생산현황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 폐원 또는 양도면적은 품목별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실시한 후 생산에 이용된 면적중 폐원(철거·폐기)또는 양도한 면적
 - 폐업지원대상자가 폐업대상 과수목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당해 시·군·자치구내의 소유과원전체를 폐원 또는 양도할 것
 - 당해 과수목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계획으로 선정된 과수목이 아닐 것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한번 신청한 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 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리·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 실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4) 지원순위 우선순위

-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
-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기준 : 과수목수령,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결정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수립

-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 수립(별도 농림부 보고)

※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계획수립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

- 농림부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변경

- 품목별, 지원대상자,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6) 사업세부계획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취합 검토하여 시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7) 예산배정

- 농림부에서는 시·도의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를 검토 후 시·도에 예산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자치구에 재 배정

(8)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자치구에서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지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

(9) 폐원(양도)예정일자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폐원(양도) 예정 일자를 구술 등으로 시·군·자치구에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예정일자 통보

(10) 폐원 등 현지 확인·조사

-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예정일자 통보를 받은 시·군·자치구는 폐원일에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폐원(양도)현지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폐원과원을 현지 확인·조사

<현지 확인·조사할 사항>

- “(2) 신청서 등 조사·확인” 에서 정한 조사·확인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폐원대상 과수목을 완전히 굴취하였는지 여부
 - ※ 산사태 우려 등 굴취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원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표면 높이에서 절단방법이 가능함.
-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 ※ 폐원 전·중·후 사진 촬영 후 보관(폐원당일 현지확인·조사시 해당 과수목 굴취 전·중·후 작업 진행과정 사진 촬영확보)

(11) 폐원(양도)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폐원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즉시 등기부등본을 시·군·자치구에 제출

(12)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통지 및 지급

-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부터 폐원 또는 양도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자치구에서는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하였는지 폐원현장 등을 최종 확인후(양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본을 송부 받은후) 완전히 폐원 또는 양도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 입금
-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 기 지원받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을 차감한 후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사업지침에 의거 집행하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고한 폐업지원사업정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검토한 후 미흡시 보완을 요구하고 적합시에는 익년도 1월말일까지 동 서식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과 보조금 관련 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아래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과원의 과원규모화사업 유도 및 폐원자제 조치
- 품목고시일('04. 5. 24)이전 식재여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과원명부 작성 등의 조치
- 사업자 선정(확정)이후 사업포기자에 대한 조치
- 각서 등 각종 증빙서류 징구, 폐원사유, 읍·면장(리·동장)확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상기사항은 필요시 농정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원 또는 양도지원금을 지급한 후 5년간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식재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관리하고, 양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과원에 대해 제차 양도 및 폐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원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와 폐업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원(필지)별로 폐원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부착하여 관리

- 폐원한 과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매년 상반기중 1회 현지확인 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5년이상 기록 관리
- 양도한 과원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폐업지원사업관리카드(별지 제 10호 서식)에 부착하여 소유권이전 사항 확인 및 관리

다. 지원금의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과오 지급된 경우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과수목 소유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동 토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을 양수한 자가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 2년간에 걸쳐 분할 폐원코자한 농업인들이 연이어 2년째 폐원치 않을 경우에는 폐원 첫해에 기지원된 보조금 환수

라. 보고

- 품목별, 연차별 자체 지원계획수립 보고
 -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 수립('04. 11. 30)
- '05년도 사업추진 관련 보고
 - 시군·자치구별, 사업별·품목별 폐업지원사업세부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04. 12. 31까지
 -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수시 보고

5. 2006년도 사업신청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나. 신청서 제출기간 : 연중
- 다. 폐업지원 사업세부계획서 제출 : 3월말(시·도 → 농림부)
- 라. 기타사항 : 2005년 사업시행 요령과 동일

[별표 1]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	계	'04	'05	'06	'07	'08
경 기	9,560	178	2,100	2,220	2,220	2,842
강 원	7,630	537	1,670	1,780	1,780	1,863
충 북	49,080	4,022	10,800	11,440	11,440	11,378
충 남	15,330	1,600	3,370	3,570	3,570	3,220
전 북	16,850	1,644	3,700	3,930	3,930	3,646
전 남	14,890	1,315	3,270	3,470	3,470	3,365
경 북	116,950	12,301	25,730	27,270	27,270	24,379
경 남	9,510	843	2,090	2,220	2,220	2,137
제 주	1,900	154	420	440	440	446
서 울	120	-	30	30	30	30
부 산	100	8	30	30	30	2
대 구	4,670	507	1,030	1,090	1,090	953
인 천	360	23	80	90	90	77
광 주	1,190	103	260	280	280	267
대 전	1,870	133	410	440	440	447
울 산	100	-	30	30	30	10
중 앙	9,890	-	680	1,970	1,970	5,270
계	260,000	23,368	55,700	60,300	60,300	60,332

[별표 2]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평가표(예시)

- 사업목적에 따라 경쟁(생산)력이 없는 농가가 우선(폐원)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자율 결정

1. 지역조건 (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지목 ① 임야 ② 잡종지 ③ 전 ④ 답

2. 기반조성(조건 불리지역 우선) : 점

- 경사도 ① 50도이상 ② 40도 ③ 30도 ④ 20도 ⑤ 10도이하 ⑥ 평지
- 과원 진입로 ① 인도 ② 리어카 ③ 경운기 ④ 트랙트 ⑤ 포장도

3. 과원 규모(소규모 우선) : 점

- 면 적 ① 10a이하 ② 20a ③ 30a ④ 40a ⑤ 50a ⑥ 60a

4. 나무수령(高齡 우선) : 점

- 수령 ① 30년이상 ② 25년 ③ 20년 ④ 15년 ⑤ 10년 ⑥ 10년미만

5. 관련장비(장비가 없을 수록 우선) : 점

- 운반 ① 경운기 ② 트랙트 ③ 트럭
- 농약살포 ① 분무기 ② 경운기부착 분무기 ③ 승용분무기(SS기)

6. 품질관리(인증농가가 아닌 농가 우선) : 점

- 품질인증(농관원) ① 무인증 ② 저농약 ③ 무농약 ④ 전환기 ⑤유기
- 저온저장(예냉시설) ① 무저온 ② 공동저온시설 ③ 개별저온시설

7. 조 직(조직이 않된 농가 우선) : 점

- 조직등록 ① 일반농가 ② 작목반 개별출하 ③ 작목반 공동출하

8. 시설포도(노후시설 우선) : 점

- 비닐하우스 ① 비 표준설계하우스 ② 표준설계하우스
- 보온비닐 ① 1중 ② 2중 ③ 3중

9. 경작자 연령(나이가 많을 수록 우선) : 점

- 실경작자 나이 ① 70대이상 ② 66대 ③ 50대 ⑤ 40대이하

10. 기타 평가자 판단 : 점

- 나무영양상태 등 ① 불량 ② 보통 ③ 양호 ④ 아주양호

농업등 분야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철거·폐기 <input type="checkbox"/> 양도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소유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⑤ 폐업 품목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철거·폐기 ·양도면적 (㎡)	⑪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
									. ~ .
⑫작목 전환 계획	채 소 (㎡)	화 휘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⑬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생산 현황	품목		1.		2.		(기타)	
		생산면적(㎡)							
⑭폐업지원금 입금계좌(예금 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1부. 다만, 신청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철거 등의 결과통보를 하기 전까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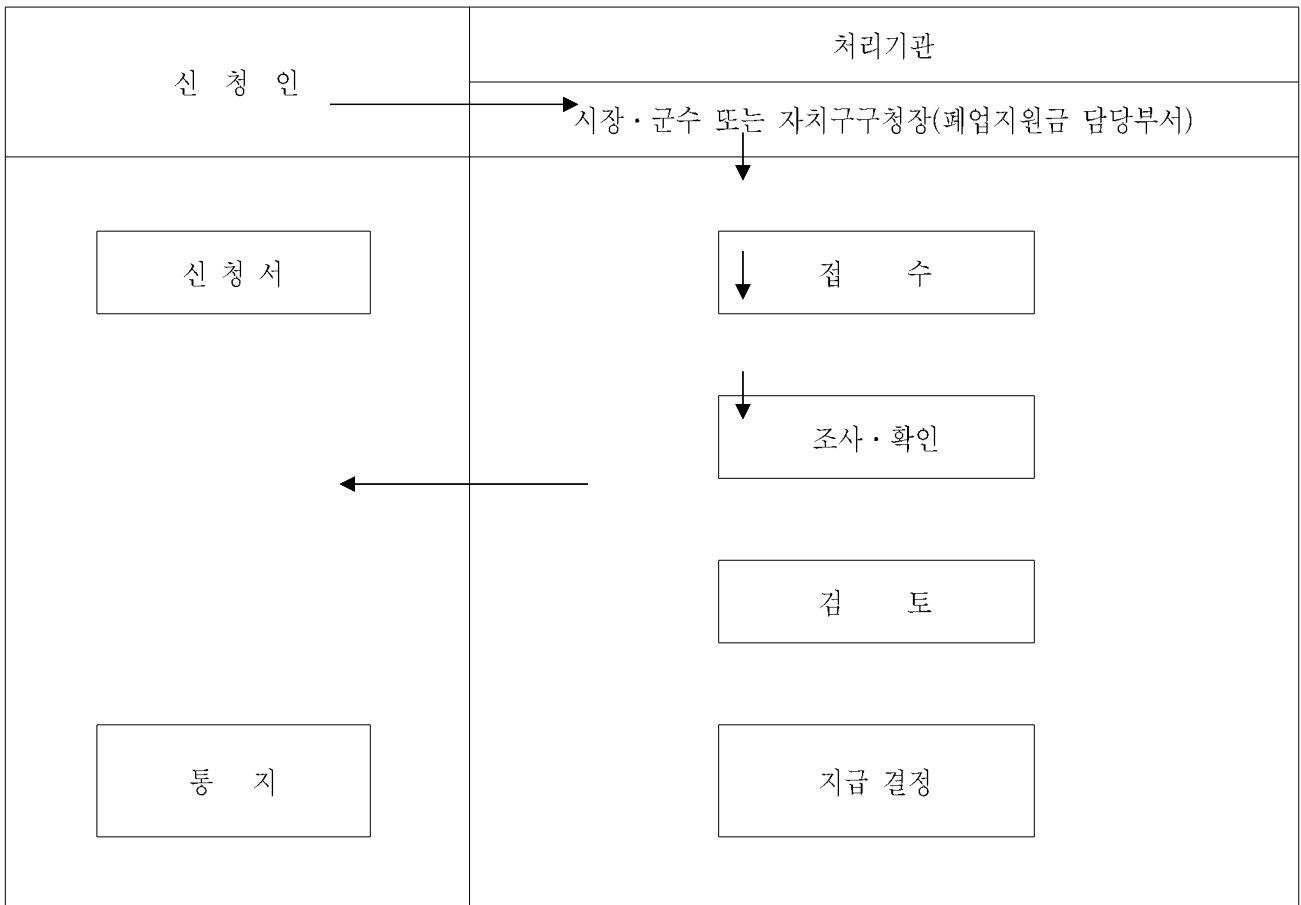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 ① ~ 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 ⑤ ~ ⑨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중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⑪란은 폐업하고자 하는 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⑫란은 폐업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⑬란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양수인의 생산현황은 양수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 품목 2개를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 1. 성 명 :
- 2. 생년월일 :
- 3. 주 소 :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 목	신청면적(m ²)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m ²) 또는 규모	변경 사유

- 5. 준수사항 : 당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한 후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 1. 성 명 :
- 2. 생년월일 :
- 3. 주 소 :
- 4. 폐업지원금 지급액 : 원 (금 원)
- 5. 폐업지원금 지급내용

폐업종류	품 목	지급면적(m ²) 또는 규모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폐업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단위 : ha, 천원)

시·군	과종별	사업량			사업비(기금)			농가수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계	폐원	매도
합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자금신청			비 고
			기배정	금회신청	누계	
합 계						
폐 원	소 계					
	○ ○시					
	○ ○군					
	· · ·					
양 도	소 계					
	○ ○시					
	○ ○군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폐원(양도)현지 확인서

신청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폐업품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 폐기, 양 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신청내용 조사결과	폐업품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철거, 폐기, 양 도면적(㎡)	생산기간
		시군	읍면	리동					
									~
									~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항	①과원조성일자								
	②해당필지 전체폐원·양 도여부								
	③국·공유지 여부								
	④고시일직전 1년이상 고시 품목생산 및 방치여부								
	⑤폐원후 다시재배할 농 가인지 여부								
	⑥폐기대상과수목 완전굴 취여부								
	⑦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자치구 직				성명		(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

< 폐원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폐원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1) 점검내용에는 사업전·중·후 및 사후관리로 기재

2) 합동확인인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 점검사진

폐 원 전	폐 원 중	폐원완료

< 양도 >

○ 현황

사업년도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	㎡			천원	

○ 점검내용(사업시행전 지원대상에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사 진
	소 속	직	성 명	서명		
						< 별첨 >

※ 관리카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관리대장

< 폐원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비현황		사업비 (기금보조)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품종 (수령)	면 적			
계						㎡					

< 양도 >

(사업년도)

시군 (읍면·동)	과 종	사업자(매도자)		매도과원 현황				매수인		사업비 (기금보조)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매도 면적	성명	주소		
계						㎡	㎡			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분기)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시·군	과 중	사업물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농가수)
		계획	실적	실적율(%)	계획	집행	집행율(%)	
합 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소계							
폐원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소계						
	시·군 자치구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소계						
양도	계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소계						
	시·군 자치구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소계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폐업지원사업 정산서

1. 총괄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이익금						
-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예산(A)	정산신청액			미집행액 (A-B)	비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시설비						
- 폐원						
- 양도						
○손실금						
-						

2. 과종별

가. 폐원

시군별	과종	사업량(ha)			사업비(원)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합계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군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나. 양도

시군별	과종	사 업 량(ha)			사 업 비(원)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획	집행실적 (정산)	불용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시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군	계			%				
	시설포도 복숭아 키 위							

3. 손익금 및 기타정산자료는 임의서식 사용